

1997년 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6. 11. 18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총6권중 제2권

**농 립 부**

##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시책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7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19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7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AFFIS를 통하여 PC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정보센터(전화 02-589-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	1
1. 배경 .....	3
2. 특징 .....	5
3. 보완사항 .....	6
4. 해설 .....	12
제1장 총칙 .....	12
제2장 자율사업 .....	16
제3장 공공사업 .....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23
제5장 보칙 .....	25
[별표]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도 .....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	27
1. 배경 .....	29
2. 농림사업자금 현황 .....	29
3. 주요골자 .....	30
4. 해설 .....	31
III. 시책안내 .....	43
1. 42조원 지원계획 .....	45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	47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	49
4. 농림사업 평가제도 .....	56
[참고자료] .....	57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877호) .....	59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75호) .....	104

##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	117
1. 영농규모적정화(자율) .....	119
2. 농약안전사용장비보급(자율) .....	150
3. 토양개량사업(자율) .....	158
(토양개량제공급, 객토)	
4. 감자원증망실재배농가지원*(자율) .....	179
5. 밭기반정비(공공) .....	187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	203
7. 일반경지정리(공공) .....	218
8. 배수개선(공공) .....	226
9. 수리시설개보수(공공) .....	248
(농조수리시설개보수,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농조저수지준설)	
10.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	297
11. 지표수보강개발(공공) .....	325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	347
13.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	366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	384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공동·항공방제, 지하수개발, 지표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한우쌍자생산, 개량물꼬보급, 지역특화작목개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5. 서남해안간척(공공) .....	476
16. 농지정보화(공공) .....	493
17.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지원*(공공) .....	497
18. 인공씨감자대량생산시설(공공) .....	502
II. 농업기계화 .....	509
19.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	511
20.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지원(자율) .....	576
21. 농기계보관창고설치(자율) .....	596
22. 농기계사후관리(공공) .....	606
23. 시설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비축지원(공공) .....	627
24.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공공) .....	635
III. 생산및유통개선 .....	639
25. 미곡종합처리장(자율) .....	641
26. 임도정공장시설대체(자율) .....	667
27. 직접지불제실시(공공) .....	675

###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	677
28. 부적지감굴과원정비[자율] .....	679
29.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공공) .....	686
30. 한국자생란보존육성(공공) .....	690
31. 버섯종균접종원생산보급시설(공공) .....	692
32. 화훼계열화(공공) .....	699
II. 생산및유통개선 .....	703
33. 과실생산유통[자율] .....	705
34. 시설채소생산유통[자율] .....	723
35. 양념채소생산유통[자율] .....	746
36. 고랭지채소생산유통[자율] .....	759
37. 화훼작물생산유통[자율] .....	770
38. 특용작물생산유통[자율] .....	791
39. 인삼생산지원[자율] .....	808
40. 농산물규격출하[자율] .....	824
41.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자율] .....	834
42. 과수대표생산[자율] .....	850
43. 인삼종합처리장(공공) .....	859
44.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공) .....	866
45. 농산물공판장건설(공공) .....	883
46. 꽃박람회개최(공공) .....	896
4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	897
48. 과실·화훼판매촉진(공공) .....	903
49.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	907
50.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	920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수출활성화사업, 수출홍보사업, 해외시장정보조사)	
51.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	947
52.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공공) .....	952
53. 농산물물류센터건설(공공) .....	955
54. 농산물포장센터건설(공공) .....	969
55. 생산자단체출하조절(공공) .....	989
56. 공동규격출하지원(공공) .....	994
57. 출하촉진자금(공공) .....	1008
58.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공공) .....	1013
59. 채소가격안정사업(공공) .....	1018

##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I. 사육기반확충 .....	1025
60. 한우경쟁력강화(자율) .....	1027
61. 젖소경쟁력강화(자율) .....	1041
62. 돼지경쟁력강화(자율) .....	1051
63. 닭경쟁력강화(자율) .....	1061
64. 기타가축육성(자율) .....	1072
6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율) .....	1081
66.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 .....	1099
67. 축산단지조성(공공) .....	1129
68. 가축계열화(공공) .....	1140
II. 생산및유통개선 .....	1163
69.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공공) .....	1165
70. 도축도매시설개선(공공) .....	1176
(축산물공판장건설, 위생도축시설확충)	
71. 가공판매시설및운영(공공) .....	1188
(가공직판장설치, 계란가공시설, 한우전문판매점설치, 냉장육전문판매점시설개선)	
72. 축산물품질향상및안전성강화(공공) .....	1223
(돼지고기품질개선, 규격돈구매자금, 축산물등급판정,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폐사축위생처리,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 한우고급육생산기술개발, 재래닭품질육용화, 가축개량전산망구축)	
73. 소수급관리전산화(공공) .....	1325
74. 축산경영여건개선(공공) .....	1334
(경영상담지도, 양축농가해외연수, 축사표준설계도개발보급, 축산자조금, 특수가축 공제시범사업, 가축박람회, 교육홍보사업, 축분처리용膨軟왕겨생산시설)	
75. 축산업협동조합육성지원(공공) .....	1369
76. 사료제조시설설치(공공) .....	1373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음식찌꺼기사료화시설)	
77. 축산기자재생산시설(공공) .....	1385
78. 학교우유급식(공공) .....	1391
79. 사료원료수입(공공) .....	1397
80. 조사사업(공공) .....	1401
(축산물가격및유통현황조사, 축산관측, 축산물생산조사)	
III. 소득원개발 .....	1411
81. 축산경영자금(공공) .....	1413
IV. 가축개량 .....	1417
82. 소정액생산및공급(공공) .....	1419
(한우개량단지운영, 한우정액생산공급, 젖소정액생산공급, 가축개량신기술보급, 가축인공수정사업)	
83. 종축등록및검정(공공) .....	1458
(종축등록, 젖소산유능력검정, 돼지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가축개량협의회운영)	
84. 전문종돈업육성(공공) .....	1476
V. 기타사업 .....	1485
85. 수의기술교육관건립(공공) .....	1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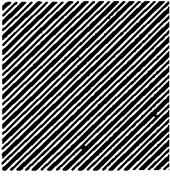
##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및유통개선 .....	1489
86.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자율) .....	1491
87. 농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	1501
II. 기술개발및정보화 .....	1559
88.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자율) .....	1561
89.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	1568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역특화시범사업)	
90. 농립수산정보화(공공) .....	1581
91. 농립수산기술개발(공공) .....	1585
92. 기술지도사업*(공공) .....	1595
(새기술보급및환경보전농업시범사업,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농업학습단체육성및품목별전문교육)	
III. 인력육성 .....	1627
93.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	1629
94. 전업농육성(자율) .....	1664
95. 선도농업경영체육성(자율) .....	1697
96. 농업인자녀학자금(공공) .....	1714
97. 농립계특성화대학지원(공공) .....	1726
98. 자영농고육성(공공) .....	1733
99. 농업전문대학지원(공공) .....	1736
100.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공공) .....	1739
IV. 소득원개발 .....	1743
10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1745
102. 농촌특산단지육성(자율) .....	1810
103. 농공단지육성(공공) .....	1843
104. 농촌특산품판매장설치(공공) .....	1859
105. 한계농지정비(공공) .....	1867
106. 농업경영자금(공공) .....	1883
V. 생활환경개선 .....	1889
107. 식생활개선교육홍보(공공) .....	1891
10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	1895
(일반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도설치)1951	
109. 농촌생활용수개발(공공) .....	1951
VI. 기타사업 .....	1981
110. 농업인의날행사지원(공공) .....	1983

## 제6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	1985
111.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	1987
11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1993
113. 임도시설(공공) .....	1997
114. 영림계획(공공) .....	2001
115.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공공) .....	2005
116.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	2010
117. 임업기술보급(공공) .....	2012
(임업기술지도, 임업기술개발지원)	
II. 생산및유통개선 .....	2021
118. 임목생산(자율) .....	2023
119. 임산소득증대(자율) .....	2028
(표고생산기반조성, 조경수분재생산, 단기소득임산물생산)	
120. 임산물가공지원(자율) .....	2047
(임산물이용가공원자재구입,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산지가공공장설치, 평야용가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121. 표고중균생산시설(공공) .....	2067
12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	2070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간벌재활용장비, 임산물유통시설설치)	
123.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공공) .....	2086
III. 인력육성 .....	2093
124.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율) .....	2095
125. 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	2104
(임업기능인훈련, 임업기능인영림단장비지원)	
126.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	2116
IV. 환경임업육성 .....	2121
12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	2123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박물관건립및수목원조성)	
128. 산불방지대책(공공) .....	2130
129. 사방사업(공공) .....	2134
130. 산림생태보전(공공) .....	2138
(산림환경관리, 산림입지조사, 야생조수보호)	
131. 산촌종합개발(공공) .....	2150
V. 산림자원조성 .....	2157
132. 해외조림사업(자율) .....	2159
133. 산림조성(공공) .....	2167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사업, 조림용묘목생산)	
134. 산림병해충방제(공공) .....	2199





# I . 생 산 기 반 확 충

여 백

1	<b>영농규모적정화(자율)</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관리과입니다.

### 1. 목 적

-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를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교환·분합 촉진으로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규모화된 쌀농업경영체 육성

### 2. 추진방향

-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쌀 전업농을 집중육성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

### 3. 근거법령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제13조 (농지매매사업등)
  - 제15조 (농지의 장기임대차)
  - 제16조 (장기임대차간척농지 등의 매입)
  - 제20조 (농지의 교환·분합등)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95까지	'96	'97예산안	'98	'99-2004
농지매매 (농지구입 자금포함)	면적	108,113	62,613	5,500	4,400	5,000	30,600
	금액	4,334,995	2,148,495	266,500	211,200	240,000	1,468,800 ..
농지임대차	면적	150,614	2,814	2,800	11,000	14,500	119,500
	금액	1,772,300	650	65,000	129,470	170,665	1,406,515
농지교환· 분합	면적	3,905	625	280	295	350	2,355
	금액	87,542	94	5,040	7,728	9,512	65,168
계	면적	262,632	66,052	8,580	15,695	19,850	152,455
	금액	6,194,837	2,149,239	336,540	348,398	420,177	2,940,483

※ 재원 : 농지관리기금에서 100% 융자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 농지매매	◦ 비농가, 전업(轉業) · 은퇴하는 농가, 전업(轉業) · 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등을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매도함으로써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로 농업경쟁력 제고 ◦ 장기임대차간척 · 개간농지의 매매지원
◦ 농지장기임대차	◦ 전업(轉業) · 은퇴하는 농가, 전업(轉業) · 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영농규모화 촉진
◦ 농지교환 · 분합	◦ 농지교환 · 분합시 교환분합차액 지원 및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으로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나. 사업별 지원대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 농지매매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쌀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장기임차간척 · 개간농지 매매지원의 경우에는 당해 간척 · 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영농복귀자
◦ 농지장기임대차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쌀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복귀자
◦ 농지교환 · 분합	◦ 농지교환 · 분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경지정리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농지매매사업비 지원단가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실거래가격이 평당 25,000원이하

다.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구 분	지 원 규 모	융자금리	상 환 기 간
◦ 농지매매자금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	연 3 %	20년 균분상환
◦ 농지임대차자금	제한없음	무 이 자	3~5년 균분상환
◦ 농지교환·분합 자금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 차액 및 청산금 납부해당액	연 3 %	5-10년 균분상환

라. '97사업비 내용

(단위 : ha,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면적)	사 업 비	비고 (ha당지원단가)
◦ 농지매매사업	4,400	211,200	48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1,000	129,470	11.77
◦ 농지교환·분합사업	295	7,728	농민간12.70, 청산금 36.83
계	15,695	348,398	

※ 재원 : 농지관리기금융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1) 쌀전업농육성 사업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 : 농어촌진흥공사 (이하 "공사"라 함)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 관리보조자 : 공사 시·군지부장

(2) 쌀전업농육성 이외 사업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 사업비 지원 및 사후관리 : 공사

## 나. 사업담당부서

### (1) 중앙

- 농림부 농지관리과 (전화 : 02-503-7264~5, 02-500-2635)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규모화사업처(전화 : 0343-20-3352, 3357, 0343-20-3360)

### (2) 시·도

- 농어촌진흥공사 각지사(도)

### (3) 시·군

- 농어촌진흥공사 각시·군지부(군)

## 다.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 선정기준

- 사업별 지원대상자 자격구비 여부
- 사업계획서등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적정 여부
- 농지가격·임차료등 지원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 ◦ 우선순위

- 쌀전업농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순위로 대상자를 선정

- ① 공사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자
- ② “고도 벼농사 사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농가
- ③ 자력에 의한 농지매입, 임차등 규모확대 실적이 많은 농가
- ④ 경종부문 농업인후계자, 농업계학교(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졸업자

## (2)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가) 농지매매사업

####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쌀전업농 신청자격은 전업농육성사업 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름

####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자격(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쌀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작하고 있는 소유논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으로, 쌀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인 쌀재배 경력이 3년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 간척·개간농지 경작 농업인

자격 : 20년 이상 장기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1976. 12. 31 이전 준공)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 영농복귀자

자격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쌀을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 매도신청(농지를 공사에 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사의 시·군지부에 신청
- 매입신청(농업인이 공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사의 시·군지부에 신청

### (나) 농지임대차사업

####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쌀을 주작목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총출자액의 50% 이상을 농지(답)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인법인으로, 법인구성원은 2/3이상인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 영농복귀자

※대상자별 자격은 농지매매사업 자격 요건과 같음

- 임대차 신청 :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공사의 시·군지부에 신청

#### (다) 농지교환·분합사업

- 공사시행 교환·분합

-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이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 일정구역내의 교환·분합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

-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 교환·분합을 희망하는 자경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집단환지(교환·분합)청산금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 교환·분합사업 : 청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 경지정리사업 :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집단화하는 농업인 또는 원지에 환지를 받지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한 농업인

- 농지교환·분합 신청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공사의 시·군지부에 신청

#### (라) 신청 절차

- 신청시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 1.20일까지 (사업예정년도가 1998년인 경우에는 '97년 1.31일까지)

- 접수기관 : 공사 시·군지부

- ※읍·면사무소 및 농촌지도소에서 접수할 경우에는 공사 시·군지부로 이송



◦ 신청방법

- 쌀전업농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사 시·군지부에 제출
- 농업법인등 : 공사에서 정한 별도 서식
-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공사 시·군지부에 제출
- 장기임차간척농지매매지원,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공사 시·군지부에서 지원소요를 별도로 조사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임의서식)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공사 시·군지부

(3) 선정절차

- 공사의 지부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실천 가능성등을 조사·확인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영농규모적정화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예정 전년 2. 10까지 별지 제 3호서식(기타 사업은 임의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추천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조합원 자격유무 확인등 신청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별도로 추천(임의서식)

□ 영농규모적정화심사위원회 구성 (총 10인 이내)

- 농촌지도소 관계자
- 농과계 대학교수 또는 고등학교교사
- 공사 지부 관계자
- 농지관리위원
- 농업인후계자 출신 1인 이상을 포함한 선도농어가 2인
- 농지개량조합 관계자
- 농업인단체 대표등

※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의함  
(전업농육성사업 별표의 쌀전업농 참조)

- 시장·군수는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장)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시·군 홍보지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공사(시·군지부)에 통보

<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예비대상자 확보>

◦ 시·군별로 예산이 확정되면 시장·군수는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공사 시·군지부등 유관기관에 통보

※ 쌀전업농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계통보고

◦ 예산요구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중 최종지원대상자 확정결과 탈락된 자는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나 결격사유 발생시 예비대상자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자순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함(한 농가가 들이 상 품목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자금지원 요청 수요가 적어 예비대상자까지 지원하여도 사업자금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별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지원 가능

라. 사업별 세부사항

(1) 농지매매사업

일반지역 매매사업

(가) 사업개요

비농가, 전업(轉業)·은퇴하고자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등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이를 쌀전업농 및 농업법인에게 매도

(나) 농지매입(공사가 농지를 매입할 경우)

1)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다음순위로 매입

★직접지불사업에 의한 소득보조금지원대상 농가의 농지

- 비농가의 농지 및 법인소유의 농지
-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는 농가의 농지
-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잔여농지가 0.2ha미만)하는 농가의 농지
- 겸업농가의 농지등 기타농지

## 2) 매입가격의 결정

◦ 공사는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가격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가 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

## 3) 매매계약의 체결

◦ 공사는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 계약 체결

★직접지불사업의 소득보조금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시·군의 지급대상자 확정후 계약체결

## 4) 매입대금의 지급

◦ 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을 지급

-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의 10%
-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다) 농지매도 (공사가 농지를 매도할 경우)

### 1) 매도대상자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쌀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장기임대차되고 있는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영농복귀자중 쌀을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 제외자

- 공사에서부터 농지구입자금 및 농지매매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중 보유농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영농규모확대 또는 교환·분합등으로 농지를 매도한 자는 매도대상에 포함
  - 농지매입신청자가 당해농지의 매도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만, 상속농지로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등의 소유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도대상에 포함
- 매도한도 :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제한 없이 지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정도 농업인과 같음)
  - 영농복귀자에 대한 지원범위 : 전업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20Km이상 떨어져 있는 농가는 제외

2)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는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농지가격을 결정하되 매입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매입가격으로, 취득 1년 경과후 매도시에는 실제 거래가격의 범위안에서 결정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전매, 임대, 대리경작 및 담보제공의 제한을 위한 “특약등기”를 하므로써 전매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은 농지매입자가 부담

3) 매매계약의 체결

- 매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와 매매협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4) 매도대금의 수납

- 일 시 불 : 농지매입농가가 원할시 일시불로 수납
- 분할상환
  - 금 리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3%
  - 상환기간 : 20년간 균등분할상환

#### □ 장기임대차 간척·개간농지 매매사업

##### (가) 사업개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 및 개간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

##### (나) 매입대상농지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 및 개간 농지

##### (다) 지원대상자

당해 간척·개간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라) 매매가격의 결정

공사와 농지소유자 및 경작농업인과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함

##### (마) 매매협의 조정

공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조정 요청

##### (바)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본 요령 중 농지매매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

## (2)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가) 사업개요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등으로부터 장기임차한 농지와 공사 소유농지를 쌀전업농 및 농업법인에게 선정된 자에게 장기임대하므로써 영농규모 확대 지원

### (나) 임대차 대상농가

#### ◦ 임차대상농지(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직접지불사업에 의한 소득보조금지원대상 농가의 농지

-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는 농가의 농지
-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잔여농지가 0.2ha미만)하는 농가의 농지
-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있지 않는 1.0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겸업농가의 농지
-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자경하고 있는 농지와 인접(100m이내)된 비농가의 농지
-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 ※ 제외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 ◦ 임대대상농가(공사가 농지를 빌려줄 경우)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쌀을 주작목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영농복귀자중 쌀을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 임차하고자 하는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농가는 제외

※ 영농복귀자에 대한 지원범위 : 전업당시 임대농지 규모이내

### (다) 임대차 대상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다만,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는 제외

(라) 임대차 기간 : 3~5년(다만, 직접지불사업에서 소득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마)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군 조례로 정한 지역별 임차료 상한 범위안에서 당해지역의 관행 임차료수준등을 감안하여 결정

(바)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권 설정등기

- 공사는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은 임대인이부담
- ★지접지불사업의 소득보조금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시·군의 지급대상자 확정후 계약체결

(사) 임차료의 지급 및 수납

◦ 임차료 지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때에 임대자의 희망에 따라 임차료 전액 또는 년불 신청인 경우에는 매년 지급

◦ 임차료 수납

- 임차인은 계약 총금액을 매년 균등분할하여 공사에 납부
- 임차자가 당해년도 임차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 시·군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임차료 상한선의 하향조정으로 임차료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기금운용관리자에 손비처리를 요청

(아) 임차료의 감면

-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자가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청구서를 제출하였을때에는 임차료를 감면
- 천재·지변·자연재해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재해등으로 당해년도의 수확량이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수확량보다 30%이상 감소하거나 수확할 수 없는 경우

- 입차인은 당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감면청구하여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의 재해대책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확전에 감소 비율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수확후에 청구
- 공사는 감면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입회하에 현지확인을 하고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감면
- 입차료 감면기준

감 수 비 율	입차료 감면율
30% 미만	0%
30% - 40% 미만	45%
40% - 50% 미만	55%
50% - 60% 미만	70%
60% - 70% 미만	80%
70% - 80% 미만	95%
80%이상	100%

※ 감면기준 변경시는 변경을 적용

#### (가) 공과금등의 부담

- 공사에서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계가 부과하는 경비중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 노임, 종묘, 비료, 농약등 영농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 (3)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 (가) 사업개요

농지의 교환·분합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기하므로써 영농의 능률화 및 생산성향상 도모

#### (나) 농어촌진흥공사의 교환·분합시행

##### 1) 사업시행

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이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 일정구역내의 교환·분합을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

##### 2) 교환·분합계획의 수립 및 인가

공사는 신청에 의한 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3) 교환·분합계획의 고시

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함

##### 4) 청산금의 징수·교부

○ 공사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산금을 징수·교부하여야 하며 징수대상자가 청산금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소요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
- 5~10년 균등분할상환

## 5) 교환·분합등기 촉탁

공사는 인가된 교환·분합계획에 의거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

## 6) 준용사항

- 공사가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본 요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어촌정비법의 교환·분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다) 농업인 상호간의 교환·분합

#### 1) 지원대상자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지교환·분합을 희망하는 자경농업인

#### 2) 지원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밖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집단화를 위한 교환·분합 대상농지일 경우는 지원

####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가격의 차액을 지원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3%
  - 상환기간 : 5~10년 균등분할상환

#### 4) 소요자금의 지원

- 공사는 농업인이 교환·분합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금을 융자

#### (라) 집단환지(교환·분합)청산금

##### 1) 지원 대상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 교환·분합사업 : 청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 경지정리사업 :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원지에 환지를 받지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하는 농업인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청산금 정수 해당액(일시이용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3%
- 상환기간 5~10년 균등분할 상환

##### 3) 지원협조 요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는 환지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 공사 지부장에게 지원협조를 요청
  -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의 명단 1부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환지계획서 사본 1부
  - 농지의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1부
  - 당해지구 확정도면 및 종전도면 각 1부

##### 4) 지원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통지

- 공사 지부장은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지원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집단환지여부등을 심사하여 해당자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

#### 5) 지원신청, 약정체결 및 소요자금 지원

-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자금을 지원신청자에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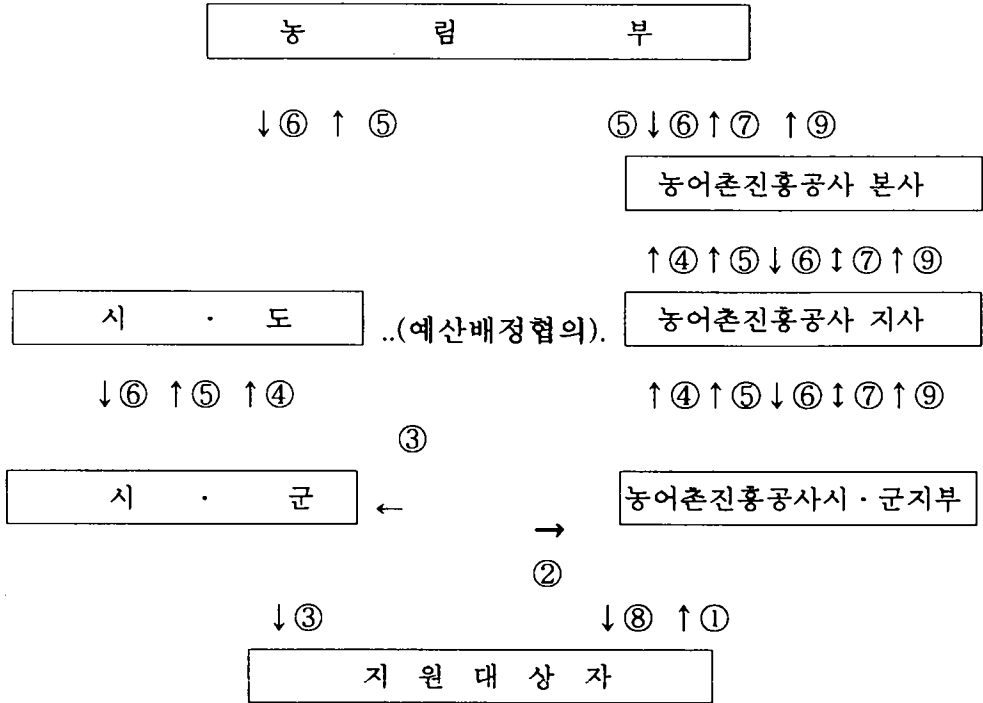
#### 6) 채권확보

- 지원액 500만원 미만 : 동일지구내에서 환지를 받은 자경농민 중 1인의 연대보증인 설정
- 지원액 500만원 이상 : 동일지구내에서 환지를 받은 자경농민중 연대보증인 1인을 설정하고, 환지등기 완료시 지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 마. 사업자금 지원절차

- 농림부장관은 다음년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예정년도 전년 10·10일까지 기금운용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
- 공사는 다음년도의 시·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0.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요청
  - ※ 공사는 시·군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시·군 및 시·도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시·군별 예산은 시·도지사와의 협의)
-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사업예정년도 전년 11. 20일까지 공사 및 시·도에 시달
-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시장·군수는 배분된 시·군별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예정년도 지원대상자(장기임차간척농지매매지원 및 집단환지청산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상지구)를 사업예정년도 전년 12. 20일까지 확정하고 공사 지부는 확정된 지원대상자(또는 대상지구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원
- 사업비 및 지원계획 면적 조정
  - 시·도,시·군별사업비 및 지원계획면적 조정(동일사업 범위내) : 농어촌진흥공사장(시·군별 조정시에는시·도지사와의 협의)
  - ※조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시·도에 통보

바. 사업추진 체계도



< 범 례 >

- ① 지원신청서 제출
- ② 지원자격 심사 및 추천
- ③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④ 지원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 ⑤ 사업계획 승인요청 및 예산요구서 제출
- ⑥ 사업계획 승인 통보
- ⑦ 자금 요구 및 배정 통보
- ⑧ 자금 지원
- ⑨ 사업시행결과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비 정산

#### (1)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관할 시·군·읍·면 및 공사 지부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

#### (2) 사업정산

- 공사는 당해년도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정산서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정산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정산결과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고 조세공과금등 손실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손비처리

#### (3) 기 타

- 영농복귀자 지원에 필요한 농지매매자금·농지임대차자금과 농지의 재매입·매도시 필요한 자금은 쌀전업농 지원사업비에서 지원
- 직접지불제사업에 의한 소득보조금지원대상 농가의 농지에 대하여 농가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되도록 농지매매 및 임대차사업을 추진

### 나. 사후관리

#### (1) 일반사항

- 공사는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음
- 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교환·분합사항등 농가영농규모적정화 사업내용을 사업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급 및 회수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에 통보
- 관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매매가격 또는 임차료의 조정 요청이 있을때에는 조정결과를 매매 및 임대차 당사자에게 통보

- 시·구·읍·면의 농지관리위원장은 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민원 사항을 확인 처리하여야 함

확 인 사 항	용 도	확 인 자
재촌지구확인신청서 임차영농사실확인신청서	농지매도 농지매입 및 임차	농지관리위원장 "

## (2) 지원농지의 관리

### (가) 영농관리상황 조사

- 농진공은 농지의 매매, 구입자금지원 및 임대차사업으로 당해년도 6월말까지 지원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과 같이 영농관리상황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후계농업인의 이농 또는 전업여부
  - 지원농지의 전매, 임대, 대리경작, 담보제공, 전대, 타작목 경작 여부
  -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후계자 및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상실 여부
- 영농관리상황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
  - 매도농지 : 융자금 또는 당해농지 회수
  - 구입자금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나) 회수농지의 가격결정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진공이 회수하는 농지의 가격은 실제거래가격범위내에서 당초 매도 가격에 다음의 경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자 : 이미 상환한 이자와 매매계약체결시까지 상환할 이자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 법무사수수료
  - 기타 농지매입에 직접 소요된 경비 : 취득세, 등록세

(다) 전매·임대등의 동의

- 공사는 농지를 매입한 자 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당해농지의 전매, 임대, 대리경작 또는 담보제공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영농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각종 선거에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였거나 자금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자가 당해 농지에 대한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공사로부터 전매동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농업경영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라도 사전에 해당면적 이상의 농지를 새로이 구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전용된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

(라) 사후관리위반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등으로 융자금이나 농지 등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이자등을 부과 불이익 처분

다. 보 고

- 공사의 시·군지부장은 매분기마다 사업추진실적을 분기 다음달 5일까지 해당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지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사장에게 보고
- 공사는 매분기마다 시·군별, 사업별 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공사는 매도 및 구입자금지원농지와 임대농지에 대한 전매, 임대 및 전대등 위반여부를 조사한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매년 10.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6. '97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구 분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
가. 신청서 제출기관	공사 시·군지부	( 좌 동 )	( 좌 동 )
나. 신청자격	매도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겸업농가 및 직접지불사업대상농가 매입 : 쌀전업농 등	임 대 : 좌 동 임 차 : 좌 동	농지교환·분합을 희망하는 자 또는 집단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다. 신청절차	공사 시·군지부에 신청서 제출	( 좌 동 )	( 좌 동 )
라. 구비서류	별지 제4호서식(매도시) 별지 제5호서식(매입시) 별지 제2호서식( " ) ※농업법인 : 임의서식	별지 제6호서식(임대시) 별지 제7호서식(임차시) ※농업법인 : 임의서식	별지 제8호서식 ※환지청산금: 임의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쌀전업농 신청서

군수(시장) 귀하

본인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이 신청서 기재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인)

			접수번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전화번호		(지역번호: )			
학력			학교 과 (19 년 월 일 졸업)					
15세 이상 동거 가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간 영농 종사일수			
			-		일			
			-		일			
			-		일			
전업농 신청 품목 경영 현황	경영규모	m'		재배경력				년 (19 년 월부터)
	기계화 및 시설수준	기계·시설						
		종류·규격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 생산에 적용한 기술 : ○ 대형농기계 및 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 경영여건과 전업농 신청품목의 적합성 : ○ 농업이 주업인 동거가족수 : 명(성명: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1부, 학력증명서 사본(농과계학교 졸업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쌀전업농 사업계획서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후계자출신여부	수도작( )	복합( )	일반농가( )	현재경영규모
지원 신청금액	농지매매자금	:	천원	소요시기
	농지임차자금	:	천원	소요시기
	농지교환·분합자금	:	천원	소요시기
	농기계구입자금	:	천원	소요시기
				평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1. 현재의 영농 기반

구분	농지 (m <sup>2</sup> )			시설		농기계	
	계	논	밭	종류	규모	종류	대수
소유							
임차							
기타							
계							

### 2. 지원자금의 투자계획

사업명	규모(m <sup>2</sup> )	투자계획 (천원)			비고
		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농지매입					
농지임차					
농지교환·분합					

### 3. 최근5년간 인력육성자금 수혜내용(후계자, 전업농, 선도개척농, 선도농업경영체)

연도	사업명	지원액	비고
		천원	

### 4. 앞으로 5년간 경영계획(쌀전업농 육성규모로의 발전계획)

연도별	경영규모(m <sup>2</sup> )	비재배면적	농업소득목표(순소득)	기타 참고사항
	○ 소유 : ○ 임차 : ○ 계 :			
	○ 소유 : ○ 임차 : ○ 계 :			
	○ 소유 : ○ 임차 : ○ 계 :			
	○ 소유 : ○ 임차 : ○ 계 :			
	○ 소유 : ○ 임차 : ○ 계 :			

\* 쌀전업농의 경우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 쌀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 추천

### < 쌀전업농 >

추천 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자금지원 (안)	
				농지매매자금	농지임차자금
			-		

- 첨 부 1. 추천순위 결정근거  
 2. 자금지원신청액 조정사유  
 3. 추천제외자 및 사유

### 1. 추천순위 결정근거

추천 순위	성 명	심 사 항 목 및 평 점							비 고
		영농 경력	학력 및 교육훈련	재배기술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 계획	기계화및 시설기준	평점합계	

※ 비교란에는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의 우선순위 해당사항, 지역사회발전기여도, 지역여론 등을 기재

### 2. 자금지원 신청액 조정사유

(단위 : 천원)

추천 순위	성 명	신 청 액		조 정 (안)		조정사유
		농지매매 자금	농지임차 자금	농지매매 자금	농지임차 자금	

### 3. 추천제외자 및 사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추천제외사유
		-	

※ 신청자중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신청자격요건 미달(구체적 결격사유), 신청서 허위기재등 추천제외사유를 명시





[별지 제6호 서식]

<b>농지장기임대신청서</b>								
농지소유자	주소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임대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	희망 임대료	소유권이외의 권리	
	읍면	리동						
임대료 지급	1.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    2. 분할지급							
임대자의요건	1. 전업농    2. 은퇴농    3. 겸업농    4. 기타							
농지조건	답	1. 경지정리답    2. 수리안전답    3. 수리불안전답						
	전	1. 관개 및 입지조건 양호    2. 관개 및 입지조건 불량    3. 기타						
영농규모	계	m <sup>2</sup>	소유농지	m <sup>2</sup>	임차농지	m <sup>2</sup>		
임대기간	19    년    월    ~    19    년    월    (    년간)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등본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p>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공사에 임대하고자 신청하오니 입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font-size: 1.5em; margin: 10px 0;">19    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신 청 인                                  (인)</p> </div> <p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귀하</p>								







2	<b>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자율)</b>
---	-----------------------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 입니다.  
 ※ 예산은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1. 목 적**

- 농약살포시 피부접촉에 의한 농약중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복을 공급하고
- 경지정리가 안되어 대형동력분무기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수동식 분무기로 장시간 농약을 살포함에 따라 야기되는 중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형동력방제기를 공급

**2. 추진방향**

- 재래식 수동분무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농약중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하기 편리한 소형동력방제기를 지원 공급하여 농약을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방제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
- 농약살포시 피부접촉을 통한 중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복을 공급하여 농민의 건강 보호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대책
- WTO농업협정의 「저소득 지원빈약대상자를 위한 농업 투입재 보조사항」으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대상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사업량	방 제 복	천착 745	445	100	100	100
	소형동력방제기	천대 37.1	22.9	6.0	4.2	4.0
사업비	계	백만원 28,335	17,406	4,098	3,399	3,432
	보 조	8,880	5,837	1,130	953	963
	지 방 비	8,881	5,838	1,130	953	963
	자 부 담	10,574	5,731	1,838	1,493	1,506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1) 사업배경

- 농약의 중독사고로 부터 농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제복은 '83년부터, 소형동력방제기는 '90년부터 공급해 왔으며 농어촌발전대책 사업으로 확정

##### (2) 지원대상자

- 방제복 : 노약자, 부녀자농가, 영세농가등 농약안전사용 취약농가
- 소형동력방제기 : 산간농가 지역이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등의 노약자, 부녀자등 영세한 병해충방제 취약농가

##### (3) 지원조건

- 방 제 복 : 국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 소형동력방제기 : 국고25%, 지방비25%, 자부담50%

##### (4) 공급규격

- 방제복 : 농림부 공고 제87-7호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소형동력방제기
  - 엔진, 밧데리, 전기모터 기타 동력원이 부착된 동력분무기로서 전체무게가 20kg이하인 것. 다만,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범위내에서 공급대상자, 지형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무게를 조정할 수 있음
  - 살포능력이 우수한 것
  - 사후봉사 및 부품공급이 원활한 것
  - 국정검사품 또는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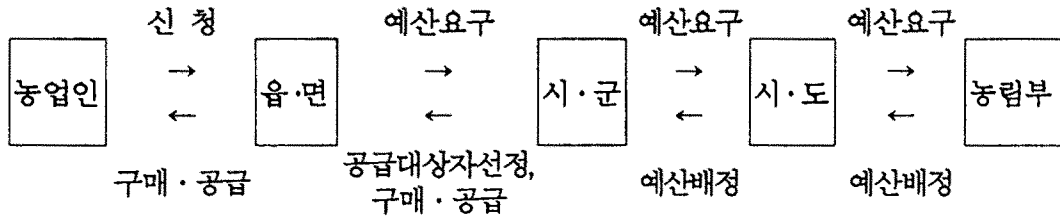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백만원 3,412	953	953	1,506
방 제 복	천착 100	2,000	600	600	800
소형동력방제기	대 4,200	1,412	353	353	706

※ 시·도별 지원계획은 [붙임]과 같음

<추진체계>

가. 사업체계



나.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직할시 : 농정과)
- 시·군(읍·면) : 산업과(산업계)

라. 사업실시기간

- 농약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을 가장 많이 살포하는 시기 이전에 공급되도록 함.

## 마 사업시행방법

- 구매공급에 관한 방법은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함
  - 농민의 자부담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시장·군수가 경쟁 방식으로 직접 구매
  - 농민의 자부담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장·군수는 예산단가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함
- 시장·군수는 구매가 이루어지면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조작기술 및 정비 점검 능력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민교육(설명회)을 실시하여야 함.

## 바. 기타사항

-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의 소액 보조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소액보조사업간 예산변경 필요시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을 '97.1.15까지 요청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군간 사업비의 전배조치를 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소형동력방제기는 보조를 받은 자가 3년이상 영농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읍·면장)는 소형동력방제기 보조지원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읍·면장)는 보조금 지급 후 당해년도에 보조지원 공급된 소형동력방제기인지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치 않았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

- 시장·군수(읍·면장)는 보조지원된 소형동력방제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급업체로 하여금 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점검 및 사후봉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보고, 기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급완료 실적과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을 익년 3월말까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사업의 총액 및 개별사업 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사업은 '98년이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며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의 소액보조사업 총액으로 신청함 - 단,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계획을 세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나. 대상자 선정

- 공급대상자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장·군수 책임하에 선정

- 우선순위

(소형동력방제기)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 또는 산간지역의 경운기·대형 동력방제기가 없는 영세농가로서 재래식 수동분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
- 기타 농약안전사용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방제 취약 농업인

(방 제 복)

- 최근 4년간 공급받지 않은 농가
-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서 영세한 농가
-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농약안전사용 취약농가

-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함

[ 붙임 ]

## '97 시·도별 지원계획

사업명 :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단위 : 착/대, 천원)

시·도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수익자부담금	
계	100,000/4,200	3,412,000	953,000	953,000	1,506,000	
부 산	500 / 9	13,024	3,756	3,756	5,512	
대 구	200 / -	4,000	1,200	1,200	1,600	
인 천	1,100 / 3	23,008	6,852	6,852	9,304	
광 주	300 / -	6,000	1,800	1,800	2,400	
대 전	100 / 6	4,016	1,104	1,104	1,808	
경 기	6,500 / 250	214,000	60,000	60,000	94,000	
강 원	9,700 / 229	270,944	77,436	77,436	116,072	
충 북	4,900 / 300	198,800	54,600	54,600	89,600	
충 남	14,300 / 874	579,664	159,216	159,216	261,232	
전 북	10,100 / 423	344,128	96,132	96,132	151,864	
전 남	9,800 / 1,140	579,840	154,760	154,760	270,320	
경 북	18,300 / 500	534,000	151,800	151,800	230,400	
경 남	10,300 / 466	362,576	100,944	100,944	160,688	
제 주	13,900 / -	278,000	83,400	83,400	111,200	

사업명 : 방재복

(단위 : 착, 천원)

시·도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수익자부담금	
계	100,000	2,000,000	600,000	600,000	800,000	
부 산	500	10,000	3,000	3,000	4,000	
대 구	200	4,000	1,200	1,200	1,600	
인 천	1,100	22,000	6,600	6,600	8,800	
광 주	300	6,000	1,800	1,800	2,400	
대 전	100	2,000	600	600	800	
경 기	6,500	130,000	39,000	39,000	52,000	
강 원	9,700	194,000	58,200	58,200	77,600	
충 북	4,900	98,000	29,400	29,400	39,200	
충 남	14,300	286,000	85,800	85,800	114,400	
전 북	10,100	202,000	60,600	60,600	80,800	
전 남	9,800	196,000	58,800	58,800	78,400	
경 북	18,300	366,000	109,800	109,800	146,400	
경 남	10,300	206,000	61,800	61,800	82,400	
제 주	13,900	278,000	83,400	83,400	111,200	



사업명 : 소형동력방제기

(단위 : 대, 천원)

시·도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수익자부담금	
계	4,200	1,412,000	353,000	353,000	706,000	
부 산	9	3,024	756	756	1,512	
대 구	-	-	-	-	-	
인 천	3	1,008	252	252	504	
광 주	-	-	-	-	-	
대 전	6	2,016	504	504	1,008	
경 기	250	84,000	21,000	21,000	42,000	
강 원	229	76,944	19,236	19,236	38,472	
충 북	300	100,800	25,200	25,200	50,400	
충 남	874	293,664	73,416	73,416	146,832	
전 북	423	142,128	35,532	35,532	71,064	
전 남	1,140	383,840	95,960	95,960	191,920	
경 북	500	168,000	42,000	42,000	84,000	
경 남	466	156,576	39,144	39,144	78,288	
제 주	-	-	-	-	-	

3	토양개량사업(자율) (토양개량제공급)
-1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입니다.

### 1. 목 적

- 농경지를 개량하여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촉진하고 농경지의 환경보호를 도모함.

### 2. 추진방향

- 행정구역별 들녘중심으로 6년1주기로 토양개량제 시용
- 농협이 토양개량제 구매공급
- 농촌지도소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 살포

### 3. 근거법령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04
사 업 량		천톤 6,148	1,264	316	438	590	3,540
		백만원					
사업비	계	397,291	71,523	17,640	28,128	40,000	240,000
	보 조 용 자	267,579	16,667	4,410	22,502	32,000	192,000
	지 방 비	82,743	16,707	4,410	5,626	8,000	48,000
	자 부 담	46,969	38,149	8,820	-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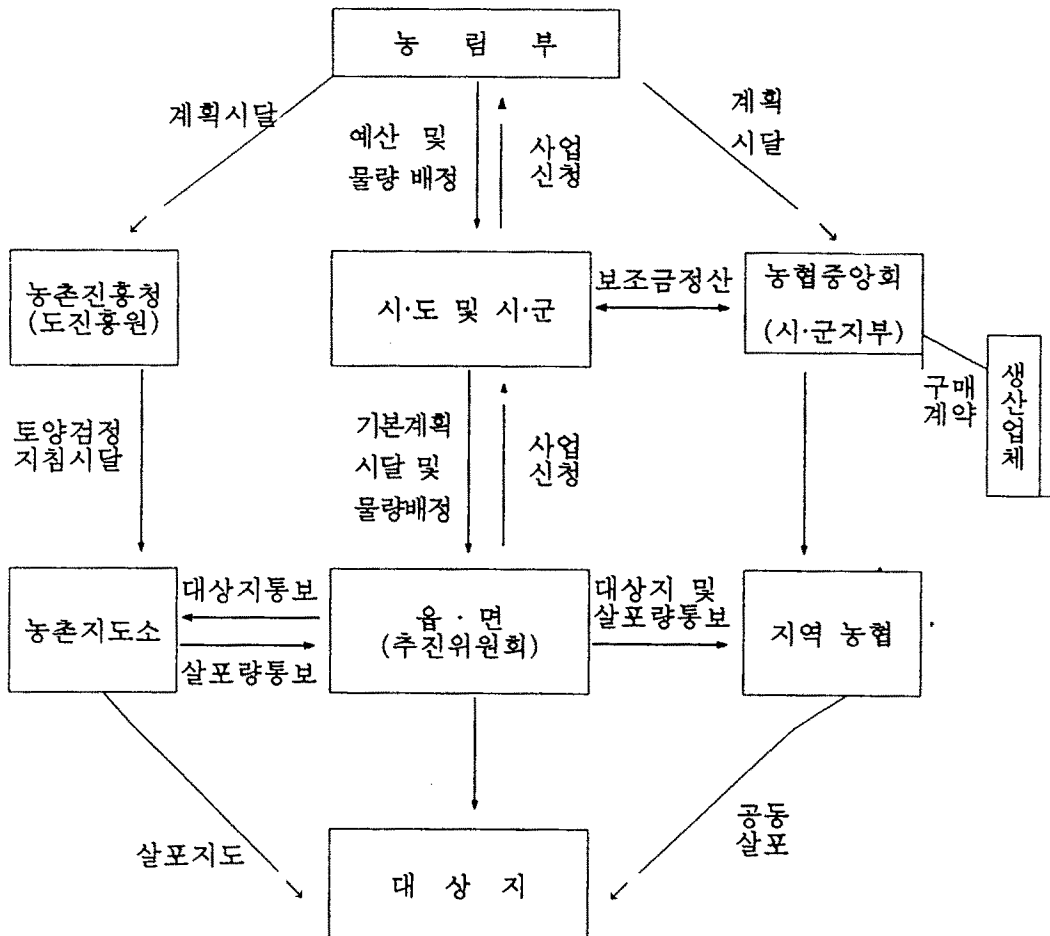
- 농경지 개량으로 수량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 폐광산, 제련소 인근등 중금속이 오염된 농경지의 오염해소

##### (2)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 130 ppm 미만의 규산이 부족한 논
- 석회 : 산도(PH)6.5미만의 산성밭, 중금속이 오염된 농경지

##### (3) 지원조건 : 국고보조80%, 지방비20%

##### (4) 사업시행체계



나. '97 지원계획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계	천톤 438	백만원 28,128	22,502	22,502	-	5,626	-
규 산	210	14,448	11,558	11,558	-	2,890	-
석 회	228	13,680	10,944	10,944	-	2,736	-

※ 시·도별 지원계획 : [별표]참조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다.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02-503-7228~9)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작물보호과 (0331-292-4297)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 비료과 (02-397-5871~5)
- 시·도 : 농정국 농정과, 농촌진흥원 작물지도과,  
           농협 시·도지역본부 자재과
- 시·군·자치구 : 농정과(산업과), 농촌지도소, 농협 시군지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라. 지원대상지 선정 및 우선순위

(1) 지원대상지(자) 선정

- 시장·군수가 수립시달한 「토양개량제공급 기본계획」에 의거 읍면장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대상지 선정

(2) 공급우선순위

○ 규 산

- ① 병해충, 냉해, 도복등 재해상습지
- ② 농업진흥지역
- ③ 규산 시용이 6년 경과한 논등
- ④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의 규산함량이 적은 논

○ 석 회

- ① 중금속 오염농경지(논등 포함)
- ② 농업진흥지역
- ③ 석회 시용이 6년 경과한 밭등
- ④ PH 6.5미만의 산성이 강한 밭

마.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및 살포

(1)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의 토양개량제 공급신청량, 경지면적, 지역별 토양검정결과 등을 토대로 농촌진흥원장 및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시·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량을 배정함.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등과 협의하여 행정구역별 들녘중심으로 연차별(6년1주기)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로 토양개량제 공급량을 배정함.
- 읍·면장은 지역농협장,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장, 리장, 작목반장, 영농지도자등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시·군 토양개량제 공급기본계획에 의거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들녘, 리동, 농가, 필지등), 공급량, 살포방법, 살포시기등 세부계획을 수립함.
- '97년도의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선정은 '96년도에 개별농업인에게 이미 신청을 받은 점등을 감안하여 규산은 행정구역별 들녘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석회는 희망 농업인을 우선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6년1주기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읍·면장은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의 행정구역별 지목, 지번, 지적 등 살포지역 내역을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함.
- (2) 토양검정 실시 및 살포량 통보
- 농촌진흥청장은 토양검정실시 방법, 토양성분별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살포량 기준, 토양개량제 살포지도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 시달함.
    - 다만, '97년도 사업은 공급대상지 및 공급량 확정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기히 실시한 필지별 토양검정자료등을 활용하여 살포량 기준 산정 가능
  - 농촌지도소장은 읍·면장이 통보한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살포량등을 산정하고 읍면장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함.
- (3)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구매공급하여야 함.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동일가격으로 함.
  - 시장·군수는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별(읍·면, 들별등) 공급계획량을 시·군농협지부장에게 통보함.(10.30한)
  -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함.
  - 현지에 공급된 물량은 사용지역 리·동장에게 인계하고 인수증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토록 함.
  - 농협중앙회장은 토양개량제를 들녘중심으로 6년1주기로 집단 공급함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시용코저 하나 구입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사전에 지역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자체사업으로 적기에 공급토록 함.
- (4)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 농촌지도소장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지역농협장은 읍면장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수립된 살포계획에 따라 농협, 농촌지도소 및 작목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공동살포하거나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 법인에게 위탁하여 공동살포하며 농기계 임차료(인부임 포함), 위탁살포비용등 소요경비는 지역농협장 책임하에 처리함.
  - 다만 석회는 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농업인이 개별살포할 수 있음.
- 지역농협장은 필지별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현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 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월별로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을 파악, 공급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 ※ 지방비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 국고보조금만이라도 우선 지급

### <행정사항>

#### 가. 관련기관별 담당업무

- 행정기관 시·도지사(시장·군수, 읍·면장)
  -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량 신청
  - 사업량 보조금 배정 및 정산
  -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에 관한 행정지원
- 지도기관
  - 토양검정 실시 및 토양개량제 살포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달(농촌진흥청장)
  - 토양개량제 살포지역의 토양검정
  - 토양개량제 살포량 확정 통보
  - 지역별 담당지도자를 정하여 살포지도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및 공급(농협중앙회)
  - 토양개량제 살포 계획수립 및 살포작업 주관
  -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정산

나. 보고사항

-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체결 결과보고
  - 보고기관 : 농협중앙회장
  - 보고내용 : 구매가격 결정내역, 계약물량, 계약조건등
  - 보고기한 : 매년 1월말
- 시·군별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 보고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보고내용 : 공급계획, 공급 및 살포실적
  - 보고기한
 

[	공급계획 : 매년1월말[별지 제2호 서식]
]	공급및살포실적 : 매월 익월 10일이내[별지 제3호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나. 신청절차 : 읍·면장이 시·군의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기준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신청
- 다. 구비서류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라. 대상지(자)선정
  - 이 사업시행 지침<사업개요> 라.항에 의함.



[별표]

**'97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시·도별 보조금 예산내역**

(단위: 톤, 천원)

시·도별	규 산				석 회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사업비계	국 고	지방비
계	210,000	14,448,000	11,558,000	2,890,000	228,000	13,680,000	10,944,000	2,736,000
서 울	4	275	220	55	300	18,000	14,400	3,600
부 산	760	52,288	41,830	10,458	1,130	67,800	54,240	13,560
대 구	86	5,917	4,733	1,184	480	28,800	23,040	5,760
인 천	300	20,640	16,512	4,128	670	40,200	32,160	8,040
광 주	800	55,040	44,032	11,008	2,210	132,600	106,080	26,520
대 전	700	48,160	38,528	9,632	810	48,600	38,880	9,720
경 기	29,920	2,058,496	1,646,697	411,799	17,930	1,075,800	860,640	215,160
강 원	14,600	1,004,480	803,584	200,896	12,400	744,000	595,200	148,800
충 북	12,140	835,232	668,186	167,046	16,210	972,600	778,080	194,520
충 남	29,840	2,052,992	1,642,294	410,698	26,150	1,569,000	1,255,200	313,800
전 북	31,340	2,156,192	1,724,854	431,338	22,450	1,347,000	1,077,600	269,400
전 남	36,810	2,532,528	2,025,922	506,606	46,340	2,780,400	2,224,320	556,080
경 북	25,080	1,725,504	1,380,403	345,101	40,820	2,449,200	1,959,360	489,840
경 남	27,600	1,898,880	1,519,104	379,776	20,420	1,225,200	980,160	245,040
제 주	20	1,376	1,101	275	19,680	1,180,800	944,640	236,160

[별지 제1호서식]

## '97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현황

(○○군 ○○면)

공급지역		경 작 자		공 급 내 역			살포 일자
리	지번	주소	성명	면적 평	공급량 톤	비 중 명 (분말,입제)	

※ 규산, 석회(소석회, 석회고토 구분)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97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단위: 톤)

시·도명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명						

[별지 제3호서식]

'97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월)

< 규산, 석회 구분 >

(단위: 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월	누계(B)	비율 (B/A)	당월	누계(C)	비율 (C/B)
계							
시군명							

[별지 제4호 서식]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신청서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신청내역	규 산	계	톤	
분 말					
입 제					
석 회		계			
		석회고토			
		소 석 회			
<p>위와 같이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 읍·면장 (인)</p>					
<p>○ ○ 시장 · 군수 귀하</p>					

3 -2	토양개량사업(자율) (객토)
---------	--------------------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입니다.

### 1. 목 적

- 저위생산지와 휴·폐 광산주변 오염농경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토양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함.

### 2. 추진방향

- 사질답 등 점질이 낮아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는 점토함량 15% (논18cm, 밭15cm깊이까지)가 되도록 객토를 실시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 휴·폐금속광산주변 오염농경지는 30cm이상 객토하여 농토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 3. 근거법령

- 농지법제20조(토양의개량·보전) 및 동법시행령제24조(토양의개량·보전을위한사업의시행)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천ha)		304	96	16	17	25	150
사업비	계	368,715 (91,112)	71,112 (71,112)	20,000 (20,000)	25,953	35,950	215,700
	음 자	368,715 (91,112)	71,112 (71,112)	20,000 (20,000)	25,953	35,950	215,700

※ ( )내서는 농업경영자금임.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지

- 사질논, 밭 등 생산력이 낮은지역 및 소규모 합배미 사업지역
- 휴·폐금속광산 인근농경지 중금속 오염조사(농진청 '95. 4)결과 오염농경지 : 169ha

##### (2) 지원대상자

- 객토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함
  - 일반객토 : 대상지중에서 객토 미실시지역, 객토를 실시하였으나 적량객토를 하지 않아 보완객토가 필요한 지역, 기타 병해충 및 재해상습연작피해 등으로 객토가 필요한 지역
  - 합배미객토 : 토양을 개량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규모 합배미 지역
  - 오염농경지 객토 : 휴·폐금속 광산 인근농경지 중금속 오염조사(농진청, '95.4) 결과 오염농경지

##### (3) 지원단가

- 일반객토 : 1,200천원/ha
- 합배미객토 : 2,200천원/ha
- 오염농경지객토 : 5,950천원/ha
  - ※ 객토단가조정 : 시장·군수는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객토 투여량, 운반거리, 객토원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ha당 객토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4) 지원조건

- 국고 융자 100%(년리5%, 3년균분상환)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ha 16,840	25,953	25,953	-	25,953	-	-
일반 객 토	11,729	11,729	14,075	-	14,075	-	-
합 배 미 객 토	4,942	4,942	10,872	-	10,872	-	-
오염농경지객토	169	169	1,006	-	1,006	-	-

※ 용자조건 : 연리5%, 3년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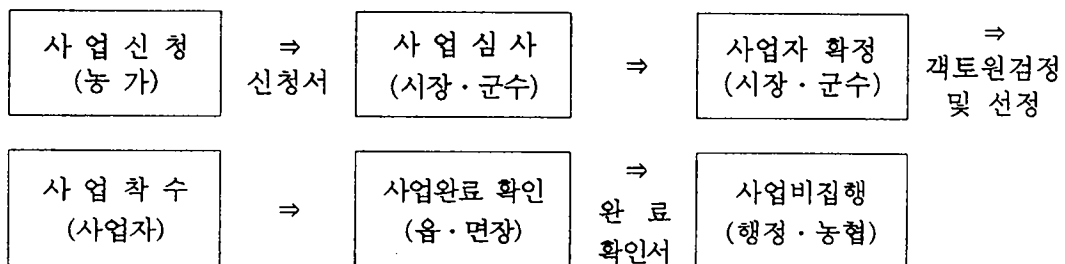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직할시 : 농정과)
- 시·군(읍·면) : 산업·농정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97사업을 신청한 농가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 체계



(2)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약체결은 사업자와 객토 대행업자 간에 계약 체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중재 조정



- 농로, 논두렁 보수 및 객토원 채토지 원상복구 사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민원 해소
- 가급적 흙퍼기 작업과 동시 계약 추진
- 객토원 선정
  - 시장·군수는 지도소·농가와 협의하여 객토원을 선정
  - 지도기관에서는 객토원 검정 실시
- 시장·군수는 객토지역 및 객토원의 질과 양을 수시 확인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객토 실시
  - 객토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책 강구
  - 예산 범위내에서 채토원보상비, 영세농가의 객토운반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
- 객토원이 부족한 곳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제오라이트 공급
- 유기물 더주기, 10a당 30톤이상을 객토한 논에는 삼요소 비료를 20-30% 더 주고, 깊이갈이를 실시(가급적 2-3회)
- 사업계획 변경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일반, 합배미, 오염농경지객토의 종류별 사업내용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변경·추진은 가능함.

### (3) 객토방법

#### 논 객토량 결정

- 객토기준
  - 모래논 : 점토함량이 15%로 증대되도록 객토
  - 질흙논 : 점토함량 15%로 조절(투수성 및 농기계 작업능률 증대)

○ 10a당 객토량 (18cm깊이까지 15% 점토함량 증가시)

- 객토량 조건표

(톤/10a)

객토원점질함량(%) 객토대상 논점질함량(%)	20	25	30	35	비 고
	8	131	93	72	
9	123	84	64	52	
10	113	75	56	45	
11	100	64	47	38	
12	84	52	38	29	
13	64	38	26	20	
14	38	20	14	11	

(주)

$$\text{객토량} = \frac{18(15 - \text{농경지점토}(\%))}{\text{객토원점토}(\%) - \text{농경지점토}(\%)} \times 1.25 \times 10$$

- 18 : 개량목표 깊이(cm)
- 15 : 개량목표 점토함량(%)
- 1.25 : 가비중
- 10 : 상수

□ 발 객토량 결정

※ 작토층 15cm를 찰흙 함량 15%로 개량할 때의 객토(10a당)

객토원토성 대상 발토양	사 토	사 양 토	식 양 토	식 토
		톤		
사 토	-	-	60	40
사 양 토	-	-	36	23
식 양 토	120	144	-	-
식 토	124	158	-	-

□ 오염농경지 객토

- 휴·폐금속광산 인근의 중금속 오염농경지의 근본적인 개량을 위하여 객토를 30cm이상 실시(석회 2.5톤/ha 병행 시용 권장)

(4)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는 객토완료후 읍·면장이 발행하는 객토완료 확인서[별지제2호서식]를 발급받아 농협에 융자 신청
  - ※ 객토완료 확인서는 개별 또는 연명으로 확인 가능
-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간은 농특회계년도(1.1~12.31)에 따름
  - ※ '96.10.1-12.31까지의 사업비는 농업경영자금(1년상환)으로 융자대출

바.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군간 사업비의 전배조치를 할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읍·면장)는 객토완료 후 논, 밭을 갈기전에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쳐 객토완료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함

나. 보고, 기타

- 시·도지사(시장·군수)객토사업 완료실적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의가(1)항”의 대상자에 “5의가(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순수 농업생산 목적에 객토를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 개별 또는 공동(들녘별)으로 읍·면에 사업을 신청하되 들녘별(공동) 신청시에는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객토사업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마. 대상자선정

○ 선정기준

- “5<사업개요>의 가(1)항의 대상지에 ”(2)“항의 객토 종류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객토원 운반거리 등 객토여건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중금속오염농경지 객토

- 2순위 : 들녘별(공동) 객토

※ 토양개량제(석회, 규산)를 시용하는 종합농토개량지역을 우선하여 객토 실시

- 3순위 : 벼 재배농경지 객토

- 4순위 : 개별 객토

○ 선정절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객토방법 및 대상자를 확정

바. 기타사항

- 현 객토자금(농업경영자금)은 '97.1.31까지 집행할 수 있음.

[ 불 임 ]

**'97 시·도별 객토사업량 및 예산**

( 단위 : ha, 백만원 )

구 분	계		오염농경지		합 배 미		일 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7,617	25,953,000	169	1,005,600	4,010	8,822,000	13,438	16,125,400
서울	-	-	-	-	-	-	-	-
부산	14	83,300	14	83,300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13	22,600	-	-	7	15,400	6	7,200
대전	-	-	-	-	-	-	-	-
경기	932	1,522,650	67	398,650	86	189,200	779	934,800
강원	5,696	7,133,000	4	23,800	279	613,800	5,413	6,495,400
충북	866	1,314,000	9	53,600	232	510,400	625	750,000
충남	1,016	1,728,200	-	-	509	1,119,800	507	608,400
전북	2,365	3,770,000	-	-	932	2,050,400	1,433	1,719,600
전남	1,576	2,515,450	31	184,450	477	1,049,400	1,068	1,281,600
경북	4,632	6,989,900	22	130,900	1,327	2,919,400	3,283	3,939,600
경남	507	873,900	22	130,900	161	354,200	324	388,800
제주	-	-	-	-	-	-	-	-

[별지제1호서식]

### 객토사업신청서

성명(인)	대상지주소(지번)	객토종류	객토희망면적	희망객토량	사업비	비고
			ha	톤		

※ 연명 신청 가능함

[별지제2호서식]

### 객토완료확인서

성명	대상지주소(지번)	객토종류	객토면적	객토량	계약단가	용자대상금액
			ha	톤		

※ 연명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객토를 완료하였기 확인함.

1997. .

○ ○ 읍 · 면 장 (인)

4	감자원종망실재배 농가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생산과입니다

### 1. 목 적

- 감자원종장에서 직접 망실재배를 할 수 없는 원종 재배면적에 대하여 보급종 채종농가가 감자망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 2. 추진방향

- 가. 현재 감자원종장 직영포장에서 일부 노지재배하고 있는 원종생산방법을 연차적으로 전면적 망실재배로 전환
- 나. 예산, 인력 포장여건등을 감안 원종장 직영포장중 망실설치가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는 감자원종장이 연차적으로 망실재배 추진
- 다. 원종장에서 직접 망실재배할 수 없는 원종재배면적에 대하여는 보급종 채종농가가 망실을 설치하여 원종을 생산토록 하고, 생산된 원종을 차년도 보급종 생산용 종자로 사용케함

### 3. 근거법령 : 주요농작물 종자법 제3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2,832 <sup>a</sup>	2,022	90	90	90	540
사 업 비	계	백만원 4,904	2,286	114	276	300	1,928
	보 조	1,437	-	-	157	170	1,110
	읍 자	2,427	1,600	80	83	91	573
	지방비	-	-	-	-	-	-
	자부담	1,040	686	34	36	39	245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 씨감자 수요량 증대에 따라 보급종 확대 생산시 상위단계인 원종생산가능량이 포화상태에 있어 원종생산 일부를 농가에 위탁생산

##### ○ 지원대상자 : 대관령지역 감자원종생산 농가로서 차년도 보급종 채종농가

#####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용자지원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 ○ 지원시설의 종류

- 우량씨감자(원종) 생산을 위한 망실설치

####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a 300 (90동)	백만원 276	240	157	83	-	36
○ 농가 위탁 망실 설치	300 (90동)	119	83	-	83	-	36
○ 농가위탁 기존 백망사구입	-	157	157	157	-	-	-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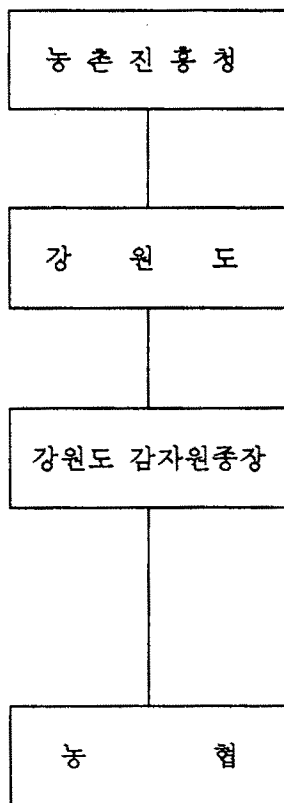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강원도 감자원총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생산과 (전화 : 0343-46-2433)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사업 총괄 지도감독
- 사업계획 수립 검토 및 조정
-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지도감독
-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농가선정 및 계약
- 세부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용자 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지원액 및 사업계획서 등 통보
- 사업자금 용자지원
- 용자금의 사후관리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강원도 감자원총장
  - 사후관리 책임자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비치 운영
  - 휴경기간중 고냉지 화훼, 채소류 재배 등에 시설활용 단, 익년도 감자원총망실 재배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강원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때 부터 3년간 매년도별로 지원사업 운용상황을 평가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나. 보 고

- 원종망실 설치농가 선정 및 용자배정 요청 보고[별지 제1호서식]
- 원종망실 설치 추진상황[별지 제2호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강원도 감자원총장 (전화 : 0374-35-5961~2)

나. 신청자격 : 백망사 지원은 대관령지역에서 감자원총망실을 설치하여 원종을 채종한 농가로 익년도 보급종 채종대상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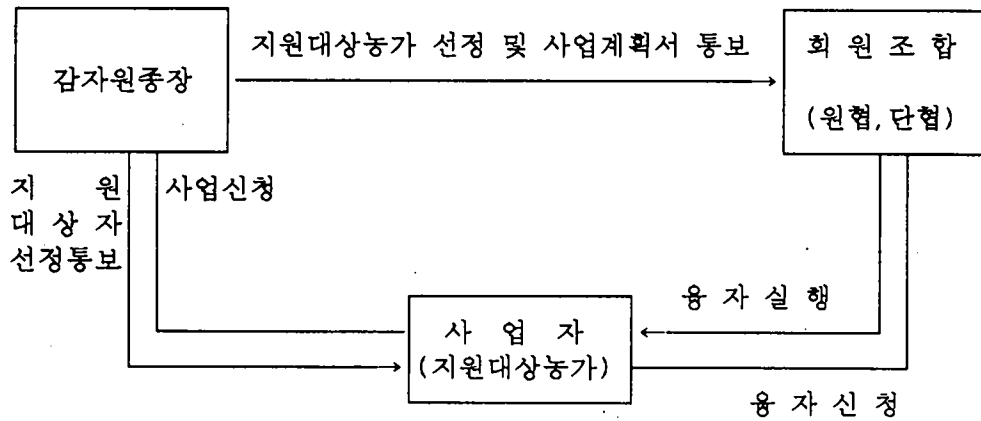
다. 신청절차 : 

신	청	→	경	유	→	접	수
보급종채종농가	종자공급소		강원도감자원총장				
→ <u>검 토 및 대 상 자 선 정</u>							
강원도 감자원총장이 종자공급소 및 채종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대상자 확정							

라. 구비서류 : 감자원총 망실설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대관령지역 보급종 채종농가중 희망농가로서 감자원종장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응하고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 신청자의 씨감자 채종능력
  - 익년도 보급종 채종계획, 기존망실설치현황 및 망실설치능력
  - 원종망실 재배의 집단화 고려지역
- 선정절차



[별지 제1호서식]

## 원종망실 농가선정보고 및 용자배정요청

구 분	단 지 명	농 가 수	면 적	동 수	비 고
		호	ha	동	- 100평형 동수로 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재

- 주 1) 망실 설치대상 포장약도 별첨  
 2) 구분란에는 농가설치분과 원종장 직영설치분으로 구분 기재  
 3) 농가별 명세서 별첨

○ 용자금 배정요청(배정요청)

구 분	계 획	실 적	용 자 금 배 정 요 청	
			금 회	누 계
	동	동		

[별지 제2호서식]

## 망실설치 추진상황 보고

구 분	단 지 명	망 실 설 치 상 황						용 자 상 황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농가수	면적	동수	농가수	면적	동수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합 계		호	ha	동							
농 가	소계										
	단 지 별										
원 종 장	소계										
	단 지 별										

- 농협의 용자확인서 첨부
- 완료 보고시는 농가별 명세서 별첨
- 기자재 구입상황등 기타사항은 별도 첨부 보고

[별지 제3호서식]

## 감자 원종망실설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규망실 설치신청			평 (동)	소재지		
소요사업비		천원	용자		사업자 부담	
기존망실 설치현황			평 (동)	소재지		
망실재배계획		평 (동)	신규망실 재배	평 (동)	기존망실 재배	평 (동)
익년도보급생산계획						a

상기 본인은 19 년도 원종씨감자 농가위탁 망실재배를 위한  
신규 망실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신청인 : (인)

(전화번호: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 농로, 용수이용시설, 밭경지정리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소득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가. 밭기반정비사업의 확대추진(계획목표 110천ha를 2007년에서 2004년으로 3년 앞당겨 추진)으로 조기에 밭작물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시설채소 등 밭작물 재배억제와 논에 재배하는 밭작물을 밭으로 유도하여 논잡식 예방
  - 이전 희망지역에 대하여는 최우선하여 사업시행
- 나. 사업시행규모, 지형, 경사도, 토양 등 개발조건이 양호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밭을 우선으로 개발하되, 농업진흥지역밖이라도 개발조건이 양호하고 수혜민이 희망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사업시행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거나 농지법 제3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억제
- 다. 사업구역 전체가 밭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부상 지목은 논이나 밭작물 재배단지는 포함개발할 수 있으며, 인접한 논에 대한 용수 공급은 가능. 단, 논 잡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지정리된 논에 재배하는 시설영농지역 및 사업시행후 밭으로 전환이 가능한 논은 제외
- 라. 논 경지정리, 농어촌마을정비, 시설농업(채소, 과수, 화훼, 특작생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종합개발 방식의 도입
- 마.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호응도가 높고,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 바. 정지, 수원공, 용 배수시설, 도로, 공공이용시설 부지조성 등의 공종을 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비, 주민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개발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 89조 (자금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ha, 백만원)

구분	계	'94-'95까지	'96	'97안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10,000	5,500	5,000	8,000	12,500	79,000
사업비	2,579,425	121,100	112,125	197,320	312,271	1,836,609
-보조	2,056,319	78,160	90,125	158,600	251,693	1,477,741
-지방비	523,106	42,940	22,000	38,720	60,578	358,868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사업 내용

##### (가) 도로

- 진입로 : 국도, 지방도등 기간도로에서 부터 사업지구까지의 도로를 말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
- 간선농로 : 진입로에서 분기되어 사업지구내 중앙을 통과하여 지선농로와 연결되는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말하며, 진입로와 연계하여 확·포장할 수 있음.
- 지선농로 : 간선농로에서 분기되어 농지와 직접연결되는 농로를 말하며, 우기에 통행이 곤란한 토질에는 자갈을 부설할 수 있음. 원예, 시설농업 지원사업으로 모노레일 등의 설치(급경사 과수원등) 계획이 있는 지구는 가능한 한 연계되도록 계획

##### (나) 수원공

- 기설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등)을 가능하면 활용하고, 수량 부족 또는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대형관정은 가능한 한 공당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공수를 적게하므로써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하고, 심층지하수 부존심도까지 측정하되 암반관정의 심도는 200m내외를 한도로 하며, 1일 채수량은 200톤/공 이상으로한다.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지역(산간, 해안 및 도서지역, 유역이 적은 지역등)은 도지사 책임하에 100톤/일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함.



- 관정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에 의거 암반관정개발시는 지하수부존량에 대한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등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상의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의뢰조사토록 함. 다만, 해당지역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시추조사공은 소구경으로 하되 개발(계획) 1공당 2배수로 필요심도까지 조사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재배 용수등은 수질이 중요하므로 ----수질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함.
- 수원공(관정)에 사용에 사용되는 우물자재는 반드시 KS 규격 자재(PE, PVC)를 사용토록 함.

#### (다) 용수로

- 용수로는 송수관로(送水管路 : 관정에서 저수조까지의 Pipe Line)와 용수관로(給水管路 : 저수조에서 분수공까지의 Pipe Line)로 구분하며 송수관로는 도복장 강관류를 원칙으로, 급수관로는 PE관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적절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하여 농민이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살수관개(Splinkler)나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등 수압이 필요한 관개를 지역농민이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수공에서 이에 필요한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

#### (라) 배수로 (排水路)

- 사업지구 전체의 지형이 표고나 경사도등으로는 배수상태가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는 경우 기준사업비 내에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는 경우 경미한 복토나 지하배수로 처리할 수 있음.
- 지구내 유입수를 안전하게 지구외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로는 조립 식개거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타설식개거로 계획하여야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4) 동의서 징구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동의서 징구는 법적 동의율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하고, 부재지주를 비롯한 참여자격자 모두에게 동의서 서식을 송부하는 등의 조치로 참여자격자가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ha,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8,000	197,320	158,600	38,720
사 업 비	8,000	193,600	154,880	38,720
기본조사비	(8,000)	3,720	3,72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심의관실 기반정비과(02-500-2645)
- 시.도 :
  - 직할시 : 지역경제국 농정과
  - 경기, 충남, 전북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 강원도 : 농정국 농산지원과
  - 충북.경북도 : 농정국 농지개량과
  - 전남.경남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
  - 제주도 : 농수산국 농정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 다. 대상지 선정

### (1) 일반 선정기준

- 발기반정비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조기에 발작물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시설채소등 발작물 재배억제와 논에 재배하는 발작물을 받으로 유도하여 논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이전희망지역에 대하여는 최우선하여 선정
- 발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아래 형태 및 규모별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서 시설채소 등을 원하는 지역과 상습 가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기타 소득사업등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시,도, 시,군의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선정
  - 농어촌정주권개발·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
  - 시설농업예정지역과 채소, 과수, 화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지역  
( 생산물의 규격상품 출하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우선선정 )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중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민의 사업희망도가 높은 지역
  - 경지의 집단화가 용이하고 경사, 토양, 토심등 개발조건 및 영농조건이 양호한지역
  - 국도, 지방도등 기존 포장도로와 거리가 가까운지역
- 아래와 같은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마을도로를 위주로 개발되는 지구
  - 지구 전체가 일 개인의 소유로 된 지구
  - 논에 발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영농지역, 발기반정비사업 시행후 받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변지역의 논
  - 주택단지,공단등 타목적으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
  - 개발제한구역 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사업시행 가능

### (2) 형태 및 규모별 기준

- 작목별 경사도 기준
  - 과수 36% (20° )이하
  - 특작, 화훼, 채소, 복합단지 : 27% (15° )이하
  - 밭 경지정리 : 12% (7° ) 이하

○ 작목별 최소개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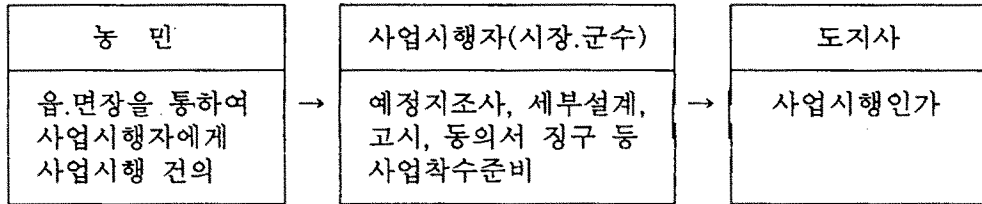
- 특작, 화훼단지 : 3 ha (1.5ha) 이상
- 채소단지 : 5 " (3ha) 이상
- 과수단지 : 10 " (5ha) "
- 복합단지 : 15 " (10ha) "
- 발경지정리지구 : 15 " (10ha) " ※ ( ) : 실 물리면적

(3)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100ha 이상
- 2순위 : 50 - 99ha
- 3순위 : 30 - 49ha
- 4순위 : 10- 29ha
- 5순위 : 3 - 9ha
- 6순위 : 3ha 미만

※ 시설채소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지역은 최우선지원

(4) 선정 절차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일정

업 무 내 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업 무 내 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 사업예정지보고	시.도지사	전년9.10	○ 지하수개발완료	농진공등	8. 31
○ 예산 가내시	장 관	전년10.15	○ 세부설계완료	"	9. 15
○ 사업량 및 예산내시	"	1. 10	○ 사업지구선정	장 관	9. 30
○ 기본조사지시	"	1. 15	○ 사업착수	시장.군수	10. 15
○ 기본조사완료	농진공	5. 31	○ 완공지구 및 계속	시.도지사	12. 31
○ 세부설계지시	장 관	6. 20	지구 추진상황보고	"	완공즉시
			○ 계속지구 완공보고		

## (2) 기본계획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농진공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각시도에 그 내용을 알림
- 기본조사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계획내용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감안하고 발기반정비사업이 초창기임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인 농진공이 시행토록하고 기본조사비는 농림부에서 직접보조
- 농진공은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시도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시도와 사업시행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는 도내 지구별 우선순위와 세부설계의 필요성, 농민호응도, 지방비부담능력, 타법 및 타사업과 관련성 등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 등을 표기하여 제출

## (3) 세부설계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출한 지구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조사설계토록 지시한 지구에 대하여 암반판정 등 수원공, 농로, 저수조, 송수관로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가 세부설계를 추진할 때 사업규모가 30ha이상 되는 지구와 발경지정리지구에 대하여는 향후 본사업이 정착될때까지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영농, 경제, 토양 등 종합적인 전문직종을 보유한 농진공 등 전문기관에 의뢰,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시도지사가 지하수개발에 대한 세부설계를 추진할 때는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 개발시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지하수업무 대행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건설업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 전문건설업체에 개발토록 함
-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사업 착수지시를 받은 지하수조사,개발 담당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시추공위치,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담당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내용을 시·군별로 취합하여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

- 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 담당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받는대로 즉시 세부설계를 착수

#### (4)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결과를 받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제 1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5) 공정계획

○발작물 재배시기가 연중계속되는 지역이 많고 시공시기와 일치되어 휴경보상문제가 야기되며 관정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배수로, 정지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이상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암반관정 등 용수원개발을 최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수립.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독원 및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6) 계획변경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 진입로 및 간선농로의 로폭을 확장하거나 총길이를 대폭 연장하는 등 기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관정수를 늘리는 경우
- 용.배수로의 총길이를 대폭 연장하는등 기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발경지정리를 추가하는 경우
- 농업시설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경우

(7) 용지매수 및 보상

- 발경지정리로 감보처리할 수 있는 지구는 용지매수 대상에서 제외
- 용지매수는 도로중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배전함부지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회사 및 주민부담 등 지구내 농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으로 하며
  - 주민협의불가 등으로 용지매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단가를 초과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매수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보상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8) 공사감독

- 공사감독은 시·군·자치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토목,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감리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
- 기타사항은 대구환경지재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9)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법 9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 등의 준공검사를 시행
-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일괄 보고

(10)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독 및 관리비 집행

- 세부설계 및 공사감독비와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세부설계, 공사감리,사업관리 요율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집행
- 기본조사비는 요율범위내에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사업비정산도 같은 절차를 밟아 정산



### (11) 사업비 집행

- 사업비집행은 동 지침 5.(2)에 의하여 집행하며, 사업시행중 추가소요되는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
- 기타사항은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지침을 준용

### (12) 환지업무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지침을 준용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완공된 관정의 개발공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시공전, 중 및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별지제7호서식)
- 시장·군수는 이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혜농가들에 의한 관리조직을 만들어 관정등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시설물의 점검정비는 1차적으로 수혜농민에 의한 관리조직에서 책임관리 하고, 자체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군수가 인력 및 장비와 예산을 지원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지도·관리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료를 자체부담토록 해야 함
-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수유입 방지 그라우팅, 폐공처리, 수위측정관, 적산유량계, 수질검사용 출수장치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사항은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지침을 준용

나. 보 고

보 고 사 항	서 식	보고기일	비 고
○ 예정지조사결과보고	1	완료즉시	(일괄보고)
○ 기본조사결과보고	2	“	
○ 세부설계,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	3	“	
○ 공정계획승인 결과보고	4	“	
○ 사업추진상황보고	5	익월 10일	매월말실적
○ 준공결과보고	6	준공즉시	

※ 수시보고: 사업추진에 있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여야 함.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농업인등은 해당 시.군에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해당시.도에 사업신청
- 해당시도에서는 농림부에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 발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보고

○○도

우선순위	지구명	위치			면적	소요사업비		단지구분	지역구분		필요사항					토지소유자	경사도	주민호용도	비고
		군	면	리		총사업비	ha당		진흥	비진흥	진입로	경작로	관정	용수로	배수로				
					ha				ha	ha	m	m	공	m	m	ha	명	%	

- ※ 1) 기설치된 시설은 필요시설란 상단에 ( )표시.  
 2) 주민호용도 : 양호(80%이상), 보통(67%이상-80%미만)으로 구분)  
 3) 비고란에는 시설채소, 과실, 화훼등 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등과 연계사업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밭으로 이동으로 표기

[ 별지 제2호 서식 ]

### 발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 결과 보고

○○도

우선순위	지구명	위치			면적	소요사업비		단지구분	필요사항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비고		
		군	면	리		총사업비	ha당		진흥	비진흥	진입로	단지내도로	관정				용수로	배수로
					ha				ha	ha	m	m	공	m	m	ha	명	

지방비부담력	병행가능사업				주 민 호 용 도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조사설계여부	비고
	사업명	관련기관	예산확보여부	관련기관과 협의여부 및 내용				

- ※ 작성요령  
 ○ 단지 구분 : 채소(토마토 등), 과수(사과 등) 등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발기반정비가 끝난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용도 : 양호(8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6%이하 동의)으로 기입  
 ○ 조사설계여부 : 세부설계 대상지구는 ○표, 세부설계 제외지구는 ×표로 표시  
 ○ 비고란에는 시설채소, 과실, 화훼등 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등과 연계사업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밭으로 이동으로 표기

[ 별지 제3호 서식 ]

**발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도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면 적	소 사업비		단 지구분	지역구 분		필 요 사 항						토 지소유자	비 고
		군	면	리		총 사업비	ha 당		진 흥	비진 흥	진 입로	경 작로	관 정	용 수로	배 수로	정 지		
					ha				ha	ha	m	m	공	m	m	ha	명	

※비고란에는 시설채소, 과실, 화훼등 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밭으로 이동으로 표기

[ 별지 제4호 서식 ]

**발기반정비사업 공정계획 보고**

○○년도 사업계획

지구명	위 치			면적	주요 공사량	지역구 분				필 요 사 항				비 고
	군	면	리			총액	'95까지	'96계획	'97이후	1/4	2/4	3/4	4/4	
				ha	ha	ha	ha	m	m	공	m	m	ha	

※ 분기계획란에는 예산집행계획 및 주요공종 물량을 기입.

[ 별지 제5호 서식 ]

**발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도

지구명	위 치			면 적	사업비	사 업 공 종					진 도(%)			비 고	
	군	면	리			진 입로	경 작로	관 정	용 수로	배 수로	정 지	평 균	관 정		기 타
				ha	백만원		ha	ha	m	m	공	m	m	ha	

[ 별지 제6호 서식 ]

**발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도

지구명	위 치			면 적	지역구 분		재 배 작 목				사 업 비		사 업 내 용						
	시·군	읍·면	동·리		진 흥	비진 흥	채 소	화 훼	과 수	특 작	계	국 고	지방비	관 정	진 입로	경 작로	송 급수관	배 수로	정 지
				ha			ha	ha	ha	ha	ha	ha	ha	m	m	공	m	m	ha

※ 면적 = 지역구분면적



( 후 면 )

## 관정시설재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8번공	6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sup>3</sup> /일						
양 수 량	m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 연 수위	m						
안 정 수위	m						
수중모타펌프	HP						
“	m						
제 품 명							
설 치 심 도	m						
양 수 장	m <sup>3</sup>						
저 수 조	m <sup>3</sup>						
송 수 관	m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논)의 주요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 2.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 대형농기계 영농 및 농로 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을 들녘단위로 주요농로부터 우선추진
- 생산성 향상등 사업효과가 높은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 주요농로 우선 추진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Km)	22,000	200	1,308	2,000	2,000	18,492
사업비(백만원)	2,865,000	18,700	126,180	202,800	261,000	2,256,320
보 조	2,294,100	15,060	100,464	162,400	209,000	1,807,176
지 방 비	570,900	3,640	25,116	40,400	52,000	449,144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지원대상자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또는 농조장)
- 지원단가  
- '97년 : 101,000천원/Km
- 지원기준 : 국 고 80%, 지방비 20%
- 사업내용
  - 포 장 : 비포장 농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로 포장
  - 확 장 : 농로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장하여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
  - 용배수로 개거화 : 농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농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 업 량 (Km)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계		202,800	162,400	40,400
○ 사업비	2,000	202,000	161,600	40,400
○ 기본조사비	2,000	800	8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조구역 : 당해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
- 시군구역 : 당해 시장·군수가 시행

### 나.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기반정비과(02-503-7276-7)
- 시 도 : 인천·충북 농정과, 경기·충남·전북 기반조성과, 강원 농산지원과, 전남·경남 농업기반과, 경북 농지개량과
- 시 군 : 해당시군 건설과
- 농 조 : 개발과

### 다. 사업대상지 선정

#### ○ 선정기준

-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 시행 완료지구 우선
- 부설된 용배수호가 이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 발기반정비, 정주권개발, 농촌소득사업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도시,공단 계획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중횡단구조물(교량,암거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단, 지방비 등으로 확보되어 중횡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특히 사업시행자가 농지개량조합장일 경우 지방비 확보 및 여부등을타사업으로 시행 여부등을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협의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500ha이상)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 대구환경지정리정리사업 완료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지구 또는 중횡단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없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 받기반정비 등 타 관련사업과 병행지구
- 주변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 선정절차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 세부설계 ⇒ 사업비 지원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라. 사업시행

(1) 기본조사

- 사업시행예정자는 기본조사 대상지를 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
- 기본조사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 기본조사 세부지침은 별도로 시달
- 농어촌진흥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본조사

## (2) 세부설계

- 세부설계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설계 및 시공요령에 의하되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내무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 기준(농도편) 등을 적용
- 세부설계시 인근 농지의 농로 및 타도로와의 연결부분을 포함하여 도로의 연결성, 편리성을 고려
-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부설계 담당

## (3) 사업시행계획

-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들 대상으로 하며, 년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들녘별로 실시하되 지구별 완공위주로 시행계획 수립
  - 상위도로, 타관련사업 등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시 기본조사내용을 파악하여 세부설계에 반영
  - 농로의 특성을 고려
- 사업시행자는 농로에 부설된 흙수로의 개보수계획이 있을 때에는 병행시행
- 포장대상노선은 중횡단구조물중 노후,파손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은 별도예산을 확보 병행시행하여 관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 사업시행계획은 세부설계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
  - 사업시행자가 농조장일 경우에는 당해시장,군수와 사업계획을 미리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

## (4) 사업비 집행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공사감리,공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제97조(측량 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의 대상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업관리 위탁요율범위 내에서 실비로 사용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등에 사용한 실비용은 사업비와 함께 정산

-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하게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를 직접담당하지 못하고 다른기관에 위탁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부와 사전협의
  -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의 대행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담당할 경우의 실비용 지급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대행비는 사업시행자가 지방비로 추가부담

#### (5)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확보여부 검토
  - 소요단가가 예산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사업비 추가확보여부를 검토
  - 타사업과 병행일 경우 병행사업비 확보 여부 검토

#### (6) 사업시행요령

- 지구별 완공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되, 대중규모 평야지구는 2-3년차로 사업시행하여 완료
- 매년 지원되는 Km당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배정된 예산상의 사업물량을 시행
  - 포장폭은 지원되는 예산단가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3.0m 이상)하여 시행하되, 예산단가를 초과하여 포장폭 확장에 따른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
- 사업시행자는 본사업과 관련한 시설부지 등의 용지매수보상계획은 없는것을 원칙으로함
  - 단, 기본조사시 부터 사업시행자가 시설부지의 용지매수보상비를 별도로 자체부담으로 계획하여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

## (7) 공정계획

- 가급적 조기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조정 시행

## (8) 계획변경

-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현지역건변동으로 인한 사업시행 대상지구내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노선간의 시행변경. 단, 사업시행지구의 변경은 우리부와 협의
  - 현지역건변동으로 인한 포장공법의 변경
  - 사업계획변경(사업량 축소는 제외)으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변경시행후 시도지사에 보고
- 사업계획변경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등으로 확보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우리부에 보고

## (9) 기술지원 및 공사감독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요청
- 공사감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담당함을 원칙
- 공사감독요령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계획설계 및 시공요령을 참고
- 공사감독자는 포장시공시 현장에 주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공사감독자는 사업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등의 전경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하여 시행전후 개발상황이 바로 비교될 수 있도록 비치

(10) 준공검사, 사업비검정 및 결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한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사업비검정 및 결산은 별도로달하는 지침에 의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도로포장파손 등으로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재원으로 확보
- 사업시행자는 덤프트럭 등 중차량 통행으로 포장균열 등 파손이 우려될 경우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

나. 보고사항

서식번호	행 정 사 항	보고기일
1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기본조사대상지 보고	9월말
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행대상지 선정보고	"
3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세부설계 결과보고	12월말
4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산배정 결과보고	1월말
5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2월말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입찰상황 보고	익월10일까지
7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11월말
8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준공결과 보고	12월말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농업인등은 해당 시·군 및 농조에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도에 사업신청
- 해당 시·도에서는 농림부에 사업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보고

(단위:ha, Km)

구분	우선 순위	들녘 명	지구 명	위 치		면적	농로 길이	포장대상조사계획			사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 까지완료	○ 대상		
계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하되 농조구역은 해당시군에 포함
- 구 분 : 우선순위에 따라 대중규모, 대구획경지정리, 연계 및 병행, 시험, 기타지구로 구분하여 각항목별 소계로 작성
- 우선순위 : 구분의 각항목별로 우선순위 부여(동일조건일때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량 조정계획임)
- 들 녘 명 :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들녘명으로 계속해서 사용가능한 들녘명
- 지 구 명 : 경지정리사업시행시 지구명
- 면 적 : 지구별로 작성하되 지구별 합계면적을 들녘면적으로 함
- 농로길이 : 해당지구 및 들녘의 간지선, 지거를 합한 총농로길이
- 기본조사대상 : 농로길이중 주요간지선으로 포장대상 길이(평균 1ha당 30m 정도)
- 비 고 : 대구획경지정리와 연계 및 병행지구는 해당사업 지구명



[별지 제2호 서식]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행대상지 선정보고

구 분	들녘명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기본조사물량
			시군	읍면			
계							

(단위: Km, 백만원)

총계획		'96까지		'97계획		'98이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하되 농조구역은 해당시군에 포함
- 구 분 : 대중규모, 대구획경지정리, 병행 및 연계, 시험, 기타로 구분 작성
- 들녘명, 지구명, 면적 : 기본조사보고서의 들녘명, 지구명, 면적과 일치
- 기본조사물량 : 기본조사보고서의 포장대상물량과 일치
- 비 고 : 대구획경지정리, 연계 및 병행 지구명 또는 사업명





[별지 제6호 서식]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실제가격(A)	예정가격(B)	낙찰가격(C)	낙찰율(%)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일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작성요령>

- 지구별로 작성(농조장일 경우 해당시군에 포함)  
- 단, 노선별로 분리하여 입찰한 지구는 노선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Km,천원)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 년계획		○ 월계획		○ 월실적		진도(%)		부진사유	비고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C/B	C/A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농조장일 경우 해당시군에 포함)
- 진도는 사업량 기준
- 부진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7	일반경지정리(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입니다.

### 1. 목 적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

### 2. 추진방향

- 2004년까지 논면적 1,206천ha의 75%인 902천ha추진목표
- '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대상 논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 '97년 봄까지 미정리된 농업진흥지역 59천ha, 2004까지 농업진흥지역밖 105천ha 추진
- 소요사업비, 주민호응도, 경사도 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추진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천ha)	902	90	24(25)	25(29)	29(30)	135
진흥지역	735	90	24(25)	25(29)	29(30)	30
진흥지역밖	167	-	-	-	-	105
사업비	9,344,689	1,706,628	644,563	657,040	782,875	3,819,406
보조	7,069,750	1,267,430	487,356	528,964	630,746	3,025,115
지방비	2,003,866	415,752	157,207	128,076	152,129	794,291
자부담	271,073	23,446	-	-	-	-

※ ( )는 가을착수 사업량임.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지원대상자 :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시장, 군수 또는 농조장)
- 지원단가
  - '96가을착수('97봄마무리) : 22,470천원/ha(상한액 24,700)
  - '97가을착수('98봄마무리) : 23,590천원/ha(상한액 25,950)
- 지원기준
  - 국 고 : 예산단가의 10%상한액 범위내에서 80%정율지원
  - 지방비 : 국고이외의 소요사업비
- 사업내용
  -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를 규격화 및 규모화
  - 월담급배수 체계를 용배수로 급배수체제로 정비
  - 농기계 출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정비
  - 토층개량 및 객복토로 작토심 확보
  - 환지를 통한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규모화 촉진

####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 업 량 (천ha)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계		657,040	528,964	128,076
○ 사업비		640,380	512,304	128,076
- 봄마무리	25	420,775	336,620	84,155
- 가을착수	29	219,605	175,684	43,921
○ 환지비	25	8,200	8,200	
○ 조사비	20	8,460	8,46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조구역 : 당해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
  - 시군구역 : 당해 시장·군수가 시행
  - 병합구역 : 큰면적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농조장이 시행
-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는 우리부와 사전협의

### 나.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기반정비과(02-503-7276-7)
- 시 도 : 인천 농정과, 경기·충남·전북 기반조성과, 강원 농산지원과  
충북·경북 농지개량과, 전남·경남 농업기반과,
- 시 군 : 해당시군 건설과
- 농 조 : 개발과

### 다. 사업대상지 선정

#### ○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대상 는 우선 선정
  - 주민호응도가 높고 농업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농업용수가 개발중이거나 영농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10ha이상으로서 경사도가 1/50미만으로 완만한 지구  
단, 쌀자급확충기반을 위하여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이상으로서 경사도가 1/15미만으로 완만한 지구와 농업진흥지역밖이라도 사업 시행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계속해서 영농이 가능한 지구도 선정
  - 예산단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국고지원액 이외의 소요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는 지구
- 타법, 타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 농업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타사업과 병행추진 가능한 지구

#### ○ 우선순위

- 사업비단가 저렴한 지구



-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타사업과 병행지구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 선정절차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 세부설계 ⇒ 사업비확보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선정

라. 사업시행

(1)기본조사

- 기정51350-354('95.10.13)호로 시달한 기본조사요령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수립
  - 50ha이하지구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가 필요한지구는 사유를 첨부하여 별도 보고[기정51351-161('95.4.30)호 참조]

(2)세부설계

- 별도시달하는 세부설계지침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50ha미만지구는 기정51351-161('95.4.30)호로 시달한 시행지침에 의하여 세부설계

(3) 공정계획

- 가을착수사업은 초기착공하여 당해년도말까지 전체계획 공정의 40%이상 달성하고, 봄마무리사업은 직파 및 이양적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기 완료
  - 가을착수예정지는 최대한 수확을 앞당겨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대비
  - 못자리는 용수의 낭비 및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단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에 농민들로 하여금 직파재배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등을 받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농민들이 직파재배를 원하는 지역은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정밀 시공을 위하여 레이저빔 장착장비 활용과 물정지를 조기에 완료토록 공사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직파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완료(예, 4월중 직파가능하도록 공사추진)

(4) 계획변경 및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다.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

○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업무의 위탁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개선방안에 의하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

구 분		시 행 자	
조사설계	기본조사	100ha미만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시행
		100ha이상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세부설계	농조구역	(‘97)
		-150ha미만 -150ha이상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시행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공사감독		사업시행자책임하에 시행	

-다만, 농조구역의 세부설계는 년차별 개방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되 '98년부터는 완전개방

-대중규모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과 병행시행하고자 하는 지구는 병행사업의 조사설계 실시하고, 공사감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의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50ha미만 지구는 기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설계를 실시할 수 있음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의 추진요령 및 유의사항, 공사감독업무의 세부추진지침 등은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추진시 별도 시달

- 조사설계는 농지개량사업설계기준(경지정리편) 및 대구획(논)경지정리설계요령(조성51306:’93.2.13)등에 의거 추진하고, 토양조사시 현장조사, 실내분석시험, 보고서확인요령 등은 경지정리사업 토양조사철저(조성51306-66:’93.2.19)토록 지시한 공문에 의함

#### (6) 환지업무

-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침 환지업무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7)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지원 및 집행은 예산지원기준에 의하되, 노임.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되는 사업비와 면적증가없이 사업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
  - 지구별 집행단가가 예산단가 이내일 경우에는 집행단가의 80%해당액을 국고에서 지원
- 관리비는 사업시행자(시도지사 포함)가 사업추진과 관련한 현지확인.지도 등에 소요되는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소정요율과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로 집행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

#### (8)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별도로 시달하는 사업비 검정 및 결산요령에 의한다.

#### (9) 사업비 절감

- 기본조사단계에서 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게 사업수준을 달리하여 시행되도록 내실있는 조사설계, 공사감독으로 사업비 절감
- 불법하도급 방지와 명예감독제를 도입하여 부실공사 방지
-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10) 동의서 징구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동의서징구는 법적 동의율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재지주를 비롯한 참여자격자에게 동의서 서식을 송부하는 등 조치로 참여자격자가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11) 기 타

- 동요령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사업시행자,공사감리자)는 부실공사이나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
- 사업시행자는 사업장 입구에 공사개요 등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내용 홍보, 감리자, 시공자의 책임성 있는 공사시공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

나. 보고사항

※ 보고서식은 대구환경지정리사업 보고서식과 동일함

서식번호	보 고 사 항	보고기일	비 고
1	○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3 말	
2	○ 경지정리 조사설계 및 기설계지구 보완 결과보고	6 말	
3	○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구 선정보고	8 말	
4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결과보고	승인후 즉시	
5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보고	입찰후 즉시	
6	○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월보)	익월 5일	
7	○ 환지업무 납품실적 보고	가환지 5.31 본환지 12.10	
8	○ 확정측량 계약현황 보고	7. 10	
9	○ 확정측량 결과보고	10. 10	
10	○ 환지청산금정수 및 교부현황보고	1. 15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농업인등은 해당 시.군 및 농조에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해당시도에 사업신청
- 해당시도에서는 농림부에 사업신청
  - 예산을 신청할시는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소요액과 면적을 구분하여 신청

8	배수개선(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입니다.

1. 목 적

- 매년 홍수시 수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 수렁논 또는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작업환경 및 작물재배 토양환경을 개선

2. 추진방향

- 농어촌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계별로 홍수조절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이 설치되고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을 우선 개발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71	12	3	10	5	41
사업비계	1,627,411	247,000	106,000	154,411	160,000	960,000
- 보조	1,627,411	247,000	106,000	154,411	160,000	960,000
- 지방비	-	-	-	-	-	-
- 자부담	-	-	-	-	-	-

\* 주) 42조원 구조개선사업 위주로 작성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표배수개선 :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하여 홍수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 (2) 지하배수개선 : 수렁논 또는 저습답에 지하배수 암거나 흡수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낮추어 작물의 생육에 알맞게 토양수분을 조절
- (3)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내의 예상되는 수해상습 농경지
  -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함
- (4) 지원조건 : 국고 100%(농림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에 한함)

#### 나. '97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타		
계		154,411	154,411	154,411	-	-	-
사업비 기본조사비	102지구	153,611 800	153,611 800	153,611 800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02-504-90-40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기반조성계)
- 농지개량조합 : 당해지역 농지개량조합 관리과(개발과, 사업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구청장, 농지개량조합장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도지사의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공사계약, 착공 및 완공의 순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1]과 같음

## <사업계획수립·시행>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1)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의 농촌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당기간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개발할 수 있음.
- 수해면적이 50 ha 미만인 경우는 가능한 시·도에서 지방비로 부담하거나 자부담으로 시행함. 다만, 극심한 수해피해 지역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 가능함.

#### (2) 우선순위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지역
- 수계별로 홍수조절댐 또는 저수지, 하구둑이 설치되고 하천제방 등 방제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

###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농지개발조합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수계의 하천상태와 정비계획, 농경지의 수해상황(과거 20년간) 등을 기술함.

### 다. 예정지 조사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수해상습지 해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2)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면적과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등 수계의 홍수대책을 조사하고, 수해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예정지조사서에 기술하여야 함.



- (3)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거나 경지정리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기본조사를 신청함.
- (4) 수혜면적이 5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 라.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수립

- (1)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림부장관이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기본 조사자"라 한다)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 (2) 기본조사자가 실시하는 기본조사는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역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천개수, 경지정리, 수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을 함께 1개지구로 구성하여 조사 할 수 있음.
- (3) 기본조사자는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 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4) 기본조사자는 현지 하천관리기관 등 행정기관과 농지개량조합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5) 경지정리,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6) 기본조사자는 현지의 여건이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서와 상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

(7)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천의 상태와 하천관리청의 하천 정비계획

나)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강우의 시간별 유출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

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하천개수정비대책

(8) 기본조사자가 기본계획서(안)를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수립 확정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9)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10)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1) 농림부장관은 600ha를 초과하는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세부설계를 실시 하도록 함.

다만, 600ha이하의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책임으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2)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측량 설계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3) 세부설계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실시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 등이 불가피할때는 농림부장관,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4) 세부설계에는 공사가 완공된 후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평년빈도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 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6) 시·도지사가 세부설계 성과품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함.  
이때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부설계 성과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실시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함.
- (7)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600ha를 초과하는 지구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예산형편에 따라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다만, 600ha 이하 지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개요와 세부설계비 산출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장관이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준공 후 시설의 인수·관리에정자를 사전에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시행인가보고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 변경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3) 지시조건의 보완은 조기에 이행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 (4)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 FAX(02-507-3964)로 상황 보고하여야 함.

## 사. 공정 계획

- (1)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의 공사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시 기간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예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월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예산변경 또는 계획보완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 시행계획의 변경

- (1)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보고토록하며 (단가변경은 가급적 계획변경에 우선하여 별도 처리토록 함.), 물량변경에 의한 계획변경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배수장, 배수갑문 규모·구조 변경과 주요 배수로 연장, 제수문·취입보 등 유수장애 시설물의 신설 및 위치 변경
- (2)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 평면도 (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작성요령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토록 할 것.)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 제4-12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 (3)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고 결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자.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차.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카. 사업비 지원

### (1) 예산의 지원

- 가)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나)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다)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 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 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2) 자금의 운용관리

- 가)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 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함.

## 타. 기타사항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되는 미정비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개수사업(직할·지방·준용하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연계성을 검토함.

파.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3)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규정』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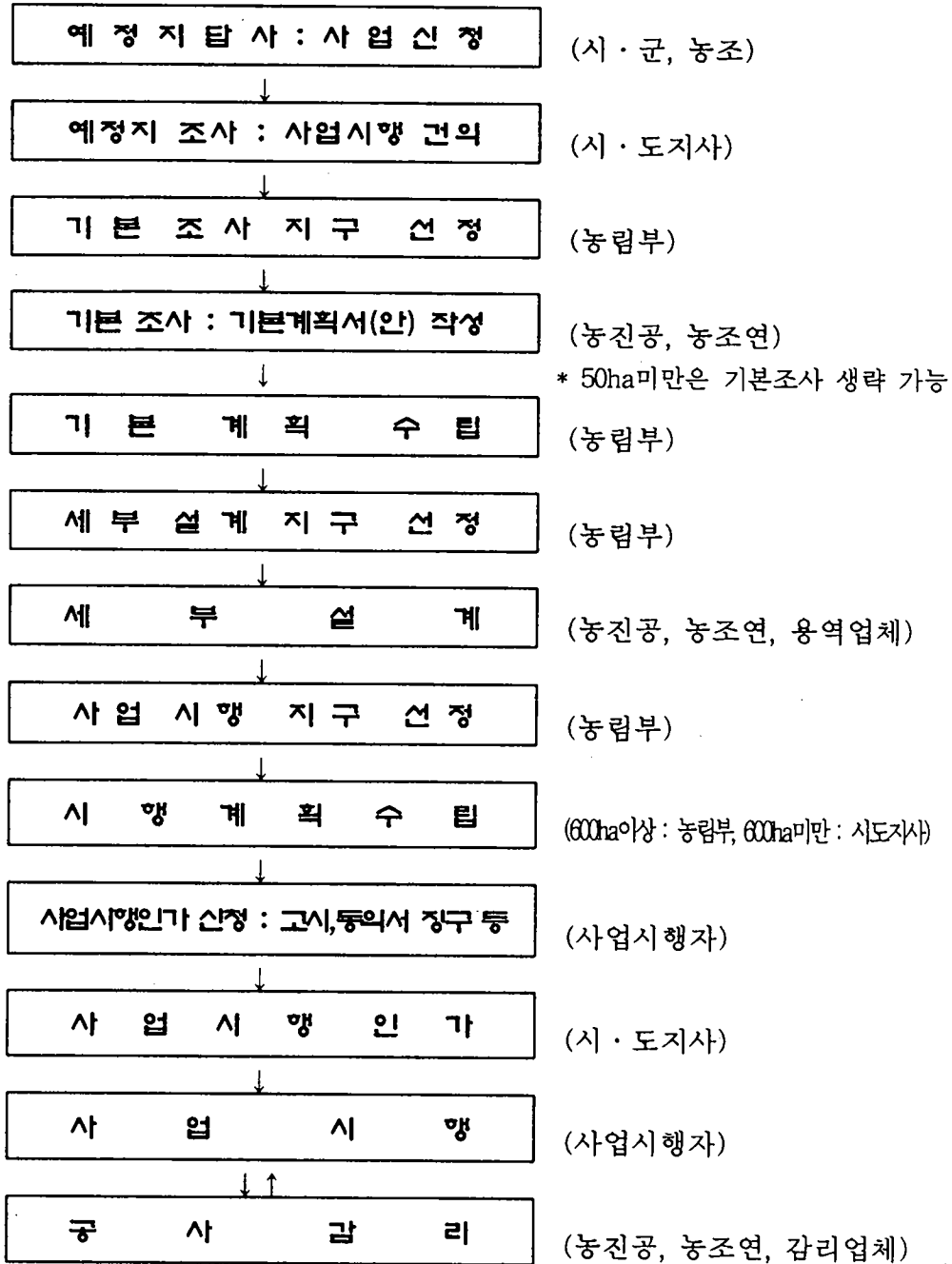
나. 보고 및 기타

-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시도 총괄표 포함)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3) 준공처리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4)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5) 경지정리사업 병행 시행  
사업시행자가 경지정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경지정리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배수개선사업과 연계사항(구역, 수로체계 변경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별표 1 ]

## 배수개선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호 서식]

## 배수개선사업공정계획표

확인자 :  
 사업시행자 :  
 시공업자 :  
 작성자 :

위치 : 도    군    면  
 사업시행주 :           , 지구명 :           (내지구명 :           ), 면적    ha,  
 ha당중수량 :           M/T, 당초승인 :            착공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 승인 액	년 까지 전사 업비	년 이후 전사 업비	년도 예산 액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 계																					
공 사 비																					
순공 사비	소 계																				
	배수장 평야부 - 배수로 - 송수로 - 배수문 · ·																				
-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별지 제2호 서식]

##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구분	면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전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행액	진도(%)		착공 이래 누계 실형	누계 진도 (%)	부진사유
	시·군	읍·면									계획	실적			
계					ha					계					

- 주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3)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4)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 별지 제3-1호 서식 ]

##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 1. 사업지구현황

○ 지구명 :

○ 위치 :

○ 면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및 규모

- 배수장 :        m x        m x        대 (Q =        m<sup>3</sup>/sec), 유역면적        ha  
              m x        m x        대 (Q =        m<sup>3</sup>/sec), 유역면적        ha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 B=        , h=        , H=        )

- 승수로 :        m (최대단면 : b=        , B=        , h=        , H=        )

- 배수문 :        m x        m x        려, SILL        m, 유역면적        ha,  
              m x        m x        려, SILL        m, 유역면적        ha

○ 사업시행인가 년월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사업효과

- 증수량 :        M/T,        - I.R.R :               - B/C :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수로조직표를 첨부할 것.

[ 별지 제3-2호 서식 ]

2. 연도별 검정내역

가.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인가액	준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나.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합 계									
공 사 비 -순공사비 -자 재 대 용지매수 및 보 상 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기타 -예 비 비									

3. 준공처리 의견

[ 별지 제4-1호 서식 ]

## OO 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결과보고)

### 1. 사업계획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군수 (농지개량조합장)
- 주요시설 : 배수문 개소, 배수로 km, 배수문 개소, 복토 ha
- 공사기간 : 19 . . -

### 2. 공사 주요보완 내용

- 단가인상등 : (A) 백만원
  - 단가인상 : 백만원( %), 단가개정 : 백만원, 낙찰차액 : 백만원
- 물량 변경 : (B) 백만원  
(작성예)
  - 배수로 호안 토공(B x H x L m) → 콘크리트(B x H x L m)  
(사유 : ) : 백만원
  - 배수로 로션 연장 ( km → km)  
(사유 : ) : 백만원
  - 배수문(로) 확장 ( m x m, 른 → m x m, 변)  
(사유 : ) : 백만원
  - 특재 비계, 둑바리 → 강재  
(사유 : ) : 백만원
  - (사유 : )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증 감 내 역		
	기승인	변 경				계	단 가 인상등	물량변경
합 계								
공 사 비							(A)	(B)
- 순공사비								
· 배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								
기 타								

[ 별지 제4-2호 서식 ]

심 사 서				
1. 지구명 : 2. 위 치 :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배수장 : 개소, 배수문 : mx mx 런, 배수로 : km, 송수로 : km 5. 면적 : ○ 구역면적 : ha ○ 수혜면적 : ha 6.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고
7. 공사개요				
총계획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고
8.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별지 제4-3호 서식 ]

9.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 및 심사의견
< 주의사항 > 승배수로 변경시는 계획변경 전 후의 수로조직표와 표준단면도를 첨부 또는 제시		

[ 별지 제4-4호 서식 ]

10. 지시조건  11. 심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 별지 제4-5호 서식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입

(단위 : 천원)

과목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중(Δ)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국 고							
지 방 비							

○ 지출

(단위 : 천원)

과목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중(Δ)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배수장							
· 평야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별지 제4-6호 서식]

연도별 공사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비고
공사명	공종별						

-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4-7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중(△)감		년 도 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년까지 정산액		년계획		년이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8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 승인 액	금회 승인 액	정산내역			보완전 잔공사 비	보완후증감액				비고
공사 명	공종 별			년 까 지	년	계		단가 인상	단가 개정	수량 이동	계	
합계												

-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할 것
-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9호 서식]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단 가			물량	공사비	단가개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 감			
합 계								

- ※ 단가개정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10호 서식]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물 량			물량	공사비	단가재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 감			
합 계								

- ※ 1. 공사무량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 2. 본 조서는 자재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3. 공사무량명에는 변동이 있는 것에 한한다.

[별지 제4-11호 서식]

설 계 자 의 견			
전 설계자의견		금회설계자의견	
전 설계자 : 소속		성명	인
금회설계자 : 소속		성명	인

※ 주요계획의 변경사항인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4-12호 서식]

농림부장관지시사항이행검토내역			
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검토의견		
확인자 : 소속		성명	인
검토자 : 소속		성명	인

9 -1	수리시설개보수 (공공) (농조수리시설개보수)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입니다.

### 1. 목 적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노후되었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개보수·정비하여 용수를 절약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과 시설관리를 개선함에 있음.

### 2. 추진방향

-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 주요 기간수리시설(저수지, 양·배수장, 주요 용·배수로)은 개량 보수
- 일반시설(보조 수원공, 일반 용·배수로)은 기능회복 위주로 부분 개량
- 작동하기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시설은 운용 체계를 개선

###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준공지구수,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8,508	286	90	150	150	7,832
사업비계	1,917,158	168,586	88,789	165,000	300,000	1,194,783
- 보조	1,917,158	168,586	88,789	165,000	300,000	1,194,783
- 지방비등	-	-	-	-	-	-

\* 주) 42조원 구조개선대책 기준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추진배경

- 해방이전부터 '70년대 까지 축조한 시설이 노후되고, 설치당시 경제 사정으로 시설을 충분히 보강하지 못하여 기능이 떨어지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이 많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개보수하여 가뭄과 수해 대책을 강구

##### (2) 사업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의 개보수
- 흙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화
- 물 관리시설 현대화

##### (3) 지원대상 :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수리시설

##### (4)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타		
수리시설 개 보 수	150	165,000	165,000	165,0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농지개량조합 : 당해 지역 농지개량조합 관리과, 개발과, 사업과

#### 다. 사업시행자 : 농지개량조합장

## 라. 사업 추진절차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 인가 → 공사계약 → 착공 → 준공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 [별표1]과 같음.

## <사업계획수립·시행>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선정기준
  - 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 내를 급수하는 수리시설 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당기간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설도 대상이 됨.
- 우선순위
  -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저수지
  - 재해에 취약한 요소가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 시설의 운용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

###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 건의

- 농지개량조합장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당해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3종시설은 시급히 개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한하여 1종 및 2종 시설의 개보수계획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농지개량조합장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면적과 안전점검결과 보고서나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 시·도지사는 농지개량조합장이 사업시행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재해위험 해소, 수자원 확보, 시설의 운용관리체계의 획기적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선정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2)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정부담,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면적 등을 포함하여야 함.
- (3) 시·도지사가 예정지조사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가능한 기술용역으로 실시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함.
  - 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종시설을 개수하는 경우
  - 나) 저수지 제당을 덧쌓기 하면서 물넘이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다) 저수지 물넘이 형식을 측구식에서 게이트, 사이폰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라) 홍수배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배수장을 확장하거나 준용하천 이상의 하천또는 감조구역에 설치된 농림부 소관의 배수갑문을 개수하는 경우
  - 마) 수원공이 500ha 이상을 관개하는 지역의 용수로와 200ha 이상을 배수하는 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경우
- (4) 예정지 조사시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 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용·배수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5) 시·도지사가 예정지조사에 따라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수해대책을 위하여 유역 또는 당해 시설의 체계나 계통별로 조사하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저수지

- 물 수지계산이 10년빈도에 적합한지와 단위저수량이 현재 기준에 맞는 지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사면 안전도 부족, 누수 등), 여수토 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지역 수자원의 수급에 대한 전망과 수질의 변화 전망

나) 양수장

- 하천의 수량감소와 수질의 악화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대책
- 홍수시 침수 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다) 용·배수로

- 수자원 이용·배분 체계의 개선 방안
- 용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한 후 시점부터 개보수 필요구간을 표시하고, 주요수로에 대하여 상류부터 하류의 순서로 시행하는 계획(안) 다만, 배수로는 하류부터 상류의 순으로 계획
- 토공수로를 최소단면의 구조물로 하고, 단면축소에 따라 생기는 부지는 유지관리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안)
- 용수로개보수사업 시행구간에 오폐수가 유입되거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우회수로 설치 등 오염방지대책을 협의한 내용과 그 결과

라)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 사업을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1)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함. 다만, 재해위험으로 시급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세부설계지구로 선정함.



- (2) 시·도지사는 세부설계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함.
- (3) 세부설계실시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부설계를 하는 경우는 일반 단순공사이거나, 공종의 필요에 따라 수문, 수리, 기계, 전기, 토질, 토목분야의 기술직원을 보유한 농지개량조합에 한함.
- (4) 세부설계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되, 조사측량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실시자는 수자원 이용·배분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용수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지표를 작성하고, 구조물로 개수계획하는 주요수로는 사업비 재정부담, 시설 내구년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사전 공급배분), 자연형태유지로 환경친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최대수위까지만 구조물로 하고, 그 이상은 토공여유고로 하며, 암거시설은 충분히 여유고가 있도록 함. 다만,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동이 용이한 간단한 구조로 함.
- (6) 세부설계실시자는 공사가 완공된 후 저수지, 양·배수장 등의 운용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7)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매우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세부설계실시자에 대하여 용역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8)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서를 납품받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 설계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농림부장관의 예산지원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여 고시 및 동의서징구 등 사업시행인가절차를 이행토록 함.

#### 마.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의 사업추진 기본방침과 예산지원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규사업지구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 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 FAX(02-507-3964)로 상황 보고하여야 함.

#### 바. 공정계획

- (1) 시·도지사는 '97. 1월 현재 시행중인 개보수사업 지구수('97준공계획지구는 제외)의 절반(50%)이상에 대하여는 준공예정년도를 미리 정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도별로 지원되는 개보수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98년도 이후 투자계획은 '97년도 시·도별 총지원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가능한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세부설계가 된 후 3년이 경과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배수갑문, 제수문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착공하기 전에 현지여건을 세밀히 재 검토 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 (5)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예산에 의한 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 사. 시행계획의 변경

- (1)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규정으로 정하는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저수지의 제당높이, 만수위, 물넘이형식 등의 변경, 양·배수장의 규모확장, 용·배수로 조직체계(수로연장 포함) 변경, 오염수 유입시설, 용·배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제수문, 취입보 등의 설치.
- (2)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 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함)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5-1, 2, 3, 4, 5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 (3)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결과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 자.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차. 사업비 지원

### (1) 예산의 지원

- 가) 농지개량조합의 수혜면적 규모,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 사업추진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시·도지사는 농조단위로 개보수사업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라) 정밀안전진단으로 개보수하는 저수지는 조기완공토록 집중 지원함.
- 마) 저수지 및 양·배수장 시설은 재해 대비 및 공정을 감안 지원함.
- 바) 시·도지사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 (2) 자금의 운용관리

- 가)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 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카. 사업 평가

- (1) 시·도지사는 농지개량조합장이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를 하였는지를 평가함.
- (2)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 할 수 있음.

## 타. 사업 준공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3)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 파. 기타 사항

- 동일권역 내에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 배수 개선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성을 검토함.
-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개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계획과 추진상황의 연계성을 검토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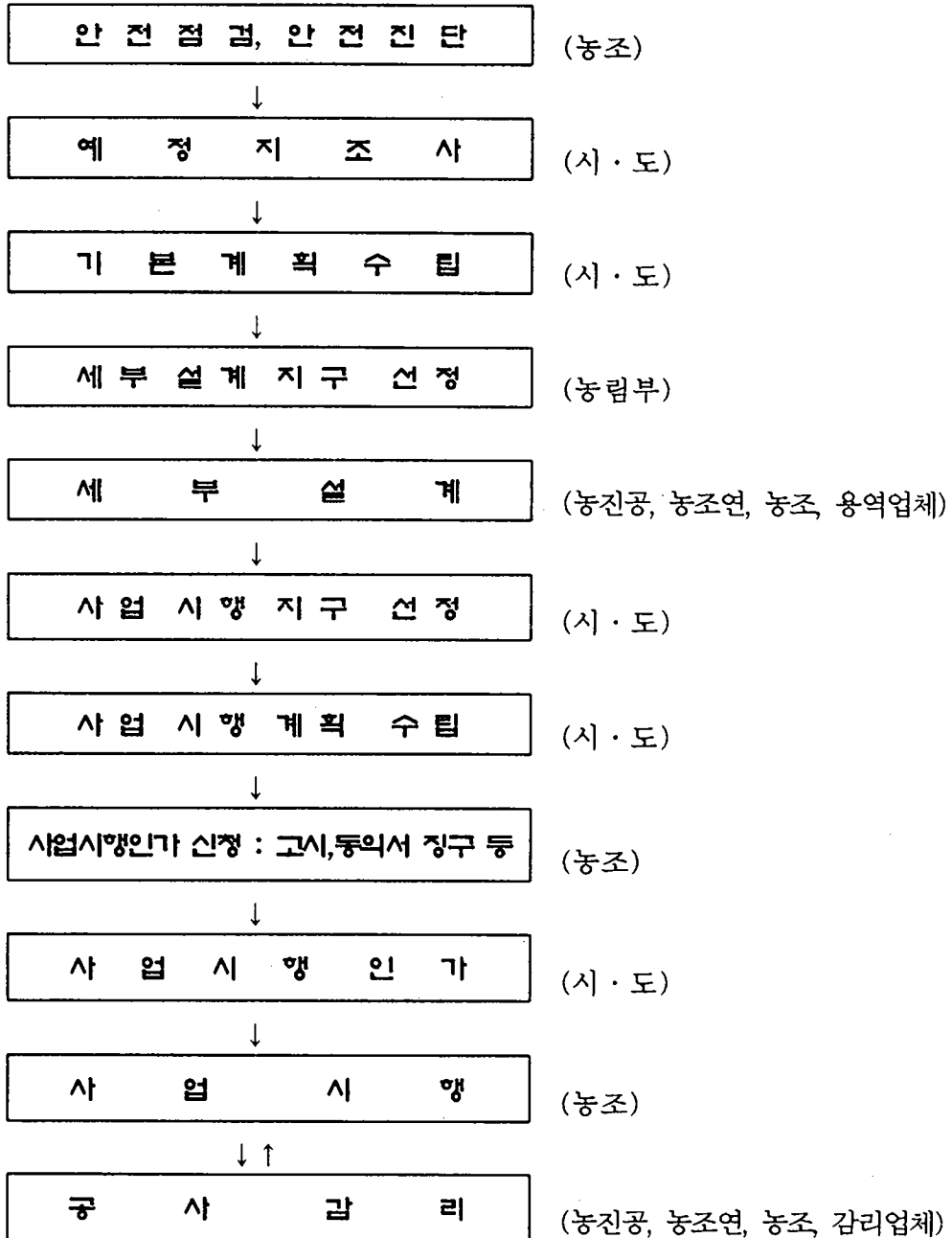
### 나. 보고

- (1) 사업시행인가, 공정계획보고(사도 총괄표) : 즉시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 (2) 예산내시결과보고 : 년초예산 내시는 즉시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3) 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 까지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4) 준공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5)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 별표 1 ]

##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1호 서식]

시·도별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정계획 (총괄)

(        시·도 )

(단위 : 백만원)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수 원 공		평 야 부		사업착수년도	사업비 현황				'97 주요공사	'97분기별 사업비				
		시·군	읍·면	리·동	시설명	ha	시설명	km		총사업비	'96 까지	'97 계획	'98 이후		1/4	2/4	3/4	4/4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농조 계																			

- ※ 1) 농조별 지구내역은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 2) 수원공 및 평야부란은 실제 개보수 시행계획인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97년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배정(변경) 결과보고

(            시·도 )

(단위 : 백만원)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시설 명	수혜 면적 (ha)	착공 년 도	총 사업비	'96년 까지	'97년계획			'98년 이후
		사군	읍면	라동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농조계													

※ 농조별 지구내역은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진도보고 ('97년 /4분기)

(            시·도 )

(단위 : 백만원)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시설명	수혜면적 (ha)	사업수년	총사업비	'96 까지	'97 예산	'97년 실액	진도 (%)		공 래 누 계 형	누 계 진 도 (%)	'98 이후	부 진 사 유
		시·군	읍면	리·동								계획	실적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농조 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별지 제4호 서식]

##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결과 보고

###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시설명 :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 공사 감독 :
- 시공 회사 :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총사업비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 고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5-2호 서식]

## 심 사 서

1. 사업명 :

2. 위치 :

3. 수혜면적 : ha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공사개요

총 계획	'96까지	'97계획	'98이후 계획	비 고

6. 보완내용

구 분	보완 내용	보완내용 심사의견
		수로조직표 및 수로표준단면도 첨부



[별지 제5-3호 서식]

## 사업비 수지예산서

###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96까지	'97계획	'98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96까지	'97계획	'98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별지 제5-4호 서식]

###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sup>2</sup>,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중 감		'96까지		'97계획		'98이후		비고 (중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중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5-5호 서식]

###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96까지	'97계획	'98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9 - 2	수리시설개보수(공공)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	-----------------------------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입니다.

### 1. 목 적

노후된 국가관리 방조제의 효율적인 개보수로 재해의 예방과 간척농지의 보존

### 2. 추진방향

-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재해예방 조치가 긴급한시설 우선지원
-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추진하여 사업효과 거양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지구,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계	사업량	<60> 49	8	10	8	23	<60>
	사업비	307,469	56,278	17,800	19,818	20,160	193,413
	보 조 지방비	307,469 -	56,278 -	17,800 -	19,818 -	20,160	193,413

※ 주1] 사업량은 준공지구수입, 주2] < >는 외서 재개보수계획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추진 배경

- 시설이 노후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국가관리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필요

(2)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

(3)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4)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지구,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대 출	보 조		
계	40	19,818	19,818	-	19,818	-	-
국가관리	40	19,818	19,818	-	19,818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량과,농업기반과,농산 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라. 사업추진절차 : [별표1] 참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예정지조사→기본계획수립 →  
설계지구선정 → 세부설계 → 사업시행계획수립→사업지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및 착공 → 공사시행 → 준공

<사업 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1)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조제로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된 지구
- (2)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국가관리방조제

## 나. 우선순위

- (1) 농업진흥지역내 재해취약시설로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는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96. 6.11~6.22 실시한 방조제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반영)
- (2) 일상 및 정기안전점검, 자체예산에 의한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관리 실태 평가결과 및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한 방조제개보수사업 평가 결과 우수시설 관리자의 재해위험시설은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사업추진>

### 가.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조사신청

- (1) 시설물 관리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수혜자의 건의 또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시·도지사에게 예정지 조사를 신청 한다.

### 나. 예정지조사

- (1)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한다.
- (2)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를 실시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의 기술능력을 판단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 조합 연합회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 하여 예정지 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단,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수립한 방조제개보수 대책을 예정지 조사로 갈음 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세부설계 요청
- (4) 예정지조사 내용 및 유의사항
  - 조사내용에 포함될 사항
    - 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 사업별 투자소요액
    - 사업시행의 효과            -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
    - 기타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신청되거나, 예정지 조사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자에게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
- 예정지 조사시 시설물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7조 ④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1)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세부 설계 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2) 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3)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다.
- (4) 세부설시 유의사항
  - 방조제 높이 및 단면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5) 시·도지사는 세부설계를 완료한 때는 계획의 타당성 검토한 후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개요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6)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한다.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장관이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인가 보고시는 사업계획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검토 내역을 첨부 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의 변경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3) 시행계획변경 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착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이행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 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FAX 02-507 - 3964)보고하여야 함.

#### 나. 공정계획

- (1) 재해위험 공종은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 수립 함.
- (2)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음.
- (3)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 시행계획의 변경

- (1) 사업시행계획 변경(물량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규모 형식, 구조의 변경 및 공법변경 등에 대한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마.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 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 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2)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장틀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공사상 원인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 확인(사진촬영) 공정계획의 이행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
-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바.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2)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3)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사업비지원>

가. 예산의지원

- (1) 재해대비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 (2)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3)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 (4)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4)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시·도지사는 「농림사업평가규정」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 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2)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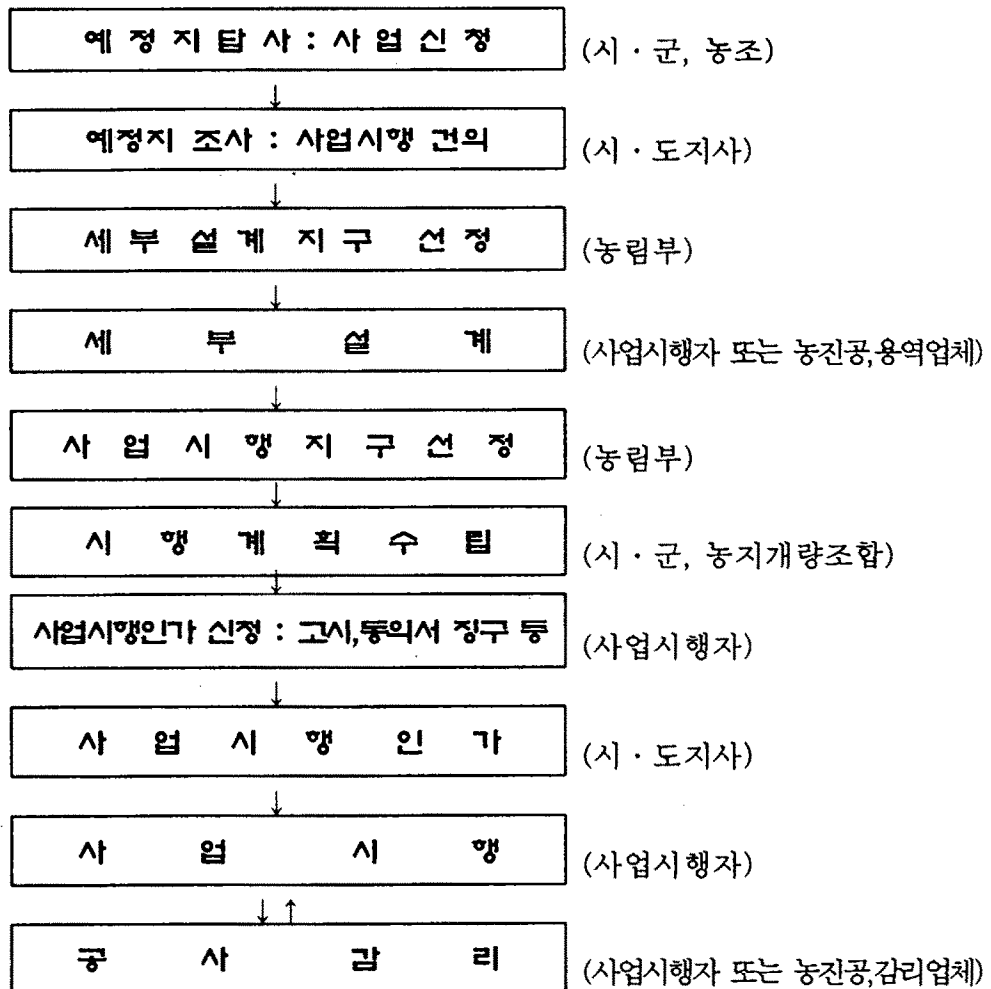
나. 보 고

- (1)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당해연도 2월말까지 보고(별지 제1호서식)
- (2) 공정계획보고 : 당해연도 3월말까지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3)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4) 시행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 : 승인후 즉시보고(별지 제4호서식)
- (5)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준공 결과보고(별지 제5호서식)

[별표 1]

##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호 서식]

년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금액 : 백만원)

구분	착공 년도	시행 주	지구 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총계획		까지		년계획(금회 인가)		년이후	
				시 군	읍 면		사업 내용	금액	사업 내용	금액	사업 내용	금액	사업 내용	금액
계														

주) 1, 구분란은 준공, 계속, 신규로 기재, 2, 사업내용은 공종별 사업량 기재(금액은 총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공정계획표

확 인 자 :  
 사업시행자 :  
 시공업자 :  
 작 성 자 :

위치 : 도    군    면  
 사업시행자 :           , 지구명 :           (내지구명 :           ), 수혜면적    ha,  
 당초승인 :            착공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인액	년까지사업비	년후사업비	년도예산액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과목	공종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합 계																							
공 사 비																							
-순공사비	소 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 국과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진도보고

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구분	면적	총사업비	기정산액	전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행액	진도(%)		착공이래누계실형	누계진도(%)	부진사유
	시·군	읍·면									계획	실적			
계					ha					계					

- 주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3)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서식 제4호]

년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

시·도

구분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ha)	사업시행주	착공 년도	총 사업비	년 까지	금년계획			년 이후
		군	면						당초 (A)	금회 (B)	증감 (B-A)	
계												

※ 구분란은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로 구분할 것

[별지 제5호서식]

## 국차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준공결과보고

확인자  
작성자

### 1. 사업지구현황

- 지 구 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시공업체(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공사감독 :

※ 준공지구 도면(1/25,000)을 첨부할 것

## 2. 연도별 검정내역

### 가.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인가액	준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기 타									

### 나.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합 계									
순공사비 지급품비 용지매수 및 보 상 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관 리 비 잡 지 출									



9 -3	수리시설개보수(공공) (농조저수지준설)
---------	--------------------------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입니다.

**1. 목 적**

저수지에 유입된 퇴적물을 준설하여 계획저수량 확보, 저수지의 기능회복 및 수질오염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도모.

**2. 추진방향**

가뭄 우심지구 및 준설효과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지구,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계	사업량	2,189	659	299	258	300	1,332
	사업비	375,100	35,000	30,341	30,995	30,000	248,764
	보 조	375,100	35,000	30,341	30,995	30,000	248,764
	지방비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배경**

-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로 인해 저수지가 퇴적됨으로 계획저수량 확보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가뭄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 될 경우 저수율이 낮은 가뭄시기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계획 저수량 확보와 효율적인 물관리 도모

- (2) 지원대상 : 농지개량조합장
- (3) 사업내용 : 저수지 내의 퇴적토사 준설
-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기준 : 국고 100%
  - 조    건 : 가뭄우심지구 및 준설효과가 높은 농조관리저수지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지구,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용 자	보 조		
저수지준설	258	30,995	30,995	-	30,995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업시행자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량과,농업기반과,농산 지원과, 농정과)
- 다. 사업시행자 : 농지개량조합장
- 라.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기본계획수립→사업시행지구선정→세부설계→→사업시행  
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공사시행→준공

<사업계획수립>

- 가. 사업 대상지구선정
  - (1) 선정기준
    - 농지개량조합관리 저수지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 준설 여건이 양호하여 사업비가 저렴하고 사업 효과가 높은지구

- 준설토를 이용하여 객토등 농지를 개량하거나 인근토지의 이용도를 높일수 있는 지구 (경지정리 및 간척지 내부개답 공사의 복토용 포함)
- 준설시 부산물로 골재가 생산되어 매각대금을 준설사업비로 충당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구
- 사토장 확보가 용이하고 사토장까지 운반거리가 가까운 지구

(2) 우선순위

- 사업시행 예정지구 우선순위 결정은 상기요령에 따라 선정된 지구를 지역단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종합 검토하여 우선 순위 결정

나. 사업시행 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시설물관리자(농지개량조합장)는 수혜자의 건의 또는 유지관리시 나타난 물 부족지역에 대한 예정지를 현장 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신청
- (2) 가뭄지역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의 저수율을 파악하여 준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선정

다. 예정지조사

- (1)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의 준설여건 및 가뭄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2) 시설관리자가 시설유지관리 자료 및 현지답사자료를 기초로 수립한 대책을 예정지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3) 예정지 조사시 저수율을 고려하여 준설효과와 공사의 난이도 파악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시급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신규사업 지구를 선정

- (2) 세부설계는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설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 (3) 측량설계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준함.
- (4)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가 함유된 지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골재의 품질 및 매장량에 대한 조사 실시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26조④항 : 건설교통부 훈령 제145호 참조)
  - 저수지 당초의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지구는 내용적 평면도를 참고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사항, 준설가능량과 적정한 공법선정
  - 사토장의 선정시 홍수시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역 이외의 장소에 사토장 선정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인가 : 시·도지사
  -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담수호 및 저수지의 준설사업도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실시토록 함.
- (2)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농지개량조합장)
- (3) 골재반출증 발급
  - 시·도지사는 골재채취가 수반되는 준설사업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 인가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골재반출증을 교부받아 반출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함.(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26조④항 : 건설교통부 훈령 제145호 참조)

#### 나. 공정 계획

- (1) 당해년도 예산에 맞춰 가능한한 갈수기에 육상작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 (2) 관개기전에 완공하여 영농기에 최대한 활용토록함.
- (3) 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저수지의 물을 배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다. 시행계획의 변경

- (1)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2) 현지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동시에 그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준설공사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매각대는 준설사업비에 우선 충당함.

####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1)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하여 가능한한 유용토록하여 사토비 절감 (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 (2)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집행.
- (3) 보상 업무는 농한기에 시행하여 작물 보상이나 실농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마. 공사감리

- (1) 시공은 관련 지방서에 부합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함.
- (2) 시공감독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 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3) 공사감리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준함.

## 바.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인과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 <사업비지원>

### 가. 예산지원

- (1) 예산의 지원은 가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지원한다.
- (2) 준설토가 골재 또는 객.복토용으로 적합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 (3) 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원
- (3)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4)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시·도지사는 농림사업평가 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2)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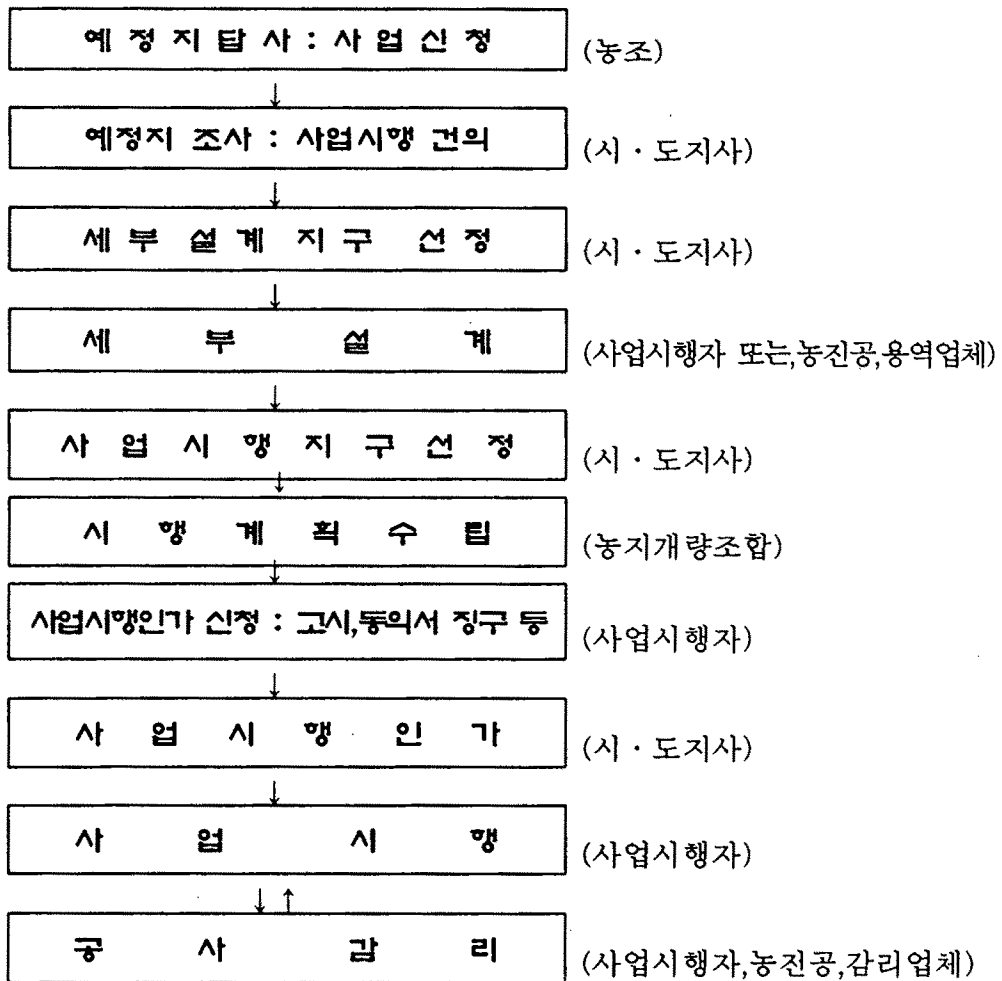
나. 보고·기타

- (1)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인가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별지 제1호서식)
- (2) 공정계획보고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별지 제2호 서식)
- (3)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제3호서식)
- (4) 시행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 : 6월 및 9월말 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4호서식)

[ 별표 1 ]

## 농조저수지건설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서식 제1호]

## 년 농조저수지준설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시.도

(금액 : 천원)

착공 년도	농조 별	지구 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총계획		계획		이후	
			시군	읍면		준설량 (천 m <sup>3</sup> )	사업비	준설량 (천 m <sup>3</sup> )	사업비	준설량 (천 m <sup>3</sup> )	사업비

[별지 제2호 서식]

## 농조저수지건설사업 공정계획표

확 인 자 :  
 사업시행자 :  
 시 공 업 자 :  
 작 성 자 :

위치 : 도    군    면  
 사업시행자 :    , 지구명 :    (내지구명 :    ), 수혜면적    ha,  
 당초승인 :    착공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인액	년 까지 전사업비	년 이후 전사업비	년 도 예산 액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과목	공종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합 계																							
공 사 비																							
- 순공 사비	소 계																						
- 자재대	소 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예 비 비																							

[별지 제3호 서식]

## 농조저수지 준설사업( )분기 추진상황보고

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농조별	지구명	위치		수해적 (ha)	총계획		까지		년 사업추진 현황					부진 사유		
		시군	읍면		준설 량 (천 m <sup>3</sup> )	사업 비	준설 량 (천 m <sup>3</sup> )	사업 비	계 획		실 적		진도 (%)			
									준설량 (천 m <sup>3</sup> )	사업비	준설량 (천 m <sup>3</sup> )	사업비				

[별지서식 제4호]

년 농조저수지건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

\_\_\_\_\_ 시도

구분	지구명	위치		수혜 면적 (ha)	사업 시행 주	착공 년도	총 사업비	년 까지	금년계획			년 이후
		군	면						당초 (A)	금회 (B)	증감 (B-A)	
계												

※ 구분란은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로 구분할 것

**10 대 · 중규모 용수개발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입니다.

**1. 목 적**

수혜면적 50 ha 이상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용수 확보 및 원활한 공급

**2.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경지정리등 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년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천ha)		90	6	5	9	17	58
사업비	계	4,470,419	515,407	240,344	352,913	340,455	3,021,300
	보 조	4,470,419	515,407	240,344	352,913	340,455	3,021,300
	용 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	-	-	-	-	-

※ 주 : 42조원 구조개선사업 및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함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사업범위
  - 대규모 용수개발 : 수혜구역 3,000 ha 이상
  - 중규모 용수개발 : 수혜구역 50 - 3,000 ha미만
  - 가뭄상습지역 특별대책 : 가뭄상습지역 특별대책 추진 35지구
- 지원조건
  - 국고 100 %. 단, 개답공사는 자부담 100 %  
( '94년 이전 착공한 지구의 개답공사는 국고 50%, 자부담 50%)

####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	예산액 (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계	51,653	351,768	351,768	351,768	-	-	-
- 대규모	11,467	48,468	48,468	48,468	-	-	-
- 중규모	30,845	243,300	243,300	243,300	-	-	-
- 가뭄상습지역 특별대책	9,341	60,000	60,000	60,000	-	-	-

※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추진 : 22개 지구(10천ha)임

#### 다. '97지원 계획

- 대규모 :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용수로공사에 집중투자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중규모 : 사업준공및 수원공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여  
사업 조기완료및 사업효과 조기 달성
- 가뭄상습지역특별대책 : 용지매수및 공사착수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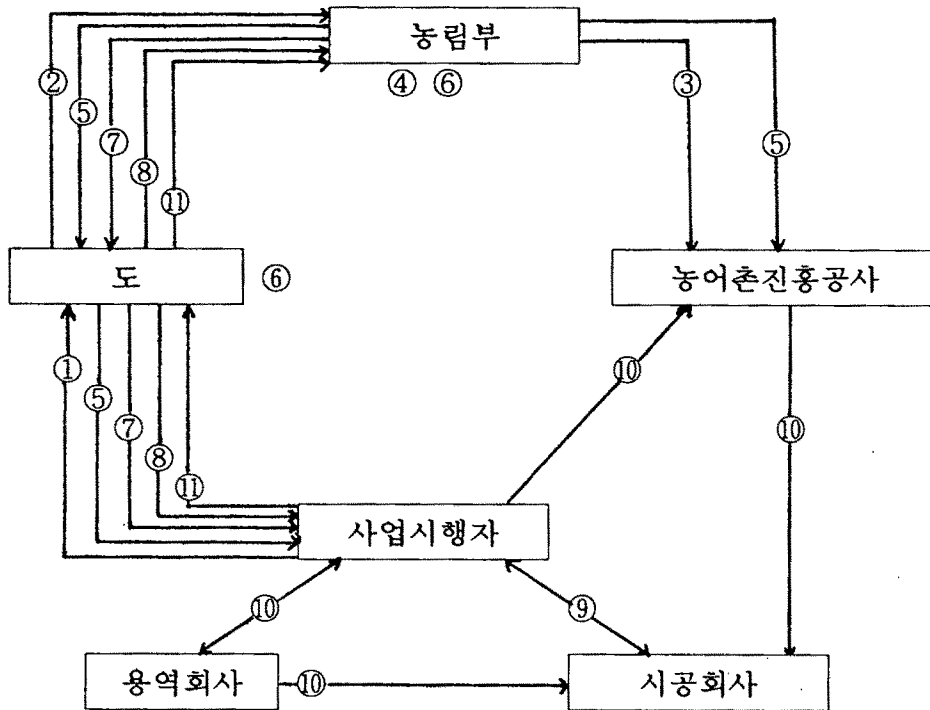
-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기획과 (전화 : 02- 504- 9402, 9403)  
농촌용수과 (전화 : 02- 504- 9406, 9407)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 사업시행자 : 농지개량조합

다. 대상지 선정

(1) 선정기준

- (가)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주민 숙원사업지구로서 소요사업비가 ha당 75백만원 이하(생활용수공급을 제외)인 지구, 다만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나)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고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다)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하에 선정 (도시개발계획 등에 포함되어 타용도로 전용될 지역은 제외함)
- (라) 신규개발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지구 (50% 미만인 경우는 보강개발로 시행)
- (마)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이 가능한 지구 우선

< 사업시행체계도 >



(2)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시행신청
- ② 예정지 조사보고
- ③ 기본조사 지시
- ④ 기본계획 수립
- ⑤ 세부설계 지시
- ⑥ 시행계획 수립
- ⑦ 신규지구결정 및 예산내시
- ⑧ 사업시행인가 및 보고
- ⑨ 공사발주 및 공사 시행
- ⑩ 공사감리위탁 및 감리
- ⑪ 사업추진상황 준공보고



## 라. 사업시행

### (1)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가) 저수지

- 1)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의 실태 (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2) 가물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물특성에 맞는 가물 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3)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4)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 5)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6)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등의 용수 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함.

#### (나) 양수장

- 1)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2)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3)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중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다) 용·배수로

- 1)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지역은 가능한한 계획에서 제외함.
- 2) 소형수로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3)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2)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가)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농지개발조합장)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장기계획에 따라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다)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라)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농업진흥지역지정, 시군농어촌발전계획포함 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 (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등)
  - 지역주민 의견

(3)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 (가)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 (매년 3월말 까지)
- (나) 농림부장관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하고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다) 농어촌진흥공사장은 구체적인 기본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 (라) 기본조사 업무는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분석하고, 주요 시설 계획에 대한 비교설계를 거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함.
- (마)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 (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바)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TC/TM에의한 집중물관리시스템(홍수예경보,급수관리,수질관리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아)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 설계 도서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사업비 내역
  - 사업 효과
  - 사업지구 현황 (진흥지역 지정,시군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경지정리 현황등)
  - 개발계획 내용과 주요공사
  - 사업시행 여건 (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시장.군수,농조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종합의견

(자)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한다.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기본계획내용을 보완토록 함.

(차)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서를 송부함.

(카)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기본조사에 농림부장관의 기본조사시행 지시에 따라 기본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지급함

####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지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함.

다만,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업무는 다음과 같이 년도별로 시·도지사 책임으로 실시함.

- '96년도 : 수혜면적이 300ha 미만인 지구
- '97년도 : " 600ha 미만인 "
- '98년도 이후 : 전 사업 지구

(나) 시·도지사 책임으로 세부설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우수한 설계기관을 선정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다) 시도지사 및 농어촌진흥공사는 위임 및 위탁받은 세부설계에 대한 공정계획과 추진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라)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사업계획상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전 지시를 받아야 함.

(마) 주요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시에는 과업지시서에 시공 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용역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바) 구조물설계시에는 강도 또는 허용응력설계법등 설계방법을 명시함.

(사)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이때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 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

(농림부장관이 직접 설계기관을 지정한 지구의 세부설계는 장관이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도서를 송부함.)

(아) 농림부장관은 증장기계획 및 예산확보상황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지구를 선정함.

(자)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예산내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97년도는 수혜면적이 600ha 미만인 지구)

####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가)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6) 공정계획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나)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다) 공정계획은 인력,장비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라)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바)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도수로,용수간선,용수지선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등으로함.
- (아)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8월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 준공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사업비가 부족한 지구는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비 또는 타지구에 배분된 사업비에서 조정하여 년내 준공토록 조치하여야 함.

다만, 단가인상으로 인한 사업비증가에 대하여는 국고추가지원 또는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준공토록 함.

(차)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4호서식)

#### (7) 시행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 수혜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 2) 길이 100m 이상의 교량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3) 터널, 댐등의 특수한구조물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4) 수원공의 위치 변경
- 5) 댐,여수토 및 양수장의 규모 및 형식의 변경

(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다) 계획변경시에는 변경요인을 분석하여 불가변동 및 불가피한 여건변동 등에 인한 계획변경 이외의 공사비 증가액이 당초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사업비 전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토록하고, 당초설계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설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

(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8) 용지매수 및 보상

-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등과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다)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 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 것.
- (라) 매수한 토지는 국 (관리청 : 농림부)으로 등기하여야 함
- (마) 과목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것

(9) 공사감리

- (가)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회사 감리규정에 의거 적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감리를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승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별지 제6호서식)
-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라)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 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마)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바)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사)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위탁한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  
※ 용수 51317-828 ('96.10. 4) 참고
- (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1996-31호('96. 6.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 51340-893호, '96.10.25)에 의하여야 함.

## (10) 사업준공 및 검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나) 사업시행자는 (가)항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공사감리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다) 준공검사 실시후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 하고 사업준공 인가를 받음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 함.

## (11) 사업비 지원

### (가) 예산의 지원

- 1)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대규모용수개발과 중 규모용수개발및가뭄상습지역특별대책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함
- 2)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3)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4) 시도지사가 예산을 배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며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시켜서는 안됨.
- 6)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및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7)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 집행상황을 매분기 말 현재로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 8)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9)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농지개량조합, 시·군등)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관련사업비 및 유보예산지원시 확대지원방안을 강구함.

#### 마. 기타사항

##### (1) 자재 공급 및 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나)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95.7.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다)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라)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7호서식)
- (마) 구매공급하는 기자재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송되면 사업시행자는 품질 및 수량을 확인 검수하여 자재수불대장에 기재하고 보관창고에 보관 관리하여야 함.
- (바) 기자재 출고시에는 공사감리원의 출고요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출고수량을 자재수불대장에 기재한 다음 출고하여야 함.
- (사) 사업시행자는 지급자재의 구매공급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분기말 일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8호서식)

(2) 풍수해 사전대비

- (가)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나)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함.
- (다)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를 검토하여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함
- (라)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3) 자금운용 및 관리

-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3) 타법 관련사항

-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나)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 및 하천 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고 소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절차에 의거 국(관리청:농림부)으로 등기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시설물을 사업시행자 및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4) 인계·인수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 나. 보 고

- 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 수립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 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예산확정 또는 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공정 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또는 변경시(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추진 상황 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자금집행상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도지사→농림부장관)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농지개발조합장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 사업시행자 : 예정지답사보고서  
- 시·도지사 : 예정지조사보고서

마. 기타사항 :

- 시·도지사는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사업시행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사업시행효과, 위치도, 지역개발여건, 지역주민의견등)

[별지 제1호서식]

## 농촌용수개발사업예산배정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업 시행자	위 치			지구 명	주요 시설명	면적 (ha)	총 사업 비	년 까 지	년 계 획					년 이 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 비	융자	자부 담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것

[별지 제2호서식]

## 월중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도

년 월 일 (단위 : 천원)

농조명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도지급 수령액	농 조 자 금 집 행 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 매수및 보상비	기타	계	



## 용수개발사업공정계획

사업시행자 :          농조장 (인), 시공자 :          (인), 작성자(공감소장) :          (인)

도 명 :

농조명 :          지구명 :          물리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천원)

구분	물량 단위	승인액		연도 까지		연도 계획		연도 이후		공정(%)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A)	물량	금액(B)	물량	금액(C)	물량	금액(D)	당해 년(E)	착공 후(F)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순공사비																						(주) D=A-(B+C)
																						$E = \frac{C}{A} \times 100(\%)$
용담비	ha																					$F = \frac{B+C}{A} \times 100(\%)$
자재대																						<급수면적>
양회	대																					○93까지 : ha
철근	M/T																					○94상반기: "
기타																						○94하반기: "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94이후: "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조합채비																						
영선비																						
예비비																						

## 용수개발사업추진상황

도

(단위 : 천원,   년   월   일   현재)

위치		사업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용리면적	총사업비			기산액	잔액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		공후계형	%	비고 (부진사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으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압거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5호서식]

## 용수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및 승인신청시 도지사가 첨부할 서류

1.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2.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내용(장관에게 승인신청시만 첨부)(별첨㉔서식)
3. 심사시(기술 및 관리)
4. 사업계획 개요
5. 사업비 수지예산표 및 수지예산 증감대비표
6. 보조금산출내역
7. 보조금 재원별내역
8.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등 사무비에 대한 항목별산출및 변경내역
9.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10.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11. 지급자재조서
12. 공사수량 이동조서(별첨㉕서식)
13.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14.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별지서식 ㉔]

##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내용

공 종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도지사검토의견

※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만 기재한다.

[별지서식 ㉔]

## 공사수량이동조서

공정	규격	단위	공사수량		증감내역			사유
			당초	변경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잡비기타								잡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
계								

[별지 제6호서식]

##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농 조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것

[별지 제7호서식]

## 자재수불부

결재		년월일	품명	규격	수입량		출고수량			재고량	부기
책임자	담당자				금회	누계	번호	금회	누계		

[별지 제8호서식]

## 중규모용수개발사업지급자재공급상황추진상황

도	조합	지구명	자재명	총 소요량 (A)	년 월 일 현재								(B/A) 누계진도	비 고 (부진사 유)
					분기별계획 (B)				분기별계획 (B)					
					1/4		2/4		3/4		4/4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			양회 철근 기계,전기	대 kg 조										



11	지표수보강개발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입니다.

1. 목 적

기설 수원공(저수지, 양수장)의 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가뭄대비 능력 향상

2. 추진방향

- 지역 수자원 확보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이용
- 내한능력 부족지역의 물 해결과 상습 가뭄지역의 해소
- 하천 오염 심화에 따른 깨끗한 수원 확보
- 저수지 위주로 집중 개발하여 공사기간 단축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70	4.2	1.8	3.0	4.0	57
사업비계	1,452,601	80,054	21,429	32,482	50,000	1,268,636
- 보조	1,016,821	55,038	15,000	32,482	50,000	1,268,636
- 지방비	435,780	24,016	6,429	-	-	-

\* 주) 농어촌용수 10개년 계획 위주로 작성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추진배경

- 해방 전후 및 '70년대까지 축조한 시설은 용수확보 능력이 부족하여 물 사용 증가와 기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여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

##### (2)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시설 확장

##### (3) 지원대상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수리시설

##### (4) 지원조건 : 국고 100% 보조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타		
지표수보강개발	3천 ha	32,482	32,482	32,482	-	-	-

### <추진체제>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266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 (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 농지개량조합 : 당해 지역 농지개량조합 관리과, 개발과, 사업과

####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 신청 → 예정지 조사 →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 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시행 인가 → 공사계약 → 착공 → 준공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 [별표1]과 같음.

## <사업계획수립·시행>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1) 선정기준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발조합장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지하수 이용시설 제외) 중 물부족으로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당기간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개발할 수도 있음.

#### (2) 우선순위

-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기 용이한 유역배율이 큰 저수지
-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

###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농지개발조합장)는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확장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을 신청함
- (2) 사업시행예정자가 시·도지사에게 개발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여부와 농업진흥지역 면적과 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예정지 조사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물 부족지역의 수자원 추가확보로 저수지, 양수장 규모 확장을 신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2) 시·도지사가 예정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면적 등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3)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수혜면적 50ha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신청함.  
 다만, 5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함.

라.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 (1)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림부장관이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발조합연합회(이하 “기본조사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함.
- (2) 기본조사자는 시·도지사의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유역상황 또는 당해 시설의 이용체계나 용수계통을 고려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3) 기본조사자는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 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용·배수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4)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사업을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5)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수해대책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저수지

- 지역 수자원의 수급과 수질의 변화 전망
- 저수지 유역으로 수자원 최대 확보 가능량
- 물 수지계산이 10년빈도에 적합한지와 단위저수량이 현재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그 대책(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사면 안전도 부족, 누수 등), 여수토 방수로의 홍수배제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책(안)

나) 양수장

- 하천의 수량감소와 수질의 악화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대책
- 홍수시 침수 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다) 용수로

- 현행 용수 이용체계와 수로조직표
- 수로조직 체계 개선 구상(안)과 추정사업비

(6)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7)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 함.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세부설계실시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자 중에서 하도록 함.

(2) 세부설계실시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되, 조사측량 과정에서 기본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결과는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세부설계실시자는 공사가 완공된 후 저수지, 양수장의 운용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4) 세부설계실시자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5)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서를 납품받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계획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설계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개요와 세부설계비 산정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함.

- (6)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여 예산을 내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여 고시 및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함.

####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농림부장관이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시행인가 보고시는 사업계획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의 변경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3) 사업계획 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착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 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 FAX(02-507-3964)로 상황 보고하여야 함.

#### 사. 공정계획

- (1) 시·도지사는 '97. 1월 현재 시행중인 보강개발사업 지구수('97준공계획지구 는 제외)의 절반(50%)이상에 대하여는 준공예정년도를 미리 정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도별로 지원되는 개보수사업비 총액 범위내 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98년도 이후 투자계획은 '97년도 지원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예산에 의한 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1호 시식)

#### 아. 시행계획의 변경

- (1)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규정으로 정하는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저수지의 제당높이, 만수위, 물넘이 형식의 변경과 양수장 규모의 변경

- (2)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 **계**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 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함)
- ④ 보고 서식 (별지 제5-1, 2, 3, 4, 5호 서식)
- ⑤ 기타 주요사항

- (3)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사업시행 **획** 변경을 승인하고 결과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함.

#### 자.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 차.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 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카. 사업비 지원

### (1) 예산의 지원

- 가) 저수지 확장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불가피한 지역은 양수장 확장비용을 지원함
- 나) 기존사업지구 중 '98년도 이후까지 추진되는 농지개량조합의 평야부 공사는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함.
- 다)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시행할 수 있음.

### (2) 자금의 운용관리

- 가)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 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타.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3) 준공지구예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파. 사업 평가

-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기한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평가함.
- (2)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증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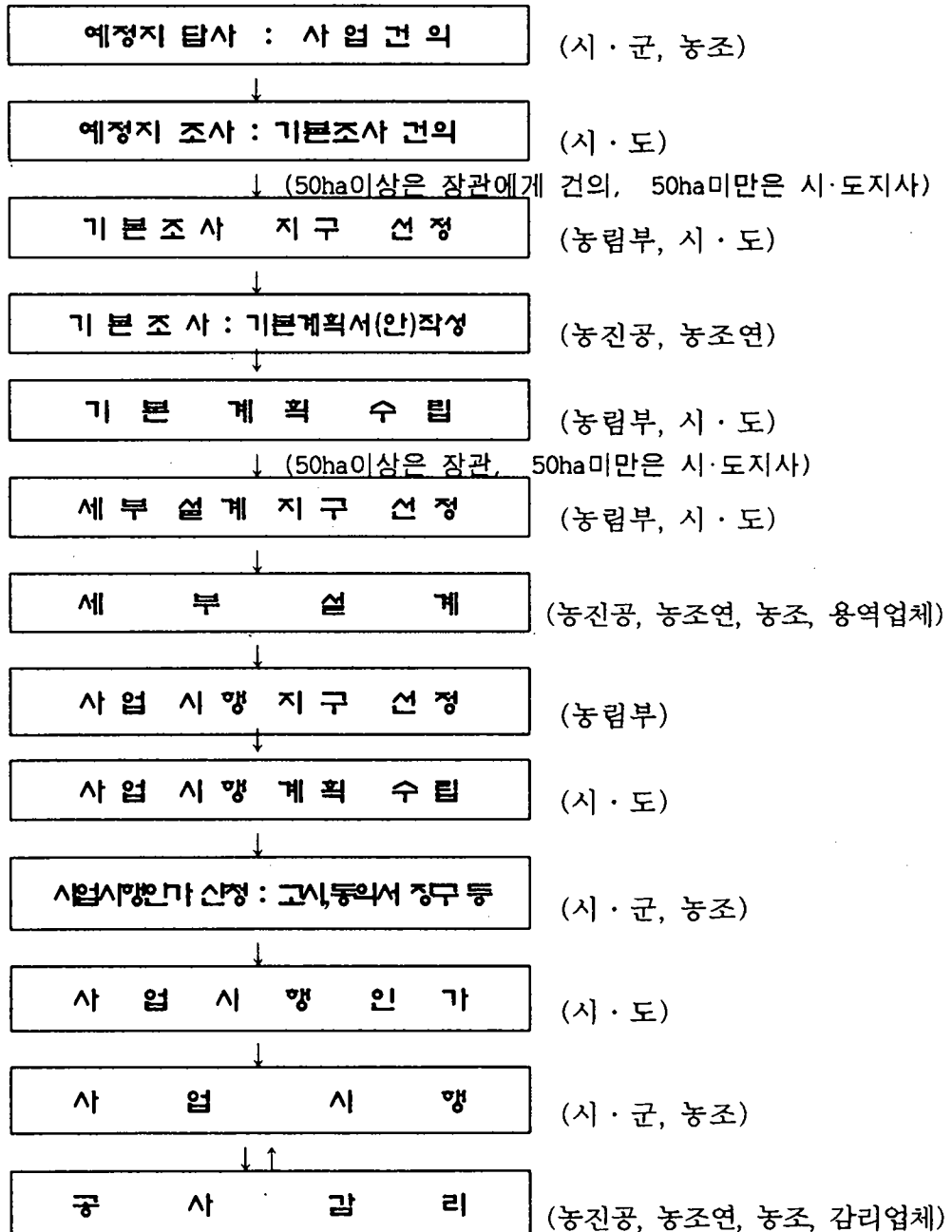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보고

- (1) 사업시행인가, 공정계획보고(시·도 총괄표) : 즉시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 (2) 예산내시결과보고 : 년초예산 내시는 즉시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3) 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 까지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4) 준공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5)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1호 서식]

## 시·도별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공정계획(총괄)

(            시·도 )

(단위 : 백만원)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수원공		평야부		사업착수년도	사업비 현황				'97 주요공사	'97분기별 사업비			
		시·군	읍·면	리·동	시설명	ha	시설명	km		총사업비	'96까지	'97계획	'98이후		1/4	2/4	3/4	4/4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시·군, 농조 계																		

※ 1) 사업시행자별 지구내역은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2) 수원공 및 평야부란은 실제 개보수 시행계획인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 지표수보강개발사업지구별 공정계획표

확 인 자 :  
 사업시행자 :  
 시 공 업 자 :  
 작 성 자 :

위치 :    도    군    면  
 사업시행주 :    , 지구명 :    (내지구명 :    ), 수혜면적    ha,  
 (보강면적 :    ha), 당초승인 :    착공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인 승액	년 까지사 업비	년 이후사 업비	년도 예산 액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 계																									
공 사 비																									
- 순공 사비	소 계																								
- 자재대	소 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용·배수로 공종이 있는 경우는 수로조직표를 첨부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97년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예산배정(변경) 결과보고**

(            시·도 )

(금액 : 백만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시설 명	수혜 면적 (ha)	착공 년도	총 사업비	'96년 까지	'97년계획			'98년 이후
		사군	읍면	리동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시·군, 농조 계													

※ 사업시행자별 지구내역은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진도보고('97년 /4분기)

( 시·도 )

(단위 : 백만원)

농조명	지구명	위 치			시 설 명	수 혜 면 적 (ha)	사 업 수 도	총 사 비	'96 까 지	'97 예 산	'97년 실 액	진도(%)		착 공 이 누 계 형	누 계 진 도 (%)	'98 이 후	부 진 사 유
		사 군	읍 면	리 동								계 획	실 적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농조 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들 추가함

[별지 제4호 서식]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 1. 사업지구 현황

- 지구 명 : \_\_\_\_\_
- 위 치 : \_\_\_\_\_
- 총사업비 : \_\_\_\_\_ 천원      ○ 수혜면적 : \_\_\_\_\_ ha (보강면적 : \_\_\_\_\_ ha)
- 사업시행자 : \_\_\_\_\_
- 주요공사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_\_\_\_\_
- 착공년월일 : \_\_\_\_\_      ○ 준공년월일 : \_\_\_\_\_
- 설계 기관 : \_\_\_\_\_      ○ 공사 감독 : \_\_\_\_\_
- 시공 회사 : \_\_\_\_\_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총 사업비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 고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을 첨부할 것



[별지 제5-1호 서식]

##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결과보고)

### 1. 사업계획개요

- 위치 :
- 수혜면적 :        ha (보강개발 면적 :        ha, 시설명 :        )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
- 주요공사 :
  - 저수지 덧쌓기 : L= m → , H= m → (H 중 m)
  - 여·방수로 개보수 : L= m → , H= m →
  - 양수장 설치 : HP x mm x 대 → HP x mm x 대
  - 용수로 콘크리트구조물: m (B x H)
  - 기 타
- 공사기간 : 19 . . . -

### 2. 공사 주요보완 내용

- 단가인상 : (A)백만원( %), 단가개정 :        백만원, 낙찰차액 :        백만원
  - 물량변경 : (B)백만원  
(작성예)
    - 제당 덧쌓기(L= m, H= m → ) :        백만원
    - 여수또·방수로 (L= m, H= m → ) :        백만원
    - 양·배수장 ( HP x mm x 대 → ) :        백만원
    - 용수로 ( B x L x H m → ) :        백만원
    -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증 감 내 역		
	기승인	변 경				계	단가인상등	물량변경
합 계								
공 사 비							(A)	(B)
- 순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								
기 타								

[별지 제5-2호 서식]

## 심 사 서

1. 사업명 : .
2. 위치 :
3. 수혜면적 :        ha    (보강개발면적 :        ha)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공사개요

총 계 획	'96까지	'97계획	'98이후 계획	비 고

### 6.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 심사의견
		수로조직표 및 수로표준단면도 첨부



[별지 제5-3호 서식]

###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96까지	'97계획	'98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96까지	'97계획	'98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별지 제5-4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sup>2</sup>,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96까지		'97계획		'98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5-5호 서식]

###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96까지	'97계획	'98이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입니다.

## 1. 목 적

강이나 하천 등 수계 중심의 특정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 및 생활환경 개선

## 2. 추진방향

- 종합개발을 통한 투자효율 제고
- 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지구 착수 억제
-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대상으로 부분완료 위주로 사업시행
- 시설물 인수예정 농조를 조기에 지정하고, 부분 완공된 시설물 관리 철저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제21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9지구	1지구완공 8지구계속	1지구완공 7지구계속	7지구계속	7지구계속	7지구완공	
사 업 비	계	46,476	6,052	2,602	3,161	4,468	30,193
	국 고	43,613	4,484	1,977	2,491	4,468	30,193
	기 금	2,863	1,568	625	670		
	지방비 자부담						

주) 42조원 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용수 10개년계획 위주로 작성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 내용

##### (1) 사업추진 배경

- '70년초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영농환경열악 및 식량부족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재원 및 기술부족으로 소규모 저수지, 경지정리, 간척 등의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그 실적도 미미
  - 한·수해 발생, 인력·축력에 의한 영농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저조
  - 외국원조에 의한 국민식량 조달
- 대규모 종합개발방식의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필요성 대두

##### (2) 주요 사업내용

- 저수지·방조제·하구둑·양수장 등을 건설로 용수를 확보하여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 (3) 지원 대상

- 농어촌진흥공사 (새만금지구 보상비는 전북도지사)

##### (4) 지원 조건

- 국고 및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 (대행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은 간척지 개발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지구별	개발면적 (ha)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 (국고·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24,490	316,100	316,100	316,100	-	-	-
영산강Ⅱ	20,700	15,000	15,000	15,000	-	-	-
금강Ⅱ	43,000	35,000	35,000	35,000	-	-	-
미호천Ⅱ	4,430	20,000	20,000	20,000	-	-	-
홍보	8,100	35,000	35,000	35,000	-	-	-
영산강Ⅲ-1	13,160	15,000	15,000	15,000	-	-	-
영산강Ⅲ-2	6,800	3,000	3,000	3,000	-	-	-
새만금	28,300	193,100	193,100	193,100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02-500-2666,2667)

(2)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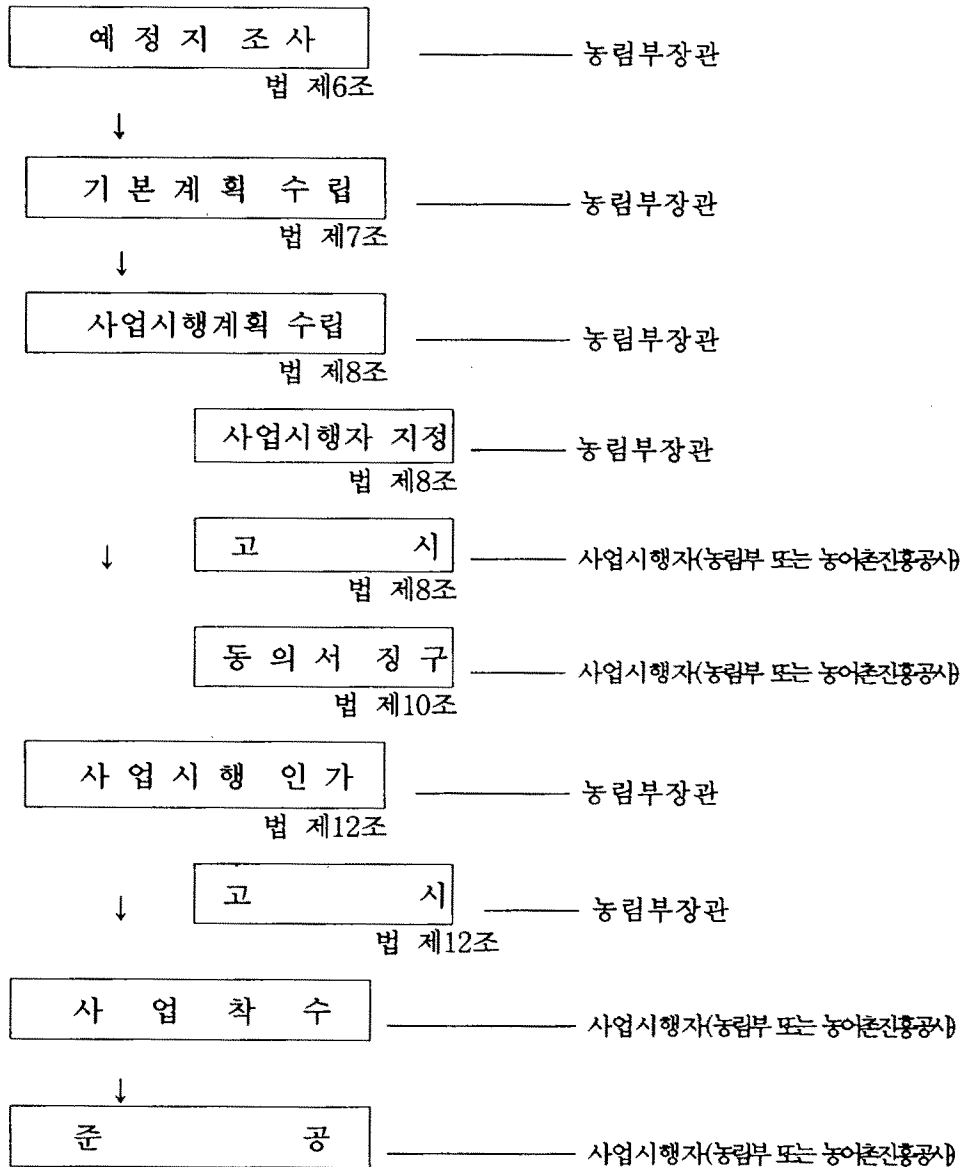
가) 영산강Ⅱ·Ⅲ-1·Ⅲ-2·금강Ⅱ·미호천Ⅱ·홍보 : 농어촌진흥공사

- 본 사 : 농어촌진흥공사 대단위사업처 (0343-20-3451)
- 영산강Ⅱ·Ⅲ-1·Ⅲ-2지구 :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  
(0631-76-2194)
- 금강Ⅱ지구 : 농어촌진흥공사 금강사업단 (0654-64-0843)
- 미호천Ⅱ지구 : 농어촌진흥공사 미호천사업단 (0431-53-8183)
- 홍보지구 : 농어촌진흥공사 홍보사업단 (0451-34-2808)

나) 새만금 : 농림부

- 사업대행자
  - 공사 분야 : 농어촌진흥공사 새만금사업단 (0653-842-0045)
  - 보상 분야 : 전라북도 새만금지원사업소 (0652-82-8518)

《 사업추진 체계도 》



다. 사업 시행

(1) 예정지조사

- (가)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농촌용수, 배수개선, 경지정리, 간척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수혜면적이 3,000ha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함.

(다) 예정지 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나) 기본조사시에는 공종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여야 함.

## (3)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가)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지시함

(나) 세부설계시에는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 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 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확정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라) 일시에 전면적인 세부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구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 착공이 필요한 공구부터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공구는 기본계획서상의 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마) 필요한 경우 세부설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1조를 준용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시행할 수 있음

#### (4) 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 (5) 사업시행인가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참여 자격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나)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6) 년도별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는 내시된 예산에 따라 년도중 시행해야 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 1호서식)
- (나) 사업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를 지양하여야 함
- (다) 년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1) 사업추진경위
  - 2) 사업계획개요
  - 3)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4) 과목별 추진물량 및 금액
  - 5) 년도별 수지예산서(재원별)
  - 6) 기타사항
- (라) 투자사업비는 개발형태별로 구분하고, 년도별 개발실적은 대단위사업 이외의 여타 일반사업과 지역주민의 자력개발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
- (마) 년도초의 사업시행계획수립은 전년말 가격으로 우선 작성할 수 있음
- (바) 사업시행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후 20일이내에 월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별지 제2호서식) 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공구)의 공사발주시 대상지구(공구)의 발주시기·발주방법 등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입찰이 완료된 경우에도 예정가격·낙찰가격·시공회사 등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3월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1)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요
- 2)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 3) 차관 및 채무상환 현황
- 4) 사업별 추진상황
- 5) 기타사항

#### (7) 시행계획변경

(가)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변경은 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계획변경(설계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다 음 〉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갑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중요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 및 토취장의 변경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주요 사업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구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8)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장애물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애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2)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적기 일실에 따른 작물보상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함
- 3)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매수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용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효과 조기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4) 분할측량후 확정된 용지매수비는 조속히 지급하고, 이전등기 수속을 하여야 함
- 5) 전년도까지 매수한 용지는 당해년도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나) 어업권보상

1) 보상물건조사 실시

- ① 당해 사업지구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② 물건조사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확인하여야 함

2)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②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③ 평가용역은 작업과정별, 단계별로 감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집행중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3) 보상액의 산정

-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확정후 관계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

(9) 공사감리

- (가) 공사감리원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나)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전문업체에 용역시행할 수 있음
- (다)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2급 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복명서(사진첨부)를 보존하여야 함
- (사) 지급자재는 입출고시 대장정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아) 기타 공사착수이전, 공사착수단계, 공사시공중, 인수 인계 등 단계별 공사감독 업무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공사감리에관한규정('96.6.18, 농림부 고시 제1996-31)』에 의함

(10) 검 사

(가) 기성고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년도말검정

- 1) 사업시행자는 연도말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1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농림부장관은 주요 공종을 확인한 후 년도말 검정액을 확정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계획을 수립하고, 준공검사 1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② 공사준공을 위한 검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농림부는 인수에정 농조입회하에 주요공종을 발채·확인함

- ③ 사업시행자의 공사완공증명 발급은 농림부의 주요공종 발  
 채확인 이 끝난 경우에 할 수 있음. 다만, 발채확인 결  
 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 공사완공  
 증명을 발급함

2) 사업준공

- ① 공사준공 완료 후 2년이내에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총사업  
 비의 집행내역을 재확인 검사하고 준공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② 사업준공 보고서가 접수되면 농림부장관은 사업비, 개발면  
 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한 후 사업준공을 확정함

(11) 유지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기완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유지관리사업비는 실비정산함

(다) 유지관리비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지구는 책정된 예산으로 집  
 행하고 책정된 예산을 유지관리비 이외 타사업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하며,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잡수입으로 충당하되  
 잡수입이 부족할시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라) 유지관리비사업 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                       |
|----------------|-----------------------|
| 1) 목 적         | 2)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하여야할 사항 |
| 3) 유지관리비 부과 징수 | 4) 유지관리요원관리           |
| 5) 유지관리사업내역    | 6) 시설물현황              |
| 7) 유지관리인원현황    | 8) 세부운영지침             |
| 9) 사업수지예산표     | 10) 지구별 예산내역서         |

(12) 자금관리

-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에 우선하여 집행함
- (다) 차관선과 관계되는 주요 사항은 반드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비 국고의 예치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은 당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13) 기타 사항

- (가)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하천개수가 되지 않는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하천개수 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이 부담토록 함
- (다) 사업구역내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사행이 요망되거나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면 전체 대단위 사업계획에 맞추어 단위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여야 할 시설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해당 인수예정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여야 함
- (2) 사업이 준공된지구에 대하여는 준공한 다음 년도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 보고

- (1)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공구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당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 (2)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종료 다음 달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 (3) 간척지 매각대금 집행현황은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 기타

본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 발 면 적 : 중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도별내역			비 고
		1996까지	1997계획	1998이후	
국외농지잡 고자금수입 · ·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도별내역			비 고
		19〇〇까지	19〇〇계획	19〇〇이후	
1. 순공사비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 및 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공정계획표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회사대표 : (인)  
 작성자 : (인)

지구명 : (공구명 : ) , 물리면적 : ha,  
 착공 : . . .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공종별		최종승인액	96까지정산액	97이후잔산액비	97년예산액	공정%	월 별 계 획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계																								

【별지 제3호서식】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발면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업비		년도별내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승인액	1996까지	1997계획	1998이후	
국외농지 자금지 입수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 사업비		년도별내역			비 고
	기승인액	변경승인액	1996까지	1997계획	1998이후	
1. 순공사비						
○						
○						
○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및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계						

※ 총괄표 및 공구별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진도보고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1996까지		1997계획					누계 진도 (%)	1998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계획 (B)	당월까지 실적(C)	C/A (%)	C/B (%)		
국 외 자 농지기금 잡 수 입 · ·											
계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1996까지		1997계획					누계 진도 (%)	1998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당월 계획 (B)	당월 까지 실적 (C)	C/A (%)	C/B (%)		
1.순공사비 ○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보상 4.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 ○											
계											



【별지 제5호서식】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자금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사업 별	자 금 수			집 행 내 역										잔액	비고
	전월	금월	계	순공 사비	용지 매수비	자재 대	지급 이자	용역 비	잡지 출	대행 비	영농 조사	기타	계		

13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입니다.

### 1. 목적

이미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중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대구획 경지재정리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2. 추진방향

- 대형기계작업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 제고
  - 경사도 등 지역여건에 따라 필지의 대구획화
-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공동영농 활성화
  -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설치 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부지 조성
  -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영농조직 연계육성
- 논만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주변의 취락과 밭, 영농체계 등을 연계하여 종합개발
  - 농업용수,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조성, 도로사업 등과 병행 및 종합개발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4-'95까지	'96	'97(예산안)	'98-04	합계
사업량(천ha)		5	20(16)	16(16)	159(148)	200
사 업 비	계(백만원)	325,054	362,332	375,970	3,236,644	4,300,000
	국 고	260,561	293,525	303,276	2,582,638	3,440,000
	지방교부금	64,493	68,807	72,694	654,006	860,000

※ ( )는 가을착수 사업량임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지원대상자 :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농조장)
- 지원단가
  - '96가을착수('97봄마무리) : 22,575천원/ha(상한액 24,840)
  - '97가을착수('98봄마무리) : 24,840천원/ha(상한액 27,320)
- 지원기준
  - 국고(농림부 소관) : 예산단가의 10%상한액 범위내에서 80%정율지원
  - 지방교부금(내무부 소관) : 20%정율지원
- 사업내용
  - 필지의 대구획화
    - 필지규모는 경사도 등 지형여건에 따라 대·중구획으로 하되, 포구단위로 동일표고 또는 2-3개내외의 표고로 정지후 가변 논두렁을 설치하여 필지규모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계획(향후 공동영농 또는 규모화 영농에 대처)
  - 용수로와 배수로의 분리·정비 및 시설현대화(콘크리트 구조물 등)
  - 농로의 확장·정비
  - 농촌지역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이용시설부지 조성
  - 집단환지 등을 통한 농업경영조건개선 및 영농규모화의 확대·촉진 등

####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구 분	사업량 (천ha)	단 가 (천원/ha)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고	지방교부금
계			375,970	303,276	72,694
○ 사업비					
- 봄마무리	16	[24,840] 22,575	241,260	193,008	48,252
- 가을착수	16	[27,320] 24,840	122,208	97,766	24,442
○ 환 지 비	16	328	5,248	5,248	-
○ 조 사 비	18	403	7,254	7,254	-

※ [ ] : 상한액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조구역 : 농지개량조합장이 시행
- 비농조구역 : 시장·군수가 시행
- 농조·비농조구역 병합구역 : 큰면적을 관리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함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는 우리부와 사전협의

###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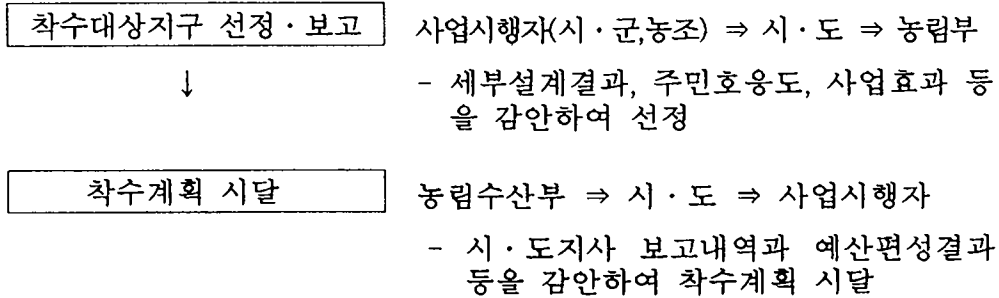
- 농림부 : 식량정책심의관실 기반정비과 (02-500-2644-5)
- 시·도 : 인천 농정과, 경기·충남·전북 기반조성과, 강원 농산지원과, 충북·경북 농지개량과, 전남·경남 농업기반과
- 시·군 : 해당시·군 건설과 (시는 농업진흥과)
- 농 조 : 해당농조 개발과 (일부 농조 : 경지정리과)

### 다.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70년대 이전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중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고, 용·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규모가 작아 물관리 및 대형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역으로써 경사도가 완만(1/200이하)하고 집단화된 지역
  -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 도시,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 .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
  - 비닐하우스설치비와 감보면적 보상 등 각종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지구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정비,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 등과 병행추진하는 경우 병행사업의 공정계획상 동시 추진이 불가피하고, 사업비 절감 등 사업효과의 제고와 병행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지구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
- 우선순위
  - 사업시행여건, 농민호응도 등 사업효과가 높은 순으로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구별 우선순위 결정
  - 행정기관별 또는 지역안배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례 방지
  -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를 우선 선정

## 라. 선정절차 및 시행체계

### ○ 선정절차



### ○ 사업시행체계

절 차	시 행 자 및 내 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예정지조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제6조)</div>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기본계획수립</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제6조)</div>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장관 - 용수원과 입지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 등 사업의 적부 판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시행계획수립 (세부설계등)</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제8조)</div>	○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 사업비 조달방안, 설계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고 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0조)</div>	- 사업시행자가 고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동의서 징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0조)</div>	- 2/3이상 동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이의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 제10조)</div>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신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사업시행인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제12조)</div>	○ 시·도지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고 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법제12조)</div>	- 시·도지사가 고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사 업 착 수</div>	○ 사업시행자

마. 사업시행

(1) 사업추진 일정

구 분	기 간				처리기관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① 기본조사, 세부 설계완료, 및 착수지구 선정	8←→6				사업시행자(시·군, 농조), 시·도, 농림부
②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		6←→8			사업시행자, 시·도
③ 시공 및 준공		9←→4-6			사업시행자
④ 일시이용지지정		12←→4			사업시행자, 농조연
⑤ 확정측량			6←→9		사업시행자, 지적공사
⑥ 분 환 지			9←→3		사업시행자, 시·도, 농조연
⑦ 등 기				4←→11	사업시행자, 등기소

(2)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기정 51350 - 354('95. 10. 13)호로 시달한 기본조사요령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 별도 시달하는 세부설계지침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의 '97년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구분.시행

구 분	시 행 자
기본조사 100ha 미만 100ha 이상	사업시행자가 선정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세부설계 ◦ 농조구역 - 150ha 미만 150ha 이상  ◦ 비농조구역	사업시행자가 선정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사업시행자가 선정

- 농업용수, 배수개선, 집단마을조성사업 등과 병행시행하고자 하는 지구는 병행사업의 조사설계를 실시하고, 공사감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의 조사설계 업무는 농진공에서 담당

○ 600ha이상 대상지구는 일반대형공사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경지정리 편) 및 대구획경지정리 설계요령(조성51306-54:'93.2.13), 기본조사·세부설계시 지시된 내용 등에 의거 추진하고, 토양조사시 현장조사·실내분석시험·보고서확인요령등은 경지정리사업 토양조사철저(조성 51306-66:'93.2.19)로 지시한 공한에 의함.

### (3) 공정계획

○ 공사기간이 추수후에 시작하여 익년도 모내기 이전으로 제약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표준이앙기, 기상, 인력·장비·자재확보, 영농방식(직파)등을 고려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추진

- 공정계획서 작성·제출 및 승인 등은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법규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조사설계기간과 착수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조기 착수토록 함.
- 농민들이 직파 재배를 원하는 지구는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정밀시공을 할 수 있도록 레이저빔이 장착된 장비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며, 물정지 등의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불도져 등을 최대한 투입, 공사완료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직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예 : 4월중 직파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

○ 가을착수사업은 조기착공하여 당해년도말까지 전체계획공정의 40% 이상 달성하고, 봄마무리사업은 이앙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완료

-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못자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못자리 용수의 낭비 및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집단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별 못자리설치 및 이양적기 >

지역별	구 분	못자리 설치			이 양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북 부 (한강이북)	중 모	4.15-30			5.15-30		
	어린모	5. 5-15			5. 5-25		
○중 부 (수 원)	중 모	4.10-5.5	4.10-30	4.10-25	5.10-6.5	5.10-30	5.10-25
	어린모	5. 1-20	5. 1-15	5. 1-10	5.10-30	5.10-25	5.10-20
○중 남 부 (대 전)	중 모	4.10-5.10	4.10-5.5	4.10-30	5.10-6.10	5.10-6.5	5.10-30
	어린모	5. 1-25	5. 1-20	5. 1-15	5.10-6. 5	5.10-30	5.10-25
○남 부 (이리대구)	중 모	4. 5-5.15	4. 5-5.10	4. 5-5. 5	5. 5-6.15	5. 5-6.10	5.5-6.5
	어린모	4.25-6. 1	4.25-5.25	4.25-5.20	5. 5-6.10	5. 5-6. 5	5. 5-30
○극 남 부 (광주진주)	중 모	4. 1-5.20	4. 1-5.15	4. 1-5.10	5. 1-6.20	5. 1-6.15	5.1-6.10
	어린모	4.20-6. 5	4.20-6. 1	4.20-5.25	5. 1-6.15	5. 1-6.10	5.1-6. 5

※ 자료 : 농촌진흥청('95농업기술지도사업 추진지침)

(4) 계획변경

- 노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등 계약관련법규에 의함.
- 다만, 노임.물가변동 및 계획물량의 조정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증액된 사업비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당해 시·도내 사업지구별로 자체조정하거나 지방비로 확보.추진

(5) 공사감리

-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해당분야 공사감독원을 공사규모에 맞게 적정인원으로 고정배치하여 현장주재 감독토록 조치하고 공정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철저
- 일상행정업무에 바쁜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공사계약전에 공사감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준비 및 시공측량 등의 착수초기에 공사감리업무가 소홀함에 따라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공사감리원으로 임명된 자는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도에서는 공사감리원의 적정배치와 현장 주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 공사감리기관은 공사감리원으로 임명된 자가 시공중에 인사 조치되어 공사감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
- 불법하도급 방지와 명예감독제를 도입하여 부실공사 방지
-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 (6)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5-가-지원기준”에 의하여 집행
- 측량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집행
-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인가.보완.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현지 확인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을 소정요율 범위내에서 집행
-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 지원

## (7) 동의서 징구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한 동의서징구는 법적 동의율에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재지주를 비롯한 참여자격자에게 동의서 서식을 송부하는 등의 조치로 참여 자격자가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8)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에 의한다

## (9) 환지업무

- 환지업무는 농림부에서 시달한 환지업무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 총회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로 환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의 집단화 등을 위한 집단환지, 농업경영합리화 및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시설 등의 부지조성을 위한 창설환지제도 활용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필요한 경우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
  - 창설환지계획은 반드시 수혜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설부지에 한하여 시행
  -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단환지(교환·분합)청산금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를 수혜자, 환지업무대행자, 지적관서, 대한지적공사, 등기소 등 환지업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추진
  - 공사착수전 (사업시행자)  
창설환지계획수립, 중.감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접수, 실경작지 조사,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 수혜자총회소집, 환지청산금 지원대상 및 절차홍보, 공사착수신고
- 환지업무를 농지법 제14조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중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등의 사업과 연계추진

- 공사착수후

업 무 구 분		시 행 자	기 한
일시이용 지 지정 (가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인계</li> <li>. 일시이용지 지정 계획서 제출</li> <li>. 일시이용지 지정 도서 납품</li> <li>. 일시이용지 지정 계획서(안) 통지 및 공고</li> </ul>	사업시행자 → 농조연 농조연 → 사업시행자  농조연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수혜자	착수년도 12.10 3. 31-4. 30  5. 10  즉 시
확정측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측량 계약</li> <li>. 확정측량도서 납품</li> <li>. 확정측량도서 인계</li> <li>. 리동정리 신청</li> </ul>	사업시행자 →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농조연 사업시행자 → 관할지적관서	6. 30 8. 31 9. 10 9. 15
환지계획 (본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인계</li> <li>.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여 신청</li> <li>. 행정구역 변경신청</li> <li>. 환지도서 납품</li> <li>. 환지계획인가 신청</li> <li>.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li> </ul>	사업시행자 → 농조연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 관할지방자치 단체 농조연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시·도지사	9. 10 10. 20  10. 20  11. 20 2. 10 3. 10
환지청산금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li> </ul>	사업시행자 → 수혜자	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 이내
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및 대위등기 촉탁</li> <li>. 환지등기 촉탁</li> <li>. 환지 등기</li> </ul>	사업시행자 → 등기소  사업시행자 → 등기소 등기소 → 사업시행자	6. 20  8. 1 8. 30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 전후의 작부체계 및 경운.이앙.물관리.수확 등 영농형태 등의 변화, 노동시간 절약 및 영농환경 변화, 주민 소득증대 효과, 주민호응도등을 조사·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는 등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책개선에 반영함.
- 영농과정 등에서 논두렁 및 수로부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식된 사례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토록 하여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전후의 전경사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보관함.
-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감리자 등은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사업지구내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조사설계자, 사업시행자, 시공업체, 공사감리자 등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내용 홍보 및 조사설계와 시공의식 고취토록 함.
- 경지정리공사지연 등으로 직파 재배나 이앙 등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관개급수 차질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되지않도록 사업시행자와 공사 감독자는 사전에 물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나. 보 고

서식번호	보 고 사 항	보고기일	비고
1	○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3 월말	
2	○ 경지정리 조사설계 및 시설계지구 보완 결과보고	6 월말	
3	○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구 선정보고	8 월말	
4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결과보고	승인후 즉시	
5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보고	입찰후 즉시	
6	○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월보)	익월 5일	
7	○ 환지업무 납품실적 보고	가환지 5.31 본환지 12.10	
8	○ 확정측량 계약현황 보고	7. 10	
9	○ 확정측량 결과보고	10. 10	
10	○ 환지청산금정수 및 교부현황보고	1. 15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농업인등은 해당 시·군 및 농조에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해당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신청

- 예산을 신청할시는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소요액과 면적을 구분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결과 보고

코드	위 치		지구명	면적	사업 시행 자	면 적			면적 조정 사유	ha사업비		기승인사업비			조정사업비		
	시군	읍면				기 승 인	조 정	증 감		기 승 인	조 정	계	국고	지 방 비	계	국고	지 방 비
						①	②	③= ②- ①			④			⑤			

(단위:ha, 천원)

증 감			전년도소요액			금년도소요액			금년도예산액			금년도부족액			비고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계	국고	지방 비	
⑥= ⑤- ①			⑦			⑧			⑨			⑩= ⑧- ⑨			

<작성요령>

- 대구획경지정리는 별도작성하되 지방비는 지방교부금으로 작성
- 전년도 집행 조사설계비는 < >로 외서로 작성
- 농업용수, 배수개선 등 병행사업비는 ( ) 외서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경지정리 조사설계 및 시설계지구 보완결과 보고

코드	위 치		지구명	면 적			설계 년도	설계 기관	사업 시행자	총사업비				
	시군	읍면		계	농조	시군				보완전	ha당	보완후	ha당	증감

(단위 : 천원)

내 역 (보 완 후)								보완사유
공사비	자재대	기본조사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확정측량비	기타	

<작성요령>

- 농업용수, 배수개선 등 타사업 지원사업비는 ( )로 외서 표기
- 기본조사비와 측량설계비중 전년도 집행분은 ( )내서로 상단에 작성
- 보완사유는 간단하게 작성(예, 단가보완, 물량조정 등)

[별지 제3호 서식]

###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 선정보고

(단위:ha, 천원, Km)

순위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진흥지역		차등화			감보율	실제금액		조정금액	사업시행자	경사도	토양처리대상 재복토	용수확보율	용수로		배수로		주민호용도	설계년도	설계기관	병행사업 지구명	완공연도	타용도전용여부	기타특이사항	
			시군	읍면	농계	시군	비진흥	대구획	중구획	소구획	간이		총액	ha당						총액	ha당	총연장	토공								구조물

<작성요령>

- 면적계와 진흥지역, 차등화면적이 일치
- 기타특이사항은 농업용수, 배수개선등 사업명 등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승인 결과보고

(단위 : 천원)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ha)			차등화 (ha)			사업시행사	공사감독기관	세부설계기관	사업비		재원내역		세 부 내 역										
		시군	읍면	농계	농조	시군계	대구획	중구획	소구획				간이식	총	ha당	국고	지방비	공사비	공감비	관리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확정측량비	기타			
계																											
착공																											
미착공																											

<작성요령>

- 1) 미착공지구에는 기본조사후 미세부설계지구도 포함, 당해년도 가을착수를 위하여 설계하여 미착공지구만 작성
- 2) 기본조사비중 전년도 기집행비는 ( )내서로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보고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실제가격(A)	예정가격(B)	낙찰가격(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일자	비고	
	시군	읍면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C/A	C/B			

<작성요령>

- 낙찰자 소재지 : 본사 소재지 시군명 기입
- 비고 : 제한,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계 획			실 행			진도(%)		부진사유	
	시군	읍면			면적	계	가을착수	봄마무리	계	가을착수	봄마무리	③/②		③/①
				①	②			③						

<작성요령>

- 부진사유 : 간략하게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 환지업무 납품 실적 보고

도별	지구명	위 치		사업시 행자	업 무 량(ha)			납품일 자	비고
		시군	읍면		승 인	납 품	증 감		

[별지 제8호 서식]

### 확정측량 계약 현황 보고

(단위 : ha)

지구명	위 치		시행자	면 적	계약일 자	완료예정일	비 고
	시군	읍 면					
개 지구							

[별지 제9호 서식]

### 확정측량 결과보고

지구명	위 치		시행자	면 적			착수일 자	납품예 정일	납품일 자	측량비 정산액
	시군	읍면		계 약	확 정	증감				

[별지 제10호 서식]

###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상황 보고(연보)

시행청	지구명	인원	확정액	징수액	미징수액		교부액	미교부액		지연사유 및 대책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입니다.

## 1. 목 적

- 소액보조사업을 통합단일세항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간에 탄력적으로 집행
- 지방자치단체별 농정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 토록 별도의 실적가산금을 지원

## 2. 추진방향

- 소액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선호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자체의 농정 추진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개발을 촉진하고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
- 『농림사업실시규정』, 절차이행평가, 농림사업 추진상황평가,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기여도평가 등의 평가항목을 포함한 농림사업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적가산금을 지원

## 3. 근거법령

- 지원근거 :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 '95. 7. 6. 시행) 및 쌀생산종합대책 시장계획('96. 4. 6)

## 4. 연도별 지원계획

- 개별 사업시행지침의 지원계획에 따름

\* 세부사업별 · 시도별 : '97.국고보조 지원액 : [별표]와 같음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소액보조사업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 공공사업(14-1)
-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 자율사업(2)
- 공동·항공방제 : 공공사업(14-2)
- 지하수개발 : 공공사업(14-3)
- 소규모 지표수개발 : 공공사업(14-4)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 공공사업(14-5)
- 한우쌍자 생산지원 : 공공사업(14-6)
- 개량물꼬지원 : 공공사업(14-7)

#####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 지역특화사업개발 지원 : 공공사업(14-8)
-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 공공사업(14-9)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합 계		
			계	보조	용자			
계		135,981.2	66,737.6	66,737.6		67,737.6	1,506	
<소액보조사업>		75,981.2	36,737.6	36,737.6		37,737.6	1,506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551개소	1,861.2	930.6	930.6		930.6		
○ 농약안전사용장비		3,412	953	953		953	1,506	
- 방제복	100천착	2,000	600	600		600	800	
- 방제기	4,200천대	1,412	353	353		353	706	
○ 공동·항공방제	230천ha	6,540	3,270	3,270		3,270		
- 공동방제	190	5,700	2,850	2,850		2,850		
- 항공방제	40	840	420	420		420		
○ 지하수 개발		14,000	7,000	7,000		7,000		
- 암반관정	334공	10,000	5,000	5,000		5,000		
- 집수정	6지구	4,000	2,000	2,000		2,000		
○ 소규모지표수 개발	43지구	27,160	13,580	13,580		13,580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90지구	12,552	6,276	6,276		6,276		
○ 한우쌍자 생산지원	9개소	6,456	2,728	2,728		3,728		
- 실험실 건축	(4개소)	1,456	728	728		728		
- 한우종축구입비	9개소	5,000	2,000	2,000		3,000		
○ 개량물꼬지원	500천개	4,000	2,000	2,000		2,000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60,000	30,000	30,000		30,000		
○ 지역특화사업 개발지원	5개소	20,000	10,000	10,000		10,000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00개소	40,000	20,000	20,000		20,000		

## <사업추진체제>

### 가. 사업주관기관·사업담당부서·대상자선정 등

-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름

### 나. 사업 시행

- 소액보조사업
  -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에서 정한 시·도별 예산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액보조사업의 총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단, 소액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집행은 세부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함
  - 1차 내역변경은 '97. 1. 15까지 하여야 함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 농림사업 평가결과 및 쌀생산종합대책 시상계획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지원하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지역특화사업 개발지원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탄력적으로 집행하며, 집행방식은 세부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함
  - 평가결과 확정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세부사업별 내역을 확정

### 다. 기타 사항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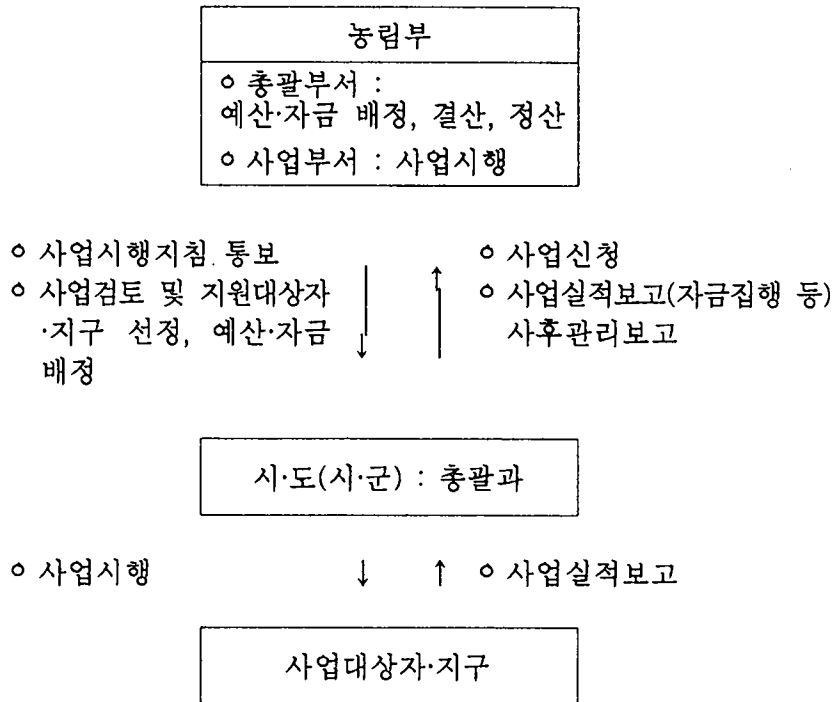
- 농림사업평가 ( '97. 1-3 ) → 결과 확정( '97. 4 ) →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업계획 접수( '97. 5 ) → 사업 확정 및 예산 배정( '97. 6 )
- 쌀생산종합대책 평가('96. 12) → 우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접수 ('97. 1) → 사업확정 및 예산배정('97. 2)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보고·기타사항 등

-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정산보고는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으로 총괄보고하며 개별사업별 보고서도 첨부하여 '98.3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

### 나. 사업시행체계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소액보조사업>

- 소액 보조사업은 농림사업평가와 관계없이 시·도의 신청에 따라 예산 계상

- 시·도지사는 '98소액보조사업 요구시 총액을 요구  
단, 세부내역별 요구액은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사업은 자율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고, 세부내역별로 지방자  
치단체별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요구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농림사업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별표]

## 세부사업별·시도별 국고보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계	소액보조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소계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	공동항 공방제	지하 수 개발	소규모 지표수 개발	지방 관리 방조 제개 보수	한우 쌍자 생산 지원	개량물 꼬지원	지역특화사업 개발지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계	66,737.6	36,737.6	930.6	953	3,270	7,000	13,580	6,276	2,728	2,000	30,000
서울	* 7.200	* 7.200	* 7.2	* -	*					*	
부산	54.756	54.756	6.0	3.756	45.00						
대구	27.580	27.580	7.8	1.200	16.50					2.08	
인천	646.172	646.172	16.2	6.852	51.00	45		511		16.12	
광주	35.140	35.140	7.2	1.800	25.50					0.64	
대전	12.244	12.244	3.0	1.104	7.50					0.64	
경기	2,976.470	2,976.470	107.4	60.000	630.75	1,200		705	60	213.32	
강원	1,213.216	1,213.216	72.0	77.436	127.50	525			250	161.28	
충북	3,188.000	2,488.000	64.2	54.600	162.00	1,763	700		200	244.20	
충남	4,465.216	3,628.216	105.0	159.216	502.20	1,160	1,537	461	350	190.80	
전북	7,000.872	5,162.872	100.2	96.132	415.50	1,422	3,375	760	455	377.04	
전남	9,751.100	8,300.100	141.0	154.760	541.50	255	4,826	3,407	200	225.84	
경북	3,733.260	6,750.260	148.8	151.800	393.90	330	1,809		450	449.76	
경남	3,488.574	3,991.574	136.2	100.944	345.15	300	1,333	432	723	118.28	
제주	137.800	1,470.800	8.4	83.400	6.00				40		
유보	30,000.000										30,000

\* 백만원 단위미만 숫자는 소숫점이하로 표시함

[별지 제1호서식]

## 소액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

(단위 : 천원)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별지 제2호서식]

## 실적가산금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시·군별	사업명	세부사업 · 시설명	사업 량	사업비(백만원)				완공계획 (년,월,일)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사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역특화사업 개발지원사업>	저 수 지 양 · 배수장 보조수원공  . . 비가림시설 예냉 시설 수출포장재  . .						
00 시 . . 00 군 . .								

14 -1	<b>소규모 농업시설 및 농정시책추진(공공)</b> (농지관리위원회운영)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관리과입니다.

### 1. 목 적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구조개선 촉진 도모

### 2. 추진방향

-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행정 추진 도모

###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46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4,649	개소 1,548	1,550	1,551	(계속)	사업)
사	계	10,224	6,502	1,860	1,862		
업	- 보조	5,112	3,251	930	931	(계속)	사업)
비	- 지방비	5,112	3,251	930	931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1) 지원의 필요성

농지법의 시행에 따라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고 현장감 있는 농지행정추진 도모

##### (2) 지원근거

농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내용 : 각 농지관리위원회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경비 및 농민 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위원회당 년 120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50%
- ※ 농특회계에서 지원

##### (4) 사업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고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줌으로써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목적의 농업구조개선과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기여

#### 나. '97사업비내용

-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1,862	931	931	-	931	-
회의경비, 수당등	1,551개소	1,862	931	931	-	931	-

※ 시·도별 자금지원계획은 [별표]와 같음.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지관리과 02)503-7265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농지관련부서)
- 시·군 : 산업과(농지관련부서)

다. 위원회 구성(시·구·읍·면단위로 구성)

- 위 원 장 : 시·구·읍·면장
- 위원의 정수 : 위원회당 10~40인
  - 동·리를 감안하여 시·군 조례로 정함
  -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농업인대표(5~30인)·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
  - 농업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5~10인)
    - 농업관련기관 : 단위농협, 농촌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소 및 출장소, 농수산물통계출장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 ※ 주요기능

- (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의무부과대상 농지
- (나) 농지이용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농지법 제16조)
- (다)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농지법 제25조)
- (라) 농지의 전용허가·신고·협의에 관한 확인(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마)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농지법 제6조, 제8조)
- (바)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등(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집행후 익년도 3월말까지 집행 실적 정산보고. 단,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 총액정산에도 포함하여 따로 보고할 것

[ 별 표 ]

## 시 · 도별 국고지원계획

(단위 : 천원)

	위 원 회 수	지 원 액	비 고
계	개소 1,551	930,600	
서울	12	7,200	
부산	10	6,000	
대구	13	7,800	
인천	27	16,200	
광주	12	7,200	
대전	5	3,000	
경기	179	107,400	
강원	120	72,000	
충북	107	64,200	
충남	175	105,000	
전북	167	100,200	
전남	235	141,000	
경북	248	148,800	
경남	227	136,200	
제주	14	8,400	

14 -2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공동·항공방제)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환경농업과입니다.

### 1. 목 적

- 도열병·벼멸구등과 같이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개별농가단위로는 병해충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찰결과에 따라 공동방제를 유도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2. 추진방향

- 들발병해충, 외래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시·군별 병해충방제 협의회에서 발생(예상)동향, 이병성품종 재배상황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약종등을 결정, 마을 및 들녘 단위로 공동방제 실시
- 대상지중에서 대단위 평야지는 항공방제를 추진하여 방제비용 절감 및 효과제고

### 3.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제19조내지 제28조
- 동 사업은 WTO농업협정의 「정부의 일반서비스」로 허용보조대상사업임.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천ha 8,834	1,654	230	230	960	5,760	
사 업 비	계	221,430	18,370	6,120	6,540	27,200	163,200
	국 고	110,715	9,185	3,060	3,270	13,600	81,600
	지방비	110,715	9,185	3,060	3,270	13,600	81,6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사업배경

- 농업인들의 농약에 대한 피해의식,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영향으로 방제작업이 줄고 있으나 적기 병해충 방제로 쌀생산 감소의 방지를 통한 쌀생산 기반의 안정적 구축과 주요병해충에 대한 공동방제 작업을 지도·독려할 필요가 있음.

※ 공동방제는 '62년부터(항공방제는 '70년부터) 정부가 계속 지원하여 왔음.

##### (2) 지원대상자(지역)

- 농촌지도기관의 예찰결과 병해충발생이 많은지역과 병해충 상습발생 지역의 농업인

##### (3) 지원단가

- 공동방제(농약대지원) : 30천원/ha(국고50%, 지방비50%)
- 항공방제(헬기용역대지원) : 21천원/ha(국고50%, 지방비50%)

##### (4)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50%

####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계	천ha 230	백만원 6,540	3,270	3,270	-
공동방제	190	5,700	2,850	2,850	-
항공방제	40	840	420	420	-

※ 시·도별 지원계획은 [붙임]과 같음.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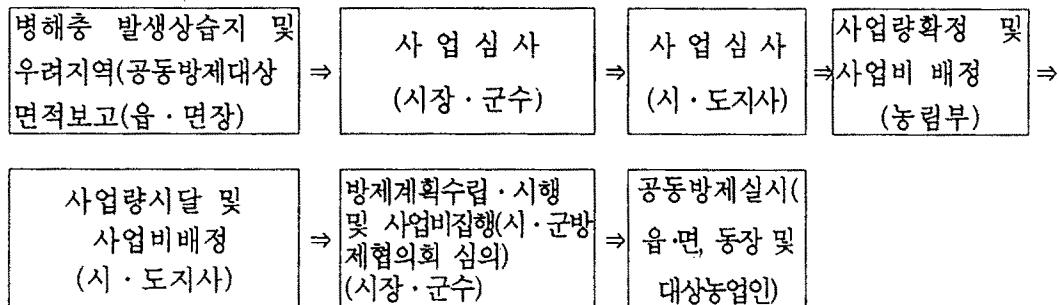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환경농업과(02-503-7284~5)
- 시·도 : 농정국 농산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읍·면) : 산업과(산업계)

다.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체계



(2) 사업실시 및 사업비 지원방법

○ 공동방제

- 농촌지도기관의 예찰결과 및 시·군방제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약을 덜 쓰고도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 방제 실시
- 농촌노동력의 부족, 인건비 상승등에 따라 예상되는 방제소홀에 대비하여 위탁영농회사, 공동방제단 등 공동조직을 우선 활용하여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피해 최소화
- 약종은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결정하며 소요 농약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

○ 항공방제

- 농촌지도기관의 예찰결과 및 시군방제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중 대단위 평야지등 항공방제가 용이한 지역에 용역대를 지원하여 적기에 동시 방제 실시
- 방제일정은 입지조건, 농가의 의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고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함
- 항공기사정, 강우등 일기불순으로 적기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상공동방제로 전환 가능

(3) 기타사항

-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의 소액보조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소액보조사업간 예산변경 필요시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차 내역변경신청은 '97. 1. 15까지임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군간 사업비의 전배조치를 할 수 있음.

<행정사항>

가. 농약안전사용지도

- 공동·항공방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종선택과 대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함.
- 특히 항공방제시 약제 살포로 인하여 상수원, 양식(어)장등을 오염 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관계기관 및 해당농가와 긴밀한 협조
- 항공방제 실시전 항공방제 실시계획(일시, 지역등)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나. 보고 기타

- 시·도지사는 공동·항공방제실적과 사업비 정산내역을 익년 3월말까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의 총액 및 개별사업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기간은 1.1 ~ 12.31까지로 함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98예산 신청

- 시·도지사는 '98 소액보조사업 요구시 총액만 신청함. 단 다음내용을 참고하여 공동·항공방제 사업계획을 세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 병해충 상습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을 조사, 사업계획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나.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촌지도기관의 병해충 예찰결과 병해충발생이 많은 지역과 병해충 상습발생지역의 농업인
- 우선기준
  -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책임하에 선정
- 선정절차
  - 농촌지도기관의 병해충 예찰결과에 따라 시·군단위방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확정

[ 불 임 ]

'97 시·도별 지원계획

사업명 : 공동·항공방제

(단위 : ha, 천원)

시·도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수익자부담금	
계	230,000	6,540,000	3,270,000	3,270,000	-	
부 산	3,900	90,000	45,000	45,000	-	
대 구	1,100	33,000	16,500	16,500	-	
인 천	3,400	102,000	51,000	51,000	-	
광 주	1,700	51,000	25,500	25,500	-	
대 전	500	15,000	7,500	7,500	-	
경 기	50,300	1,261,500	630,750	630,750	-	
강 원	8,500	255,000	127,500	127,500	-	
충 북	10,800	324,000	162,000	162,000	-	
충 남	34,500	1,004,400	502,200	502,200	-	
전 북	27,700	831,000	415,500	415,500	-	
전 남	36,100	1,083,000	541,500	541,500	-	
경 북	27,100	787,800	393,900	393,900	-	
경 남	24,000	690,300	345,150	345,150	-	
제 주	400	12,000	6,000	6,000	-	

사업명 : 공동방제

(단위 : ha, 천원)

시·도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수익자부담금	
계	190,000	5,700,000	2,850,000	2,850,000	-	
부 산	900	27,000	13,500	13,500	-	
대 구	1,100	33,000	16,500	16,500	-	
인 천	3,400	102,000	51,000	51,000	-	
광 주	1,700	51,000	25,500	25,500	-	
대 전	500	15,000	7,500	7,500	-	
경 기	22,800	684,000	342,000	342,000	-	
강 원	8,500	255,000	127,500	127,500	-	
충 북	10,800	324,000	162,000	162,000	-	
충 남	31,100	933,000	466,500	466,500	-	
전 북	27,700	831,000	415,500	415,500	-	
전 남	36,100	1,083,000	541,500	541,500	-	
경 북	24,300	729,000	364,500	364,500	-	
경 남	20,700	621,000	310,500	310,500	-	
제 주	400	12,000	6,000	6,000	-	

사업명 : 항공방제

(단위 : ha, 천원)

시·도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수익자부담금	
계	40,000	840,000	420,000	420,000	-	
부 산	3,000	63,000	31,500	31,500	-	
대 구	-	-	-	-	-	
인 천	-	-	-	-	-	
광 주	-	-	-	-	-	
대 전	-	-	-	-	-	
경 기	27,500	577,500	288,750	288,750	-	
강 원	-	-	-	-	-	
충 북	-	-	-	-	-	
충 남	3,400	71,400	35,700	35,700	-	
전 북	-	-	-	-	-	
전 남	-	-	-	-	-	
경 북	2,800	58,800	29,400	29,400	-	
경 남	3,300	69,300	34,650	34,650	-	
제 주	-	-	-	-	-	

14 -3	<b>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공공) (지하수개발)</b>
----------	---

※ 이사업 시행침체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 I 지하수개발

### 1. 목 적

지표수개발이 어려운 가뭄 우심지역에 합리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

### 2. 추진방향

가뭄우심지역으로 농어촌발전계획의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

### 3.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 4.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량:지구, 사업비: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계	사업비	301,251	46,523	7,000	14,000	17,800	215,928
	보 조	177,387	46,523	7,000	7,000	8,900	107,964
	지방비	123,864	-	-	7,000	8,900	107,964
대 형 관 정	사업량	공 9,124	1,413	167	334	467	6,743
	사업비	264,863	41,435	5,000	10,000	14,000	194,428
	보 조	155,649	41,435	5,000	5,000	7,000	97,214
	지방비	109,214	-	-	5,000	7,000	97,214
집 수 정	사업량	ha 5,208	1,522	340	303	380	2,663
	사업비	36,388	5,088	2,000	4,000	3,800	21,500
	보 조	21,738	5,088	2,000	2,000	1,900	10,750
	지방비	14,650	-	-	2,000	1,900	10,750

※ 대형관정은 공당 3ha 급수 기준 ( 위 계획은 논용수 기준임)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사업추진 배경

지표수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가뭄시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 지원

##### (2) 지원대상 : 시장,군수

##### (3) 사업내용

○ 대형관정 : 수원공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시행

- 수원공시설 : 지구답사, 착정공사(그라우팅 포함), 우물자재설치, 양수시설 및 수질검사 등

- 이 용 시 설 : 수증모타펌프, 전기시설, 양수장옥 및 송수관 등

##### (4) 지원조건 : 암반관정 1공당 15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이상) 집수정 (국고 50%, 지방비 50% 이상)

##### (5) 시설설치기준

###### ○ 대형관정

우물구경(mm)	150	200	250
착정구경(mm)	200	250	300
착정심도( m )	50~100(제주도 100~250)		

※ 암반관정의 기준채수량 : 250톤/일/공, 단, 도서 및 해안지역, 산간 오지 및 대체수원개발이 어려운 특수지역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50톤/일 까지 조정 시행가능

○ 집수정 : 심도 8m내외 구경 3,500mm, 채수량 4,000~7,000톤/일

####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지구, 사업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대출	보조		
계	340	14,000	7,000	-	7,000	7,000	-
지하수개발	334	10,000	5,000	-	5,000	5,000	-
집수정	6	4,000	2,000	-	2,000	2,000	-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2]와 같음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 940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량과,농업기반과,농산 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

라.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기본계획수립)→예정지보고→예산내시→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계약 및 시공→준공

##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선정

(1) 선정기준

- 대형관정
  - 가뭄우심지역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에 반영된 지구
  - 가뭄우심지역으로 지하수 외의 타 수원공개발 부적지로서 농조편입이 가능하거나, 농지개량계조직 운영이 가능한 지구
  - 지방비 또는 수혜자의 일부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조사신청하여 실시한 수맥조사시 시추한 시추공중 채수가능량이 150m<sup>3</sup>/일 이상인 시추공은 시장·군수가 인수 하여 당년도 지하수개발사업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집수정개발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자갈,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다량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 지하수 함양원이 되는 넓은 유역이 있는 지역
  - 하상의 구배가 완만한 지역
  - 수혜지구가 경지정리사업이 기 실시되었거나, 예정지구로 병행사업 실시가 가능하여 지구내의 용수지선 및 지거의 공사비 부담이 없는 지구

(2) 우선순위

- 가뭄우심지역으로 지표수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 수맥조사가 완료되었거나, 개발전에 수맥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최근 2-3년간 가뭄현황을 분석하여 특별히 가뭄우심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순위 변경은 가능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지표수개발이 불가능한 답작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요청
- (2)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가뭄의 시급성, 영농여건 등을 현장확인 후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농발위 심의등)

다. 예정지조사

- (1)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예정지 조사를 실시
- (2) 공공관정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주변 영향 등을 검토하여 지하수장애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여부 판단.

라.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1) 개발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조사(수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조③항에 의한 전문기관이 시행계획 수립
- (2) 착정후 양수시험 등 각종 시험을 통하여 안정지하수위, 양수량 등을 확정하고 스트레나의 위치, 양정의 계산 등에 따른 수중모타 펌프의 사양을 결정하고 (1)항의 전문기관에 의한 검토를 받아 세부설계(지하의 실여건을 반영한 세부설계)
- (3) 지하수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 폐공처리비, 수질검사비 및 유량계, 수위계, 출수장치 등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4) 집수정개발사업의 계획수립시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5) 본 요령 9-가-(5)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하수조사(수맥조사)비를 개발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사 대행기관에서 실시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인가 : 시장, 군수(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사업은 시·도지사)
- (2) 공사발주 : 시장·군수(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사업은 시·도지사)

### 나. 공정계획

- (1)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 수립
- (2) 사업시행자는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함.

### 다. 시행계획변경

- (1)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 사업의 소액보조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소액보조사업간 예산변경 필요시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차 내역변경신청은 '97. 1. 15까지임
- (2) 시행계획변경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실시하되, '97년도 착공지구 부터는 시행계획변경(물량변동)이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함.

###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준함.

### 마. 공사감리

- (1) 지하수개발 : 사업시행자 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조③항에 의한 전문기관
- (2) 이용시설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
- (3) 수원공개발(착정)시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주민대표 등의 입회하에 오염방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보존한다
  - 착정공사는 지표면에서 암반층까지 굴착후 케이싱을 삽입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한 후 양생이 된다음 암반층을 굴착

○ 개발실패공에 대하여는 폐공관리대장에 기입하고 지하수개발·이용폐쇄 모식도에 따른 폐공처리

(4) 이용시설은 지하수시설 표준설계도, 지하수법령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계획 설계요령 및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현지여건과 부합되게 설계 시행

#### 바. 사업준공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2)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음.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5) 준공처리시 양수시험은 사업시행자, 몽리민대표 및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6)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채수량, 관개면적 등을 재확인하여 조정보완

(7) 시행계획수립시 반영된 폐공처리비는 시공결과에 따라 계상된 공사비 범위내에서 정산처리

### <사업비 지원>

#### 가. 예산의지원

(1) 가뭄우심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2) 지하수외의 타 수원공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농조편입을 원하거나, 농지개량계 조직 운영이 양호한 지구

(3) 지방비 또는 수혜자의 일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지구

(4) 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5) 가뭄대책의 시급성등으로 인하여 수맥조사가 실시되지 않은지역에 예비비 또는 지방비 지원에 의한 암반관정개발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지하수조사(수맥조사)비를 개발비에 포함 지원할 수 있다.

####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원
- (3)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4)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한다.

#### <기타사항>

-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의 요율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시·도지사는 농림사업평가 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2)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한다.
- (3) 시·도지사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수리 51322-444 : '94. 9.23)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나. 보고·기타

- (1)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시·도지사 → 농림부 [별지 제1호서식]
- (2) 공정계획보고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별지 제2호서식]
- (3)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3호서식]
- (4) 익년도 사업대상지 선정보고 : 시·도지사 →농림부[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9.20까지 보고)

다. '98예산 요구시 소액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요구하되 부속자료로 지하수개발 사업 예산 요구서도 제출

[별표1]

□ 지하수개발사업 시·도별 가내시(안)

(금액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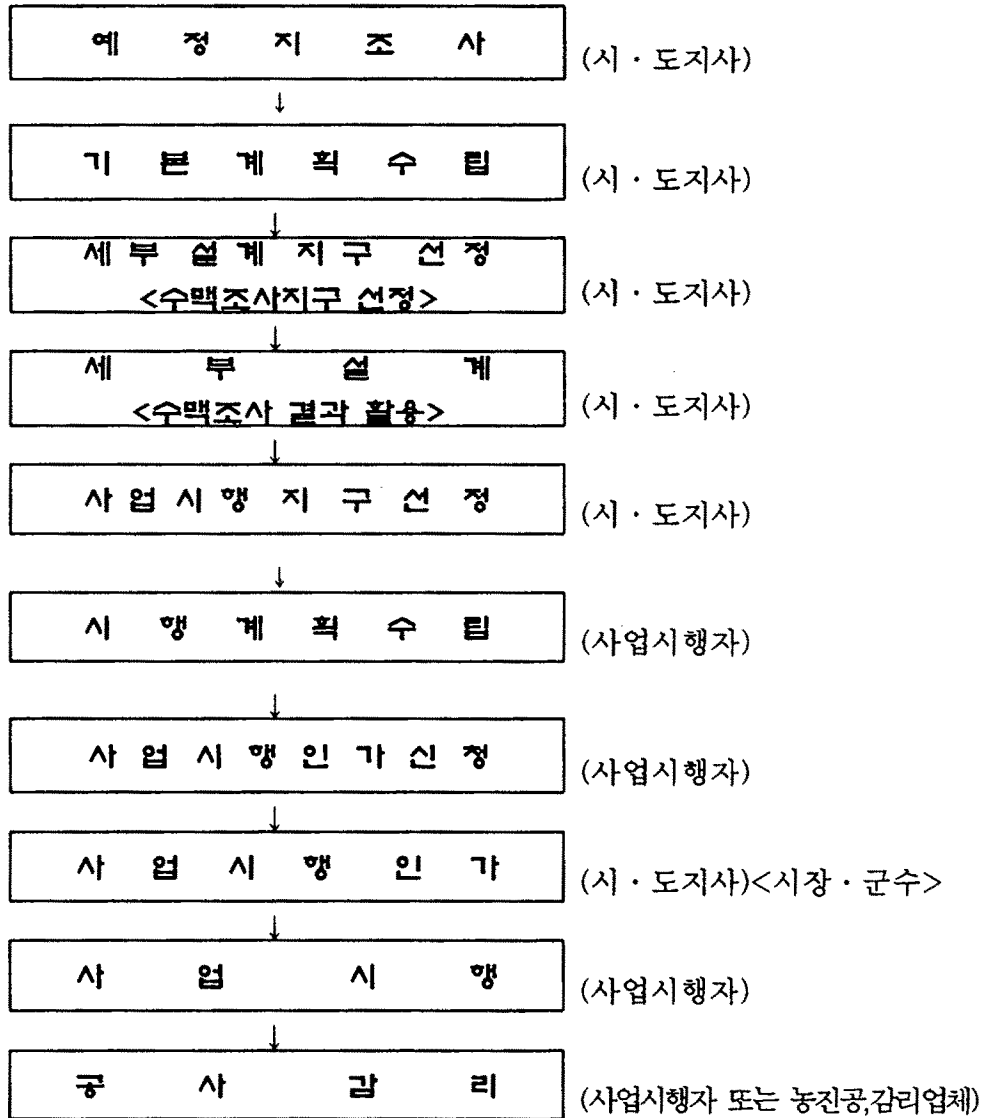
시·도	'97예산(안)					'96 예산					증 감	
	계(A)	암반관정		집수정		계(B)	암반관정		집수정		(A-B)	%
		공수	금액	개소	금액		공수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7,000	334	5,000	7	2,000	(23,160) 7,000	(772) 167	(23,160) 5,000	4	2,000	-	-
인천	45	3	45			60	2	60			• △15	△25
경기	1,200	80	1,200			360	12	360			840	233
강원	525	35	525			150	5	150			375	250
충북	1,763	44	660	3	1,103	250	5	150	1	100	1,513	605
충남	1,160	78	1,160			1,260	12	360	1	900	△100	△8
전북	1,422	35	525	4	897	1,590	19	590	2	1,000	△168	△11
전남	255	17	255			(10,500) 1,550	(350) 52	(10,500) 1,550			△1,295	△84
경북	330	22	330			(6,660) 1,250	(222) 42	(6,660) 1,250			△920	△74
경남	300	20	300			(6,000) 530	(200) 18	(6,000) 530			△230	△43

※ ( )는 외서 : '96가뭄대책 지원

[별표2]

## 지하수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 < >는 암반관정 개발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 개발사업 시행인가(지구선정) 결과보고**

시·군	사업명	지구수	용수 활용						사업비 (천원)				수맥조사		비고		
			총 이용량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 수산업 등	계	국고	지방 비	기타		실시	미실시
				이용 량	가구 수	급수 인구	이용 량	답작	전작								
				m/ 일	m/ 일	호 명	m/ 일	ha	ha								
계	암반 관정	집수정	m/ 일	m/ 일	호 명	m/ 일	ha	ha	m/ 일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사업 공정계획

○○군 ○○면 ○○지구 사업시행년월일 :      착공년월일 :

(금액단위 : 천원)

과 목	승 인 액		○○년도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공정	사업 량	사업 비	사업 량	사업 비	1/4분 기	2/4분 기	3/4분 기	4/4분 기	
계														
○ 수 원 공	공													
○ 이용시설														
- 양 수 장	㎡													
- 물 탱 크	㎡													
- 송·배수관	m													
- 기 타														
○ 용지매수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 리 비														
○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 지하수개발사업( )분기 추진상황 보고

시.도 (금액 : 백만원)

시.군	구분	사업계획			용수활용계획				추진실적				자금집행		
		공수	사업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수	사업비		진도 (%)			
			계	국고	지방비	이용량	인구	답작		전작	계		국고	지방비	
															금액
계					m <sup>3</sup> /일	인	ha	ha							

주1] 구분란 : 대형관정, 집수정으로 표기



## II. 지하수개발조사 (1819-농촌생산기반 및 용수개발조사, 211-농촌생산기반 및 용수개발조사, 411-민간자본이전)

※ 이 사업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사업은 아니나, 지하수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본 지침에 포함하여 추진

### 1. 목 적

- 가뭄상습지역의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부존상태 및 개발가능량 등을 조사하여 개발성공율을 제고함으로 효율적인 가뭄대책 추진
- 해안 및 도서지방의 지하수 과다개발 이용으로 인한 지하 해수침투의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해수로 인한 피해예방대책 수립

### 2. 추진방향

#### 가. 수맥조사

-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조기조사 완료로 지하수개발 성공률 제고
-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수맥조사를 2000년까지 완료

#### 나. 해수침투조사

- 도서 및 해안지방의 지하 해수침투 영향을 조사하여 피해 예방대책 수립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계	사업비	46,061	10,424	3,531	4,480	7,400	20,226
	보 조	46,061	10,424	3,531	4,480	7,400	20,226
수맥조사	사업량	57,183 ha	10,489	4,700	6,000	10,000	25,994
	사업비	44,561	10,024	3,431	4,380	7,300	19,426
	보 조	44,561	10,024	3,431	4,380	7,300	19,426
해수침투조사	사업량	180 개소	48	12	12	12	96
	사업비	1,500	400	100	100	100	800
	보 조	1,500	400	100	100	100	8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사업추진배경

가뭄시 지하수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사전수맥조사로 개발 성공률 제고

##### (2) 지원대상 : 시장.군수

##### (3) 사업내용

###### ○ 지하수 기초조사(수맥조사)

- 답 사 : 현지여건 및 기존 조사자료 정리
- 지표지질조사 : 분포지질과 관련된 지하수 부존성 검토
- 시설관정조사 : 지하수 부존량 및 지하수위,수질,사용수량등 확인
- 선 구조 추출 : 위성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지질구조 파악
- 물 리 탐 사 : 대수층 심도 및 지하지질 구조조사(전탐 또는 탄성파 탐사)
- 수위관측공설치 : 지구내 지하수유량 및 지하수위 확인
- 시 추 조 사 : 지하지질 및 지하수위 확인
- 측정 및 양수시험 : 대수층의 수리학적 특성과 지하수 이용가능량 확인
- 수문 및 토질조사 : 지표수와의 관계, 개발가능면적, 이용시설 설계
- 수리지질도(수맥도)작성

지하수조사 성과품은 조사보고서와 도면으로 발간하되 수리지질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 지형, 지하수위, 수질특성 및 기반암 추정 등고선
- . 가능 채수량 분포도 및 지하수개발시설 지하수개발가능 지역
- . 지질도, 지질단면도
- . 시추 주상도 및 제 양수시험자료
- . 조사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전압별 전원거리
- . 개발적지에 대한 공종별 추정사업비
- . 제 조사지점의 위치 및 기타 지하수법 및 총리훈령(제304호)에규정된 사항등

###### ○ 광역수맥조사

- 가뭄상습지역으로 시·도지사가 가뭄대책의 효율적추진을 요청할시 농어촌용수구역단위의 수맥조사를 광역수맥조사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추 및 시추공의 관측정 활용가능

※ 광역수맥조사는 주로 시추조사 대신 기 개발한 시설관정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하수기초조사임

○ 해수침투조사

지하수 관측정설치 및 개발·이용 보전에 필요한 해수침투 및 채수량 감소 등의 관측조사

(4) 지원조건

- 수맥조사 : 국고 100%
- 해수침투조사 : 국고 100%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지구,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계		4,480	4,480	4,480	-	-	-
수맥조사	ha 6,000	4,380	4,380	4,380	-	-	-
해수침투 조사	개소 12	100	100	1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발과,농업기반과,농산 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다. 사업시행자

- 수맥조사 : 농어촌진흥공사
- 해수침투조사 : 도지사(제주도)

라. 사업추진절차(추진체계도)

- 수맥조사  
예산내시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 지구선정(시·도협의)→  
조사시행 → 성과품제출
- 해수침투조사  
예산내시→위탁계약→지구선정→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조사시행  
→ 성과품제출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선정

(1) 선정기준

- 수맥조사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우심지역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에 반영된 지구
  - 수맥조사 시추공중 150m<sup>2</sup>/일 이상인 시추공은 시장·군수가 인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이 가능한 지구
- 해수침투조사
  - 장기관측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도지사가 위탁시행기관과 협의선정

(2) 우선순위

- 수맥조사
  - 당해년도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을 우선하여 선정
  - 시·도지사가 가뭄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  
여는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 해수침투조사
  - 시·도지사가 위탁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장기관측 계획에 의함.

나.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1) 수맥조사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수맥조사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예산이 내시되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세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함.



(2) 해수침투조사사업

도지사가 당해년도 예산규모를 감안 장기관측 예정지역을 선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면 농어촌진흥공사는 관측용 장비구입, 조사항목 및 조사량등 세부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함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1) 사업시행인가

- 수맥조사 : 농림부장관
- 해수침투조사 : 도지사

(2)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

나. 공정계획

(1) 수맥조사 :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예정지역에 대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되, 지하수개발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조사물량을 조정하는 등 가뭄대책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공정계획 수립

(2) 해수침투조사

다. 시행계획 변경

(1) 시행계획변경은 당초계획된 조사계획이 현저히 증감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되, 이 경우 당초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조사비)가 5%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용지매수보상

(1) 조사사업 수행시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히 필용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마. 공사감리

(1) 조사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 바. 사업준공

### (1) 수매조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완료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농림부장관은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선별 점검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조사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2) 해수침투조사 : 도지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사. 기 타

- (1) 수매조사 시추공중 시장·군수가 인수한 것 외의 시추공은 지역주민 및 관계부처에 타용도로 활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폐공처리토록 하여야 함.
- (2) 폐공처리되는 시추공에 대하여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타용도 이용 및 폐공처리 완료시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3) 시추공 이관 협의 우선순위
  - 지역주민의 요청시 인계하여 활용토록 하고,
  -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와 지하수 수질 및 수위 등의 관측정으로 활용 가능여부 협의
- (4) 광역수매조사시 개발하는 시추공을 관측정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중복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사업비 지원>

### 가. 예산지원

- (1) 지역별로 가뭄상황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당해연도 지하수개발 대상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
- (3) 투자계획에 의한 조사면적이 많은지구를 감안하여 지원함.
- (4) 농림부장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지구는 가능한한 국고를 지원하고, 다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시행할 수 있음.

####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다.
- (3)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한다.

#### <기타사항>

-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요율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조사된 자료는 전산화 및 도면화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가뭄시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도, 시·군에 배부 하여야한다.

#### 나. 보 고

- (1)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해수침투조사) : 도지사 → 농림부 (별지 제1호서식)
- (2) 공정계획보고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별지 제2호서식)
- (3)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제3-1~3-3호서식)
- (4) 익년도 수맥조사사업 대상지 선정보고 : 시·도지사 → 농림부(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9.20까지 보고)

[별지 제1호서식]

## 년 해수침투조사사업 시행인가(계약) 결과보고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나. 위치  
다. 목적  
라. 조사개요  
마. 조사기간  
바. 사업비  
    ○ 조사비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사. 사업시행자

### 2. 관측조사 계획

(단위 : 회)

시.군	조사구분	지구명	공번	자연수위	수온측정	염도측정	수질분석	비 고

※ 조사구분은 : 수동측정과 자동측정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 년 해수침투조사사업 공정계획보고

구 분	기 준	사업량	월별추진계획	비고

※ 공정계획은 사업시행인가(위탁계약)시 검토

[별지 제3-1호서식]

## 수맥조사사업 진도보고( / 분기)

시.도별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계							

[별지 제3-2호서식]

## 수맥조사사업 공종별 조사실적

(상단 : 연간계획, 하단 : 실적)

시·도 별	구분	지구수	계획 면적 (ha)	지구 답사 (ha)	지표 지질 조사 (ha)	선구조 추출 (ha)	저주파 탐사 (점)	전탐 조사 (점)	수위 관측공 설치 (공)	시추 조사 (공)	토목 조사 (ha)
계	정밀										
	광역										
	정밀										
	광역										

[별지 제3-3호서식]

## 해수침투조사사업 추진상황 보고( / 분기)

'96. 월 일 현재

(단위 : 회)

시군	구분	지구수	수위측정		수온측정		염도측정		수질분석		계		진도 (%)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수동												
	자동												



[별지 제4호서식]

### 수맥조사사업 익년도 대상지보고

시·도

순위	개발계획 년도	지구명	위 치			용수활용계획				진흥지역 여부
			시군	읍면	리동	답작	전작	생활용수	기타	
계						ha	ha	m <sup>3</sup> /일		

주) 1. 진흥지역 여부는 ○ ×로 표기

14 -4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공공)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입니다.

## 1. 목 적

수혜면적 50 ha 미만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등을 원활히 공급하고 안전, 편의영농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함.

## 2. 추진방향

- 가.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물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나.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다.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 4. 년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천ha)		6.0	0.4	0.4	0.4	0.4	4.4
사 업 비	계	350,647	45,827	16,360	27,160	25,400	235,900
	보 조	69,658	32,078	11,300	13,580	12,700	-
	용 자	-	-	-	-	-	-
	지방비	280,989	13,749	5,060	13,580	12,700	235,900
	자부담	-	-	-	-	-	-

※ 주 : 42조원 구조개선사업 및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함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취입보,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2) 사업범위

- 수리시설이 미비한 수혜구역 50 ha미만 지역

##### (3) 지원조건

- '93이전 시행지구 : 국고 50%, 지방비 50% 이상
- '94이후 신규지구 : 지방비 100%

#### 나. '97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					
		계	예산액 (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계	1,534	27,160	13,580	13,580	-	13,580	-
- 소규모		27,160	13,580	13,580	-	13,580	-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와 같음.

#### 다. '97지원 계획

- 사업준공 및 수원공준공 위주로 집중투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 '98년까지 국고지원으로 사업완료토록 추진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기획과 (전화 : 02- 504- 9402, 9403)  
농촌용수과 (전화 : 02- 504- 9406, 9407)
- 시 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량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다. 대상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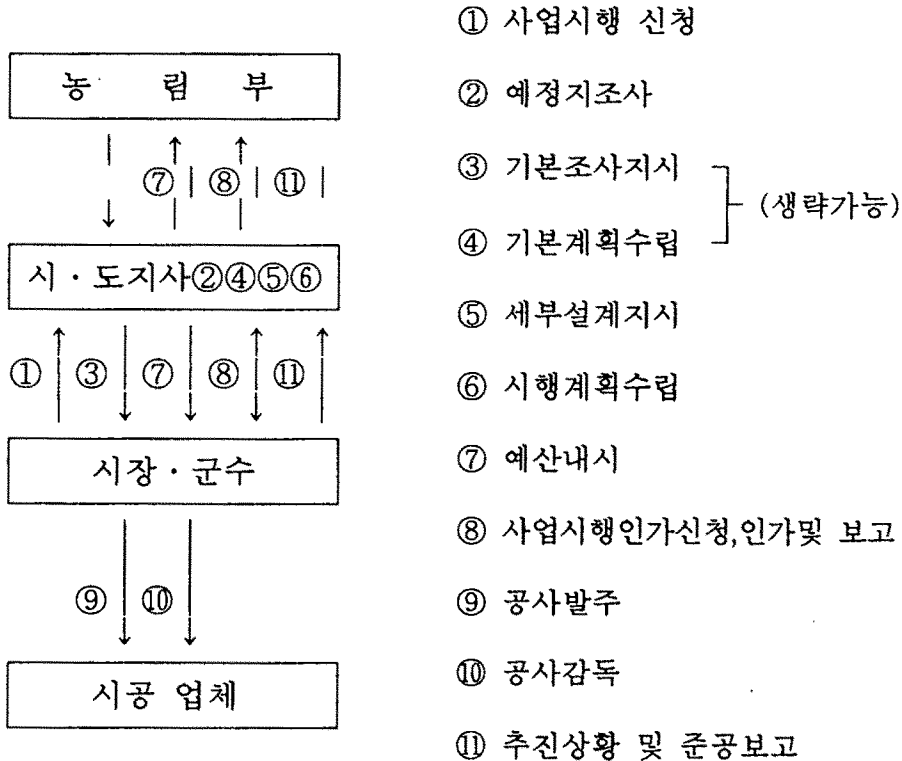
(1) 선정기준

- (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사업비가 저렴하고 사업효율 및 수혜자의 호응이 높은 지역
- (나) 가뭄우심지역을 우선 선정

(2) 우선순위

- (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 (나)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

<사업시행체계도>



라. 사업시행

- (1) 예정지조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 또는 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2) 기본조사및 기본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예정지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이 시급하거나 세부설계시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세부설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하게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함.

#### (4) 신규사업 시행

(가) 신규사업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세부설계 절차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

(나)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추진

(다)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사업시행 인가를 한 경우에는 농림부관에게 보고 [별지 서식]

(라)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규사업 규모에 따라 여타 농촌용수 관련 사업비를 확대지원을 강구함.

#### (5) 공정계획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나)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시행

(다) 공정계획은 인력,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라)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바)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8월 이전에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함.
- (사)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족 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증가된 사업비는 국고 또는 지방비를 추가지원하거나 기배정된 타지구에서 조정하여 준공토록 함.
- (아)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대중규모용수개발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6) 시행계획의 변경

- (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의 소액보조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소액보조사업간 예산변경필요시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차 내역변경신청은 '97. 1. 15까지임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보완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보완하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
- (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시 첨부할 서류는 대중규모용수개발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참조)

(7) 공사감리

- (가)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용 역업체에게 의뢰하여 시행함.
- (나) 시·도지사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완공시까지 공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도의 기술진은 중요공사 시공시 반드시 입회 지도 감독하여야 함.
- (다) 시공시에는 무리한 공정계획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라)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전, 공사중 및 완공후의 현장사진(전경, 근경 12×8cm 칼라)등 기록을 보존함.
- (마)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8)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9) 사업비 지원

- (가)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시·도지사는 내시된 사업비를 지구별로 배정함. 지구별 사업비 배정은 준공위주로 우선 배정하고 계속지구는 사업효과 조기 거양 또는 공사중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예산배정함.
- (다) 시·도지사는 소요 지방비 전액을 확보지원 하여야 함.
- (라) 시·도지사는 지구별 사업비 배정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대중규모용수개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마) 시·도지사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현지확인, 지도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를 사업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바) 농림부장관은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여타 농촌용수 관련 사업비및 유보예산지원시 확대지원방안을 강구함.

마. 기타사항

(1) 용지매수및 보상, 자재공급 관리, 풍수해 사전대비, 타법관련사항등

(가)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준함

(2) 기술지원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시·군에서 예정지조사,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전문분야에대한 기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지원함.

(다) 시.도지사는 기술지원비에 대하여 실비정산할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업시행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 : 사업시행인가시[별지 제1호 서식]

○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시.도지사→농림부장관)

○ 시행계획변경보고 : 시행계획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다. '98예산요구시 소액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요구하되 부속자료로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 예산요구서 제출



[별표]

##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97예산(안)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합계	45	27,160	(45)	13,580	(45)	13,580	
충북	2	1,400	(2)	700	(2)	700	
충남	9	3,073	(9)	1,537	(9)	1,536	
전북	9	6,749	(9)	3,375	(9)	3,374	
전남	17	9,652	(17)	4,826	(17)	4,826	
경북	4	3,619	(4)	1,809	(4)	1,810	
경남	4	2,667	(4)	1,333	(4)	1,334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용수개발사업계획인가결과보고

\_\_\_\_\_도

(단위 : 천원)

사업구 분	지구 수	면적(ha)				증수 량 (M/T)	총 사 업 비	재 원 별				지 출 내 역						기타
		계	신규 개발	보충 수	개답			국고	시도 비	시군 비	자담	순공사 비	지급 비	용매 보상 비	지수상 비	측설 비	관리 비	
계																		
지표수 개발 (신규)																		
저수지																		
양수장																		
보																		
지표수 개발 (보강)																		
저수지																		
양수장																		
보																		
도수로																		

14 -5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공공)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 입니다.

1. 목 적

노후된 지방관리방조제의 효율적인 개보수로 재해의 예방과 및 간척농지의 보존

2. 추진방향

- 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재해예방 조치가 긴급한시설 우선지원
- 나. 완공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 조기거양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지구,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계	사업량	1416	105	33	27	37	1214
	사업비	385,300	35,898	10,575	12,552	14,463	311,813
	보 조	186,660	12,675	3,572	6,276	7,231	155,906
	지방비	199,640	23,223	7,003	6,276	7,231	155,907

※ 주1] 사업량은 준공지구수임,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추진 배경

시설의 노후 및 설치당시 설계기준이 현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이 많아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인명, 재산, 농작물 피해는 물론 복구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사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 (2)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에 의한 지방관리방조제
- (3) 사업내용 : 방조제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 (4)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량:지구, 사업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90	12,552	6,276	6,276	-	6,276	-
지방관리	90	12,552	6,276	6,276	-	6,276	-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1]과 같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4-9408~9)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  
(시·도에 따라 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 지원과, 농정과)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지개발조합장

라. 사업추진절차 : [별표 2] 참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예정지조사→사업대상지구선정→세부설계  
→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인가→공사계약 및 착공→공사시행 →준공

<사업대상 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 (1) 방조제관리법 제3조2에 의한 방조제로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된 지구
-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지방관리 방조제

나. 우선순위

- (1) 농업진흥지역내 재해취약시설로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는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96. 6.11~6.22 실시한 방조제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반영)
- (2) 일상 및 정기안전점검, 자체예산에 의한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관리 실태 평가결과 및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한 방조제개보수사업 평가 결과 우수시설관리자의 재해위험시설은 특별지원할 수 있다.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건의

- (1) 시설물 관리자(시장.군수, 농지개량조합장)는 수혜자의 건의 또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사업시행 건의를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나. 예정지조사

- (1)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 (2) 예정지조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 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수립한 대책을 예정지조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시행예정지를 선정하고 농림부에 결과보고 한다.(예정지조사보고서 첨부)
- (4) 예정지조사 내용 및 유의사항
  - 조사내용에 포함될 사항
    - 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 사업별 투자소요액
    - 사업시행의 효과            -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
    - 기타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신청되거나, 예정지 조사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자에게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

- 예정지 조사시 시설물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 제 17조 ④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 및 신규착수 지구수 범위내에서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한다.
- (2) 신규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가 시행함을 원칙
- (3)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다.
- (4)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방조제 높이 및 단면이 현 계획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계획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농조판리는 시·도지사)
- (2)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및 농지개량조합장)

#### 나. 공정계획

- (1) 재해위험 공종은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 수립
- (2)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3)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 시행계획의 변경

- (1)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의 소액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소액보조사업간 예산변경 필요시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차 내역변경신청은 '97. 1.15까지임
- (2) 시행계획변경은 시도지사 승인하에 실시하되, '97년도 착공지구부터는 시행계획변경(물량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함.

####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 마.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 조합 연합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2)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공사상으로 인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으로 공정계획의 이행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
-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 바.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2)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3)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 <사업비지원>

### 가. 예산의지원

- (1)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2) 재해대비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 (3)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 나. 자금의 운용관리

- (1)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2)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은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4)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 (5) 현지확인,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및 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를 일반 관리비 등 요율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다. 사업비 검정 및 결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2)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한다.

### 나. 보 고

- (1)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 당해연도 2월말까지 보고[별지 제1호서식]
- (2) 공정계획보고 : 당해연도 3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제2호서식]
- (3) 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 추진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제3호 서식]



(4) 시행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 : (6월 및 9월말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4호서식]

(5)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준공 결과보고[별지 제5호서식]

다. '98예산 요구시 소액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요구하되 부속자료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예산요구서도 제출

[별표1]

□ 지방관리방조제 시·도별 가내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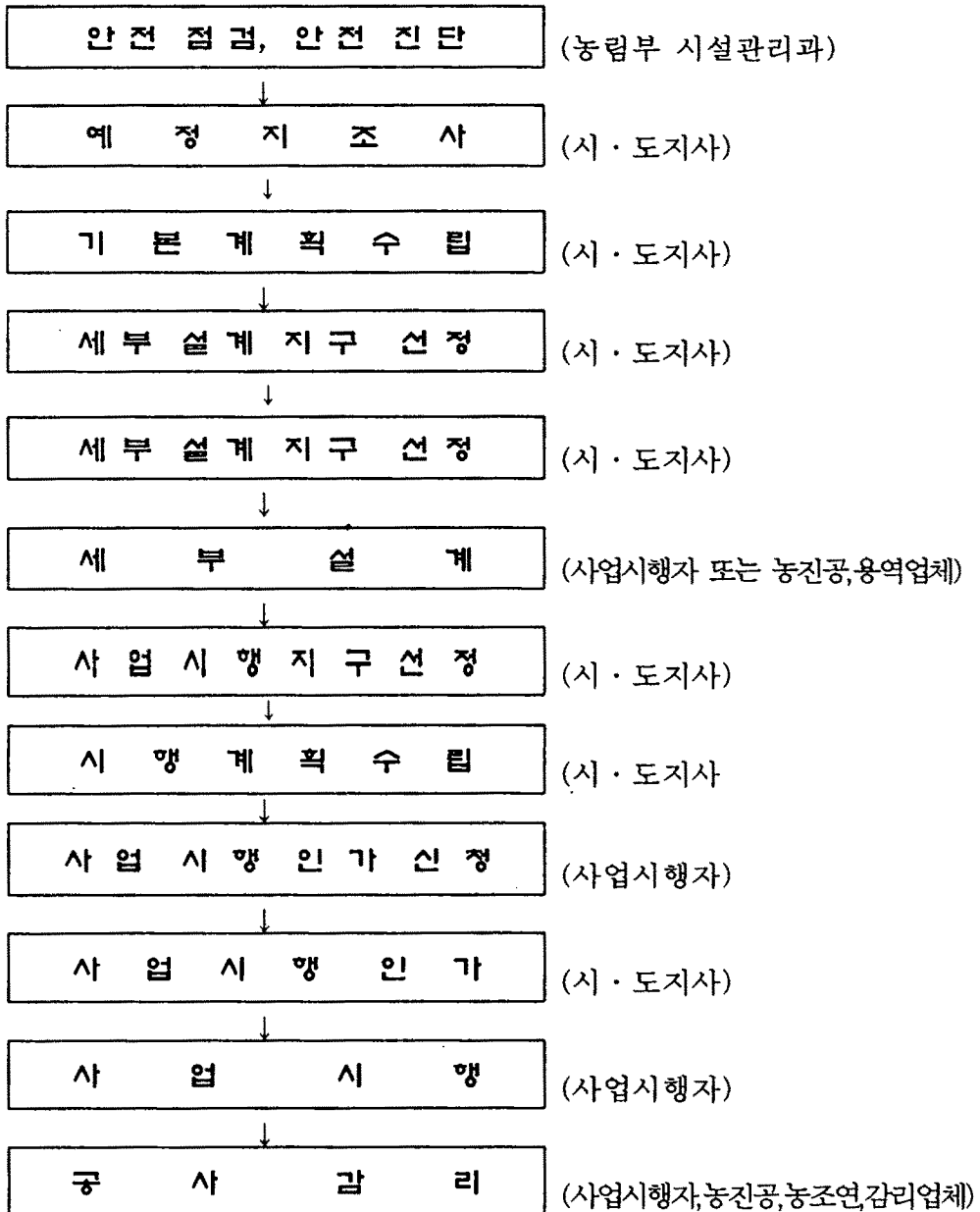
(물량:지구, 금액:백만원)

시·도 별	'96 예산 (A)	'97 예산 (안)										증감	
		소 계(B)		준공계획		신규착수		계속지구		도유보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금액	(B-A)	%	
합 계	3,572	90	6,276	30	4,397	59	1,146	1	300	433	2,704	75.7	
인천	213	5	511	2	410	3	60			41	298	71.5	
경기	141	3	705	2	623	1	20			62	564	400.0	
충남	274	6	461	1	328	5	100			33	187	68.2	
전북	268	6	760	4	655	2	40			65	492	183.6	
전남	2,599	64	3,407	19	2,061	44	846	1	300	200	808	31.1	
경남	77	6	432	2	320	4	80			32	355	461.0	

[별표2]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추진체제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호 서식]

## 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_\_\_\_\_ 시도

구분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ha)	사업 시행주	착공 년도	총 사업비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군	면							
계							천원			

※ 구분란은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로 구분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정계획표

· 확 인 자 : (인)  
 · 사업시행자 : (인)  
 · 시공 업자 : (인)  
 · 작 성 자 : (인)

위 차 : 시도 사군 읍면  
 사업 시행자 : 지구명 : (내지구명 : ), 수혜면적 ha, 당초승인 : 착공 :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승인액	전년까지정산액	금년도예산액	내년이후잔사업비	공정 (%)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과목	공종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합 계																				
공 사 비																											
-순공 사비	소계																										
-자재대	소계																										
용지매수 및 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진도보고

시·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시설명	수해면적 (ha)	사업착 수년도	총 사업비	기정 산액	잔 사업비	당해도 예산	실행액	진도(%)		공 래 누 계 형	누 계 진 도 (%)	부 진 사 유
	시· 군	읍· 면										계	실적			
계					ha						계					

- 주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3)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4호 서식]

## 년 지방관리방조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

시·도

구분	지구명	위치		수혜 면적 (ha)	사업 시행주	착공 년도	총 사업비	년 까지	금년계획			년 이후
		군	면						당초 (A)	금회 (B)	증감 (B-A)	
계							천원					

※ 구분란은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로 구분할 것

[ 별지 제5호서식 ]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준공 결과보고

확인자

작성자

### 1. 사업지구현황

○ 지구명 :

○ 위치 :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

○ 사업시행인가 년월일 :

○ 착공 년월일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시공업체(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공사감독 :

※ 준공지구 도면(1/25,000)을 첨부할 것.



## 2. 연도별 검정내역

### 가. 수입

(금액 : 천원)

구분	인가액	준공 검정액	증감	년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기 타									

### 나. 지출

(금액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공 검정액	증감	년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순공사비 지급품비 용지매수 및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14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공공)
-6	(한우쌍자생산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 1. 목 적

- 한우쌍자생산기술의 산업화로 한우개량 촉진
  - 소 수정란 이식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도 종축장을 수정란 생산기지로 육성
- 송아지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2. 추진방향

- 도 종축장을 중심으로 수정란 대량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전문인력 양성
- 수정란 생산 및 이식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 추진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9개소		9	(계속)	-	-
사업비	계	16,098		9,642	6,456	-	-
	보조	7,549		4,821	2,728		
	융자						
	지방비 자부담	8,549		4,821	3,728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6~'97(2개년간)
- 지원대상자 : 각 도종축장(9개소)
- 지원내용
  - 도 종축장을 수정란생산기지로 만들어 한우쌍자생산 촉진
    - '96년도 : 실험실·축사건축비, 수정란생산·이식 기자재 구입비등 지원
    - '97년도 : 한우종축구입비(9개소) 및 실험실·축사건축비(2개소)등 지원
    - '97년까지 각 도종축장에 한우 수정란생산 공급기지 구축 완료
-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
  - 한우종축구입비(농특회계 보조 40%, 지방비 60%)
  - 실험실, 축사건축비(농특회계 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한우종축구입비 2,500천원/두당, 실험실 2,100천원/평당  
축사 500천원/평당

####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계	9개소	6,456	2,728	2,728		3,728	
○ 실험실 건축	300평	630	315	315		315	
○ 축사건축	1,650	826	413	413		413	
○ 한우종축구입	2,000두	5,000	2,000	2,000		3,0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각 도지사(협조 :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수행주체 : 각 도종축장(9개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전화 02-504-9431~3)

- 협조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전화 0331-292-4511)

○ 시·도 : 도청 축산과, 도 종축장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각 도지사는 년내에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 보고

- 특히, 도 종축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도(6개도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

○ 사업추진체계

- 농림부(사업총괄 및 예산지원) → 각 도(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 각 도종축장(수정란생산·공급) → 수정란 이식 및 농가 보급(민간 이식기술자 활용)

○ 사업비 지원방법

- 지방비 확보 철저

· 지원조건에 따라 지방비 확보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감액지원

· 지원부담율 : 실험실·축사건축비(지방비 50%, 국고보조 50)

한우종축구입비(지방비 60%, 국고보조 40%)

- '97년 도별 국고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실험실 건축		측사 건축		종축구입비		금액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경 기	평		평		60두	60	60
강 원					250	250	250
충 북					200	200	200
충 남					350	350	350
전 북	100	105	600	150	200	200	455
전 남					200	200	200
경 북					450	450	450
경 남	200	210	1,050	263	250	250	723
제 주					40	40	40
계	300	315	1,650	413	2,000	2,000	2,728

○ 기타사항

- 사업기관별 업무분담등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 추진계획(축정 51530-356, '95.7.5)을 참조하여 추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도 종축장의 수정란 생산업무 담당자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수정란 생산기술 전수 및 숙련도 제고

나. 보 고(도지사 → 농림부장관)

- 한우쌍자생산지원 '97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지방비 확보상황 :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내역을 익년 3월말까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 사업의 총액 및 개별사업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 보고

14 -7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공공) (개량물꼬 지원)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입니다.

### 1. 목 적

- 벼 농사의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을 절약하여 생산비 절감
- 논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논두렁 보호, 용·배수로 매몰방지 및 농업용수를 절약

### 2. 추진방향

농업진흥지역 논에 우선 공급하고, 농가희망에 따라 년차적 확대 실시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개, 백만원)

	합 계	'97 (예산안)	'98	'99	2000-2004
사 업 량	4,000	500	500	500	2,500
사 업 비	32,000	4,000	4,000	4,000	20,000
- 보 조	16,000	2,000	2,000	2,000	10,000
- 지방비	16,000	2,000	2,000	2,000	10,000

※ '97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임.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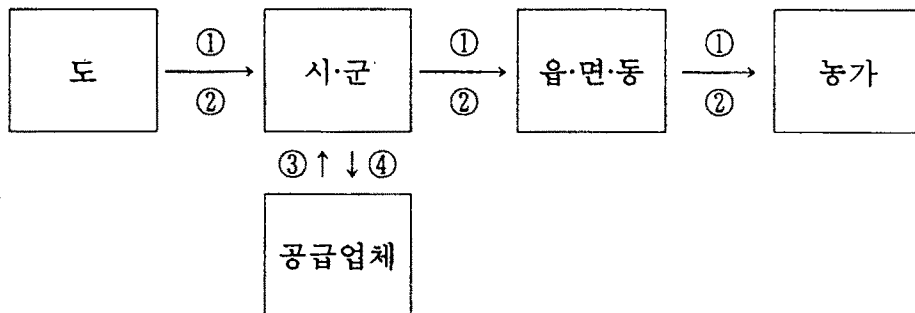
#### 가. 사업현황

(1)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2)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대상 물꼬 : 농업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성능등이 인정된 제품  
또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천하는 제품
- 개당 지원액 : 8천원 이내
- 지원개수 : 1ha당 4-6개
- 지원조건 : 국고50% 정액보조(지방비50%이상 부담)

(3) 사업시행체계



① 지원계획 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② 사업신청,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③ ④ 공급계약체결 및 납품, 보조금 정산등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천개	백만원				
500	4,000	2,000	2,000	-	-

※ 시·도별 지원계획은 [붙임]과 같음.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 (02-503-7228~9)
- 시·도 : 농정(농림)국 농산과
- 시·군 : 산업과(읍·면)

다.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1)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는 (2)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 우선순위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의 벼재배 농가
- ②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쌀전업농, 생산자조직
- ③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벼재배농가
- ④ 벼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등

라. 사업시행

-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 사업의 소액 보조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소액보조사업간 예산변경 필요시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차 내역변경신청은 '97.1.15까지임
-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면적, 벼재배면적 및 농가희망량 등을 감안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수립 시달한다.
- 개량물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구매 공급하며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농가당 지원한도는 농가경영규모, 필지당 면적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마. 보조금 정산 및 구입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량물꼬를 구매·공급하였을 때는 매월 1회이상 대금을 정산 지불한다.
- ※지방비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만이라도 우선 대금정산지급할수 있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시장·군수(읍·면장)는 지원공급된 개량물꼬의 설치여부를 공급후 1개월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개량물꼬 설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2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보고사항

- 실적보고

	보고자	보고시한	서식
개량물꼬 지원실적 보고(반기별)	시·도지사	'97. 7. 31 '98. 1. 31	별지 서식

- 사업비 정산보고

시·도지사는 사업비 정산내역을 '98년 3월말까지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의 총액 및 개별사업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읍·면·동장)

나. 신청자격 : 벼 재배농가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의 벼재배 농가
- ②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쌀전업농
- ③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벼 재배농가
- ④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등

다. 신청절차

- 개량물꼬 지원 공급 희망농가는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개량물꼬 지원 공급계획을 수립 소요예산을 신청
- ※ 시·도지사는 '98 소액보조사업 요구시 총액만 요구함.  
단, 시·군별 개량물꼬 지원공급 계획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라. 대상자선정

- 본 시행지침 5.<추진체계> 다항(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에 의함

[ 불 입 ]

**'97 시·도별 개량물꼬 지원 공급계획**

(단위 : 개, 천원)

시·도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500,000	4,000,000	2,000,000	2,000,000
대 구	520	4,160	2,080	2,080
인 천	4,030	32,240	16,120	16,120
광 주	160	1,280	640	640
대 전	160	1,280	640	640
경 기	53,330	426,640	213,320	213,320
강 원	40,320	322,560	161,280	161,280
충 북	61,050	488,400	244,200	244,200
충 남	47,700	381,600	190,800	190,800
전 북	94,260	754,080	377,040	377,040
전 남	56,460	451,680	225,840	225,840
경 북	112,440	899,520	449,760	449,760
경 남	29,570	236,560	118,280	118,280

[별지서식]

## '97 개량물꼬 지원 공급실적 보고 ( 반기)

### 1. 개량물꼬 공급

시·군명	계획(A)	실적(B)	비율(B/A)
계	개	개	%

### 2. 사업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계획(A)				
물꼬공급금액(B)				
집행액(C)				
미집행액(B-C)				
비율	B/A	%		
	C/B			

※물꼬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물꼬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14 -8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공공) ( 지역특화사업개발지원 )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입니다.

###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특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에 입각하여 우수지자체를 지원

### 2. 추진방향

- 『농림사업실시규정』 절차이행평가, 지방비 투입실적 평가, 사업자별 사업 추진상황평가 등 『농림사업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쌀생산종합대책 시상계획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실적가산금을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

### 3. 근거법령

-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훈령 제825호, '96. 7. 6.발령)
- 쌀생산종합대책 시상계획('96. 4. 6)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	'97 (예산안)	'98	'99	2000~2004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백만원 -	10,000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10,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사업의 종류 등

- 지역특화사업의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생산시설 : 온실, 비가림시설, 관정 등
  - 유통시설 :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수송차량 등
-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사업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재배시설 : 회전식머섯 재배시설 등
  - 포장재개발 : 지역특산물 소형포장재, 수출포장재
  - 장 비 : 농업기계화사업에서 공급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등
- 기타 지역특화사업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 예시 : 황기, 치커리, 영지, 구기자, 청정돈 등

##### (2)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읍·면장)
- 시·도지사가 선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3) 지원단가

- 지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유사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단가에 따름

##### (4) 지원조건

-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유사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조건을 참고 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 개별사업별 국고:지방비 부담비율은 50:50으로 하되 지방비는 50%이상 부담도 가능함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등
			계	보조	융자		
지역특화 사업개발		백만원 20,000	10,000	10,000		10,000	시·도지사 가 정함

\* 본 예산규모는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축소되거나 증액조정될 수 있음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02-503-7247~8)
- 시·도 : 농정(농림)국 농정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농산과

다. 대상자 선정

(1) 우수지자체 선정

- 농림사업평가규정(농림부훈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지원

(2) 우수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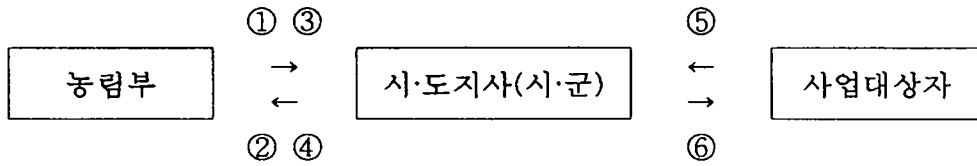
- 우수지자체의 장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우선순위등을 정하여 사업별 지원기준에 맞게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에 제출
-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자의 대표가 계획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도지사는 변경승인등에 대하여 최종관리

(2) 사업비 지원방법



- ① 우수지자체 선정    ② 사업신청    ③ 예산·자금배정
- ④ 사업확정보고, 실적보고, 결산·정산 보고
- ⑤ 사업신청, 사업추진진도보고    ⑥ 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마. 기타사항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단,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사업의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사업을 확정함
-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도는 지역특화사업개발지원을 위한 품목, 지원 시설, 자재,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선정절차, 개별사업별 지원기준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특화사업개발지원사업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이므로 최대한 시·군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설, 장비, 기기등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사업별 사후관리요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시설) 중요 시설 경미한 시설	준공년도 준공년도	10년 3년	◦ 사후관리기간내 임의 처분·폐기 등 처분금지  - 사후관리기간내에 처분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사사업에 서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 진것은 그에 따름  ◦ 시·도지사가 시설·자재별 사후관리기간을 따로 시·도의 실정에 맞게 설정가능
(장비) 중요 장비 경미한 장비	구입년도 구입년도	5년 3년		

나. 보고·기타

- 지역특화사업개발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분기말(2/4 ~ 4/4)
- 보조금정산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 : 익년도 3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지역특화사업개발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세부사업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					
<시 설>							
<장 비>							

14 -9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추진 (공공) (시·군수리시설개보수)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 입니다.

1. 목 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노후되었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개보수·정비하여 용수를 절약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과 시설관리를 개선함에 있음.

2. 추진방향

-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 주요 기간 수리시설(저수지, 양·배수장, 주요 용·배수로)은 개량 보수
- 일반시설(보조 수원공, 일반 용·배수로)은 기능회복 위주로 부분 개량
- 작동하기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시설은 운용 체계를 개선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지원근거 :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훈령 제825호, '96. 7. 6) 및 쌀생산종합대책  
시상계획('96. 4. 6)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사업비계				40,000		
- 보조				20,000		
- 지방비	-	-	-	20,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사업추진배경

해방이전부터 '70년대 까지 축조한 시설이 노후되고, 설치당시 경제사정으로 시설을 충분히 보강하지 못하여 기능이 떨어지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이 많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개보수하여 가뭄과 수해 대책을 강구

##### (2) 사업내용

-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의 개보수
- 흙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화

#####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 (4) 지원조건 : 국고 50% 보조

- 시·도지사가 당해연도 지원 예산으로 준공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다만, 차년도 이후에 전액지방비로 계속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시·군수리시설 개 보 수		40,000	20,000	20,000	-	20,000	-

※ 본 예산규모는 지역특화사업개발지원 사업비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축소되거나 증액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 (02-503-7247~8)
- 시·도 : 농정국 농정과, 기반정비과
- 시·군 : 산업과,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 추진절차

- 안전점검, 안전진단 실시 →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 인가 → 공사계약 → 착공 → 준공
- 사업추진체계도는 [별표] 와 같음.

마. 기타 사항

- 지역특화사업개발지원 사업비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도는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계획에 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사업계획수립·시행>

-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실시요령을 준용함. 다만, 실시요령 내용중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보고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보고로 봄.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우선순위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 건의

다.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마.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바. 공정계획 : '97년도 예산지원액으로 준공 마무리계획을 수립함(1년차 사업)

사. 시행계획의 변경

아. 용지매수 및 보상

자. 공사감리

차. 사업비 지원

카. 사업 평가

타. 사업준공

파. 기타사항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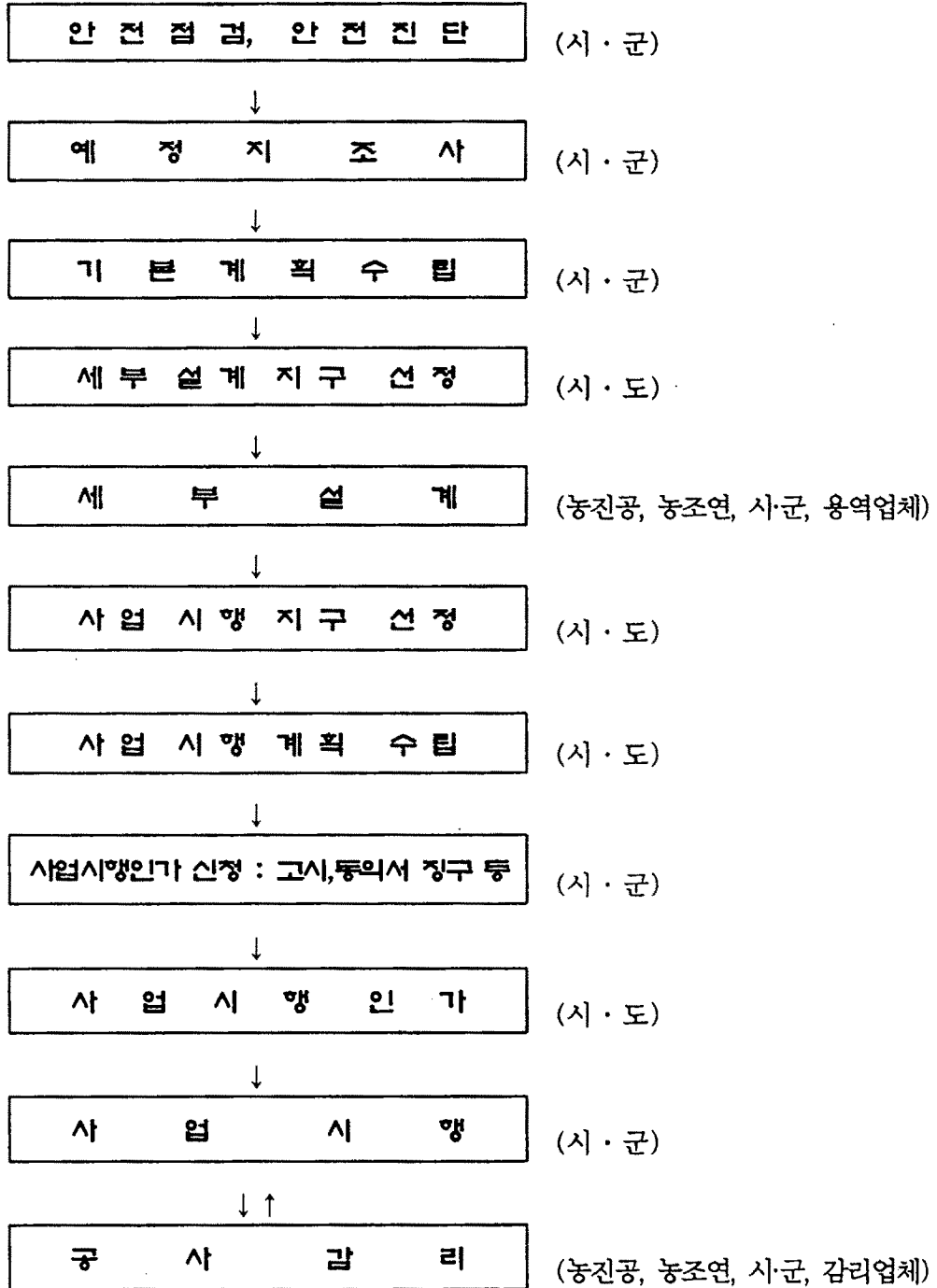
가.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1)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내시 결과보고 : 년초예산 내시는 즉시 보고
- (2) 시·도별 총괄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 까지 보고
- (3) 연도말 정산 결과 보고 : '98년 3월말 까지

[붙임]

##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호 서식]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배정·변경, 진도, 정산) 결과보고

시·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시설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준공 년도	개보수 공 종	'97년 사업비	실형액	년 월 일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실 계 완 료	착 공	
계							< >					

- ※ (1) 예산배정 결과는 실형액을 제외하여 작성하고, 연월일 란은 예정일 또는 실행일자를 기입
- (2) 예산변경시에는 변경 직후 보고하되, 비고란에 변경전 금액을 명시.
- (3) 진도보고는 매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보고
- (4) 연도말 검정·정산 결과보고는 비고란에 완공일자를 명시
- (5) 2년차 이상의 공사지구는 지방비 추가소요액을 '97년사업비란 위에 < >외서로 표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용수과입니다.

## 1. 목 적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희지를 우량 농경지로 개발하여 농업 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음.

## 2. 추진방향

### 가. 사업추진 기본방침

-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마무리
- 다목적 개발 및 농지규모 대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의 철저한 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 피해어업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나. 사업효과

- (1) 국토의 확장과 우량농지 확보
  - 경지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 농경지의 절대면적 감소에 따른 우량농지의 대체 개발
  - 담수호 조성에 따른 농업·산업 용수공급기반등 수자원개발
- (2) 국토종합개발 및 균형 발전 촉진
  - 해안오지개발로 수산업 위주에서 복합영농구조로 변경
  - 도로재정비 및 해안선 단축으로 육로거리 단축

## 3.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환경영향평가법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ha)	20,441	745	394	1,730	400	17,374	
사업비	계	1,663,400	769,187	137,000	135,300	175,200	446,713
	국고 (농지관리기금)	1,663,440	769,187	137,000	135,300	175,200	446,713
	지방비	-	-	-	-	-	-
	용자	-	-	-	-	-	-
	자부담	-	-	-	-	-	-

※ “간척사업 추진방향” 중의 간척사업 장기계획에 의함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간 척

- 근해의 간석지 또는 호소에 제방의 축조 등 제반의 공사를 시행하고,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내부의 물을 배제한 후 간석지를 매립하여 새롭게 토지를 창출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임.

##### (2) 주요시설

- 방조제
- 양수장
- 배수로 등
- 배수갑문
- 용수로

##### (3) 지원조건

- 국고(농지관리기금) 100%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지 구 별	농지조성 ( ha )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농지관리기금)	용 자		
계	19,247	135,300	135,300	135,300	-	-	-
진 촌	323	5,500	5,500	5,500	-	-	-
화 용	4,482	51,287	51,287	51,287	-	-	-
남 포	1,135	5,469	5,469	5,469	-	-	-
석 문	2,050	16,000	16,000	16,000	-	-	-
이 원	700	8,152	8,152	8,152	-	-	-
군 내	400	6,000	6,000	6,000	-	-	-
완 도	225	1,332	1,332	1,332	-	-	-
고 금	157	3,976	3,976	3,976	-	-	-
고 흥	1,860	16,000	16,000	16,000	-	-	-
만 덕	213	1,284	1,284	1,284	-	-	-
해 남	1,842	11,000	11,000	11,000	-	-	-
사 내	400	5,000	5,000	5,000	-	-	-
삼 산	470	4,000	4,000	4,000	-	-	-
시 화	4,990	300	300	300	-	-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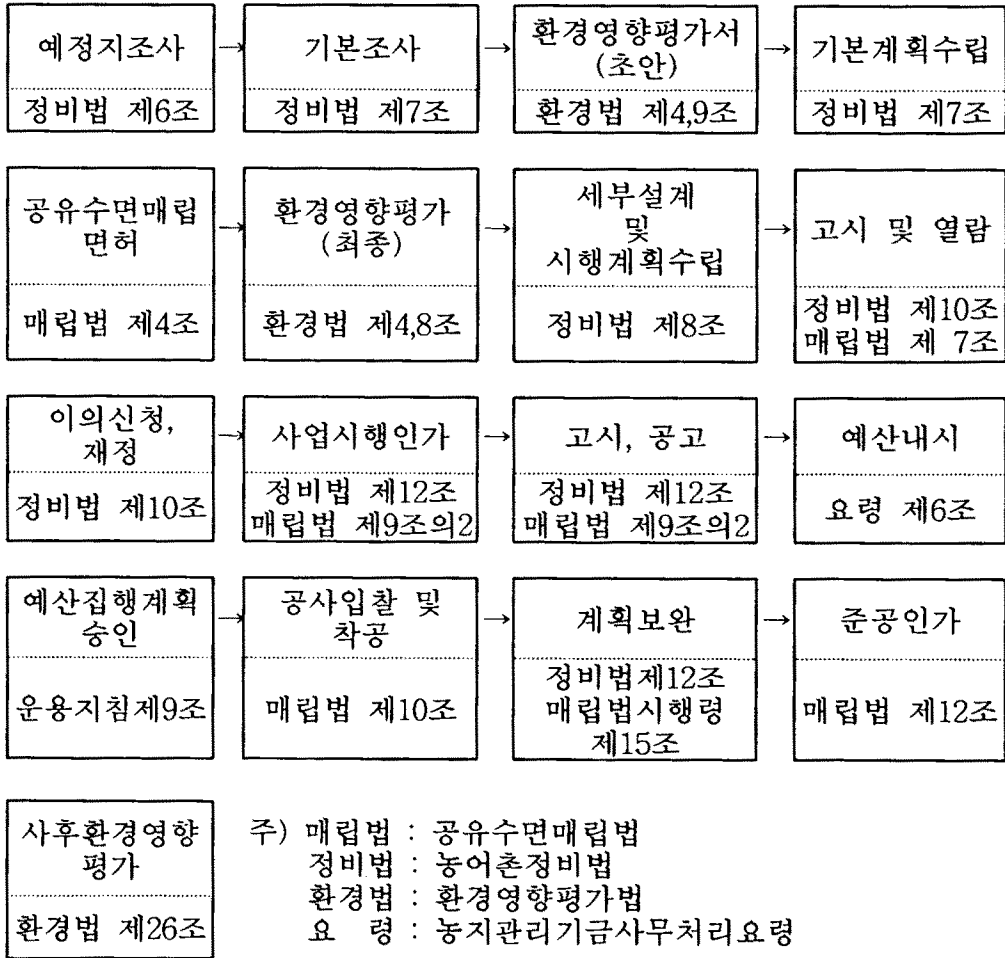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사업시행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는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전화 : 02-504-9406)
- 시 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농어촌진흥공사장, 농지개발조합장

< 사업시행체계도 >



라. 대상지 선정

(1) 선정기준

- (가) 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수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
- (나) 수산자원보전지역 등 기타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구
- (다) 사업비가 저렴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지구
- (라)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결과 관련기관의 이견이 없는 지구
- (마) 사업시행시 어업권보상 등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지구
- (바) 주변지역개발 연계 효과가 양호하고 지역주민이 열망하는 지구

## 마. 사업계획수립

### (1) 사업계획수립

(가)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제3조의4에 의해 결정된 매립기본계획지구 및 간척자원조사가 완료된 지구중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이하같은)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구에 대한 예정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결과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 2) 사업별 투자소요액
- 3) 사업시행효과
- 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 5) 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6) 기타 사업시행시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등

### (2)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가) 농림부 장관은 예정지 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농림부장관은 매립면적 50ha이상 사업지구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함.

(다)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결정하여야 함.

(라) 농어촌진흥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기본조사실시를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마) 기본조사시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환경영향평가(초안)와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당해 조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지구의 사업시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바)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기본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 3) 사업비 수지예산서
- 4) 사업비 내역(공사비 포함)
- 5) 사업효율분석결과( B/C, IRR 등)
- 6)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8) 피해영향 조사서
- 9)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사)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과 기본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아)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시·도지사는 매립면적 50ha이하 지구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 (3)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영향 조사

(가) 기본조사실시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피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기본조사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함.

(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척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전의 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라) 환경영향평가(최종)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 요청하여야 함.
- (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환경부장관의 최종협의 내용의 이행계획과 평가서상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관리를 내용으로 함.
- (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수질, 대기질, 생태계 등 계절에 따른 환경변화를 조사해야 함으로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지시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음.
- (아) 담수호를 오염시킬수 있는 오폐수 발생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발생요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 담수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함.

#### (4)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가) 농림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된 자를 선정하여 세부설계를 위탁실시함.  
다만, 매립면적 1,000ha 미만인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위탁실시
- (나) 세부설계시에는 사업시설물 부지의 지질조사, 연약지반처리에 필요한 조사시험, 축적재료와 조·세골재의 매장량 및 필요한 조사시험 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다)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가 세부설계자를 위탁한 지구의 세부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확정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라)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설부설계비 회수, 세부설계자의 문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마)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에 따라 1,000ha이상 지구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000ha미만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함.
- (바) 농림부장관은 제(5)항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 사업시행자는 예산내시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을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인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다) 매립면허관청이 농림부장관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처분안을 포함한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인가(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면허관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전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함.

- 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규정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개요(매립면적 포함)
- 3) 세부설계도서
-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5) 사업비 내역 명세서(공사비 포함)
- 6)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 7)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 실시계획을 인가한 면허관청인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규정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2) 공정계획

(가) 공사의 발주 및 계약공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실시계획(시행인가)이 인가된 공종에 한함.

(나) 사업시행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입찰계약 상황을 도지사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 사업추진상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보고(제출) 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조달청장에 공사계약을 요청함에 있어 우수 시공업체에 의한 시공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심사강화와 제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자는 당해 년도 예산집행계획서(이하 당해년도 사업시행이라함)에 공정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당해년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다만,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마)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의 당해년도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투자효율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바)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자재의 확보 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여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사) 제(마)항의 공정계획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천재지변 또는 투자효과 제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시·도지사가 공정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승인된 공정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자) 시·도지사(농어촌진흥공사장)는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주요시설물(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시행계획변경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시행계획의 변경(물량변경)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다) 시·도지사는 현지 여건상 부득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요시설의 규모, 형식, 구조 변경, 기초지반개량공법 등의 변경 및 수혜면적이 10%를 초과하는 증감, 재해대책지원에 의한 보강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라) 또한,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단가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과 5%초과 공사비를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제(라)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시공한 물량변동 수반의 댓가지급은 계약당사자가 자체해결하여야 함.

#### (4)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위탁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연약지반의 처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종 및 구조물 시공시에는 복수감리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반시험 및 기술을 검토토록 하여 계획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바)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사)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현장확인,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5) 어업권 보상

##### (가) 보상물건조사 실시

- 1)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유수면에 권리를 가진 자와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물건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2) 물건조사 작성시는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함.

##### (나) 평가기관의 선정 및 의뢰

- 1) 사업시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2) 평가기관 선정시 평가실적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다) 보상액의 산정

보상평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된 후 관계 보상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6) 점 사

### (가) 검정 및 정산

- 1)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년도말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달한 사업 실행검정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에게 실행검정신청을 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인가권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검정신청 즉시 년도말 검정은 12월 20일까지 검정을 실시하고 실행검정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검정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문서 사본 및 검정정산서(사업실적조서 첨부)를 첨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년도말에는 12월 25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기금예치이자) 등은 농지조성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 (7) 사업준공

- (가)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면허관청이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처분안을 작성 농림부의 관인날인을 받아, 농림부장관 명의의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면허관청인 농림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8) 사후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전이라도 일시위탁경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매각준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위탁경작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에 기여토록 할 수 있음.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및 매각준칙의 규정에 따라 분배·매각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 일시위탁경작, 매각관리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준칙 관련규정을 적용함.

(9)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비

- (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관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나) 사업비(개발비)에 계상된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환경관리비 등의 수령자가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가 농진공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다) 관리비는 효율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재산적 성질의 물건 구입을 최대한 억제 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기하여야 함.
- (라) 잡지출인 이전등기, 공부정리비는 사법서사법에 규정한 효율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10) 예산 및 자금의 운용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주무부처의 장이 내시한 예산액에 의거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가서 사본 및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지원 계약체결 요청을 하여야 함.

- (나)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자금집행계획서를 검토, 실행자금집행계획(변경계획) 및 분기별 자금 배정요구서를 작성 기금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 사업시행자는 통보 받은 분기별 자금배정액내에서 월별 자금집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실적에 의한 자금 교부요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하고 기금수탁 관리자는 자금집행계획과 비교 검토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배정함.
- (라) 사업비 자금을 배정(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하되 보상비, 순공사비 등의 직접비용은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함.
- (마)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 (바) 배정받은 농지관리기금은 지정된 목적이외로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자금의 전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도부진 또는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1) 월별공정계획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2) 월별사업추진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매월 25일 현재의 지구별 추진상황을 각 공구별 공종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지침 서식5 준용)

【별지 제1호서식】

## 공 정 계 획 표

- 확인자(사업시행자) : \_\_\_\_\_ , 검토자(공사감독소장) : \_\_\_\_\_  
 ○ 작성자(현장대리인) : \_\_\_\_\_  
 ○ 사업명 : \_\_\_\_\_  
 ○ 시행자 : 지구명, 개발면적 : ha(농지조성 : ha, 배후지 ha)

가. 사업명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승인액	년까지전사업비	년이후전사업비	년도예산액	공정(%)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과목	공종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순공사비																									
	지급품비																									
	양 회 철 근 기 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비																									
	- 환경영향 평가관리비																									
수입 재원	농지기금																									
	기타( )																									
	계																									

【별지 제2호서식】

## 월 별 사 업 추 진 현 황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공 종	총계획		○○년도					계획 대 실적			총 누계 진도 % (E/ C)	○○년 이후		부 진 사 유	
				○○년도 계 획			○○년도계 획		○월말		까지 누계					당해 연도 진도 % (E/ C)
		사업 량	사업 비 (A)	사업 량	사업 비 (B)	진도 (B/A)	사업 량	사업 비 (C)	계 획		실 적	진 도 % (E/ D)				
									사업 량	사업 비 (D)			사업 량 (E)	사업 비 (E/ D)		
○	○ ○ ○ 계															
○																
○	○ ○ ○ 계															
○																



16	농지정보화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관리과입니다.

### 1. 목 적

- 전국에 분산된 농지원부의 종합적 전산관리로 농지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 각종 농지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
- 공간통계분석기법등을 통한 지역분석자료 생산으로 농수산관련 자료의 활용도 제고

### 2. 추진방향

- 전국 1,573개 시·구·읍·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모든 농지원부 자료를 전산관리하여 민원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도모
  - 농지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농지정보제공
  - 농어촌구조개선 및 영농규모적정화 사업수행의 효율적 활용
- 농어촌관련 각종자료의 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농업정책 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촌발전대책등 개발업의 타당성 및 기본설계자료 제공
- 농지전산시스템과 농어촌지형정보시스템(GIS)을 연계 운용하여 농지관련 정보 활용의 효율성 제고

### 3. 근거법령 : 농지법 제50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98	'99~2004
사 업 량	-	-	-	-	-	-
사 업 비	13,369	8,440	2,000	1,825	1,104	-
- 보 조 (농지관리기금)	13,369	8,440	2,000	1,825	1,104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목 적

-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를 종합적으로 전산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체계 구축
- 농지에 관련된 도면등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정책결정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형정보체계(RGIS) 구축

#### — < 지형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 —

- 지형정보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지도를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입력하고 지상과 지하의 시설물, 도로, 부존자원등과 관련된 속성 정보들을 추가하여 저장·분석처리함으로써 국토계획, 지역개발, 자연현상추정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정보체계로서 공간 데이터(Spatial Data)와 속성 데이터(Descriptive Data)로 구성됨
  - 공간데이터는 2차원 또는 3차원 자료인 토지, 지형, 지리등을 표현
  - 속성 데이터는 공간데이터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표현

##### (2) 단계별 추진방향

단 계 별	사 업 내 용
1단계 (‘90~’94)	○ DB구축단계 - 초기 자료입력, S/W개발, 주전산기 도입
2단계 (‘95~’97)	○ 정착운영단계 - 시험운영을 통한 DB정비 및 보완 ※ 농어촌지형정보체계(RGIS)관련 DB구축 병행 - 시스템 보완발전(타시스템과의 연계운영체계 개발)
3단계 (‘98이후)	○ 발전단계 - 전산체계이용 효율증진 기반 확대 - 타 행정전산망 연계활용

**(3) 사업현황**

- 농지원부 전산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D/B구축
  - 전국의 농지원부를 전산 입력하여 농지원부 D/B구축
  - PC용 농지원부 D/B를 개발하여 시·구·읍·면 설치 및 운영지원
- 농어촌지형정보체계(RGIS) 구축
  - 농지 및 농지관련 공간정보를 전산입력하여 농어촌진행정보 D/B구축
  - 공간자료 활용을 위한 분석·운영프로그램 개발

**(4) 기대효과**

- 농지관리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농지원부, 농지매매, 농가 및 경작자 확인, 농지임대차 확인, 자경여부 확인, 농업진흥지역 편입확인
  -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 추곡약정수매등 시행관련 정보제공등
- 농지관련 공간정보 제공
  - 경지정리, 농업용수, 토양성분, 지하수맥, 도로·기상현황
  - 시·군농어촌발전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 농지이용계획 수립 지원
  - 적지선정에 필요한 각종정보의 제공으로 의사결정지원

**나. '97사업비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지관리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	1,825	1,825	1,825	-		
농지전산화, GIS구축비	-	1,825	1,825	1,825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림 부 :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지관리과 02)503-7265
- 농어촌진흥공사 : 전산실 0343) 20-3318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구 : 산업과장
- 읍·면·동 : 읍·면·동장
- 농어촌진흥공사 : 전산실장, 군지부장

#### (2) 자료관리 담당자

- 농지원부 전산화 및 농어촌 지형정보 체계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 (3)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 농지전산업무 처리요령(농지51310-190, '94 3. 14)에 의함

####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전산기, PC, 주변 장치등	구입일	폐기시	사후관리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타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는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등을 기록

### 나. 보고·기타등

-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정산을 받아야 한다

17 |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생산과입니다.

**1. 목 적**

- 벼 등 주요농작물에 대하여 순도높고 활력있는 고품질 우수품종 증식 생산

**2. 추진방향**

- 단위수량이 높은 주요농작물 보급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보급종의 전 단계인 원원종 및 원종생산을 확대
  - 종자보급률 제고계획

구 분	보급률 확대계획 (%)		원종생산 지원면적 (a)	
	'97	'98	'97	'98
계	-	-	15,998	19,484
벼	25.4	27.4	4,640	5,044
보 리	23.4	25.9	3,300	4,333
감 자	26.2	27.3	4,646	5,087
옥수수	48.0	51.6	500	520
콩	7.6	9.7	2,912	4,500

※ 일본의 종자보급률('94) : 벼 70%, 보리 67, 콩 29, 감자 58, 옥수수 100

- 감자원원종은 감자망실 시설지원이 '96년도에 완료됨으로써 '97 사업에는 생산에 필요한 경상경비만 지원

3. 근거법령 : 주요농작물 종자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원원종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ha 195	60	15	15	15	90
사 업 비	계	백만원 2,784	503	168	182	204	1,727
	보 조 용 자	2,784	503	168	182	204	1,727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나. 원 종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ha 2,817	648	178	213	234	1,544
사 업 비	계	백만원 21,936	4,205	1,546	1,593	1,920	12,672
	보 조 용 자	21,936	4,205	1,546	1,593	1,920	12,672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배 경

- 주요농작물종자법 제3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요농작물 생산 사업을 위임하여 수행

##### ○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 지원 조건 : 하위 채종단계에 사용할 종자 무상 인도

##### ○ 지원 종류 : 원원종, 원종생산비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

####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ha -	백만원 1,775	1,775	1,775	-	-	-
○ 원 원 종	31	331	331	331	-	-	-
○ 원 종	131	745	745	745	-	-	-
○ 감 자 원 종	5,087	699	699	699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생산과 (전화 : 0343-46-2433)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도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채종 전단계의 종자원 확보상황등을 감안하여 변경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원원종, 원종생산포장 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

- 포장검사    [ 감자, 옥수수 : 2 회  
                  벼, 맥류 등 : 1 회

- 합동진단 : 곡종별 1 회

나. 보 고

-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생산과에 원원종, 원종 작물별 품종별 생산계획 대 실적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장

다. 신청절차 : 각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 담당부서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원원종,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예산신청 세부내역 (산출근거 포함) 1부



[별지 제1호서식]

**'98년도 원원종·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1. 요구내역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95	'96	'97	'98	'99~2004
원 원 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원 종	사업량	a				
	사업비					
	- 국비 - 도비					

**2. '98 곡종별 예산신청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합 계		a			
원 원 종	소 계				
	벼 맥 류				
원 종	소 계				
	벼 맥 류				

※ 산출내역 별첨 (상세히 작성)

18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지원(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과입니다.

### 1. 목 적

- 조직배양기술인 씨감자 대량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우량씨감자를 대량 생산·보급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함

### 2. 추진방향

- 인공씨감자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저렴한 가격의 씨감자 공급확대
- 농업생산자 단체에서 우량씨감자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액)	'98~200 4
사 업 량		3개소	-	1	2	-
사 업 비	계	5,050	-	1,450	3,600	·-
	보 조	840	-	-	840	-
	읍 자	2,620	-	1,000	1,620	-
	지방비	420	-	-	420	-
	자부담	1,170	-	450	720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씨감자 생산시설지원 >

1) 사업주관 : 강원도지사

2) 사업현황

#### 가)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우량씨감자 수확·저장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구입비 지원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단 위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				2,100
○ 저온저장고	평	600	2	1,200
○ 선 별 장	평	200	1.5	300
○ 선 별 기	대	1	600	600

#### 나)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비율 : 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다) 지원대상

- 대관령원예협동조합 등 씨감자를 대량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 라)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격 : 우량씨감자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대관령원예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우량씨감자의 대량생산을 위한 기상여건이 갖추어진 경작지, 기술인력등 씨감자 대량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생산자 단체를 기준으로 강원도 지사가 선정

바) 사업시행체계

사업자	시·군	시·도	농림부
사업계획서작성 및 실시, 시설운영 및 관리	사업자심사, 선정, 사업지도 및 보조결정, 정산	심사및신청, 사업자확정, 사업추진지도 및 사후관리	사업계획수립 및지침작성 시달

<인공씨감자 대량 생산·유통시설지원>

1) 사업주관 : 농림부장관

2) 사업현황

가)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보완 및 지역별 감자 발아육묘시설 설치지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1,500
○ 저온저장시설	평	50	2	100
○ 멸균시설	평	60	2.6	156
○ 세척시설	평	20	6	120
○ 오.폐수처리시설	식	1	124	124
○ 발아육묘시설	개소	2	500	1,000

나)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비율 : 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다) 지원대상

- 인공씨감자생산시설, 인력을 갖추고 있는 KAIST 연구협력업체 및 생산자 단체

라) 사업신청

- 구비서류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인공씨감자 조직배양 기술능력과 씨감자 생산·보급기술등을 갖춘 KAIST 연구협력업체 및 생산자 단체

바) 사업시행체계

사업자	농협중앙회장	농림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시, 시설운영 및 관리	사업추진지도 및 사후관리, 사업기성고 확인후 자금 집행(자부담포함)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 시달, 사업자 선정 자금배정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개소	3,600	2,460	840	1,620	420	720
-씨감자 생산시설지원	1	2,100	1,260	840	420	420	420
-인공씨감자 대량생산 유통시설지원	1	1,500	1,200	-	1,200	-	300

## <추진체계>

### 가.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국 채소과 전화 500-2683, 2684
- 시·도 : 강원도 농정국 농산과, 전화 0361-57-5611
- 시·군 : 강원도 군청 산업과

### 나.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장은 지역실정과 사업목적에 감안하여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설규모를 조정

### 다.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은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담사업비를 사업자 명의로된 은행 계좌에 예치토록 하고 수시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유통시설지원 사업자금의 융자금 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사업 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본 사업은 사업자 직영으로 운영토록하고 타인에 의한 임대운영은 금하며, 당초 사업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씨감자 생산시설은 연중가동토록 하여 시설가동을 제고
- 본 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지사,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지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감자 대량생산</li> <li>· 유통시설</li> <li>○ 씨감자 생산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공일로부터 1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기간중 사업 대상자의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는 사업주 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li> </ul>	

나. 우량씨감자 생산·보급

- 본 사업이 국내 부족한 우량씨감자를 농가에 확대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씨감자 공급
- 씨감자 공급시는 자체 품질관리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은 우량종자만 공급
- 공급되는 우량씨감자는 반드시 품질표시를 부착하여 농가에 공급

다. 보고, 기타

- 강원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집행·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인공씨감자 대량 생산·유통시설지원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즉시 사업추진 완료보고

[별지 제1호서식]

## 인공씨감자 대량생산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명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사업계획

가. 건축 및 시설기자재 구입계획

내역별	규모	단가	금액	비고

나. 사업추진일정

다. 생산시설 및 기자재 활용계획

- 우량씨감자 및 인공씨감자 생산능력 및 판매계획

라. 사업의 수익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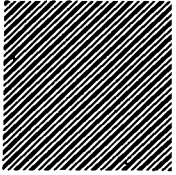
마. 기타사항

<구비서류>

- 사업부지 확보계획(등기부등본 및 장기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자부담 확보 및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계획



## Ⅱ. 농 업 기 계 화



# 여 백

19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입니다.

### I.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1. 목 적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등 농업경영개선을 이룰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2. 추진방향

- 농기계구입 보조지원과 융자지원 병행 실시
- 대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진흥지역의 기계화 촉진
- 지역실정에 맞는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적정수량의 공급과 사후관리 강화로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임.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제7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94까지	'95	'96	'97 (예산안)	'98	'99-04	합 계
사업량 (천대)		375	222	228	220	300	1,500	2,845
사업비	계	1,045,988	589,077	1,037,700	1,003,700	1,962,000	9,810,000	15,448,465
	보 조	171,094	89,389	99,000	95,000	-	-	454,483
	융 자	146,186	202,600	211,356	205,036	549,360	2,746,800	4,061,338
	지 방 비	157,971	89,389	99,000	95,000	-	-	441,360
	농협융자	269,533	34,370	317,034	307,554	824,040	4,120,200	5,872,731
	자 담	301,204	173,329	311,310	301,110	588,600	2,943,000	4,618,553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 (1) 지원대상 농기계

- 지원대상 농기계는 동력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국정검사에 합격한 농기계(동력경운기 및 관리기의 부속작업기와 신규 보급되는 특수 농기계는 제외)를 우선으로 하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별표1]과 같음.
- 개별 기대의 품질과 사후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농업용 은풍난방기, 은실용 동력개폐기, 중고차동장치 부착 경운기(관리기)용 트레일러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지원 공급함.
- 지원대상 농기계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농민 판매가격을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매년 반기별(1.1기준, 7.1기준)로 농업기계가격을 생산업자, 공급자와 보조 및 읍가지원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함.

##### (2) 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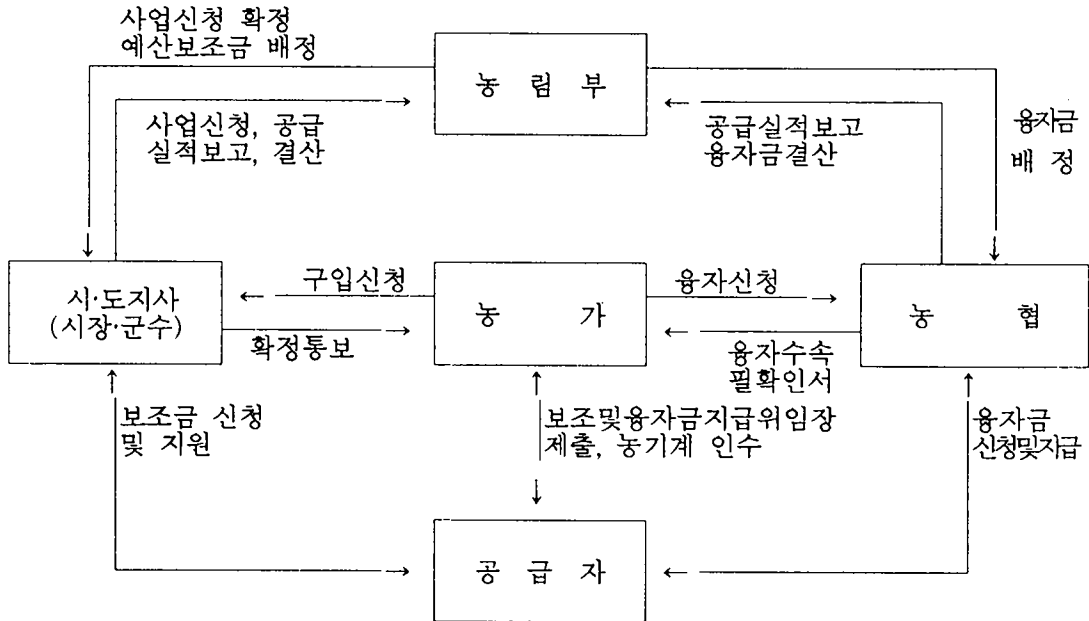
###### ○ 보조지원 농기계

- 일반농가의 호당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한도액은 2백만원으로 하며,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
- 보조지원 대상 한도액 2백만원을 초과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는 1백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별표2]의 「기종별 지원 한도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읍가지원
- 보조지원 소요액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50으로 분담
- 일반농가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은 농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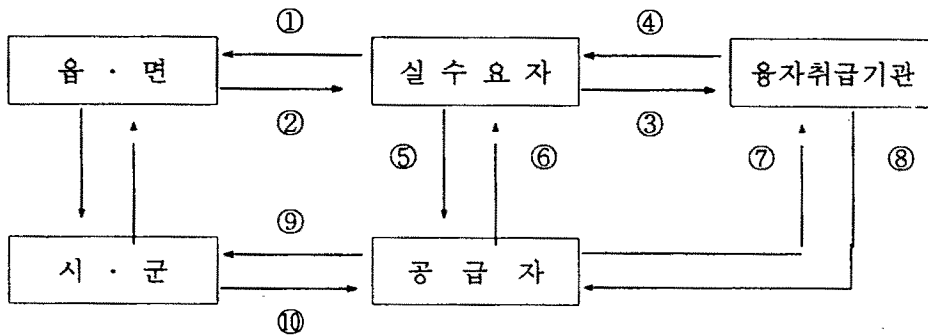
○ 용자지원 농기계

- 보조지원없이 용자지원만으로 농가 및 농기계 이용조직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별표2]의 「기종별 지원한도액」 까지 용자 지원
- 중고농기계 구입 지원액은 중고 농기계 구입가격의 80%까지 용자 지원
- 농업용 온풍난방기 및 온실용 동력개폐기 구입설치의 경우에는 농가당 대수를 제한하지 않고 시설규모에 맞는 대수를 용자지원

(3) 사업시행체계



(4)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체계도



**보조지원 농기계**

**읍자치원 농기계**

- ①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제출
- ②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발급
- ③ ②의 선정확인서와 읍자치원신청서류 제출
- ④ 읍자치원수속필확인서 교부
- ⑤ 기대인수 신청
  - 읍자치원수속필 확인서
  - 읍자치원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 보조금지불위임, 자부담금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 ⑥ 기대인계
- ⑦ 읍자치원실행 신청
- ⑧ 읍자치원실행신청 접수중 발급
- ⑨ 보조금지급신청(보조금지급신청서)
- ⑩ 보조금지급

- ① 생략
- ② 생략
- ③ 일반읍자치원 농기계 구입신청서와 읍자치원신청서류 제출
- ④ 읍자치원수속필확인서 교부
- ⑤ 기대인수 신청
  - 읍자치원수속필 확인서
  - 읍자치원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 자부담금 납부
- ⑥ 기대인계
- ⑦ 읍자치원실행 신청
- ⑧ 읍자치원실행신청 접수중 발급
- ⑨ 생략
- ⑩ 생략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1) 사업량 및 지원액

(단위: 대, 백만원)

구분	사업량	지원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읍자치원 (국고+농협)
보조지원농기계	190,000	565,250	95,000	95,000	375,250
읍자치원농기계	30,000	137,340	-	-	137,340
합계	220,000	702,590	95,000	95,000	512,590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3]과 같음(보조지원 농기계)

(2) 기종별 지원조건: 지원금리 연리 5%  
 ○ 기종별 지원을 및 상환기간

기종명	지원조건		기종명	지원조건	
	지원기준	융자금 상환기간		지원기준	융자금 상환기간
1. 보조지원농기계	상당			상당	
농업용트랙터	90%	1년거치7년 균분상환	탈망기	90%	1년거치4년 균분상환
농업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90	1 " 7 "	동력중경제초기	90	1 " 5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60	1 " 5 "	농산물세척기	90	1 " 5 "
동력이앙기	90	1 " 4 "	원거리고성능 방제기	90	1 " 4 "
동력이앙기용부속 작업기	90	1 " 4 "	무인자동방제기	90	1 " 4 "
동력이앙기용 축조시비기	90	1 " 4 "	동력베토기	90	1 " 5 "
벼직파기(전용형)	90	1 " 4 "	다목적관리작업차	90	1 " 5 "
바인더	90	1 " 4 "	과수인공교배기	90	1 " 5 "
콤바인(자탈형)	90	1 " 4 "	화해결속기	90	1 " 5 "
콤바인(보통형)	90	1 " 4 "	온실용살수기	90	1 " 5 "
곡물건조기	90	1 " 7 "	채소수확기	90	1 " 5 "
관리기 및 그 부속 작업기	90	1 " 4 "	탄산가스발생기	90	1 " 5 "
승용관리기	90	1 " 4 "	2. 용자지원농기계		
승용관리기용 부속작업기	90	1 " 4 "	보조지원농기계		(1과 같음)
이식기	90	1 " 4 "	온실용동력개폐기	80	1 " 5 "
농산물건조기	90	1 " 7 "	농용로우더(전용형)	80	1 " 5 "
농업용온풍난방기	90	1 " 5 "	농용굴삭기(전용형 및 경운기부착형)	80	1 " 5 "
스피드스프레이어	90	1 " 5 "	농용잔가지파쇄기 (부착형 및 전용형)	80	1 " 5 "
과일선별기	90	1 " 5 "	농용환풍기	80	1 " 5 "
예도형동력예취기	90	1 " 4 "	농용튍밥제조기 (전용형)	80	1 " 5 "
동력분무기 (주행형및원격조종형)	90	1 " 4 "	곡물수집차	80	1 " 5 "
육묘파종기	90	1 " 4 "	동력퇴비살포기	80	1 " 5 "
동력연무기	90	1 " 4 "	채소자동접목기	80	1 " 5 "
농업용동력운반차	90	1 " 5 "	버섯자동천공접종기	80	1 " 5 "
농업용튍밥제조기 (경운기,트랙터부착형)	90	1 " 5 "	농용혼합기	80	1 " 5 "
동력전정기(전용형 및 부착기)	90	1 " 5 "	하우스환경제어장치	80	1 " 5 "
			벼품위자동판정기	80	1 " 5 "
			경운기,관리기용트레일러 (중고차동장치부착)	80	1 " 5 "
			중고농기계 (본문참고)	80	1 " 5 "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된 농업기계는 농업기계가격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 다. 사업시행

- (1) '97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한 사업량은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공급

합 계	경 운 기	대 · 중 · 소형
190,000 대	70,000	120,000

#### (2) 공급계획량 배정

- 시·도별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공급 계획은 [별표3]과 같음.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주요 농기계에 대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 고시한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계획(고시 제1992-16호, '92.4.2)과 지역별 주요농기계 확보지침[별표4]에 따라 작목별·경영체별 기계화 모델 및 지역별·기종별 적정 농기계공급 세부목표를 세워 적정수량의 농기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별·기종별 편중 과잉공급을 방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읍·면별 농기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 확정후 읍·면별로 시달하고 농협시·군지부 및 공급자에게 통보함.

#### (3) 공급자

- 농업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사후봉사사업자의 자격 및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은 농협 사후봉사사업자(이하 “공급농협”이라 한다)와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사업자로서 농업기계 생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통보한 자로 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3-7228~9)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영농자재부



- 도 : 농정국 농산(농정,유통)과, 농협도지역본부 자재과
- 군 : 산업(농산,농정)과, 지도소, 농협시군지부,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 읍·면 :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1) 보조지원 농기계

###### (가) 자격

-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및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기계공동이용조직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동안 보조 지원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수해등 재해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읍·면장이 확인하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기계 공동이용조직이나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가 내용연수이내에서 노후화 되었다고 읍·면장이 확인하는 경우
  - 읍자지원으로 농업용 온풍난방기 또는 온실용 동력개폐기를 구입 사용중인 경우

######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로서 기존 사용폐농기계의 조치계획이 확실한 농가를 우선 지원
  - 행정기관 또는 폐농기계처리장에서 「폐농기계처리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받아 제출한 농가
- 기계화영농사, 선도농가, 전업농,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기타 농가순으로 함. 다만, 버직파기 및 트랙터작업기등 부속작업기 구입희망농가는 우선 지원
- 농기계 공급 보조지원을 한번받은 농가가 추가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신규 신청농가보다 차순위를 적용  
다만, 대형농기계(트랙터, 콤팩트, 스피드스프레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다) 정부지원 농업기계화사업 중복 참여 제한

- 농업기계구입자금 지원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위탁영농회사)의 사업은 다른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의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동이용조직(기계화영농단등) 참여농가가 다른 농업기계화 사업의 보조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공동이용조직을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농규모, 작부형태 등을 감안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동일기종 구입, 동일년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 기존 공동이용조직에서 탈퇴한 자가 쌀전업농등으로 선정되어 대형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기계공급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 농발심의회의 기존 공동이용조직원들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의 농기계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공급

(라) 선정절차 및 구비서류

- 읍·면장은 농기계구입 희망농가로부터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 농기계 공급 계획과 수요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선정된 농가의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산정한 후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발급함.

(2) 용자지원 농기계

-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농업회사법인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지원만 받고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용자지원 농기계구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용자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용자수속필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함.

라. 농기계구입신청 및 인수

(1) 보조지원 농기계

- 보조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농가는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사후봉사 이행보증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 보조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동 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신청함.

- 읍·군·구·읍·면·동 농업기술센터장은 위항의 읍·군·구·읍·면·동 신청에 대하여 읍·군·구·읍·면·동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읍·군·구·읍·면·동 신청필요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함.
- 읍·군·구·읍·면·동 신청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읍·군·구·읍·면·동 신청필요확인서, 읍·군·구·읍·면·동 신청서 및 기대인수확인서(지원한도액내의 읍·군·구·읍·면·동 신청 지원 필요시 제출,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고 기대를 인수함.

## (2) 읍·군·구·읍·면·동 신청 농기계

- 읍·군·구·읍·면·동 신청만으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군·구·읍·면·동 신청 농기계 구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의 확인을 받아 동 신청서와 읍·군·구·읍·면·동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읍·군·구·읍·면·동 신청기관장에게 신청함.
- 읍·군·구·읍·면·동 신청기관장은 위항의 읍·군·구·읍·면·동 신청에 대하여 읍·군·구·읍·면·동 신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읍·군·구·읍·면·동 신청필요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함.
- 읍·군·구·읍·면·동 신청을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읍·군·구·읍·면·동 신청필요확인서, 읍·군·구·읍·면·동 신청서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기대를 인수함.

## (3)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 읍·군·구·읍·면·동 지원

- 지원대상 농기계는 [별표1]과 같음.
- 읍·군·구·읍·면·동 신청 상환잔액이 있는 중고농업기계는 미상환액을 승계함.
- 읍·군·구·읍·면·동 신청 상환잔액이 없는 중고농업기계는 다음과 같이 읍·군·구·읍·면·동 지원함.
  - 읍·군·구·읍·면·동 지원액 : 중고농기계 구입가격의 80%이내
  - 읍·군·구·읍·면·동 기간 : 잔여 내용연수(내용연수 - 사용연수)이내
  - 읍·군·구·읍·면·동 신청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분상환
  - 거래확인 : 지정농업기계 사후봉사사업자(시·군·구, 읍·면·동 및 농협) 또는 영농회장이 확인한 구매계약서 부분 또는 사본징구

## 마. 공급자의 보조금과 용자금 신청 및 지급

### (1)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업기계 공급자는 매월 2회이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농기계 구입자금)교부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되 공급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보조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으며, 농기계 생산업체가 시·군 농업기계 사후봉사사업자에게 위탁판매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생산 업체가 직접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으며
- 시·군 농업기계 사후봉사사업자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공급업무가 어려울 때는 생산업체가 직접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매월 2회 이상 지급하며, 사전에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를 확인함.  
※ 지방비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만이라도 우선 지급

### (2) 용자금 신청 및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시에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용자수속필 확인서, 용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를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용자금 지불을 신청함.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행신청 접수후 공급자에게 용자실행 신청접수증(별지 제9호서식)을 발급하고, 농업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농기계구입 및 규격의 상이여부를 확인함.
- 농협은 확보된 자금범위내에서 월2회 이상 용자실행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 (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자가 3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나)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농기계 보조지원확인서 발급 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다)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보조금 지급후 당해연도내에 보조지원 공급된 농기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치 않았을 경우 및 선공급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해당읍자취급기관장에게 읍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며, 읍자취급기관장의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부당행위 통보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회수함.
    - ※ 선공급된 농기계란 읍자수속필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발급 이전에 실수요자에게 공급된 농기계를 말한다.
  - (라)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보조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보조금 관리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다만, 농기계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마) 사망, 질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읍·면장에게 신고 하여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 전환할 수 있음.
  - (바)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조사업의 수행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사)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아) 공급자가 부당공급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사후 봉사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함.
  - (자)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경운기(관리기) 트레일러 공급업체는 농업인에게 중고차동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킨 후 공급하여야 한다.
- (2)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 및 대출금 사후관리
- (가) 농협중앙회장은 공급농협에,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농기계 생산 업체와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자에 대하여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나) 농업기계 구입자금 용자과정에서 부적합한 용자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 ①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 농협사후봉사업자
  - 농업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용자지원 대상기종이 아닌 기종(본체)을 공급하고 용자 신청한 경우 : 농기계 사후봉사업자 지정취소 및 고발
  - 용자지원 농기계의 기종 또는 규격이 다르거나, 작업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용자 신청한 경우 : 농기계 사후봉사업자 지정취소 및 고발
- ② 농업기계 실수요자에 대하여는 용자액(용자 유용액)을 회수하고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③ 용자취급기관의 농업기계 인수 확인자 문책
- ④ 농업기계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생산비축자금 및 부품확보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기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다) 농협은 용자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용자금 관리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시 용자금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라)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급농협이 실수요자의 용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후봉사업자 공급분의 용자 실행 신청의 부당지연등 불공정한 판매행위를 하는등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농업기계 공급농협을 지정취소 하여야 함.

(마) 정부지원 농기계를 부당공급하는 등에 의해 지정취소 사유 발생으로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의 지정승인을 취소당한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자, 농협사후봉사업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간 정부지원 농기계를 공급할 수 없음.

### (3) 대형 농업기계의 이용기술지도

- (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관할농협에서 기술지도 대상 농업기계(50마력 이상 트랙터, 승용이앙기, 4조이상 콤바인)의 용자실행사 명단을 취합하여 매익월 10일까지 관할시·군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나) 농촌지도소장은 농협에서 통보된 기대구입 농가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기대구입 내역을 확인하고 대형 농업기계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1년간 경제적인 이용방안 등을 지도하여야 함. 구입기대가 없거나 규격 또는 기종이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과 용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후관리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4) 농업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가) 농업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의 공급자(농업기계제조업자·판매업자·농업기계사후봉사업자)가 책임을 짐.
- (나)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공급시 한글로 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부품목록을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시장·군수는 공급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등 사후봉사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지역에 동일 기종을 지원공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농업기계 공급자와 생산업체는 농기계 공급시 당해농가가 보유한 폐농기계를 회수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5) 기 타

- (가) 시·도지사는 농업기계 보유 및 공급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수량이 보급되도록 함과 아울러 사후봉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농촌진흥청장은 본 요령에 의한 대형농업기계의 이용기술지도 세부지침을 시달하여 경제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다) 농협중앙회장은 공급농협 및 농기구써비스센터가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농기계 생산업체와 공급농협, 또는 시·군·구단위 농업기계사후봉사사업자간의 사후봉사 이행계약, 해약, 대표자·소재지·사후봉사지역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월별로 익월 20일까지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 읍자실행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마)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는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당 공급행위를 하는 등으로 읍자 신청 접수중단의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후봉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는 업소에 대하여 시·군 회보에 게재하는 등으로 농기계 구입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는 폐농기계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폐농기계처리확인서의 (별지 제18호서식) 서식을 마련 농업인이 발급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농업기계	년 1997	년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li> <li>○ 사망, 질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 전환</li> </ul>	



나. 보 고

	보 고 자	보고 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농업기계 생산 출하실적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월보	의월 7일	별지제13호서식
농업기계 용자지원 공급상황	농협중앙회장	“	“	별지제14호서식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실적	“	“	“	별지제15호서식
농업기계 보조지원 공급 및 집행실적	시·도지사	“	의월20일	별지제17호서식
농업기계 품질보증서 발급실적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분기보	“	별지제16호서식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농기계구입용자지원 : 농가 및 생산조직

다. 신청절차

-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라. 구비서류

-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 I 의 <추진체계>다항에 의함.

바. 기타사항

-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농가 및 생산자조직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예산을 신청하여야 함.

## II.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

### 1. 목 적

-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우리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노력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따라서 손쉽고 노동력이 적게드는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으로 쌀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감소추세인 벼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쌀 수급의 안정을 도모코자 함.

### 2. 추진방향

- 직파재배는 적지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벼 직파재배 여부는 농가 자율적으로 결정
-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직파재배 기술지도 강화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제7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95까지	'96	'97 (예산안)	'98	'99-'04	합계
사 업 량		-	3,540 대	1,430	3,000	15,000	22,970
사 업 비	계	-	14,370 백만원	5,720	12,000	60,000	92,090
	보 조	-	3,593	1,430	3,000	15,000	23,023
	용 자	-	2,299	915	1,920	9,600	14,734
	지 방 비	-	3,593	1,430	3,000	15,000	23,023
	농협용자 자 답	-	3,448 1,437	1,373 572	2,880 1,200	14,400 6,000	22,101 9,209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 (1) 사업내용 : 벼 직파기등 직파재배에 필요한 기종 지원
- (2) 지원대상자 :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중심으로 경작규모에 따라 1-5  
이상의 농가 및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생산자조직
- (3) 지원대상기종 : 벼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 (4) 지원기준 : 국고보조25%, 지방비보조25%, 융자40%, 자담10%
  - 대출조건 : 연리5%, 1년거치 4-5년균분상환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통보한 농업기계가격 기준
  - 지원한도 : 기종별 작업능력, 경작규모를 감안, 시장·군수가 결정  
- 벼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중 선별 및 일괄지원 가능
- (5) 사업시행체계
  - '97 농업기계구입자금 지원요령의 사업시행체계와 같음

####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융 자 금 (국고+농협)	자 담
대	백만원				
1,430	5,720	1,430	1,430	2,288	572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3-1]과 같음.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3-7228~9)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영농자재부
- 도 : 농정국 농산(농정, 유통)과, 농협도지역본부 자재과
- 군 : 산업(농산, 농정)과, 지도소, 농협시군지부,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 읍·면 :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다. 대상자 선정

(1)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구성원 2/3이상인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2)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 벼 재배농가(조직)
- 농업진흥지역외 벼 재배농가(조직)
- 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일괄 지원요청자
- 기타 벼 재배농가

(3) 선정절차 및 구비서류

- 읍·면장은 농기계구입 희망농가로부터 농기계구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받아 농기계공급계획과 수요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고, 선정된 농가의 직파기계구입 및 보조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산정한 후 직파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자에게 발급함.

## 라. 사업 시행

- 보조지원을 받아 직파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농가는 직파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농기계 공급자의 사후봉사 이행보증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읍·면으로부터 발급받아 동 확인서와 읍·면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에게 신청함.
-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은 위항의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 신청에 대하여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 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 수속필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함.
-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은 완료한 농가는 공급자에게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 수속필확인서,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 지원금 지불 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지원한도액내의 읍·면·동·읍·면·군·구·시·도·청·국·장 지원 필요시 제출,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고 기대를 인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요령에 따름

###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요령에 따름

### 다. 보고사항

	보고자	보고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직파재배 확대 지원실적	시·도지사	월보	익월 20일	별제7호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촌지도소

### 나. 신청자격

- 농가 및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 다. 신청절차

-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라. 구비서류

-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Ⅱ의 <추진체계>다항에 의함.

바. 기타사항

- 농기계구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농가 및 생산자조직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예산을 신청하여야 함.

[별표1]

## 지 원 대 상 농 기 계

1. 보조지원 농기계

- 농업용트랙터
- 농업용트랙터용 부속작업기 :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파종기, 로우더, 비료살포기, 휴림피복기, 심토파쇄기, 결속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굴삭기, 버직파기, 심경로타리, 휴림복토기, 구굴기, 땅속작물수확기, 퇴비살포기, 중경제초기, 발근기, 발근파쇄기, 감자파종기, 볏스프레이어, 모우어, 반전집초기, 옥수수수확기, 목초수확기, 사료배합기, 그레플,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 동력이앙기
- 동력이앙기용 부속작업기 : 측조시비기, 버직파기
- 버직파기(전용형)
- 바인더
- 콤바인(자탈형 및 보통형)
- 곡물건조기
-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승용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이식기
- 농산물건조기
- 농업용온풍난방기
- 스피드스프레이어
- 과일선별기
- 예도형동력예취기
- 동력분무기(주행형 및 원격조종형)
- 육묘용파종기
- 동력연무기
- 농업용동력운반차
- 농업용튽밭제조기(경운기 및 트랙터 부착형)
- 동력전정기(전용형 및 부착형)
- 탈망기
- 동력중경제초기
- 농산물세척기
- 원거리고성능방제기
- 무인자동방제기
- 동력배토기
- 다목적관리작업차
- 과수인공교배기
- 화훼결속기
- 온실용살수기
- 채소수확기
- 탄산가스발생기

2. 읍자치원 농기계

- 보조지원농기계(1과 같음)
- 온실용 동력개폐기
- 농용굴삭기(전용형) 및 농용로우더(전용형 및 경운기부착형)
- 농용잔가지파쇄기(부착형 및 전용형)
- 농용환풍기
- 농용튽밭제조기(전용형)
- 곡물수집차
- 동력퇴비살포기
- 채소자동접목기
- 버섯자동천공접종기
- 농용 혼합기
- 중고농기계
- 하우스 환경제어장치
- 벼품위자동판정기
- 경운기, 관리기용 트레일러(중고차동장치 부착)

[별표 2]

기종별 지원한도액

종 명	규 격	지원한도액	비 고
농업용트랙터 본 체	○ 20마력미만	4,900	천원
	○ 20마력이상 25마력미만	5,700	
	○ 25마력이상 30마력미만	7,200	
	○ 35마력이상 40마력미만	9,000	
	○ 40마력이상 45마력미만	11,600	
	○ 45마력이상 50마력미만	13,500	
	○ 50마력이상 60마력미만	16,800	
	○ 60마력이상 70마력미만	21,100	
	○ 70마력이상 85마력미만	22,500	
	○ 85마력이상 100마력미만	25,300	
	○ 100마력이상	34,200	
	※ 안전캡 부착 구입시	1,000추가	
농업용트랙터용 플라우	○ 자동양용 2련	400	
	○ 자동양용 3련이상 5련미만	700	
	○ 자동양용 5련이상	1,000	
	○ 모듈드보드 단용 3련이상	1,200	
	○ 모듈드보드 양용 3련이상	3,300	
	○ 모듈드보드 회전 2련이상	3,300	
	○ 원판구동 6련이상 10련미만	2,800	
	○ 원판구동 10련이상	3,400	
	○ 이랑쟁기		
	- 3~4련	600	
- 5련	800		
- 6련이상	1,0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농업용트랙터용 로타베이터	○ 로타리축길이 130cm미만	600	
	○ " 130cm이상 170cm미만	900	
	○ " 170cm이상 190cm미만	1,200	
	○ " 190cm이상 200cm미만	1,700	
	○ " 200cm이상	1,900	
	천원		
농업용트랙터용 트레일러	○ 적재정량 1.0톤 이하	500	
	○ 적재정량 1.5톤 이상 2.0톤 미만	900	
	○ 적재정량 2.0톤 이상 3.0톤 미만	1,400	
	○ 적재정량 3.0톤 이상	1,700	
농업용트랙터용 무논정지기	○ 경폭 2m미만	1,300	
	○ 경폭 2m이상 3m미만	1,500	
	○ 경폭 3m이상	1,800	
농업용트랙터용 로우더	○ 버킷산적용량 0.3m <sup>3</sup> 미만	1,500	
	○ 버킷산적용량 0.3m <sup>3</sup> 이상 0.5m <sup>3</sup> 미만	2,000	
	○ 버킷산적용량 0.50m <sup>3</sup> 이상	3,100	
농업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 전규격	1,000	
농업용트랙터용 휴림피복기	○ 1두둑식	1,300	
	○ 2두둑식	1,800	
농업용트랙터용 심토파쇄기	○ 1조식	3,900	
	○ 2조식	5,900	
농업용트랙터용 결속기	○ 드럼폭 80cm미만	4,700	
	○ 드럼폭 80cm이상 130cm미만	8,800	
	○ 드럼폭 130cm이상	10,400	
농업용트랙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 전규격	2,700	
농업용트랙터용 굴삭기	○ 버킷산적용량 0.055m <sup>3</sup> 미만	3,400	
	○ 버킷산적용량 0.055m <sup>3</sup> 이상	5,3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천원	
농업용트랙터용 벼직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타베이터포함 구입시</li> <li style="padding-left: 20px;">- 6조이하</li> <li style="padding-left: 20px;">- 7조이상</li> <li>○ 파종장치만 구입시</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00</p> <p style="text-align: right;">2,600</p> <p style="text-align: right;">900</p>	
농업용트랙터용 심경로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규격</li> </ul>	1,400	
농업용트랙터용 휴립복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두둑식</li> <li>○ 2두둑식</li> </ul>	<p style="text-align: right;">1,300</p> <p style="text-align: right;">3,000</p>	
농업용트랙터용 구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규격</li> </ul>	1,500	
농업용트랙터용 땅속작물수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굴취폭 130cm미만</li> <li>○ 최대굴취폭 130cm이상 150cm미만</li> <li>○ 최대굴취폭 150cm이상</li> </ul>	<p style="text-align: right;">2,700</p> <p style="text-align: right;">2,900</p> <p style="text-align: right;">3,500</p>	
농업용트랙터용 퇴비살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재정량 2톤이하</li> <li>○ 적재정량 2.3톤이상</li> </ul>	<p style="text-align: right;">2,800</p> <p style="text-align: right;">4,200</p>	
농업용트랙터용 중경제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초폭 150cm</li> </ul>	2,200	
농업용트랙터용 발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근폭 90cm</li> </ul>	1,500	
동력경운기 및 그부속작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체만 구입시</li> <li>-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li> </ul> </li> <li>○ 8마력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체만 구입시</li> <li>-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800</p> <p style="text-align: right;">1,200</p> <p style="text-align: right;">900</p> <p style="text-align: right;">1,300</p>	
동력이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형 2조</li> <li>○ 보행형 4조</li> <li>○ 승용형 4조</li> <li>○ 승용형 6조(크랭크식)</li> <li>○ 승용형 6조(로타리식)</li> </ul>	<p style="text-align: right;">1,300</p> <p style="text-align: right;">1,600</p> <p style="text-align: right;">5,100</p> <p style="text-align: right;">5,000</p> <p style="text-align: right;">7,700</p>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동력이앙기용 측조시비기	○ 전규격	천원	
		800	
동력이앙기용 벼직파기	○ 보행형 ○ 승용형	800	
		600	
벼직파기(전용형)	○ 보행 6조식 ○ 승용 6조식 ○ 승용 8조식	1,500	
		4,600	
		6,500	
바인더	○ 전규격	1,500	
콤바인(자탈형)	○ 포대형 - 2조	· 정격출력 15마력미만	5,300
		· 정격출력 15마력이상	9,200
	- 3조	· 정격출력 20마력미만	8,400
		· 정격출력 20마력이상	15,700
	- 4조 이상	20,200	
	○ 산물형 - 3조	18,000	
		- 4조이상	22,500
콤바인(보통형)	○ 전규격	53,000	
곡물건조기	○ 30석미만 ○ 30석이상 50석미만 ○ 50석이상 ※ 수분측정기 부착 구입시	3,200	
		3,600	
		4,900	
		700추가	
관리기 및 그부속작업기	○ 3마력미만 - 본체만 구입시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490	
		850이내	
		(구입가격의90%)	
	○ 3마력이상 5마력미만 - 본체만 구입시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900	
		1,500이내	
		(구입가격의90%)	
○ 5마력이상 - 본체만 구입시 - 부속작업기 포함 구입시	1,100		
	2,000이내		
	(구입가격의9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승용관리기	○ 14마력	12,800	천원
승용관리기용 구굴기	○ 구굴폭 30cm	350	
승용관리기용 제초기	○ 제초폭 127cm	800	
승용관리기용 로타리	○ 경폭 127cm	800	
승용관리기용 잔가지파쇄기	○ 파쇄폭 268cm	800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 적재정량 0.5톤	2,000	
이식기	○ 보행형(1조)	2,200	
	○ 자동형(1조)	4,400	
농산물건조기	○ 선반식 또는 겸용식		
	- 2형	1,400	
	- 3형 ~ 4형	2,000	
	- 5형 ~ 7형	2,300	
	- 9형 ~ 11형	2,900	
	- 15형 이상	4,300	
	※랙크(120개)추가구입시 (7형이상 적용)	1,000	
○ 선반순환식	3,400		
- 3형 ~ 4형	4,000		
- 5형 ~ 6형			
농업용온풍난방기		700	
	○ 20,000kcal미만	1,000	
	○ 20,000kcal이상 30,000kcal미만	1,400	
	○ 30,000kcal이상 40,000kcal이하	2,000	
	○ 60,000kcal이상 80,000kcal이하	2,800	
	○ 100,000kcal이상 120,000kcal이하	3,300	
	○ 140,000kcal이상 160,000kcal이하		
	○ 180,000kcal이상 250,000kcal이하		
	- 경유용	3,900	
	- 증유용	6,000	
○ 300,000kcal이상	7,4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스피드 스프레이어		천원	
	○ 자주형		
	- 약액탱크용량 450ℓ 미만	9,400	
	- 약액탱크용량 450ℓ 이상 550ℓ 미만	9,600	
	- 약액탱크용량 550ℓ 이상 1,000ℓ 미만	10,200	
	○ 운반작업 겸용형	11,200	
	※ 안전캡 부착 구입시	1,000추가	
과일선별기			
	○ 중량식(스프링저울식 선별)		
	- 수동공급식(7단)	1,300	
	- 수동공급식(8,10단)	1,700	
	- 수동공급식(12단)	2,300	
	- 자동공급식(6,7,8,10단)	2,200	
	- 자동공급 및 세척식(7,8단)	3,100	
	○ 중량식(추저울식 선별)		
	- 수동공급식(8단)	3,000	
	- 자동공급식(6,8단)	3,400	
	○ 중량식(전자식 선별)		
	- 8 단	3,500	
	- 10단	4,300	
	○ 형상식(드럼식 선별)		
	- 수동	1,500	
	- 반자동공급식	1,600	
	- 자동공급식	3,100	
	○ 형상식(로울러식선별)		
	- 반자동공급식	2,100	
에도형동력예취기			
	○ 전규격	1,100	
동력분무기(주행형)			
	○ 트랙터 탑재식	1,600	
	○ " 견인식	2,100	
육묘용파종기			
	○ 전동산파식	1,400	
동력연무기			
	○ 고온식 연무기		
	- 연무량 40ℓ/h	500	
	- 연무량 50ℓ 이상 90ℓ/h 미만	600	
	- 연무량 90ℓ/h 이상		
	· 약액통 용량 30ℓ 미만	800	
	· 약액통 용량 30ℓ 이상	900	
	○ 상온식 연무기		
	- 연무장치 고정형	2,700	
	- 연무장치 회전형	3,400	
	※ 방제부 추가구입시	1,0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농업용동력운반차	○ 보행형	천원	
	- 적재정량 200kg미만	480	
	- 적재정량 400kg이상	1,500	
	○ 승용형		
	- 2륜 구동식	2,800	
	- 4륜 구동식	3,500	
	- 작업대 겸용형	5,600	
농업용 톱밥제조기	○ 경운기 및 모터 부착형	2,300	
동력전정기	○ 전규격	1,100	
탈망기	○ 전규격	400	
동력중경제초기	○ 전규격	400	
농산물세척기	○ 전규격	1,400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 전규격	8,800	
무인자동방제기	○ 전규격	4,300	
동력배토기	○ 전규격	420	
은실용동력개폐기	○ 전규격	700	
농용굴삭기 (전용형)	○ 버킷 산적용량 0.016m <sup>3</sup> 미만	6,600	
	○ " 0.016m <sup>3</sup> 이상	9,600	
농용로우더	○ 전용형		
	- 버킷 산적용량 0.014m <sup>3</sup> 미만	5,000	
	- 버킷 산적용량 0.014m <sup>3</sup> 이상	6,600	
	○ 경운기부착형	2,200	
농용잔가지파쇄기	○ 경운기 및 모터 부착형	800	
	○ 트랙터 부착형		
	- 파쇄량 1.5톤/h미만	1,200	
	- 파쇄량1.5톤/h이상2.5톤/h미만	2,200	
	- 파쇄량 2.5톤/h 이상	7,200	
	○ 전용형		
	- 정격출력 10마력 미만	1,200	
- " 10마력이상 20마력 미만	10,400		
- " 70마력이상	28,000		

기종명	규격	지원한도액	비고
농용환풍기	◦ 열회수형	1,200 천원	
농용톱밥제조기 (전용형)	◦ 전규격	28,000	
곡물수집차	◦ 세레스 62마력	8,000	
동력퇴비살포기	◦ 승용 0.5톤	5,700	
채소자동접목기	◦ 전규격	600	
버섯자동천공접종기	◦ 4조식	12,000	

[별표3]

**시·도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도별	사 업 량			사 업 비 (보조금)		
	계	경운기	대·중·소형	계	국 고	지방비
계	190,000	70,000	120,000	190,000	95,000	95,000
서울	160	60	100	160	80	80
부산	1,180	430	750	1,180	590	590
대구	990	360	630	990	495	495
인천	2,170	800	1,370	2,170	1,085	1,085
광주	760	280	480	760	380	380
대전	730	270	460	730	365	365
경기	15,970	5,880	10,090	15,970	7,985	7,985
강원	6,840	2,520	4,320	6,840	3,420	3,420
충북	11,210	4,130	7,080	11,210	5,605	5,605
충남	24,830	9,150	15,680	24,830	12,415	12,415
전북	13,510	4,980	8,530	13,510	6,755	6,755
전남	31,760	11,700	20,060	31,760	15,880	15,880
경북	47,360	17,450	29,910	47,360	23,680	23,680
경남	28,790	10,610	18,180	28,790	14,395	14,395
제주	3,740	1,380	2,360	3,740	1,870	1,870



[별표3-1]

**시·도별 직파재배 확대지원 농기계공급 및 보조금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보조금		
		계	국고	지방비
계	1,430	2,860	1,430	1,430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경기	36	72	36	36
강원	32	64	32	32
충북	45	90	45	45
충남	113	226	113	113
전북	622	1,244	622	622
전남	222	444	222	222
경북	300	600	300	300
경남	60	120	60	60
제주	-	-	-	-

[별표4]

## 지역별 주요 농업기계 확보지침

### 1. 목 적

지역(지구)별로 주요농업기계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동 확보목표 범위에서 신규 농업기계를 보급하여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

### 2. 지역별 농업기계화 계획 수립

-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2-16호('92.4.2)로 고시한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현대화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
- 지역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벼농사, 과수, 노지채소 및 특작, 시설농업, 양잠, 축산 등의 기계화와 수확후의 기계화를 말하며 작목별 경영체별 기계화 모델 및 지역별 기종별 적정농기계공급 세부목표를 세워 적정수량의 농기계가 공급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기종별 편중 과잉공급을 방지하여야 함.

### 3. 벼농사의 주요 농업기계 확보 목표 설정

- 지역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농기계 이용조직과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작업별로 주요농기계의 기종별 확보목표 대수를 설정
- 벼농사의 기계화 대상목표 면적은 경지정리 대상면적(전국 1,000천ha)으로 하고 '97까지 완전기계화 되도록 함.

### 4. 신규 농기계 보급대수 결정

- 기종별 확보 목표대수에서 보유대수(폐기대수 제외)를 제외한 대수를 신규 보급대수로 하고 연차별 폐기대수를 감안하여 연도별 신규 보급대수를 산출함.



[별지제2호서식]

##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1. 신청자 및 구입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보조금	용자	자부담	

###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의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대리점, 생산업체 공급농협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읍·면·구청장) 귀하

-----절-----취-----선-----

발급번호 :

##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신청자 주소 :  
성명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보조금	용자	자부담	

19    년    월    일

(시·읍·면·구청장)                      (인)

- ※ 용자지원을 병행하여 구입시는 위 선정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갖추고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십시오.

[별지제3호서식]

## 용자지원 농기계 구입 신청서

접수번호 :

### 1. 신청자 및 구입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용자금	자부담	

###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에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의 「농업기계화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대리점, 생산업체또는 공급농협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용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제5호서식]

**직파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예정 농기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보조금	용자	자부담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의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 : ○○○ 대리점, 생산업체 또는 공급농협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읍·면·구청장) 귀하

-----절-----취-----선-----

발급번호 :

**직파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신청자 주소 :  
성명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보조금	용자	자부담	

19 년 월 일

(시·읍·면·구청장) (인)

※ 용자지원을 병행하여 구입시는 위 선정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갖추고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십시오.

< 예 시 >

( 이 면 )

[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교부조건 ]

1.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절-----취-----선-----

< 예 시 >

( 이 면 )

[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교부조건 ]

1.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교부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교부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제6호서식]

### 융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회사	규격 (형식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기대금액			
						계	융자금	보조금	자부담
부속 작업기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융자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인수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공급농협 :

대표  
조합장 (인)

19    년    월    일

융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제7호서식]

###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조사	규격 (형식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수량 (대)	단가	기대금액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부속 작업기									
계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1. 위 농업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  
하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기계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인수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피위임자(공급자)

공급 대리점 또는 생산업체 :

대 표

공 급 농 협 :

조 합 장

(인)

19    년    월    일

시 장·군 수 귀 하



[별지제8-1호서식]

읍면별 농기계보조금 청구내역

구 분 읍·면	기 종 명	수 량	기 대 금 액			
			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 ○ 읍	○ ○ ○ ○ ○ ○ ○ ○ ○	대				
○ ○ 면	○ ○ ○ ○ ○ ○					

[별지제8-2호서식]

보조금 지급 대상자 현황

기 종 명	기 대 금 액		수 량	기 대 금 액			
	주 소	성 명		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대				

[별지제9호서식]

### 용자실행 신청 접수증 발행 원부

발행번호	발행일자	실수요자 성명	기대 제조회사명		
기종명	수량	기대금액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대				
계					

-----절-----취-----선-----

### 용자실행신청접수증

1. 발급번호 :
2. 실수요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용자실행 신청내역

기종명	규격	형식명	수량 (대)	기대금액				제조회사명 및 대리점명
				계	용자금	보조금	자부담	
부속 작업기								
계								

19    년        월        일  
 용자취급기관장    ○ ○ ○ (인)

공급회사(대리점) 귀하(농협공급분은 “(실수요자)귀하”)

[별지제10호서식]

**농업기계 구입자금 용자신청처리부**

---

접수번호	접수일자	차주 (성명,주소)	용자신청기종		구입금액				처리	
			기종명 (수량)	업체명 (공급자명)	계	용자	보조	자부담	일자	내용

[별지제11호서식]

농기계 보조지원 확인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성 명	주 소	기종명	규격 (형식 명)	제조 업체	구입 처	기대대금(천원)			구 입 예정일	비 고
							계	보 조	용자 및 자부 담금		

[별지제12호서식]

### 대형 농업기계 관리대장

	주 소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일자	이용방안 지도내용
○ 일반회사							
○ 농업회사 법 인							
○ 공동이용 조 직							
○ 쌀전업농							

※ 제조번호란에는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를 기입하며,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를 기재

※ 이용조직의 경우 전기종을 등록 관리하여야 함.



[별지제13호서식]

## 농업기계 생산 출하실적

### 1. 총괄

(단위: 대)

기종	형식명	계획 (A)	생 산		출 하		전년동기		대 비			
			당월	누계 (B)	당월	누계 (C)	생산 (D)	출하 (E)	B/A	C/A	B/D	C/E
계												

### 2. 시도별 출하실적

(단위: 대)

기종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별지제14호서식]

### 농업기계 용자지원 공급상황

(199 . .까지 접수중 발급실적)

#### 1. 총괄

(단위: 대)

기종별	공급계획	공급실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율	
		전월까지	당월	누계(B)		B / A	B / C

※ ( )는 순수대출지원분 별도내서

#### 2. 시·도별 농기계 공급상황

(단위: 대)

구분 시·도별	기종명	공급실적		
		계	농협분	대리점분

#### 3. 업체별, 기종별 공급상황

(단위: 대)

구분 시·도별	기종명	공급실적		
		계	농협분	대리점분

[별지제15호서식]

###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실적

1. 재원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원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농특회계자금 차관회전자금 농협자금등 . . 계						

2. 용도별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

재원별	년간계획 (A)	배정실적		집행실적		비율 (B/A)
		금회	누계	금회	누계 (B)	
○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농기계사후관리 지원 - 수리용부품확보 지원 - 수리장비 지원 - 농기계보관창고시설지원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 자금 계						

3. 기종별 지원실적

(단위: 대, 백만원)

기종별	금 차 지원					지원누계				
	계	수량	보조	음자	자담	계	수량	보조	음자	자담

※ 음자란중 ( )는 순수음자 지원분 별도내서

4. 업체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기종별	금 차 지원				지원누계			
	계	보조	음자	자담	계	보조	음자	자담

[별지제16호서식]

농업기계 품질보증서 발급실적

(단위: 대)

업체별	농업용은풍난방기	은실용동력개폐기	기타	계

[별지제17호서식]

## 농업기계 보조지원 공급 및 집행실적

### 1. 공급실적

< 총괄 일반농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별로 별지 작성 >

(단위: 대)

기종별	공급계획 (A)	공급실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율	
		누계 (B)	전월까지	금월		B / A	B / C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 스프레이어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과일선별기							
온풍난방기							
기타							

2. 보조금 집행실적

< 총괄, 일반농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별로 별지 작성 >

(단위: 대, 백만원)

기종별	공급실적		집행			
			금회		누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어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과일선별기 온풍난방기 기타						

### 3. 직파재배 확대지원 실적

#### 가. 공급실적

(단위: 대)

기 종 별	공급계획 (A)	공 급 실 적			전년동기 공급실적 (C)	비 율	
		누 계 (B)	전월까지	금 월		B / A	B / C
계							
벼 직파기							
탈 망 기							
중경제초기							

#### 나.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대, 천원)

기 종 별	공 급 실 적		집 행			
			금 회		누 계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계						
벼 직파기						
탈 망 기						
중경제초기						

#### 다.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 현황

- 지원농가수 :           농가
- 벼 재배면적(지원 당해연도 실재배면적)
  - 전체 : ha
  - 직파 : ha

[별지제18호서식]

발급번호 :		
<b>폐농기계처리확인서</b>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폐농기계	기 종 명	
	제조 회사명	
	구 입 년 도	
폐농기계 수거업체	성 명	
	주 소	
	업 체 명	
	수거예정일자	
<p>위의 폐농기계는 폐농기계 수거업체(폐농기계처리장, 사후봉사업소, 자원재생공사등)로 하여금 '97. . . . 까지 책임 수거토록 하겠으니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기관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span></p> <p style="text-align: right;">폐농기계처리장 : (인)</p>		



### Ⅲ.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 1. 목 적

대형농기계에 의한 일관기계화로 규모화된 농장을 가족노동력으로 경영토록 함.

#### 2. 추진방향

대형농기계 공급 이용으로 농업구조개선 및 경영규모 확대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 제3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60천호	10	10	7	7	26	
사업비	계	1,410,000	235,000	235,000	164,500	164,500	611,000
	보조	340,750	47,000	58,750	41,125	41,125	152,750
	융자	235,000	47,000	37,600	26,320	26,320	97,760
	지방비	340,750	47,000	58,750	41,125	41,125	152,750
	농협융자	352,500	70,500	56,400	39,480	39,480	146,640
자부담	141,000	23,500	23,500	16,450	16,450	61,1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 (1) 지원대상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의 「전업농육성」 사업에 따라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 (2) 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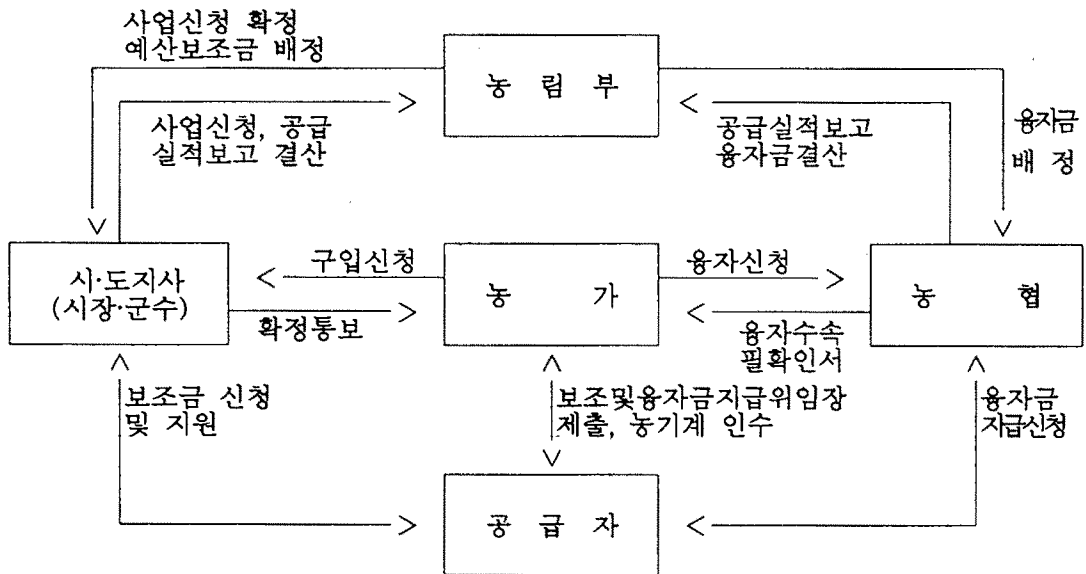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금	자부담
사업비	23,500	5,875	5,875	9,400	2,350
지원율	100%	25	25	40	10

※대출조건 : 연리5%, 1년거치후 5~7년 균분상환

- 농가당 사업비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보조50%, 용자 40%, 자담10%의 비율로 지원하고, 농가당 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기계구입비의 90% 범위내에서 보조금(지방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 지원할 수 있음.
- 기종별 용자금 지원조건은 '97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원대상 농기계 : '97 농업기계 구입자금지원요령에서 정하는 농업기계

(3) 사업시행체계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용 자 (국고+농협)	자부담
○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	호 7,000	백만원 164,500	41,125	41,125	65,800	39,480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와 같음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3-7228~9)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영농자재부

- 시·도 : 농정국 농산과, 농협시·도지역본부 자재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지도소, 농협시군자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다. 사업신청자격

- 자격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농촌지도소에 제출

라.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1)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쌀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중에서 (2)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를 선정
  -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을 탈퇴하고 쌀전업농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은 시장·군수가 기존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당초 소속조직)과 사전 협의후 농기계구입자금의 지원여부를 결정 하므로써 지역내의 농기계 과잉공급을 방지

(2) 우선순위

- 1순위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중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 농지구입 또는 임차실적이 있는 농가
- 2순위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중 농지구입 및 임차실적은 없으나 경영규모가 3.0ha이상인 농가
- 3순위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마. 사업시행

-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선정 농가는 구입희망 농기계 및 자금지원내역, 사후봉사업소(농협, 대리점)등이 명확히 기록된 쌀전업농 농업기계 구입및 보조지원 신청서(별지제2호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는 쌀전업농이 제출한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등을 확인한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쌀전업농에게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발부하고 농협장에게 통보한다.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은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농협장에게 제출하고 융자지원 받음.
- 시장·군수와 농협장은 쌀전업농의 농기계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여부등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
- 자격기준이 미달하는 쌀전업농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농협장은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대상자가 제출하는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및 보조지원대상자 확인서를 검토하여 농기계구입자금중 융자금을 지원하고 농기계구입 자금 융자현황을 작성매월 10일까지 시·군 및 농촌지도소에 통지하고 농협 면세유류관리대장 정리시에도 활용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실시요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쌀전업농의 농기계에 대하여 3년간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여 동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액(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97 농업기계구입자금지원요령에 의함.

### 나. 보고사항

	보 고 자	보고기한	서식
○ 쌀전업농 농기계공급자 금지원실적보고(반기별)	시·도지사	'97.7.31 '98.1.31	별지제4호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사무소, 시·군 농촌지도소

### 나. 신청자격 : 쌀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중 농기계 구입희망농가

### 다. 신청절차

-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농촌지도소에 신청

### 라. 구비서류

- 쌀전업농 선정 확인서등 관련서류

###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 Ⅲ. <추진체계>라항에 의함.

### 바. 기타 사항

- 시장·군수는 농기계구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쌀전업농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년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당해년도의 농기계구입 지원예산을 신청하여야 함.

[별표]

시·도별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계획

도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용 자	자부담
	호	백만원				
계	7,000	164,500	41,125	41,125	65,800	16,450
경 기	856	20,116	5,029	5,029	8,046	2,012
강 원	334	7,849	1,962	1,962	3,140	785
충 북	408	9,588	2,397	2,397	3,835	959
충 남	1,167	27,424	6,856	6,856	10,970	2,742
전 북	1,042	24,487	6,122	6,122	9,794	2,449
전 남	1,356	31,866	7,966	7,966	12,747	3,187
경 북	917	21,550	5,387	5,387	8,620	2,156
경 남	780	18,330	4,583	4,583	7,332	1,832
부 산	10	235	59	59	94	23
대 구	5	117	29	29	47	12
인 천	125	2,938	735	735	1,175	293



[별지제2호서식]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및 구입신청 농기계**

○ 신청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입신청 농기계 : 붙임(별지 제2-1호서식)

**2. 농가보유 폐농기계 처리계획**

- 기종명 및 구입년도 : (예 : 경운기 87년도, 관리기 87년도)
- 처리방법 : 공급자에게 인계( ), 본인책임하에 처리( ), 폐농기계처리장 또는 행정기관에 처리의뢰(폐농기계처리중 첨부)

**3.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농기계를 공급하고 공급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의 「농업기계화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 사후관리 하겠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공급자 : ○○○ 대리점 : 생산업체, 공급농협 ○○○ (인)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읍·면·구청장) 귀하

-----절-----취-----선-----

발급번호 :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신청자 주소 :

성명 :

기종명	제 회사	규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대금액			구입 희망일
					계	보조금	용자금	

19 년 월 일

(시·읍·면·구청장) (인)

※ 용자지원을 병행하여 구입시는 위 선정확인서와 용자신청서류를 갖추고 용자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십시오.



[별지제2-1호서식]

○ 구입신청농기계

기종명	제 조 회 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기 대 금 액				공급사후 봉사업자
					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별지제3호서식]

### 농업기계(구입)현황

살업농 전업농	주 소	기종명	제조 회사	규격식 (형식)	농기계 지제조 번호	구 입 비				구 년월일
						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재

## '97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실적 보고

1. 농기계공급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2. 사업비 지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계획(A)	천원						
예산확보							
농기계 공급금액(B)							
집행액(C)							
미집행액(B-C)							
비율	B/A	%					
	C/B						

※ 농기계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b>20</b>	<b>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자율)</b>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입니다.

### 1. 목 적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음.

### 2. 추진방향

-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지원은 생산자단체와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 지원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육성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7,928	2,377	1,318	1,133	1,237	- 1,863
사업비	계	571,652	156,452	87,800	73,300	76,850	177,250
	보조	139,566	35,766	21,950	18,325	19,212	44,313
	용자	165,742	99,310	14,048	11,728	12,296	28,360
	지방비	139,566	35,766	21,950	18,325	19,213	44,312
	농협융자	230,755	131,107	21,072	17,592	18,444	42,540
자담	61,476	19,956	8,780	7,330	7,685	17,725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 (1) 지원대상

#### ○ 생산자단체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 영농작업 규모를 확보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여 시군에 등록을 필한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RPC와 농기구써비센터를 운영하면서 50ha이상의 영농작업 규모를 확보하고 위탁농작업 및 농작업 증개·알선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농협
- 공동이용조직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10-30ha이상 영농작업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2) 지원규모 및 조건

- 개소당사업비 범위내에서 보조50%, 융자40%, 자담10%의 비율로 지원하고, 개소당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기계구입비의 90% 범위내에서 보조금(지방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 지원할 수 있음.

<개소당 농기계구입사업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융자금	자부담	
생산자단체	100	25	25	40	10	
공동이용조직	대규모	60	15	15	24	6
	소규모	20	5	5	8	2
지 원 율	100%	25	25	4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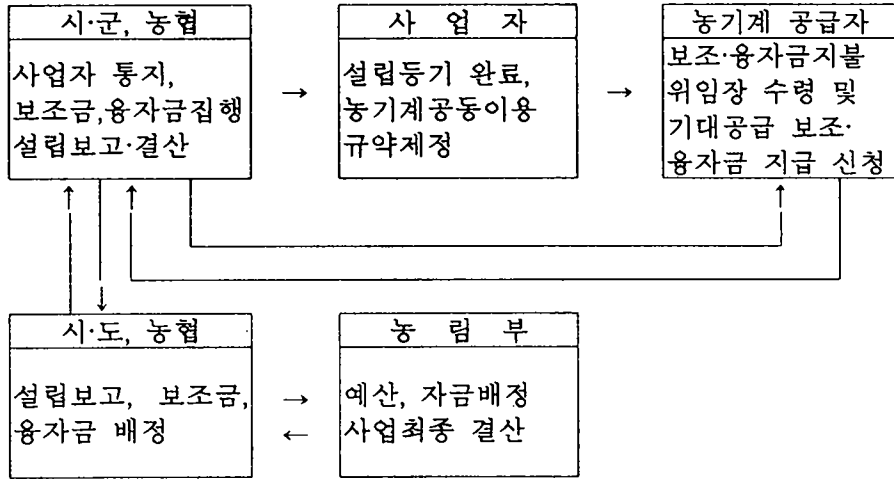
※융자조건 : 연리5%, 1년거치후 5~7년 균분상환

- 공동이용조직은 시·도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실정 및 신청량을 감안 대규모 공동이용조직과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하여 육성
- 기종별 융자금 지원조건은 '97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원대상 농기계 : '97농기계구입자금 지원요령에서 정한 기종

(3) 사업시행체계

- 사업대상자 확정
  - 시·군 농발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시행체계



나. '97 지원계획

○ 농업기계구입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	개소 1,133	73,300	18,325	18,325	29,320	7,330
생산자단체	133	13,300	3,325	3,325	5,320	1,330
공동이용조직	1,000	60,000	15,000	15,000	24,000	6,000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별표]와 같음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 '97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요령에 의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3-7228~9)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및 영농자재부
- 시 · 도 : 농정국 농산과, 농협시도지역본부 자재과
- 시 · 군 : 산업과, 지도소, 농협시군지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1) 생산자단체

#### (가) 신청자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시·군에 등록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서 다음의 영농작업 규모,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영농작업규모 : 토지이용형 작물의 경우 50ha이상
  - 영농인력 : 5명이상, 그중 농기계운전자 2명이상
  - 영농장비 : 기계화 일관작업이 가능하도록 5종 10대이상 확보
  - 시 설 :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60평이상
- 농기계 운전자는 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중 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이수자, 농업계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이어야 함.
- 장비 및 시설은 지원신청 당시의 시설장비와 회사설립후 확보할 시설장비를 구분하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설립후 확보할 장비는 1년이내, 시설은 2년이내에 모두 구입(설치)하여야 함.

#### (나) 농업회사법인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구성원 2/3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다) 우선순위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 농업회사법인
- ②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기구써비스센터 설치농협
- ③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기존 농업회사법인
- ④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등

(2) 공동이용조직

(가) 신청자격

- 회원농협에 등록된 작목반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 다음의 공동작업 자격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

< 농기계 공동작업 자격요건 >

	대규모공동이용조직	소규모공동이용조직
토지이용형작물의 경우 영농작업규모	30ha이상	10ha이상
인력	농기계운전능력자 3인이상	농기계운전능력자 2인이상
농기계공동이용규약	제정운영	제정운영

- 농기계 운전능력자는 기계화영농사, 기계분야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농기계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이수자 또는 농업계고등학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자 이어야 함.

(나) 영농조합법인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조합원이 5가구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구성원 2/3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다) 우선순위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 시범사업” 지역의 생산자조직
- ②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농협으로 농기구써비스센터 설치농협
- ③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되는 생산자조직
- ④ 기계화영농사, 선도농어가, 선도개척농, 전업농, 농어민후계자등이 참여하는 생산자조직 등

라. 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1) 신청절차

- 생산자단체 또는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자격구비요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군수(읍·면장)에게 신청함. 다만, 작목반은 관할 지역농협장이 신청할 수 있음.

(2) 선정절차

- 시장·군수(읍·면장)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구비요건, 지역여건, 사업성, 수지전망 등을 검토한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특별시, 광역시는 별도 심의회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함.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시 지역내 기존 생산자조직(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과 사전 협의후 결정하므로서 지역별 기종별 편중 과잉공급을 방지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장은 동 선정 심의회시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는 설립통지를 받은 생산자단체의 영농규모, 인력, 장비 및 부지확보 여부등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의 상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지시하고, 보완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사업시행

### (1) 위탁작업료 결정

- 시장·군수는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업단체 및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위탁작업료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탁작업료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

### (2) 공동이용규약 제정 운영

- 공동이용조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지정, 농기계공동이용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기계공동이용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3) 보조금의 교부

-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후봉사업소(농협, 대리점)등이 명확히 기록된 농업기계 구입확인서[별지서식 제1호]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농업기계 구입확인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등을 확인한후 보조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농협장에게 통보함.
- 지방비 확보 지연등으로 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될 경우, 우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융자실행 및 자부담금의 정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의 농업기계 구입현황[별지서식 제2호]을 비치하여 농기계구입확인, 기대활용, 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여부등(12월말기준)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함.
-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농협장은 농기계구입 지원자금 대출시 농업기계구입현황[별지서식 제2호]을 매월 10일까지 시·군 및 농촌지도소에 통지하고 농협 면세유류 관리대장 정리에도 활용토록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요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농기계보관시설 설치비 지원(지방비)으로 보유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이농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처분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요령과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추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명시하여야 함.
-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97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요령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생산자단체

##### (가) 농촌진흥청

-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운영 기술지도 및 경영평가

##### (나) 행정기관(시·도, 시장·군수)

##### ○ 법령에 정한 업무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등 보조금·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조사업자의 업무

##### ○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괄지도 감독

- 회사설립에 따른 회사설립발기, 정관작성, 설립등기등의 설립절차에 대한 지도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병역특례
  - 적격대상자 선발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복무토록 함.
- 기타 행정지도 사항
  - '9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농업회사법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지도 및 홍보
  - 농지전용,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사항, 정책자금 대출, 의료보험 관련업무등에 관한 지도

(다) 농촌지도소

- 담당지도사 지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경영지도 및 평가
  - 위탁작업면적에 따라 적정 영농계획 수립
  - 영농계획을 감안한 적정농기계의 선택과 구입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방안 지도
  - 인건비, 자재대 등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대경영기법 지도
  - 감가상각, 자본이자지출, 장부기장등 결산업무 지도
- 농업회사법인 운영실적 조사분석
  - '98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농업회사법인 추가지원대상자 선정 을 위한 경영실태 분석·평가 실시
    - 대상법인 : '91-'93년 보조지원 농업회사법인
    - 경영실적 분석·평가 : '96.12말까지 경영실태를 분석·평가(제4호서 식)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 농업회사법인 영농기술 및 소득사업 개발지도
  - 첨단농기계 및 시설을 이용한 생력화와 과학영농기법
  -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농한기 소득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 (2) 공동이용조직

### (가) 도 농민교육원 및 농촌지도소

- 농기계 훈련기관 및 업체의 각종 농기계 운전조작, 정비기술훈련 시 우선 선발
  - 정비훈련등의 강화로 영농기계화의 기간 요원으로 양성

### (나) 농 협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 이용조직에 대한 경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농기계 공동이용 및 운영요령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가공유통시설등과 효율적인 연계방안
  - 농기계의 경제적 이용방법
  - 회계정리등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농업기계	1997년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5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li> <li>○ 사후관리기간내에 노후화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이 농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분</li> </ul>	

나. 보고사항

	보 고 자	보고구분	보고기한	서 식
○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실적 보고	시·도지사	반기보	'97.7.31 '98.1.31	별지제3호서식
○ 생산자단체의 농기계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보고	농촌진흥청장	년 보	'98.2.28	별지제4호서식
○ 공동이용조직 운영실적	농협중앙회장	년 보	"	별지제5호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사무소)

나.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시·군에 등록된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협
  - 농업회사법인 추가지원 : 설립 5년째인 농업회사법인으로써 농기계 갱신 및 추가구입 희망 법인
- 공동이용조직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다.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자격구비요건 서류를 구비 관할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신청
- 농업회사법인 추가지원 : 농촌지도소의 경영실적 평가서 첨부 신청

라. 구비서류

- 생산자단체 : 영농작업규모,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확보 증빙서류
- 공동이용조직 : 영농작업규모, 인력, 농기계 공동이용규약 제정등의 증빙서류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 <추진체계> 다.항 및 라.항에 의함.

바. 농업회사법인 추가지원

- 농업회사법인의 최근4년간 경영실태(운영실적)를 분석 평가하여 경영이 건실한 법인은 5년째에 농기계구입자금 추가지원
- 농업회사법인 경영실태 분석 평가는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여 시·군 농발심의위원회에 제출, 추가지원 대상자 확정
- 지원규모 : 50백만원(국고보조25, 지방비보조25, 읍자40, 자담10%)

사.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 '97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요령 참조

[별표]

**'97 시·도별생산자단체및공동이용조직농기계구입자금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생산자 단 체	공동이용 조 직	계	국고보조	지방비	융자금	자부담
계	133	1,000	73,300	18,325	18,325	29,320	7,330
부 산	4	7	820	205	205	328	82
대 구	-	3	180	45	45	72	18
인 천	-	7	420	105	105	168	42
광 주	2	15	1,100	275	275	440	110
대 전	-	-	-	-	-	-	-
경 기	7	57	4,120	1,030	1,030	1,648	412
강 원	1	63	3,880	970	970	1,552	388
충 북	2	77	4,820	1,205	1,205	1,928	482
충 남	17	110	8,300	2,075	2,075	3,320	830
전 북	31	242	17,620	4,405	4,405	7,048	1,762
전 남	12	207	13,620	3,405	3,405	5,448	1,362
경 북	33	132	11,220	2,805	2,805	4,488	1,122
경 남	23	79	7,040	1,760	1,760	2,816	704
제 주	1	1	160	40	40	64	16

※공동이용조직은 시·도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실정 및 신청량을 감안 대규모 공동이용조직과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하여 육성



[별지제1호서식]

## 농업기계구입확인서

기종명	규격	제조회사	수량	금액	구입처 및 사후봉사자

- ※1)구입처 및 사후봉사자는 농기계판매대리점 또는 공급단협명 기입
- 2)부속작업기를 구입시 부속작업기도 기입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를 구입코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군(시)       면(읍)       리       번지

                  ○ ○       대표 :                   (인)

○ ○ 군수(시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 농업기계구입현황

명칭	소재지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모델명)	농기계 형식 지판 제	구입비				구입 년월일
						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재

[별지제3호서식]

## 생산자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실적 보고

### I. 생산자단체

#### 1. 농기계공급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 2. 부대시설 설치

구 분	계	격납고	건조장	정비장	육묘장	기타
계획(A)	평/동					
실적(B)						
비율(B/A)	%					

#### 3. 사업비 지원

##### ○ 농기계 공급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부담
계획(A)					
농기계공급 금액(B)					
집행액(C)					
미집행액(B-C)					
비율	B/A	%			
	C/B				

\* 농기계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 부대시설 및 경영비 용자지원

(단위 : 개사, 천원)

구 분	부대시설비		경 영 비	
	사 업 량	금 액	사 업 량	금 액
계 획(A)				
실 적(B)				
비 율(B/A)				

## II. 공동이용조직

### 1. 사업현황

구 분	조직수	영농규모	참여회원	주작목	비 고
계	개소	ha	명	개소	개소
대규모					
소규모					

- ※1. 주작목란은 수도작, 전작, 과수, 특작등으로 주작목별 조직수를 기재  
 2. 비고란은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으로 구분 조직수를 기재

### 2. 농기계 공급

구 분	계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방제기	건조기	기타
계획(A)	대							
실적(B)								
비율(B/A)	%							

### 3. 사업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금	자부담
계획(A)					
농기계공급 금액(B)					
집행액(C)					
미집행액(B-C)					
비율	B/A	%			
	C/B				

※농기계공급금액(B)는 반기말까지 공급된 농기계구입자금 총액을 기재

[별지제4호서식]

## 생산자단체 농기계 운영실적 및 경영평가결과

1. 운영실적

가. 생산자단체 :

나. 위탁영농실적

○ 농기계 활용

	경운·정지		이 양	수 확		건 조		방 제		기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주행식 분무기	동력 분무기	
활용대수	대									
작업량	ha									
대작업량	ha									

○ 위탁영농형태별

	완전 위탁	부 분 위 탁							
		경운 정지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육묘+ 이앙	수확+ 건조
위탁농가수	호								
위탁면적	ha								
위탁작업료	천원/ha								

다. 운영수지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손 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위탁작업	계				
	소 계 작업료		인 건 비 유 류 대 수 리 비 감가상각비 운영관리비		
기 타 소 득 사 업	소 계 (·) · ·		( ) (·) ·		

2. 경영평가결과 : 경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총괄적으로 별지에 작성

[별지제5호서식]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운영실적

1. 공동이용조직명 : \_\_\_\_\_ (주작목 : \_\_\_\_\_ )

2.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건조기	방제기	·	기타	비고
보조구입농기계										
자담구입농기계										
계										

3. 운영실적

○ 농기계 활용

(단위 : 대)

구 분	경운·정지		이 앙 수 확			건 조		방 제		-	기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주행식 분무기	동력 분무기	-	
활용대수 (대)											
작업량 (ha)											
대작업량 (ha)											

○ 영농작업 유형별 실적

구 분	영 농 작 업 형 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육묘 + 이앙	수확 + 건조	-	기타
참여농가수 (호)										
작업면적(ha)										

21	농기계보관창고설치지원(자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입니다.

### 1. 목      적

-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 2. 추진방향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의 확대 설치로 창고 보관율을 증대하고 개별 보관창고 설치비를 절약함.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개소 14,534 (1,834)	1,029 (929)	997 (197)	1,426 (126)	1,600 (100)	9,482 (482)
사업비	계	백만원 814,050 (77,750)	45,240 (39,740)	54,674 (8,274)	80,692 (5,292)	91,200 (4,200)	542,244 (20,244)
	보    조	294,520	2,200	18,560	30,160	34,800	208,800
	용    자	62,573 (62,573)	32,165 (32,165)	6,619 (6,619)	4,234 (4,234)	3,360 (3,360)	16,195 (16,195)
	지방비	294,520	2,200	18,560	30,160	34,800	208,800
	자부담	162,437 (15,177)	8,675 (7,575)	10,935 (1,655)	16,138 (1,058)	18,240 (840)	108,449 (4,049)

※주 : ( )내서는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사업비임.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비 지원

- 보관창고에 세차장, 간이수리 및 점검·정비장등 부대시설 설치

(2) 지원대상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5호이상의 농기계공동보관 추진마을(50평이하 설치시)7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51평이상 설치시), 신규조성되는 농기계공동이용조직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농기계지원 공급대상 농업회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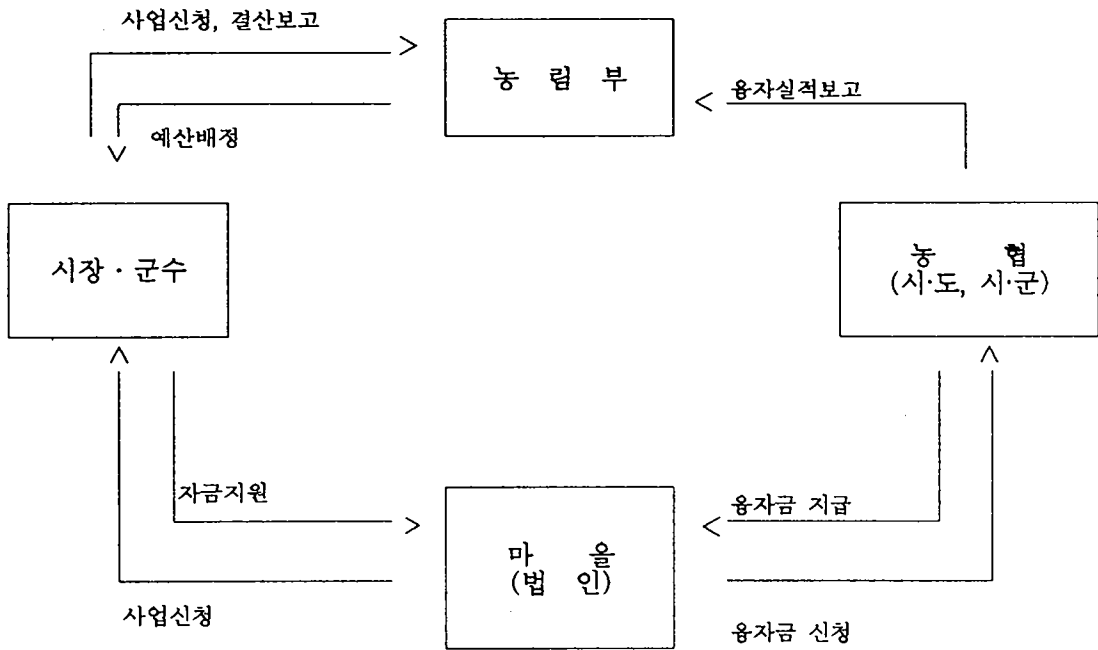
(3) 지원규모 및 조건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사업규모 40-1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규모로 설치하고 세차장, 간이수리 및 점검·정비장등 부대시설 설치
  - 개소당 사업비는 국고보조40%, 지방비보조40%, 자부담20%의 비율로 지원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사업규모 60평 범위내에서 법인실정에 알맞은 규모로 설치하고 세차장, 간이수리 및 점검·정비장등 부대시설 설치
  - 개소당 사업비는 국고율자80%, 자부담20%의 비율로 지원
  - 융자조건 : 연리5%,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 개소당 지원액 및 지원율 >

		사업규모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규모	평기준 100	천원 58,000	23,200	23,200	-	11,600
	지원비율		100%	40	40	-	20
농업회사법인농 기계보관창고	지원규모	평기준 60	천원 42,000	-	-	33,600	8,400
	지원비율		100%	-	-	80	20

(4) 사업시행체계



나. '97 지원계획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보 조	자부담
			계	보 조	용자		
계	개소 1,426	백만원 80,692	34,394	30,160	4,234	30,160	16,138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300	75,400	30,160	30,160	-	30,160	15,080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126	5,292	4,234	-	4,234	-	1,058

※시도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은 [별표]와 같음.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0-2650)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92)
- 시·도 : 농정국(농정·산업)과, 농협 시·도지역본부 금융과
- 시·군·자치구 : 농산(농정·산업)과,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쌀전업농등이 대형정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서 마을단위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 의지가 있고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는 마을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97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대상 농업회사법인

(2) 우선순위

- ① 대지나 잡종지등 농지가 아닌 장소
- ②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
- ③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3)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 공동이용약정서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특별시, 광역시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1) 신청절차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설치 및 공동이용계획서, 부지확보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함.

(2) 구비서류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공동이용약정서, 부지확보계획서

(3) 표준설계도 활용

- 시장·군수는 농기계보관창고의 설계비를 줄일수 있도록 기보급한 농기계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건설부 공고 제1992-188호: '92.12.22)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4) 사업비 지원방법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에게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하고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지원비율에 따라 매분기말기준으로 사업자금의 지원비율을 일치시켜 집행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시 창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품대 및 자재 소요량 등을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을 실비정산 조치한다.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보관창고 >

(1)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은 부지확보내역, 시설설치내역, 소요액등을 명시한 시설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함.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등 시설설치 가능여부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2) 용 자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용자는 법인명의로 대출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시장·군수는 농기계보관창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동이용실태등을 매년 1회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2) 마을농기계보관창고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시는 농기계를 공동보관하지 않는등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등 공동보관창고의 운영부실을 방지

- (3) 건축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부락명의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등기(건축물) 한다.
- (4) 공동참여농가는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보관 창고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한다.
-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997 (준공일)	2006 (10년)	농기계보관창고는 10년간 관리	

나. 보고·기타

- (1)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기에 착공·완료토록 지도하며 선정결과(사업량, 사업비, 규모등)를 '97.4.2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2) 시·도지사는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읍·면장)

나. 신청자격(선정기준 등)

-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30점)
  - ① 대지나 잡종지등 농지가 아닌 장소
  - ②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로서 논이 아닌 장소
  - ③ 농업진흥지역으로 논이 아닌 장소
  - ④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논
  - ⑤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

- 참여농가수와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20점)
  - ① 참여농가수가 많고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한 지역
  - ②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
- 기계화영농사, 농어민후계자등이 참여하는 농가수가 많은 지역(20점)
  - ① 기계화영농사 참여
  - ② 농어민후계자 참여
  - ③ 농과계 학교 졸업자 참여
- 대형정밀기종을 많이 보유한 지역(20점)
  - ① 콤바인 보유량이 많은 지역
  - ② 동력이앙기 보유량이 많은 지역
  - ③ 농용트랙터 보유량이 많은 지역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실적이 없는 지역(10점)
  - ①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실적이 없는 지역
  - ②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실적이 있는 지역

다. 신청절차

-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계획서, 부지확보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읍·면)에 신청

라. 구비서류

-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공동이용약정서와 부지확보계획서 1부.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추진체계> 다항에 의함.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사무소)

나. 신청자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시·군에 등록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농기계구입 지원 희망법인

다. 신청절차 :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함께 신청

라. 구비서류 : 부지확보 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등 관계증빙서류

마.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가 '98년도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중 부지확보, 시설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별표]

## 시·도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마을	법인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용자	자부담
계	1,426	1,300	126	80,692,000	30,160,000	30,160,000	4,233,600	16,138,400
부 산	12	12	-	696,000	278,400	278,400	-	139,200
대 구	1	1	-	58,000	23,200	23,200	-	11,600
인 천	10	10	-	580,000	232,000	232,000	-	116,000
광 주	8	8	-	464,000	185,600	185,600	-	92,800
대 전	2	2	-	116,000	46,400	46,400	-	23,200
경 기	82	75	7	4,644,000	1,740,000	1,740,000	235,200	928,800
강 원	124	123	1	7,176,000	2,853,600	2,853,600	33,600	1,435,200
충 북	185	183	2	10,698,000	4,245,600	4,245,600	67,200	2,139,600
충 남	183	165	18	10,326,000	3,828,000	3,828,000	604,800	2,065,200
전 북	227	196	31	12,670,000	4,547,200	4,547,200	1,041,600	2,534,000
전 남	232	220	12	13,264,000	5,104,000	5,104,000	403,200	2,652,800
경 북	215	182	33	11,942,000	4,222,400	4,222,400	1,108,800	2,388,400
경 남	141	120	21	7,842,000	2,784,000	2,784,000	705,600	1,568,400
제 주	4	3	1	216,000	69,600	69,600	33,600	43,200





[별지제2호서식]

##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

### 1. 사업현황

○ 총 팔

개소수	설치규모	참여농가수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용자	자부담
개소	평/동	호	천원				

※마을단위에 동일한 설치자가 100평을 분리하여 설치한 것은 1개소(1동)로 한다.

○ 규모별 설치현황

계	40평형	50평형	60평형	70평형	80평형- 100평형
동					

### 2. 설치추진상황

계 획	미 착 수	착 공	설 치 중	완 공
평/동				

※부진사유는 별도 기재

### 3. 사업비 지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계획(A) 집행액(B) 비율(B/A)	평/동	천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와 구분 작성

22	농업기계 사후관리지원(공공)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입니다.

### 1. 목 적

농업기계의 사후봉사 강화와 관리 철저로 고장을 줄여 농업기계의 이용을 증진코자 함.

### 2. 추진방향

- 농업기계 사후봉사사업소의 수리용부품의 사전비축으로 신속한 수리 봉사 실행
- 수리용장비 확보자금 지원으로 정밀 농업기계의 수리 촉진
- 대형정밀 농기계가 많이 공급된 시·군지역에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소 합동으로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 3. 근거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계	318,888	104,200	16,678	16,010	26,000	156,000
용 자	318,888	104,200	16,678	16,010	26,000	156,000
○ 수리용부품확보 지원						
- 사업량	4,023	1,913	186	174	250	1,500
- 용 자	302,620	97,000	15,310	15,310	25,000	150,000
○ 수리용장비지원						
- 사업량	266	54	23	14	25	150
- 용 자	16,268	7,200	1,368	700	1,000	6,000
○ 광역농기계수리 센터설치지원						
- 사업량			4	-	4	24
- 용 자			3,200	-	3,200	19,200

## 5. 수리용부품 확보지원

### 가.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1)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사업배경 : 영농적기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는 수리용부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나 수리용부품 확보에 따른 자금부담이 크므로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자 : 농협부품센터와 지정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 지원한도

구 분	도 단 위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농협 서비스 센터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 소
	농협 부품 센터	업체종합 사후봉사 소 (부품센터 포함)		갑류 와 을류	병류		
개소당 지원한도	백만원 1,200- 2,500	1,000	400	200	100	40	40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와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중 시설기준이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을”류 이상인 경우는 2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 지원조건

- 지원액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기간 : '97. 1-12
- 자금용도 : 부품확보자금
- 지원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부품센터는 도지사)
- 지원대상자 확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읍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174	백만원 15,310	15,310	-	15,310	-	-
수 리 용 부품확보지원	174	15,310	15,310	-	15,310	-	-

※ 용자조건 : 연리 3%, 1년거치 4년상환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0-2650)
- 시·도 : 농산(농정·유통)과
- 시·군·자치구 : 산업(농산, 농정)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공급을 철저히 이행하는 부품센터와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잘하는 사후봉사업소, 신규지정 사후봉사업소
- 우선순위
  -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신규신청업소
  -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잘하는 사후봉사업소
  - 농업기계 보유량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업소
  - 농업기계 수리기술 교육 참가자

○ 신청 및 선정절차

-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추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업기계화 추진업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원 대상자 추천기관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개소당 지원한도 금액등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부장관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과 개소당 지원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방법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부품확보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융자취급 기관에 융자지원 신청 단,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상환잔액이 있을시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도로 함.

### (3)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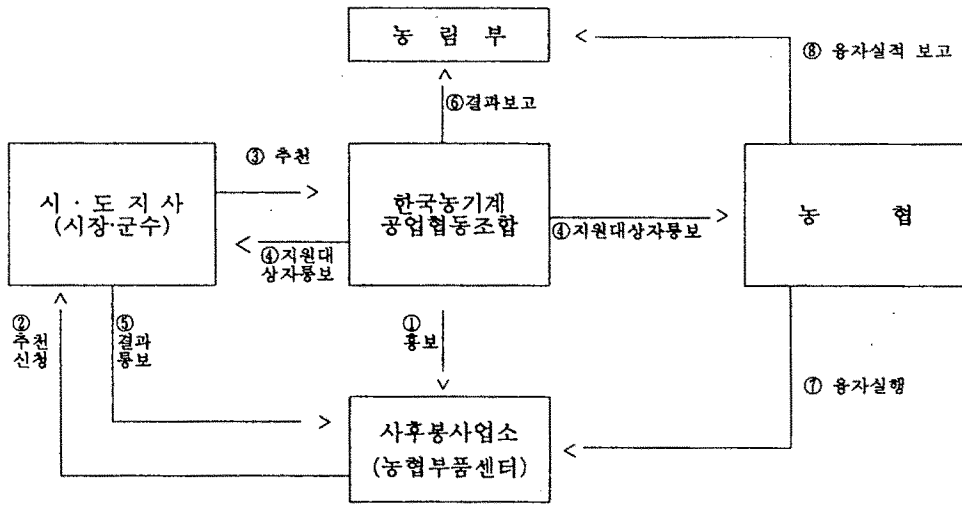
#### (가) 사후관리

-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지원받은 사후봉사업소는 영농기(3-6월, 9-10월)에는 지원액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품을 보유
-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공급자는 수리용부품을 책임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종판매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경과 4년까지 수리용부품을 책임 공급
- 도단위 부품센터는 수입농업기계와 구형모델의 농업기계 부품을 중점 확보하고 배달차량 운영등 부품의 신속한 공급체계 확립 추진
- 수리용부품 확보기준
  - 제조업체, 부품센터, 도단위 종합사후봉사업소 : 모든 부품(내구품, 준소모품, 소모품)
  -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 준소모품 및 소모품
  -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 소모품

#### (나) 보고·기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을 확정 후 10일이내에, 농협중앙회장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리용부품 확보와 공급실적을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 사업시행체계



나.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시·군, 읍·면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 시·도지사 : 부품센터

(2) 신청자격

- 농업기계 지정사후봉사업소(시·군·구, 읍·면·동단위,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
- 부품센터

(3) 신청절차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품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시·도지사에게 신청

(4) 구비서류

-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 추천서
- 부품확보계획서

(5)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 5..(2).(다)항에 의함.

## 6. 수리용장비 지원

### 가.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1)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사업배경 : 영농적기의 신속한 수리봉사를 위해서는 수리용장비를 확보해야 하나 수리용 장비 확보에 따른 자금부담이 크므로 농업기계 수리용 장비 확보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정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광역농기계수리센터
  - 도단위 종합사후봉사업소 : 수리·정비용 건축비,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공구구입비등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및 도단위이하 사후봉사업소 :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통신장비, 공구구입비등
- 지원한도

구 분	도단위 종합사후 봉사업소	광역농기 계수리센 터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농협농기구 서비스센터	읍·면·동 단위 사후봉사 업소
개소당 지원한도	백만원 200	100	50	40	30

- 지원액 : 사업비의 80%이내
- 사업기간 : '97. 1-12
- 자금용도 : 장비확보자금등
- 지원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종합사후봉사업소는 시·도지사)
- 지원대상자 확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읍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14	백만원 700	700	-	700	-	-
수리용 장비지원	14	700	700	-	700	-	-

※ 용자조건 : 연리 8%, 1년거치후 4년상환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0-2650)
- 시·도 : 농산(농정·유통)과
- 시·군 자치구 : 농산(농정·유통)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철저히 이행하는 사후봉사업소, 신규지정사후봉사업소

○ 우선순위

- 수리용장비 지원자금 신규신청업소
- 대형정밀 농업기계의 보유량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업소
- 농업기계 수리기술교육 참가자

○ 신청 및 선정절차

- 수리용장비 확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시설 및 수리용장비 용자지원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수리용장비 확보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추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업기계화추진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원대상자 추천기관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개소당 지원금액등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부장관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과 개소당 지원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방법

수리용장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수리장비 확보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용자취급기관에 용자지원 신청

(3)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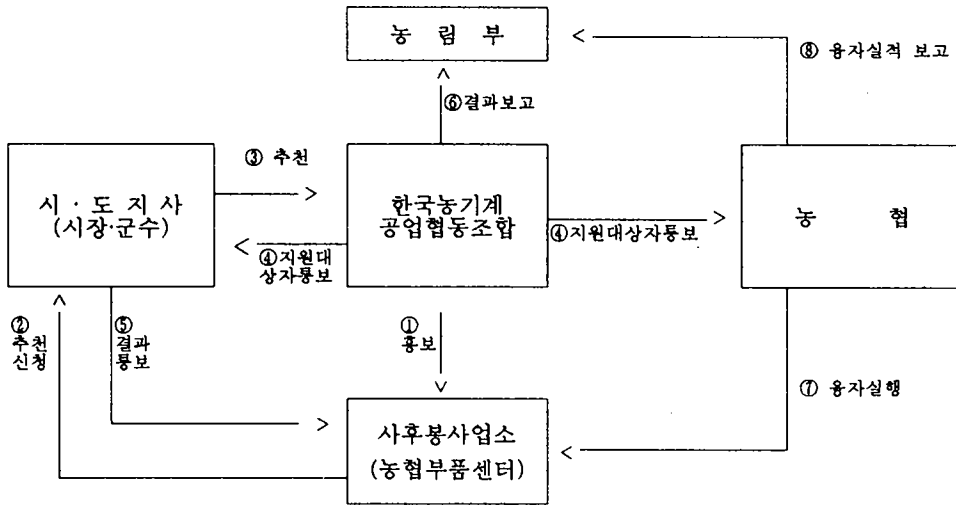
(가)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받은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를 대상으로 년2회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봉사실태등을 확인 점검·지도

(나) 보고·기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된 후 1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시행체계



나.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사 선정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 시·도지사 : 종합사후봉사업소

(2) 신청자격

- 농업기계 지정사후봉사업소
  - 종합사후봉사업소
  -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업소
  -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
  - 읍·면·동단위 사후봉사업소

(3) 신청절차

수리용장비 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사후봉사 시설과 수리장비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시·도지사에게 신청

(4) 구비서류

농업기계 사후봉사시설 및 수리용장비 용자지원추천서

(5)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 6.(2).(다)항에 의함.

### 7.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지원

#### 가. '97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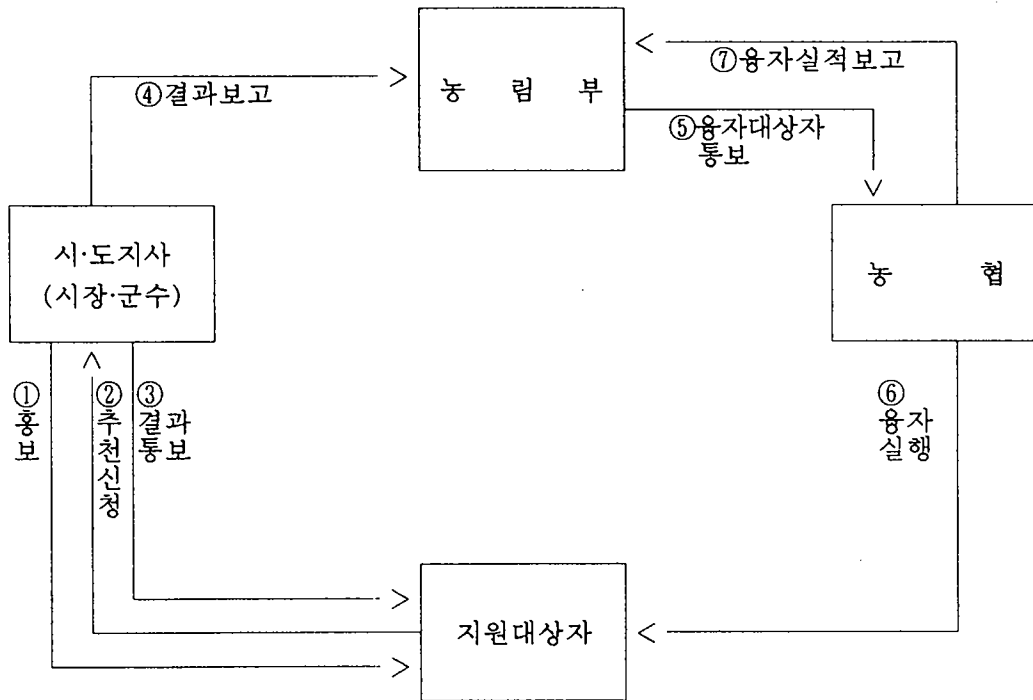
(가) 사업내용 설명

- 사업배경 : 대형정밀 농업기계의 점검·정비와 수리할 수 있는 정비 공장등의 건축비,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공구구입비 등
- 지원대상자 : 시·군·구단위 사후봉사사업소, 농업기계 제조업체
- 지원규모 및 조건
  - 시설설치기준

구 분	기 준
○ 사업장의 위치	○ 대형차량의 출입이 원활하고 배수가 용이하며 농업기계 종합수리에 적합한 지역
○ 부지면적	○ 5,000제곱미터 이상
○ 정비공장, 부품창고, 보관창고, 사무실등	○ 1,500제곱미터 이상
○ 장 비	○ 농용트랙터, 콤파인등 대형정밀 농업기계의 점검·정비와 수리에 필요한 장비
○ 부품확보	○ 농용트랙터, 콤파인등 대형정밀 농업기계 수리봉사용 부품

- 자금용도 : 대형정밀기종 점검·정비·수리를 위한 건축비 및 장비설치비, 수리장비, 공구구입비등
- 개소당 사업비는 국고용자 80%, 자부담20%의 비율로 지원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확정 : 시·도지사

○ 사업시행체계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0-2650),
- 시·도 : 농산(농정, 유통)과, 농협 시·도지역본부 금융과
- 시·군 : 농산(농정·산업)과,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다) 대상자 확정

○ 선정기준

농업기계 시·군·구단위의 사후봉사사업소로서 3개이상 참여하는 지정 농업기계사후봉사사업소, 농업기계 제조업체

○ 우선순위

- 대형정밀기종의 보유량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사업소
- 농업진흥지역으로 논면적이 많은 지역의 사후봉사사업소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사업에 참여 사후봉사사업소수가 많은 지역
- 농업기계 사후봉사를 잘하는 지역의 사후봉사사업소

○ 선정절차

- 광역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후봉사사업소 또는 제조업체는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사업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
- 시·도지사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설치

○ 사업비 지원방법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기성고 확인에 따라 지원

○ 기타사항

○ 신청절차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계획서, 부지확보 계획서등을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구비서류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사업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3)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년1회이상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및 사후봉사실태등을 확인·점검 지도

#### (나) 보고·기타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기에 착공·완공토록 지도하며 도지사는 선정결과(사업량, 사업비, 규모등)를 4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추진실적을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6호서식)

## 나.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나) 신청자격

- 시·군·구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 대형정밀 농업기계 제조업체

#### (다) 신청절차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시설설치 및 부지확보 계획서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라) 구비서류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 7.(2).(다)항에 의함.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자금 지원추천서**

1. 신청자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부품확보자금상환 잔액(지원받은경우)	
총 자 산	백만원	담 보 능 력	백만원
사후봉사업소의 자격 및 시설		“예” : 사후봉사업소 울류	

2. 부품확보 용자금 신청

금회용자신청금	천원	자금사용시기	19 년 월
부품확보총소요자금	천원	현재고 부품금액	천원

위와 같이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용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 시·도지사

○○ 시장·군수           귀하



(뒷면)

## 부품 확보계획서

(단위 : 백만원)

기종명	현 재 고		신규 확보계획	
	종 수	금 액	종 수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 농업기계 수리용부품 확보 및 공급실적

(단위 : 백만원)

업소명	업소수	확 보		공 급		재 고	
		수입 부품	수입 부품	수입 부품	수입 부품		

※농기조합 : 생산업체별 공장 및 부품센터의 부품현황

농 협 : 부품센터 및 농기구서비스센터의 부품 현황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사후봉사시설 및 수리용장비 지원 추천서

1. 신청자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총 자 산	백만원
부 품 현 보 유	백만원	담 보 능 력	백만원

2. 대출금 신청

자금용도	수량	단가	금 액		
			계	융자신청액	자담
		천원			

위와 같이 농업기계 사후봉사시설 및 수리용장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대표자 :

○○ 시·도지사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수리·정비용건축비, 장비설치계획 및 수리용장비 구입내역1부.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자금 지원대상 선정

(단위 : 백만원)

업 소 명	계 획		/ 분 기		누 계		비율 (B/A)%	비고
	개소수	금액(A)	개소수	금액	개소수	금액(B)		
계								
o부품확보 자금								
-부품센터 (농협)								
-종합사후 봉사업소								
-시·군·구 단위사후 봉사업소								
-읍·면·동 단위사후 봉사업소								
-농협농기 구서비스 센터								
o수리용장비 지원								
-종합사후 봉사업소								
-시·군·구 단위사후 봉사업소								
-농협농기 구서비스 센터								
-읍·면·동 단위사후 봉사업소								

[별지제5호서식]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상호(업종)		자본금(재산)	백만원
시설장비 확보계획	대지	m', 시설	m', 장비
계 획	백만원	자금지원 요청액	백만원
시설·장비설치 예정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p>위와 같이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                      (인)</p> <p>○ ○ 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p>1. 시설, 장비 및 인력확보 사업계획서(기확보분 포함) 1부.</p> <p>2. 농업기계사후봉사실적 등 참고자료 1부.</p>			

[별지제6호서식]

##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추진실적

1. 대 상 자

- 사업소재지 (상호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2.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비율 (%)
			계	융자금	자부담	계	융자금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li> <li>○ 정비공장, 부품창고, 보관창고, 사무실 등</li> <li>○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이스트</li> <li>- 견인차</li> <li>- 지게차</li> <li>- 화물차</li> <li>- 기타장비 및 공구</li> </ul> </li> <li>○ 부품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용 트랙터, 콤팩트 등 대형 정밀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li> </ul> </li> </ul>	5,000m' 이상  1,500m' 이상								

<b>23</b>	<b>농업기자재 생산시설 및 생산비축자금 지원(공공)</b>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입니다.

## I. 농업기자재 생산시설설치자금지원

### 1. 목 적

- 농업기계화와 시설장비 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농업기계 및 시설기자재의 생산 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우량 농업용 국산기자재의 생산보급을 촉진

### 2. 추진방향

- 첨단농업기자재의 개발 및 국산화 촉진
- 저렴한 우량농업기자재의 생산공급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04
사업량		개소 112	28	7	7	10	60
사업비	계	백만원 55,500	13,500	3,500	3,500	5,000	30,000
	용자	55,500	13,500	3,500	3,500	5,000	30,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농림용기계, 장비와 시설기자재의 생산시설 및 건축비 지원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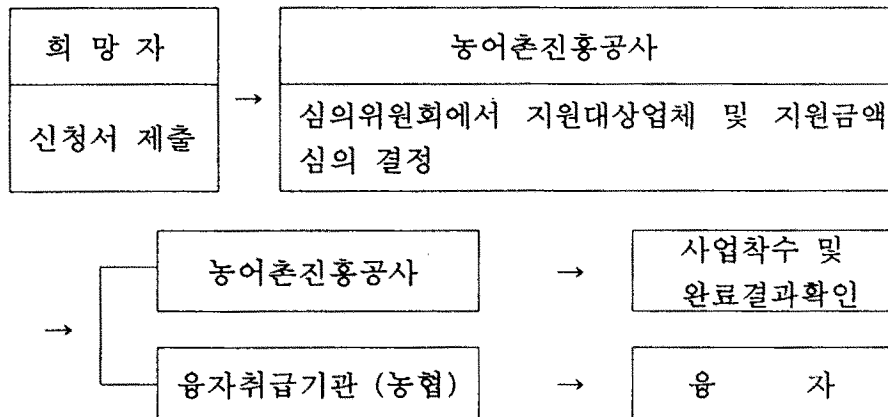
#### 나. 지원대상 : 농림용 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소요사업비의 80%이내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



#### 마. '97 사업비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농업기자재생산 시설자금	7개소	백만원 3,500	-	-	3,5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3-7228~9)
- 농어촌진흥공사 : 시설영농처 시설부 (0343-20-3590~3)

다.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농업기자재생산시설자금 지원심사기준에 의함.

○ 우선순위

- 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② 현행 국내생산제품의 질적수준이 낮아 향상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는 품목
- ③ 공정개선이나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행제품보다 생산단가를 상당히 인하시킬수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 선정절차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업체별 신청금액, 생산제품, 재무능력 등을 조사검토하여 심의자료를 작성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심의결정

○ 사업비지원 방법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지원대상업체, 업체별 지원액 및 용자 희망사무소를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용자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융자금을 회수하는등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 나. 보고사항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업체별 시설설치, 장비구입등 사업결과를 확인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자금 융자 실적을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통보한다.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시설영농처

나. 신청자격 : 농림용기계, 장비 및 시설기자재 생산업체

다. 신청절차 : 농업기자재 생산시설 설치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

라. 구비서류 : 농업기자재 생산시설 설치자금 지원 신청서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 I. 6. 다항에 의함.

## II. 농기계생산비축자금 지원

### 1. 목 적

- 농기계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적기공급 및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신기술 농업기계 생산지원

### 2. 추진방향

- 저렴한 우량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으로 영농기 적기공급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에 따른 생산촉진자금 지원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및 제7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04
사 업 량		460개소	60	30	30	40	300
사업비	계	백만원 890,000	145,000	45,000	60,000	70,000	570,000
	용 자	890,000	145,000	45,000	60,000	70,000	570,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농기계 사전생산비축을 위한 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수요집중기에 공급함으로써 영농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신기술농기계 개발등 우수 농기계 생산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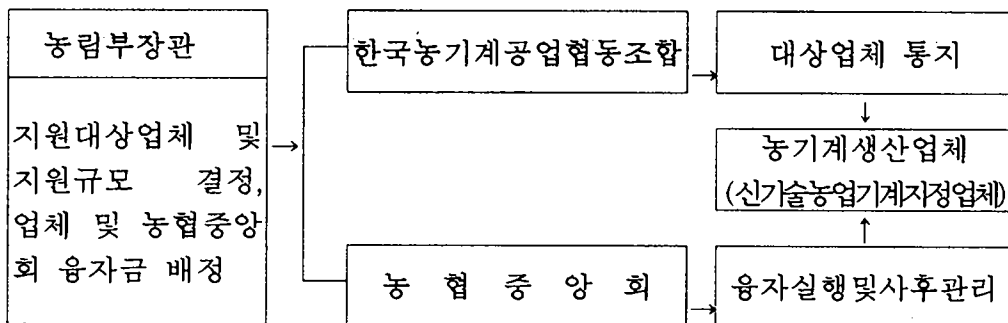
#### 나. 지원대상

- 농업기계화사업 자금으로지원공급되는 농기계 생산업체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업체

####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농기계 생산비축 소요자금의 일부를 용자 지원
- 지원조건 : 년리 5%, 용자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

#### 라. 사업시행체계



#### 마. '97 사업비 내용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
농기계생산비축자금	개소 30	백만원 60,000	-	-	60,0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자재과(02-503-7228)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2-757-1451)

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정부지원 농기계 생산업체 및 신기술 농기계생산업체는 농기계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한 원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신청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신청업체별로 최근 2년간 매출실적 및 농기계생산비축 실적, 국산화율, 신기술 개발업체 지정등 자료를 작성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업기계 생산회사에 대한 농기계 생산비축실적, 국산화율, 농기계 신기술 개발보급 실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감안하여 대상업체 및 지원규모 결정(단, 불량농기계 보급, 사후봉사 소홀등 농기계 유통질서 문란 행위 업체는 감액 조정)

라.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장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하여 지원규모를 통지하고 융자금은 농협중앙회로 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지원액을 융자 지원하고, 사후관리

마. 사업시행

- 농기계생산업체는 생산비축자금을 원자재구입등 농기계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농기계생산 비축자금 사용실태를 파악 익년도 농기계생산비축자금 배정에 활용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융자금을 회수하는등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장은 업체별 융자지원 실적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매년 1월말까지 농기계생산비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나. 신청자격

- 농업기계화사업자금으로 지원 공급되는 농기계 생산업체
- 신기술 농기계 지정업체

### 다. 신청절차

- 정부지원 농기계 생산업체 및 신기술 농기계생산업체는 농기계의 적기 생산공급을 위한 원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신청

### 라. 구비서류

- 최근 2년간 농기계 매출실적, 농기계생산비축실적, 국산화율, 신기술 농업기계지정서 등 자료 첨부 제출

### 마. 대상자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Ⅱ.6.다항에 의함.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입니다.

## 1. 목 적

- 국내외 첨단농기계와 시설농업 자동화장치 등의 비교전시를 통해 국내 업체들로 하여금 신기술 및 제품개발 동기를 부여하고·농어민들로 하여금 노동절약형 고도기술농업을 지향토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발전을 도모함.

## 2. 추진방향

-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및 해외유사 전시회 참관 홍보 현지설명회를 통해 동 행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해외업체를 적극 유치함.
- 연사회 및 경연대회 등을 통해 산업계·도시민·농민간 만남의 장 조성 및 상호 신뢰를 증진함.
- 우수전시업체, 우수농어업인 발명품 및 국제농업 우수사진전 입상자 등에 대한 시상을 하므로써 본 행사에 참가의욕을 고취함.
- 박람회의 개최추진은 소관별로 관련기관 단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 제반계획을 수립 운영
- KBS, 농업전문지등 언론기관과 협력, 특집보도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므로서 박람회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함.

##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4까지	'95	'96	'97	'98	'99-04	합계
○ 지원금액	2,584		1,800		1,800	5,400	11,584
- 보조	1,432		600		600	1,800	4,432
- 자담	1,152		1,200		1,200	3,600	7,152
○ 참가업체(개)	475		370		400	1,200	2,445
○ 참관객(만명)	70		40		40	120	270

※ '97 사업은 없음.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전시·연사회 및 부대행사

##### ○ 전시 및 연사회

수도, 전작농기계, 과수, 시설원예, 축산기자재, 농산물가공기자재, 수산·임업기자재, 농어업정보시스템, 농업자재, 농업인발명품등

##### ○ 부대행사

우리 농림축수산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게될 기술개발관 전시, 국제농업기계공학 학술대회, 국제농업우수사진전, 농어업인 발명품전시회, 도별 우수농축산물 전시 및 홍보관, 농수축산물시식코너관, 농기계 수리용부품 판매 및 정비상담코너관, 농어촌주택 및 축사 표준모델 전시관, 농기계운전경연대회, 농기계이용증진 우수사례 및 고장수리 시범경연대회등

##### (2)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한국종합전시장(KOEX)

○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97 사업비 내용 : 격년제 개최로 1998년 개최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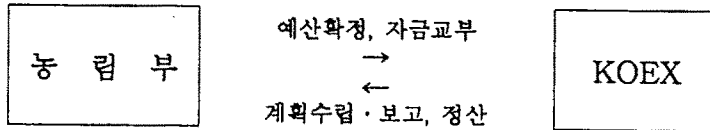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 립 부

나. 사업담당부서

- 한국종합전시장(KOEX) 전시사업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다. 사업시행체계

- 집행기관 : 한국종합전시장(KOEX)
-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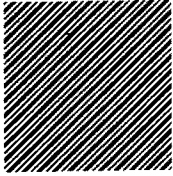
<행정사항>

가. 보고사항 및 사후관리

- 한국종합전시장 사장은 전시회 개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
- 농림부장관은 한국종합전시장 사장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명령할 수 있음.

여 백

### Ⅲ. 생 산 및 유통 개 선



#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관리과입니다.

## I.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

###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여 쌀유통구조 개선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함으로써 농가편익 제공 및 비용절감
- 고품질의 지역특산미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

### 2. 추진방향

- 2000년까지 400개소를 일정수준의 원료비 확보가 가능한 들판을 중심으로 설치
  - 개소당 논면적 1,000ha 이상을 담당하도록 설치
  -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않은 시·군지역에 우선설치
- 쌀작목반·농업회사법인 등과 생산·가공·판매 연계체제 구축으로 명실공히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

###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1~'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업량(개소)		400	187	33	33	47	100
사업비 (백만원)	계	696,633	333,633	43,500	43,500	76,000	200,000
	보 조	248,700	77,700	18,000	18,000	35,000	100,000
	용 자	174,866	57,716	14,550	16,800	25,800	60,000
	지방비	-	-	-	-	-	-
	자부담	273,067	198,217	10,950	8,700	15,200	40,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추진배경

-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부녀화 추세 가속화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비효율적인 벼 수확·탈곡·건조·저장 관리로 손실과다발생
-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쌀 수요증대
- 벼 수확후 작업과정의 일관처리와 판매등 유통·금융기능 및 출하조절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필요

##### (2) 사업기간 : 1. 1 ~ 12. 31(가급적 벼수확기이전 완료)

##### (3)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7호·제8호의 생산자단체로서 미곡생산·유통을 하는 법인
- 일반사업자 : 양곡도정공장과 100평이상의 평창고를 보유한 자

#####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단위 : 백만원)

사업자별	지원단가	보 조	음 자	자 부 담
생산자단체	2,000(100%)	1,000(50%)	600(30%)	400(20%)
일반사업자	500(100%)	-	400(80%)	100(20%)

※ 지원한도액(보조 및 음자) 이상 초과액은 사업자가 부담(과잉투자 지양)

**(5) 지원시설의 종류 : 미곡종합처리장 건축, 건조·저장·가공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 설치규모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용도, 수집 가능 원료곡 생산량, 기존도정시설과의 거리, 자금조달 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
  - 생산자단체는 기본시설 II형, 일반사업자는 기본시설 I형으로 설치유도
  - 기존 도정시설을 활용하여 건조·저장시설만을 설치하는 생산자단체는 기본시설 III형을 설치
  - 기본시설 규모를 하한선으로 하며, 기본시설 규모이상 설치가능

기본시설유형	사 업 자	처리능력		
		건 조	저 장	가 공
I 형	일반사업자	1,000톤	600톤	20톤/일
II 형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1,800	1,200	20
III 형	생산자단체	2,000	2,000	20

※ 가공능력 : 1일 8시간 가동기준임(단위 : 정곡, 톤)

○ 기계설비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화된 기계(벼품위자동판정기등)로 처리하여 벼의 품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분함량별로 구분 건조가 가능한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이 가능하고, 품종별·품위별로 구분저장이 가능하며,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기본시설규모”내에서 옥외 사일로를 설치할 경우 단열, 송풍, 곡온측정·교반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 국내생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되, 가급적 KS규격 사용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자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33	백만원 43,500	34,800	18,000	16,800	-	8,700
생산자단체	18	36,000	28,800	18,000	10,800	-	7,200
일반사업자	15	7,500	6,000	-	6,000	-	1,500

※ 용자조건

- 생산자단체 : 연리 5%, 3년거치후 7년상환
- 일반사업자 : 연리 8%, 3년거치후 7년상환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심의관실 식량관리과(02-503-7274)
- 시·도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 농정과
  - 경기도, 강원도 : 농업정책과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농산과
  - 전라북도, 전라남도 : 농산물유통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또는 농정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



## 라. 사업시행

###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
- 사업계획변경 : 사업자가 건조·저장·가공능력의 변동이나 사업 대상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2)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종합면허)가 있는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자
-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는 단체장(농협중앙회장등)책임하에 자율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기설치한 R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이월 발생시 공사참여제한
- 감리 : 생산자단체는 시설업체 선정과 함께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시설을 하는 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
- 안전관리 : 농협중앙회장과 대한곡물협회장·한국양곡가공협회장은 회원사업자에 대한 시설안전설계 설치 및 시설후 안전점검(월2회)에 차질없도록 책임조치

### (3)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62호, '96.6.13)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마.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 < 구 성 >

- 위원장 : 시장·군수
- 위 원 :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또는 기술담당관),  
농검출장소장, 농협 시·군지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관련 민간단체 임직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및 전문가

##### < 기 능 >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사전검토
-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자재설치의 적정성 검토
- 농지전용등 행정지원 협의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평가지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관련 민간단체는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등 전문적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전기·기계설비 등에 대한 전문기술자 확보 및 전국 1일보수체제 확립으로 주·야간 신속한 수리·보수체제 구축
  - 설치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리 및 원료벼 매입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비치기록 작성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미곡종합 처리장 (벼 건조 · 저장 · 가공시설)	시설설치완료 익년부터	10년간	○ 융자금 회수완료시까지 사후 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산자 단체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 되는 10년간 타인 또는 타 생산자단체에 시설양수도 불가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에는 사업선정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능	

## 나.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매의월 15일 이내 (3월부터)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정산실적 보고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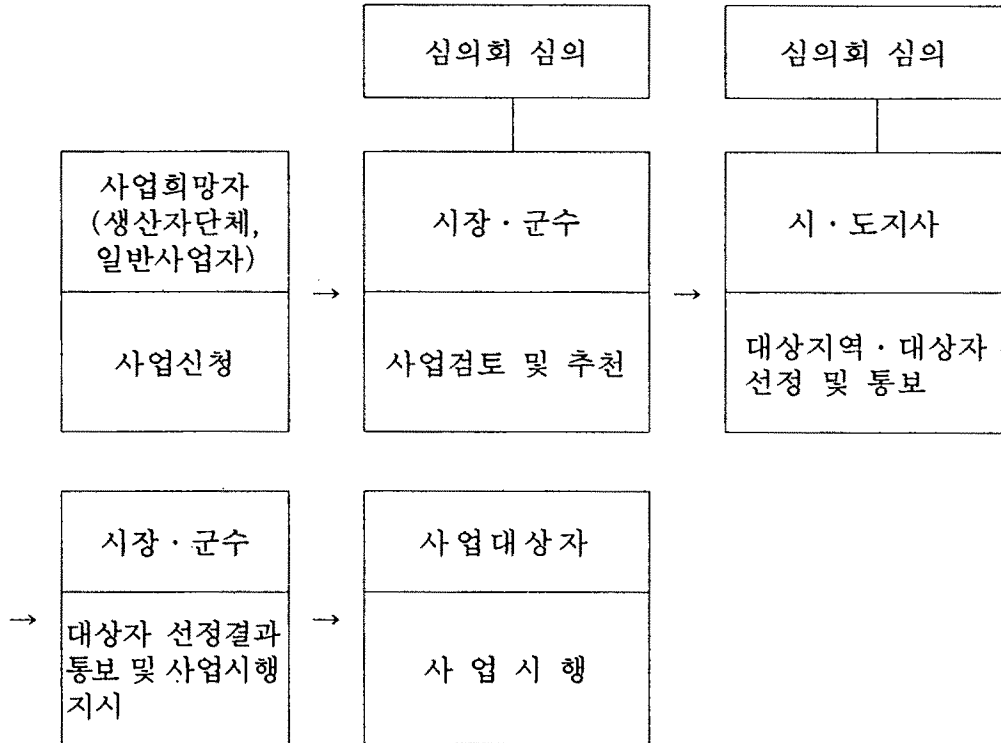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7호(영농조합법인)·제8호(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조건을 구비한 법인
    - 미곡 생산·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가공·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 법인설립후 1년이상(신청일기준) 경과하여 연간 쌀 1,000톤이상 판매 실적이 있을것
    - 법인구성원이 5인이상으로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법인구성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법인
    - 8억원이상 운영자금확보가 가능한자(관할농협 군지부장의 담보능력 또는 현금보유여부 확인서 첨부)
- 일반사업자 : 관내 기존도정공장과 건조·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는 평창고 100평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8억원이상 운영자금확보가 가능한자(관할농협 군지부장의 담보능력 또는 현금보유여부 확인서 첨부)
- 기타 앞 “6번 다항 (1) 선정기준”의 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단체

#### 다.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시설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시행체계



####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1부(실시규정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농림사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조서(실시규정 제2호 서식)
-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 마. 사업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 < 지역적 요건 >

- 벼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이 조성된 미곡생산량이 많은 넓은 들판지역으로서 원료벼 확보가능면적이 1,000ha 이상인 지역
- 가급적 기존도정시설과 마찰이 없는 지역으로서 주위에 개량곳간등 건조시설, 보관창고가 확보된 지역
- 쌀작목반·농업회사법인등 각종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 확보가 용이한 지역특산미 생산지역
- 기존 미곡종합처리장과 원료벼 확보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지역  
- 동일 읍·면에 1개소를 초과하여 설치불가(동일 읍·면에 건조·저장 또는 가공시설중 어느 한부분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함)

#### < 사업자 자격요건 >

- 공장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 관내 기존도정공장과 건조·저장시설을 갖추 수 있는 평창고 1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일반사업자만 해당)
-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각종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물벼, 건조벼)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자 또는 단체
- 시설비 자부담 및 담보능력, 원료벼 확보 및 공장운영(8억원이상)에 필요한 자금력을 갖춘 자 또는 단체(관할농협 군지부장의 확인서 첨부)
- 정부양곡 임도정업자(대상자 확정과 동시, 공사완료일 기준 정부양곡 가공 도급계약 포기서 제출)
  - ※ 정부양곡 임도정계약은 공사완료일부터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
- 쌀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2) 우선순위

### < 생산자단체 >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거나 인접한 생산자단체
- ② 관내농가, 도정공장 또는 각종 영농조직등 민간인과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 ③ 양곡판매사업이 활발하고 취급양곡이 지역특산미로 인정받고 있거나 정착되어 있고 관내 기존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자방식을 취하는 생산자단체
- ④ 2개이상의 조합 또는 회사가 합병 또는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 ⑤ 신규 고정투자와 운영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 ⑥ 지도자의 사업추진 열의도가 높고, 양정시책에 호응하여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 < 일반사업자 >

- ① 설치예정지역이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자
- ② 정부의 조곡매출사업 또는 조곡공매사업에 다년간 참여하여 미질향상과 민간의 쌀 유통기능 활성화에 공헌이 가능한 도정업자
- ③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공동출자 또는 시설이 현대화된 정부양곡도정업자
- ④ 5개이상의 일반도정공장이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체
  -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일반도정공장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기존 도정업 등록취소
- ⑤ 관내농가 또는 각종 영농조직등과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자

### (3) 선정절차

- 시장·군수 : 관내의 도정공장 분포상황 및 원료비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 (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 구분)
  -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예정지역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도시계획법·건축법·환경보전법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의하여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 시·군별 미곡종합처리장 장기설치계획상의 적정성여부 검토

### 바.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앞 “1~7번항”에서 정한 제반규정에 따름



## II. 기존시설 증설(건조·저장)사업

### 1. 목 적

- 농가 산물벼 확보량이 많아 벼 수확기 적기 건조·저장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
- 농촌노동력 및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 2. 추진방향

- 농가 산물벼 확보량이 많아 건조·저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곳을 우선지원
  - 기존시설에 추가증설 또는 인근지역에 위성시설로 탄력성있게 설치
- 미곡종합처리장당 건조·저장시설능력을 단계적으로 각 2,000톤까지 확충 추진
  -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지원

###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개소)	389	22	25	64	60	218	
사업비 (백만원)	계	200,250	7,700	8,750	22,400	21,000	140,400
	보 조	65,900	3,850	3,150	8,750	8,750	41,400
	음 자	93,565	2,310	3,115	9,170	8,050	70,920
	지방비	-	-	-	-	-	-
	자부담	40,785	1,540	2,485	4,480	4,200	28,08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추진배경

- 벼수확기 일시출하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적기 건조·저장처리에 애로
- 수확기 농가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통한 농촌노동력 및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 (2) 사업기간 : 1. 1 ~ 9. 30(벼 수확기 이전 완료)

##### (3) 지원대상자 : '91~'95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로서 건조·저장시설 규모가 각 2,000톤 미만인 사업자(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단위 : 백만원)

사업자별	전 체	보 조	용 자	자 부 담
생산자단체	350(100%)	175(50%)	105(30%)	70(20%)
일반사업자	350(100%)	-	280(80%)	70(20%)

※ 지원한도액이상 초과액은 사업자가 부담

##### (5) 지원시설의 종류 : 벼 건조·저장 기계설비

- 증설규모 : 건조 800톤이상, 저장 600톤이상
- 기계설비기준(가급적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건조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품종별·수분함량별로 구분건조가 가능한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이 가능하고 품종별·품위별로 구분저장이 가능하며,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로서 단열, 송풍, 곡온측정이 가능한 시설

※ 국내생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토록하고, 가급적 KS규격품을 사용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자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64	백만원 22,400	17,920	8,750	9,170	-	4,480
생산자단체	50	17,500	14,000	8,750	5,250	-	3,500
일반사업자	14	4,900	3,920	-	3,920	-	980

※ 용자조건

- 생산자단체 : 연리 5%, 3년거치후 7년상환
- 일반사업자 : 연리 8%, 3년거치후 7년상환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과 같음

다. 사업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 ① 농가산물벼의 건조·저장시설 활용율이 100% 이상인 자
  - 활용율이 동일한 경우 시설규모가 작은곳 우선
- ② 전년도 원료벼 확보량(농가벼+공매벼)중 농가벼 확보비율이 높은자
- ③ 전년도 경영손익이 흑자인 자

(2) 선정절차 :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의 선정절차와 같음

라. 사업시행: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의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사업”의 사후관리요령과 같음

나.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매의월 15일 이내 (3월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상부분만 기재)
○ 사업정산실적 보고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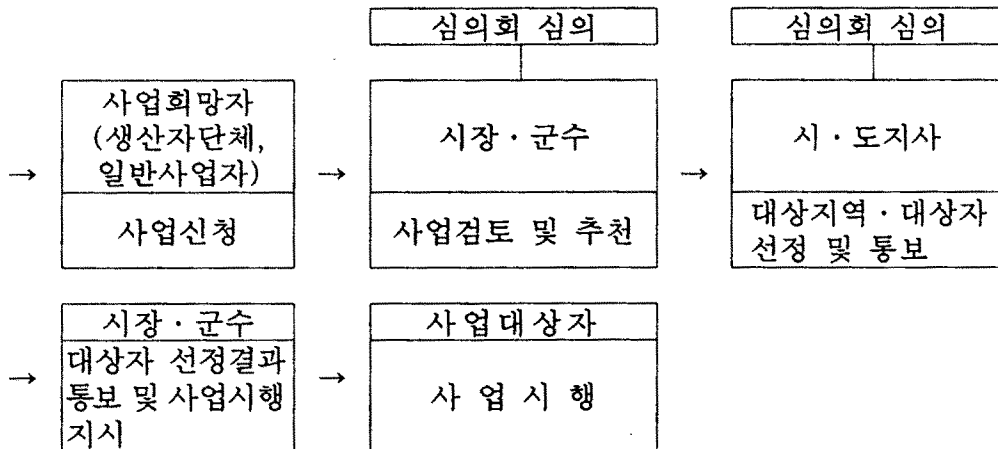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91~'96년도에 설치한 미곡종합처리장중 건조·저장시설규모가 각 2,000톤 미만인 사업자(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다.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시설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시행체계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1부(실시규정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농림사업 정책자금 용자신청조서(실시규정 제2호 서식)
-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마.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앞 “1~7번항”에서 정한 제반규정에 따름.

### Ⅲ. 운영자금 지원

#### 1. 목 적

- 수확기 농가산물벼 매입지원으로 산지쌀값지지 및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 도모
- 농가산물벼 최대 수집·처리를 통한 농촌노동력 및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 2. 추진방향

- 원료벼의 농가매입 실적 등에 따른 자금지원 차등화
- 매입자금의 3개재원 통합운용으로 저리지원

####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지원개소수(개소)		1,318	292	155	218	253	400
사업비 (백만원)	계(융자)	1,394,200	188,900	134,300	218,000	253,000	600,000
	- 농특회계	695,600	21,000	56,000	106,800	151,800	360,000
	- 농업경영자금	232,900	152,900	40,000	40,000	-	-
	- 농협자금	465,700	15,000	38,300	71,200	101,200	240,000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자

- '92~'96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자
  - ※ 단, '96년 사업자중 '96.12.31까지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자와 양곡부정유통 적발업체(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처분 이상)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97 운영자금 운용상황에 따라 '91 사업자 또는 '97 사업자중 '97.9.30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가능

**(2) 재원구성 및 지원액**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업경영자금 + 농협자금
- 개소당 지원액 : 10억원 수준(8~15억원 범위)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재원	금액(억원)			금 리
	'96 기확보	'97 예산액	계	
농 특 회 계	560	508	1,068	0
농업경영자금	-	400	400	5
농협자금(상호금융)	-	712	712	12.5
계(통합운용금리)	560	1,620	2,180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집행계획수립 및 자금배정) : 농림부장관**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릫 부 : 식량정책심의관실 식량관리과(02-503-7274)
- 농협중앙회 : 양곡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단(02-397-6412)
- 농협 시도지역본부 : 여신지원과
- 농협 시군지부 : 여신과 대부계

**다.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농특회계 차주 : 농협중앙회장
-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용자실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사업자

## 라. 용자조건 및 운용방법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후 5년간만 지원('91년도 설치자 제외)
- 연리 5%(기간 1년 : 매년도 상환기일에 상환)
- 농특회계, 농업경영자금, 농협자금(상호금융)을 통합운용하여 통합금리 5% 수준으로 지원
- 개소당 용자금 : 8억원은 상환기일 도래일에 균등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97.11월말기준 원료벼 매입실적, 계약재배실적, 기타 정부시책 협조 등에 따라 차등지원
- ※ 사업자별 용자금액과 한도액은 매년도마다 결정시달('97 용자한도액 : 15억원)
- 원료벼 매입자금과 기타자금의 구분계리

## 마. 용자신청 구비서류

- 균등지원분 : 농가산물벼 매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차등지원분 : 농검출장소장 발행 원료벼 매입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바. 채권보전 및 기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계정운용지침 및 용자취급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의함
- 농특회계자금의 취급수수료는 없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와 농협 시·군지부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농가산물벼 매입 계획(원료벼 매입량, 자금조달계획등)의 적정여부 확인 지도
- 사업자는 원료벼의 매입·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비치 (별지 제7호 서식)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관계장부의 기록상황을 점검·확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와 용자취급기관은 운영자금 용자실행전에 사업자가 원료벼를 매입할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기간 용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목적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회수토록 조치

### 나.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 미곡종합처리장별 원료벼 매입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분기보고 (분기 익월15일까지)	별 지 제6호서식
○ 미곡종합처리장별 운영자금 용자실적	농협중앙회장	농림부장관	분기보고 (분기 익월15일까지)	농협에서 자체 작성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 업 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척지형도)

○ 사업부지

- 면 적 :     m<sup>2</sup>(     평),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농발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토지, 원료권확보,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

5. 사업여건

○ 생산자단체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최근 3년간 조합의 경영수지상태, 최근 3년간 쌀 판매실적, 합병 또는 공동출자내역, 인수도정공장명, 연계출하도정공장명, 사업계획 이사회 결의, 공동건조 및 저장에 관한 합의결과 및 참여농가수, 신규고정투자여력, 기타

○ 일반사업자의 경우 : 농가수, 관내논면적, 벼 생산량, 평창고 보유현황, 조곡매출 및 조곡공매참여 연도와 최근 3년간 취급물량, 인수도정공장명, 통합 또는 공동출자 도정공장명 및 현황, 농민과의 계약재배와 생산자조직과의 물벼수집 계획량 및 공동건조·저장에 관한 합의결과와 참여농가수, 신규 고정투자여력, 기타

[ 별지 제2호 서식 ]

## 농가산물벼 매입계획서

1. 사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

2. 처리능력 : 건조      톤, 저장      톤, 가공      톤/일

3. 세부매입계획

가. 매입기간 :

나. 원료벼 확보계획

(단위 : 조곡, 톤)

농 가 산 물 벼				조곡공매	농가수탁	기 타	계
계약재배	일반농가	위탁영농회사	기 타				

다. 자금조달계획(정부지원, 농협중앙회 융자, 기타)

라. 사업운영방안(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계획등)

4. 기 타

[ 별지 제3호 서식 ]

## 원료벼 매입확인서

○○ 미곡종합처리장

연산별	매입처별(조곡, 톤)			매입방법(조곡, 톤)			매입금액(천원)		
	계약재배	일반농가	조곡공매	물벼	건조벼	계	농가	비농가	계
○○년산									
○○년산									
계									

위의 원료벼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199 . . . . .

○ 사업자 대표 (인)

○ 확인자 : 농검 ○○출장소장 (인)

※ 확인서는 사업자, 농검출장소가 각 1부씩 보관할 것

[ 별지 제4호 서식 ]

**미국중합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199 년도 사업자)**

(199 . 월 말 현재)

사업자	지역 (시군읍면)	사업계획									사업추진상황					사업비 집행내역			비고
		사업량			사업비			처리능력			대지 확보	건축 허가	착공 일	공정 예정 일	계	보조 자	자담		
		대지	건물	기계설비	계	보조 자	자담	건조	저장	가공									
		m' (평)	m' (평)	종 천원				조 곡 톤	정 곡 톤	월 일			% 월 일	천 원					

※ 처리능력 : 건조는 연간 처리능력, 저장은 일시저장능력, 가공은 1일 8시간기준 생산능력을 표시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

**미국중합처리장 설치사업 정산실적 보고(199 년도 사업자)**

사업자	지역 (시군읍면)	사업량						사업비										비율 (F/E)	착공일	준공일			
		계 획			실 적			비 율			시설능력			투 자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지	건물 (A)	기계설비 (B)	대지	건물 (C)	기계설비 (D)	C/ A	D/ B	건조	저장	가공	계	보조 (E)	용자	자담	계				보조 (F)	용자	자담
		m' (평)	m' (평)	종	m' (평)	m' (평)	종	%	톤/ 조 곡	톤/ 조 곡	톤/ 정 곡	천 원				천 원				%			

[ 별지 제6호 서식 ]

## 미국중합처리장 원료비 매입실적보고( /4분기)

(물량 : 조곡, 톤, 금액 : 천원)

시 군 및 사 업 자	연 산 별	매입량 (계)		농 가 매 입				농가 수탁	기 . 타 매 입				조곡공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농업회사법인		기 타		물량	금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량	금액	물량
계															

※ ( )내에는 물벼로 매입처리한 물량을 기재

[ 별지 제7호 서식 ]

## 미국중합처리장 원료비 매입대장

(물량 : 조곡, 톤, 금액 : 천원)

매 입 일 자	연 산 별	합 계			농 가 매 입				농가 수탁	기 타 매 입				조곡공매	
		매 입 형 태	매 입 량	매 입 금 액	계약재배		일반농가			농업회사 법 인		기 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물 벼 간 조 벼 계													

26	임도정공장 시설대체(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관리과입니다.

### 1. 목 적

- 자율통폐합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임도정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 소규모 임도정공장을 적정수준으로 통폐합하여 업체 경쟁력 제고

### 2. 추진방향

- 임도정업체가 경쟁력있는 산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율통폐합 및 시설현대화 유도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도정공장의 시설현대화 촉진
- 생산농가의 이용편의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기존 도정시설 활용

###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합 계
○ 사업량	76	15	10	30	181	312
○ 사업비	16,308	2,100	1,500	4,500	27,150	51,558
- 융 자	6,521	1,470	1,050	3,600	21,720	34,361
- 자부담	9,787	630	450	900	5,430	17,197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추진배경

- 노후화된 임도정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통폐합·시설대체를하고차 하는 사업자에게 도정기계등 시설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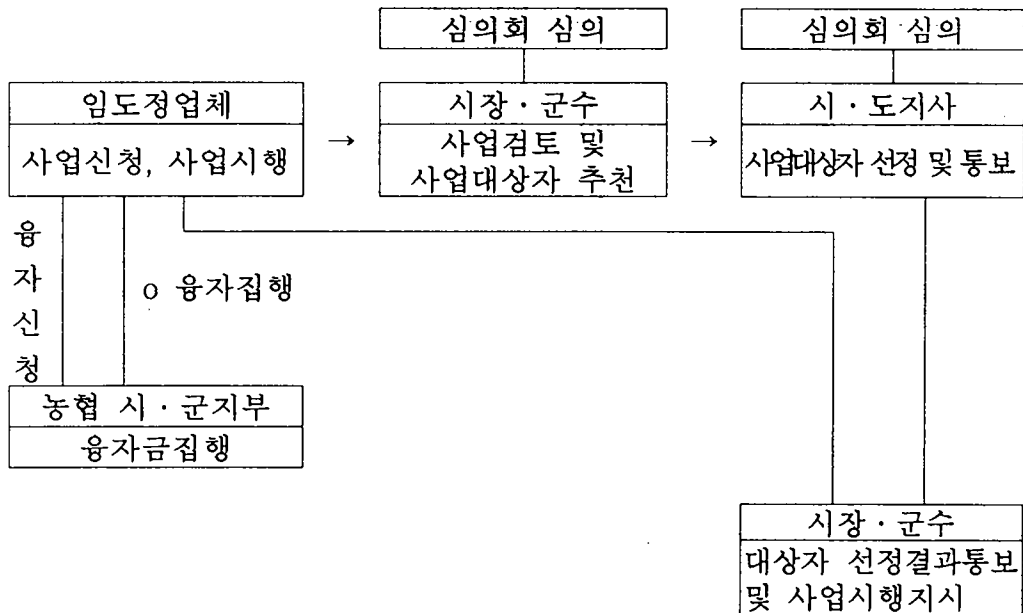
##### (2) 지원대상자 : 자율적 통폐합 또는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소규모 임도정업체

##### (3) 지원규모 및 조건

사 업 자	융자금액	금리 (년)	용 자 조 건			비 고
			계	거 치	상 환	
임도정공장통폐합 · 시설대체	백만원 105	% 8	년 10	3	7	

※ 사업단가 150백만원의 70% 지원

##### (4) 사업시행체계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임도정공장통폐합 · 시설대체	개소 10	백만원 1,500	1,050	-	1,050	-	450

※ 융자조건 : 연리 8%, 3년거치후 7년상환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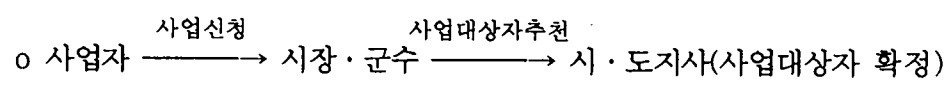
나.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부 : 식량정책심의관실 식량관리과(02-503-7274)
- 시도 : 농산과(또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또는 농정과)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읍·면 소재 소규모 임도정공장중 통폐합·시설대체를 희망하는 사업자

(2) 신청절차



**(3)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1부(실시규정 제1호 서식)
- 농림사업정책자금 용자신청조서 1부(실시규정 제2호 서식)

**라. 사업시행**

**(1) 용자조건**

- 용자금액 : 개소당 105백만원이내(총 소요자금의 70%이내)
- 자금용도 : 도정기계등 시설대체자금(부지구입비, 건축비는 자부담)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또는 읍·면 농협)
- 용자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실적확인서(또는 공사기성고 확인서), 시설구입계약서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공사추진상황을 확인한 후 용자신청에 필요한 사업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기성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 채권보전 및 기타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2) '97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계
임도정공장통폐합 · 시설대체	10개소	-	1,050 (70%)	450 (30%)	1,500 (100%)

**(3) 분기별 계획**

(단위 : 백만원)

분기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자금 지원 계획		
		보 조	용 자	계
1/4	사업대상자 확정 및 지원규모 결정	-	-	-
2/4	공사확정 및 추진	-	525	525
3/4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	525	525
4/4	완공	-	-	-
계		-	1,050	1,050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기계설비는 가급적 KS규격품, 품질보증품등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설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 한국양곡가공협회는 년 2회이상 회원도정공장의 시설물 안전관리상황을 점검·시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 한국양곡가공협회는 년 1회이상 회원사의 시설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나. 보 고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정산실적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익년도 1.15일까지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 나. 신청자격

- 읍·면소재 소규모임도정공장중 통폐합·시설대체를 희망하는 사업자

### 다. 신청절차

- 사업자  $\xrightarrow{\text{사업신청}}$  시장·군수  $\xrightarrow{\text{사업대상자추천}}$  시·도지사(사업대상자 확정)

##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1부(실시규정 제1호 서식)
- 농림사업정책자금 융자신청조서 1부(실시규정 제2호 서식)

## 마. 지원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지역내 도정시설 적정배치 및 다른 도정시설과 중복투자되지 않는 지역의 자율통폐합 희망사업자(미곡종합처리장 미설치 읍·면)
- ② 통폐합 희망업체간의 이해관계 사전조정 및 부지확보 등을 위하여 통폐합 추진에 지장이 없는 사업자(미곡종합처리장 미설치 읍·면)
- ③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자율통폐합 임도정공장이 없는 지역의 시설현대화 희망사업자

### (2) 선정절차

- 사업자  $\xrightarrow{\text{사업신청}}$  시장·군수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xrightarrow{\text{사업대상자추천}}$  시·도지사(농어촌발전심의회 상정·사업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추천시 한국양곡가공협회와 사전협의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97 임대정공장통폐합 시설대체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단위 : 천원)

시·군	통폐합 대상 공장명	통폐합공장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사업내역			사업비		
			대지 m <sup>2</sup> ( 평)	건물 m <sup>2</sup> ( 평)	기계 설비 종	계	용자	자담

[ 별지 제2호 서식 ]

## 임도정공장 통폐합 · 시설대체사업 정산실적 보고

지역 (시·군)	통폐합 대상장 합상명	통폐합 대상장 대표자	사업량					사업비						비율 (F/E)	착공일	준공일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지	건물 (A)	기계설비 (B)	대지		건물 (C)	기계설비 (D)	C/A	D/B	계 (E)	용자				자담	계 (F)
			m' (평)	m' (평)	종				%	천원			천원			%	월일	월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정기획과입니다

○ 세부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별도 시달할 예정입니다